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56호

2024. 2. 29.(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등

[조 례]

제9106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입법예고]

제2024-619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
제2024-64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2

◈ 고 시

제2024-100호 양재천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5
제2024-102호 가락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8
제2024-10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일부 취소고시 ····· 48
제2024-104호 상도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51
제2024-105호 보행자우선도로 변경 고시 ····· 91
제2024-106호 중곡 4-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93
제2024-107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99
제2024-108호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 151
제2024-109호 도시철도 역명 개정 확정고시 ····· 153
제2024-110호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장위10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54
제2024-111호 상계동 177-6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213
제2024-112호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227
제2024-113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247
제2024-114호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 ····· 250
제2024-115호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특별계획구역 변경 결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 251

제2024-116호 도시관리계획(송파대로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석촌동 287 일원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송파구 석촌동 287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 ····· 287
제2024-11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 312

◈ 공 고

제2024-522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314
제2024-544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315
제2024-564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 선발 공고 ····· 316
제2024-565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318
제2024-574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319
제2024-576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320
제2024-577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321
제2024-578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323
제2024-581호 도시관리계획(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 336
제2024-582호 도시관리계획(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 338
제2024-58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 주민 재열람공고 ····· 340
제2024-588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351
제2024-592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352
제2024-593호 지방보조사업자 정산 결과 및 이의신청 공시송달 공고 ····· 353
제2024-598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355
제2024-604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356
제2024-612호 시유특허권 처분 공고 ····· 383
제2024-613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400
제2024-615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시행계획 공고 ····· 401
제2024-629호 2024년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 402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규칙]

제108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 405
제1081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24

◈ 구 고 시

제2024-5호 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광진구) ····· 426
제2024-2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동작구) ····· 429
제2024-2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동작구) ····· 433
제2024-2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관악구) ····· 440
제2024-28호 도시관리계획(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남구) ····· 445
제2024-29호 도시관리계획(청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남구) ····· 447

◈ 구 공 고

제2024-46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용산구) ····· 450
제2024-47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용산구) ····· 454
제2024-378호 도시관리계획[(가칭)성수IT/디자인융합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성동구) ····· 458
제2024-445호 도시관리계획(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결정(안) 재열람공고(강서구) ····· 460
제2024-393호 도시관리계획(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금천구) ····· 464
제2024-397호 도시관리계획(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금천구) ····· 465
제2024-513호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최초)을 위한 열람 공고(강남구) ····· 468
제2024-533호 도시계획시설사업(대모산근린공원 조성-개포동) 실시계획(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강남구) ····· 470
제2024-56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안) 열람공고(강남구) ····· 475

◈ 사업소고시

제2024-6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78
제2024-6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79

◈ 기 타

제2024-58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80
제2024-6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81
제2024-73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82
제2024-7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83
제2024-80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84

자치법규 등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9106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2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의정자료수집 · 연구비 지급액란 중 “월 1,200,000원”을 “월 1,5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 지급액란 중 “월 300,000원”을 “월 5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12.14.)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2024.2.14.)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맞춰 의정활동비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의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지급액을 "월 1,200,000원"에서 "월 1,500,000원"으로 변경하고 보조활동비 지급액을 "월 300,000원"에서 "월 500,000원"으로 변경함(별표 1)

나. 의정활동비 개정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619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정함으로써 가설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안전 위험요인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1회로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전화 : 02-2133-71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2) 팩 스: 02-768-8926
3) 이메일: pang83@seoul.go.kr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는 1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항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가설건축물) ① ~ ④ (생 략) <신 설>	제17조(가설건축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는 1회로 한다.

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table>
<tr><td rowspan="2">1. 규제사무명</td><td rowspan="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td><td colspan="8">2. 구 분</td></tr>
<tr><td>신설</td><td>○</td><td>강화</td><td></td><td>내용
심사</td><td></td><td>존속
기한
연장</td><td></td></tr>
<tr><td>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 colspan="9">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건축기획과장 임우진, 건축정책팀장 최홍규, 담당 정성재</td></tr>
<tr><td>4. 근거법령명등</td><td colspan="5">「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td><td>관 련
규제수</td><td colspan="3">1</td></tr>
<tr><td>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9">(피규제집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자
(이해관계자) 가설건축물을 관리 · 감독하는 허가권자</td></tr>
<tr><td>6. 규제존속기한</td><td colspan="9">해당없음</td></tr>
<tr><td>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td><td colspan="9">(종전) 없음
(신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1회로 정함</td></tr>
</table>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임시적 속성의 가설건축물은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 및 건축기준이 완화 적용되나, 종전 법령 상 존치기간 연장횟수에 제한이 없어 반복 연장을 통해 일반건축물과 유사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함

나. 상기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로 위임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1회로 규정하여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 미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조례로 위임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1회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사회적 제약요소는 크지 않고 행정실현 가능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없음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조례로 위임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1회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규제비용 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명확하게 규정

나. 규제의 법적 근거 및 존속기간의 타당성 여부

○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름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64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기획조정실 기획관의 소관 부서 조정
- ‘평가담당관’ 을「재정기획관」산하에서「정책기획관」산하로 이관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이메일 : syg1108@seoul.go.kr
(2) 우 편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재정기획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창의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공공자산담당관·평가담당관·공기업담당관”을 “정책기획관·재정기획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평가담당관·창의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공공자산담당관·공기업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담당관·창의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평가담당관·공기업담당관”을 “기획담당관·평가담당관·창의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공기업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직관리”를 “조직관리, 성과평가”로, “운용, 성과평가”를 “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13항을 각각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협력과장"을 "갈등관리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시민협력과장"을 "갈등관리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민협력과장"을 "갈등관리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시민협력과장"을 "갈등관리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시민협력과장”을 각각 “녹색제품 구매 촉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환경시민협력과장”을 각각 “녹색제품 구매 촉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재정기획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창의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공공자산담당관·평가담당관·공기업담당관을 둔다.	제10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정책기획관·재정기획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평가담당관·창의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공공자산담당관·공기업담당관---.
②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재정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획담당관·창의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평가담당관·공기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조직담당관·공공자산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담당관·평가담당관·창의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공기업담당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책기획관은 시정계획, 조직관리, 법무행정 등에 관하여, 재정기획관은 투자재원 배분·조정, 정부재정 지원·협력, 중장기재정계획 수립·조정, 공공자산 운용,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 조직관리, 성과평가 ---------- 운용 ----------.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⑫ (생 략)	⑧ ~ ⑬ (현행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와 같음)
⑬ (생 략)	⑦ (현행 제13항과 같음)
⑭ (생 략)	⑭ (현행과 같음)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00호

양재천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96호(1983.09.10.)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224호(1993.07.24.)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중복결정(변경)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호(1994.01.08.) 도시계획시설(공원) 명칭 변경결정 최종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87-568호(1987.11.1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된 양재천근린공원에 대하여 2023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 내 주차장 중복결정에 따라 공원 하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상부공원을 재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위　　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61-22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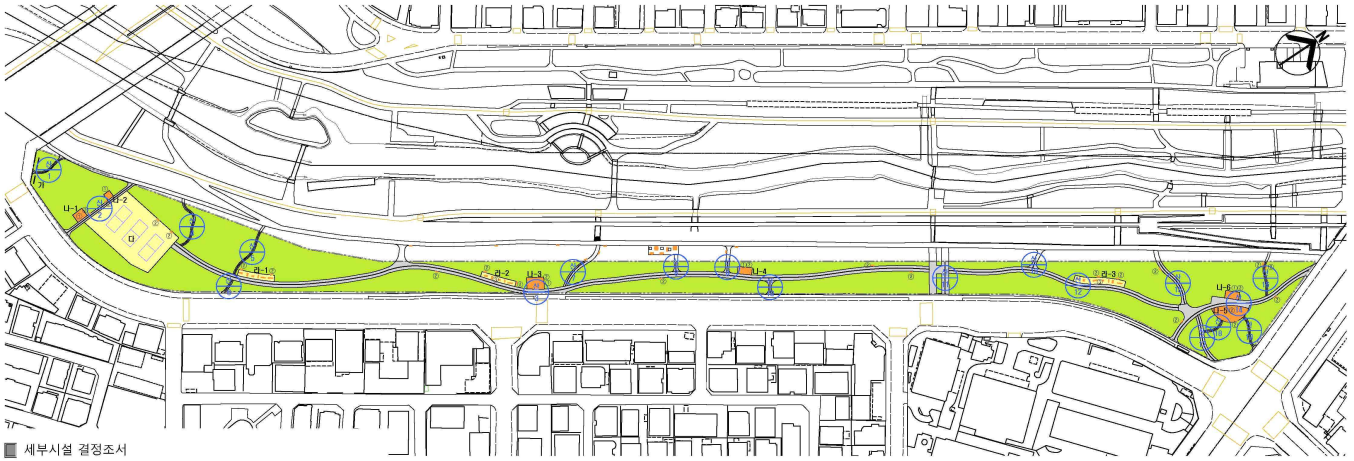
3. 공원면적: 19,261.0㎡

4.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및 도면: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 (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또는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74), 서초구청 공원녹지과(☎2155-6882)

조성계획도(당초)

양재천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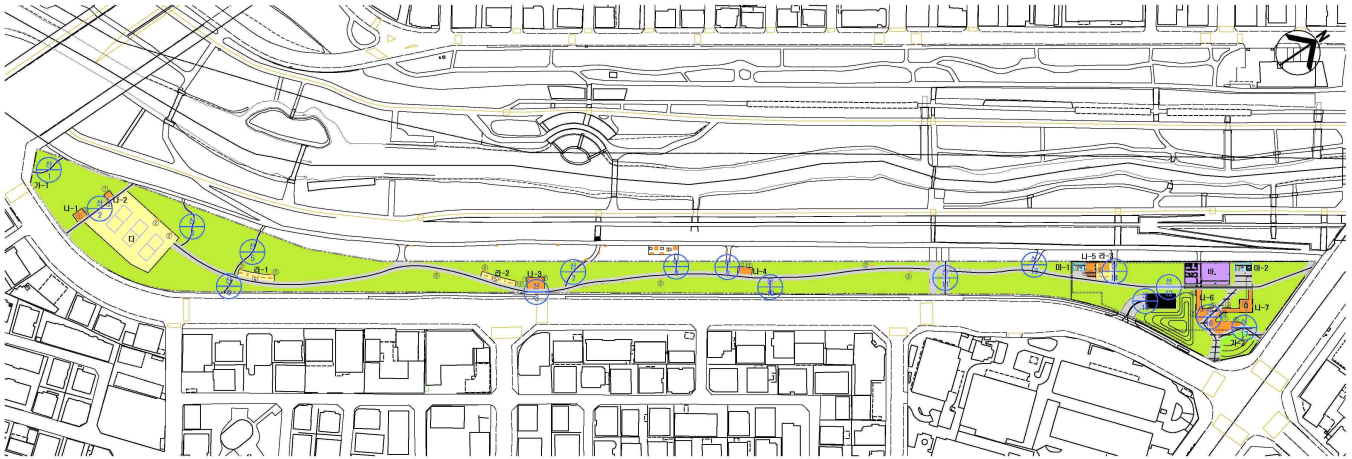


세부시설 결정조서

구 분	시 설 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	비고
합 계				19,261.00	4,568.75	69	시설률 : 23.72%
기반시설	소 계			2,790.29	2,790.29		
	도 로		양재동 261-22	2,790.29	2,790.29		
조경시설	소 계			3.60	3.60		
	조형가벽	가	양재동 261-22	3.60	3.60		
휴양시설	소 계			323.57	323.57	50	
	휴게쉼터	나	양재동 261-22	323.57	323.57		
		나-1	양재동 261-22	(33.48)	(33.48)		
		나-2	양재동 261-22	(16.00)	(16.00)		
		나-3	양재동 261-22	(64.17)	(64.17)		
		나-4	양재동 261-22	(33.21)	(33.21)		
		나-5	양재동 261-22	(142.71)	(142.71)		
		나-6	양재동 261-22	(34.00)	(34.00)		
	파고라	①	양재동 261-22			5	
	등의자	②	양재동 261-22			45	
운동시설	소 계			1,451.29	1,451.29	19	
	족구장	다	양재동 261-22	1,215.09	1,215.09		
	체력단련장	라		236.20	236.20		
		라-1	양재동 261-22	(71.75)	(71.75)		
		라-2	양재동 261-22	(59.76)	(59.76)		
		라-3	양재동 261-22	(104.69)	(104.69)		
	체력단련시설	③	양재동 261-22			19	
녹지	소 계			14,692.25			
	녹지			14,692.25			

조성계획도(변경)

양재천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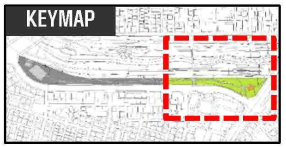
■ 세부시설 결정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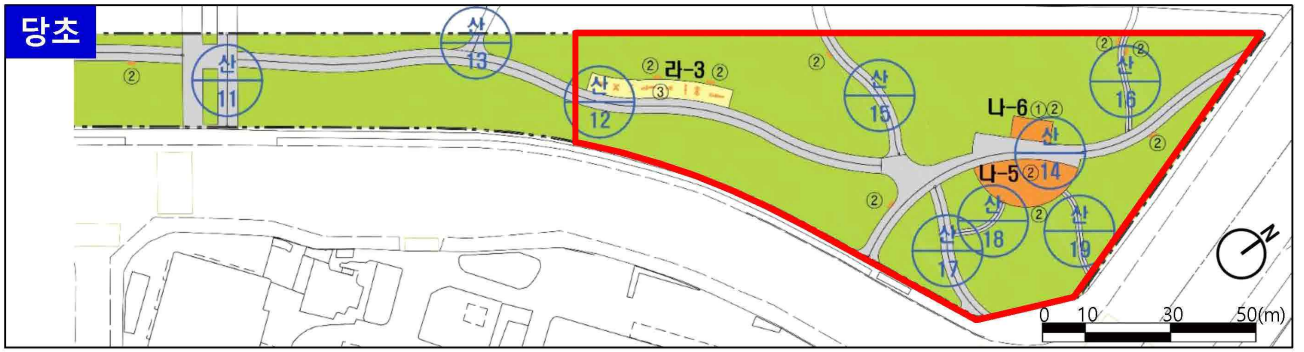
구 분	시 설 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	비고
합 계				19,261.00	5,450.84	63	사설률 : 28.30%
기반시설	소 계			3,083.52	3,083.52		
	도 로		양재동 261-22	3,083.52	3,083.52		
조경시설	소 계			49.39	49.39		
	조형가벽	가		49.39	49.39		
		가-1	양재동 261-22	(3.60)	(3.60)		
		가-2	양재동 261-22	(45.79)	(45.79)		
휴양시설	소 계			481.30	481.30	49	
	휴게쉼터	나	양재동 261-22	481.30	481.30		
		나-1	양재동 261-22	(33.48)	(33.48)		
		나-2	양재동 261-22	(16.00)	(16.00)		
		나-3	양재동 261-22	(64.17)	(64.17)		
		나-4	양재동 261-22	(33.21)	(33.21)		
		나-5	양재동 261-22	(50.86)	(50.86)		
		나-6	양재동 261-22	(82.73)	(82.73)		
		나-7	양재동 261-22	(200.85)	(200.85)		
	파고라	①	양재동 261-22			6	
	등의자	②	양재동 261-22			38	
	앞옴벽	③	양재동 261-22			4	
	야외테이블	④	양재동 261-22			1	

구 분	시 설 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	비고
운동시설	소 계			1,430.49	1,430.49	14	
	족구장	다	양재동 261-22	1,215.09	1,215.09		
	체력단련장	라		215.40	215.40		
		라-1	양재동 261-22	(71.75)	(71.75)		
		라-2	양재동 261-22	(59.76)	(59.76)		
		라-3	양재동 261-22	(83.89)	(83.89)		
	체력단련시설	⑤	양재동 261-22			14	
편익시설	소 계			83.58	83.58		
	주차장시설	마		83.58	83.58		
		마-1	양재동 261-22	(34.09)	(34.09)		
		마-2	양재동 261-22	(49.49)	(49.49)		
관리시설	소 계			322.56	322.56		
	관리사무소	바	양재동 261-22	322.56	322.56		
녹지	소 계			13,810.16			
	녹지			13,810.16			

부분 조성계획도

양재천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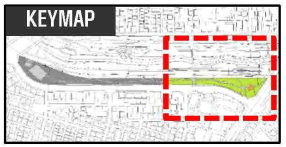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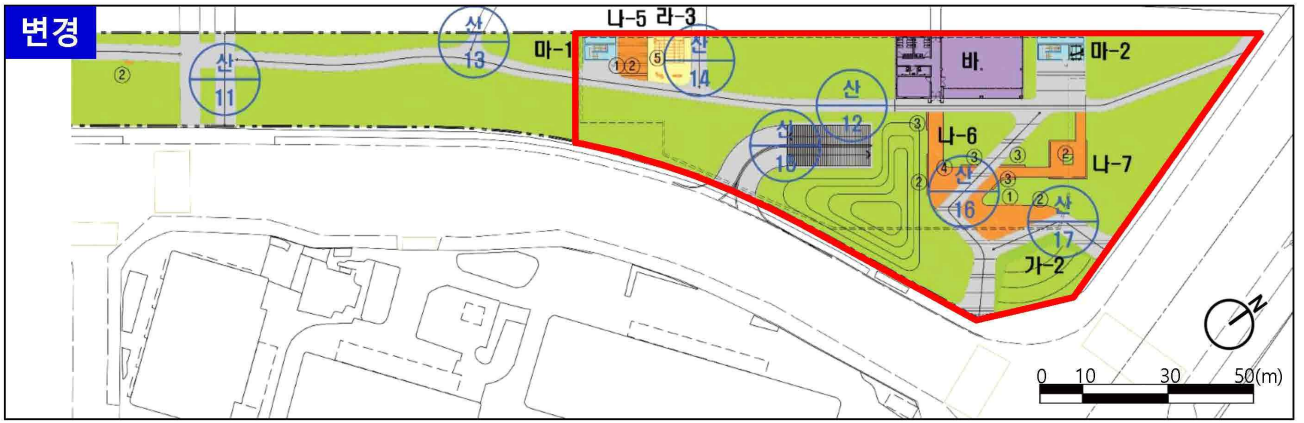
범례

시설 구분	시 설 명	시설면적	비 고
기 반 시 설	산책로	2,790.29	
조 경 시 설	조형가벽	3.60	
휴 양 시 설	휴게쉼터	323.57	
운 동 시 설	체력단련 공간	1,451.29	
편 익 시 설	주차장시설	0.00	
관 리 시 설	관리실 및 다목적공간	0.00	
녹 지	녹 지	14,692.25 (76.27%)	

부분 조성계획도

양재천근린공원





범례

시설 구분	시 설 명	시설면적	비 고
기 반 시 설	산책로	3,083.52	
조 경 시 설	조형가벽	49.39	
휴 양 시 설	휴게쉼터	481.30	
운 동 시 설	체력단련 공간	1,430.49	
편 익 시 설	주차장시설	83.58	
관 리 시 설	관리실 및 다목적공간	322.56	
녹 지	녹 지	13,810.16 (71.70%)	

양재천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초구 양재동 261-22))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계	19,261.00	4,568.75				69	19,261.00	5,450.84	3	406.14	406.14	63	증 882.09㎡
기반시설 소계	2,790.29	2,790.29					3,083.52	3,083.52					증 293.23㎡
기반시설 도로	2,790.29	2,790.29					3,083.52	3,083.52					증 293.23㎡
조경시설	3.60	3.60					49.39	49.39					증 45.79㎡
휴양시설	323.57	323.57				50	481.30	481.30				49	증 157.73㎡
운동시설	1,451.29	1,451.29				19	1,430.49	1,430.49				14	감 20.80㎡
편익시설							83.58	83.58	2	83.58	83.58		증 83.58㎡
관리시설							322.56	322.56	1	322.56	322.56		증 322.56㎡
녹지 및 기타	14,692.25						13,810.16						감 882.09㎡
시설율 (법정 40%)	(4,568.75 / 19,261.00) × 100 = 23.72%						(5,450.84/ 19,261.00) × 100 = 28.30%						
건폐율 (법정 20%)	(0 / 19,261.00) × 100 = 0%						(406.14 / 19,261.00) × 100 = 2.10%						
특정시설률 (법정 20%)	(1,451.29 / 19,261.00) × 100 = 7.53%						(1,430.49 / 19,261.00) × 100 = 7.43%						

2.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9,261.00	4,568.75					69			19.261.00	5,450.84		3동	406.14	406.14	63	잔 882.09㎡
기반시설	소 계			2,790.29	2,790.29								3,083.52	3,083.52						잔 293.23㎡
	도 로		양재동 261-22	2,790.29	2,790.29							양재동 261-22	3,083.52	3,083.52						잔 293.23㎡
조경시설	소 계			3.60	3.60								49.39	49.39						잔 45.79㎡
	조형가벽	가	양재동 261-22	3.60	3.60						가		49.39	49.39						잔 45.79㎡
											가-1	양재동 261-22	(3.60)	(3.60)						부호변경 (가→가-1)
											가-2		(45.79)	(45.79)						신설
휴양시설	소 계			323.57	323.57					50			481.30	481.30					49	잔 157.73㎡
	휴게쉼터	나		323.57	323.57						나		481.30	481.30						잔 157.73㎡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나-1	양재동 261-22	(33.48)	(33.48)						나-1	양재동 261-22	(33.48)	(33.48)						-
		나-2	양재동 261-22	(16.00)	(16.00)						나-2	양재동 261-22	(16.00)	(16.00)						-
		나-3	양재동 261-22	(64.17)	(64.17)						나-3	양재동 261-22	(64.17)	(64.17)						-
		나-4	양재동 261-22	(33.21)	(33.21)						나-4	양재동 261-22	(33.21)	(33.21)						-
		나-5	양재동 261-22	(142.71)	(142.71)						나-5	양재동 261-22	(50.86)	(50.86)						변경
		나-6	양재동 261-22	(34.00)	(34.00)						나-6	양재동 261-22	(82.73)	(82.73)						변경
											나-7	양재동 261-22	(200.85)	(200.85)						신설
	파고라	①	양재동 261-22							5	①	양재동 261-22							6	일부교체
	등의자	②	양재동 261-22							45	②	양재동 261-22							38	일부교체
	앉음벽										③	양재동 261-22							4	신설
	야외 테이블										④	양재동 261-22							1	신설
이상 없음	소 계			1,451.29	1,451.29					19			1,430.49	1,430.49					14	감 20.80㎡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시설	족구장	다	양재동 261-22	1,215.09	1,215.09						다	양재동 261-22	1,215.09	1,215.09						-
	체력단련장	라		236.20	236.20						라		215.40	215.40						감 20.80㎡
		라-1	양재동 261-22	(71.75)	(71.75)						라-1	양재동 261-22	(71.75)	(71.75)						-
		라-2	양재동 261-22	(59.76)	(59.76)						라-2	양재동 261-22	(59.76)	(59.76)						-
		라-3	양재동 261-22	(104.69)	(104.69)						라-3	양재동 261-22	(83.89)	(83.89)						신설
	체력단련시설	③	양재동 261-22							19	⑥	양재동 261-22							14	일부삭제
편의시설	소계												83.58	83.58			83.58	83.58		증 83.58㎡
	주차장시설	마									마		83.58	83.58		2동	83.58	83.58		신설
		마-1	양재동 261-22	(34.09)	(34.09)	철근콘크리트	1동	(34.09)	(34.09)		마-1	양재동 261-22	(34.09)	(34.09)	철근콘크리트	1동	(34.09)	(34.09)		신설
		마-2	양재동 261-22	(49.49)	(49.49)	철근콘크리트	1동	(49.49)	(49.49)		마-2	양재동 261-22	(49.49)	(49.49)	철근콘크리트	1동	(49.49)	(49.49)		신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시설	소 계												322.56	322.56		1동	322.56	322.56		감 322.56㎡
	관리사무소										바	양재동 261-22	322.56	322.56	철근콘크리트	1동	322.56	322.56		신설
녹지 및 기타	소 계			14,692.25									13,810.16							감 882.09㎡
	녹지			14,692.25									13,810.16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954.78	2,790.29				
변경					950.01	3,083.52				
당초	소 계				954.78	2,790.29				
변경					950.01	3,083.52				
당초	산책로		1	1.2	19.85	25.30	산책로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변경			1	1.2	19.85	25.30	산책로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당초	산책로		2	2.0	46.17	141.09	산책로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변경			2	2.0	46.17	141.09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당초	산책로		3	3.0	432.80	1,346.26	산책로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변경			3	3.0	432.80	1,346.26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당초	산책로		4	1.2	29.23	35.08	산책로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변경			4	1.2	29.23	35.08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당초	산책로		5	1.2	28.91	34.69	산책로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변경			5	1.2	28.91	34.69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당초	산책로		6	1.2	8.06	9.68	산책로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6	1.2	8.06	9.68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당초	산책로		7	2.0	18.25	37.60	산책로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변경			7	2.0	18.25	37.60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당초	산책로		8	2.0	5.66	13.04	산책로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변경			8	2.0	5.66	13.04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당초	산책로		9	2.0	6.21	14.13	산책로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변경			9	2.0	6.21	14.13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당초	산책로		10	1.5	7.31	17.38	산책로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변경			10	1.5	7.31	17.38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당초	산책로		11	11.0	18.31	162.08	산책로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변경			11	11.0	18.31	162.08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당초	산책로		12	3.0	132.30	396.55	산책로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변경			12	2.5	206.00	633.39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당초	산책로		13	2.0	3.86	13.20	산책로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변경			13	2.0	3.86	13.20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당초	산책로		14	3.0	90.42	338.87	산책로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변경			14	2.0	10.88	34.43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15	2.5	28.81	70.51	산책로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변경			15	2.0	31.79	278.75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당초	산책로		16	1.2	19.48	23.37	산책로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변경			16	3.0	50.65	188.64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당초	산책로		17	2.5	27.86	73.56	산책로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변경			17	3.0	26.07	98.78		양재동 261-22	양재동 261-2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02호

가락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96-1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수권분과 (소)위원회(2023.7.24.)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설	가락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송파구 가락동 96-1번지	35,043.7	-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 35,043.7	35,043.7	100.0	-
정비기반시설	소계	-	증) 203.8	203.8	0.6	-
	공공공지	-	증) 203.8	203.8	0.6	
공동주택용지	소계	-	증) 34,839.9	34,839.9	99.4	획지1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1		증) 34,839.9	34,839.9	99.4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table>
<tr><td>추정
비례율</td><td>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93.43%
⇒ (13,755억 - 5,219억) / 9,136억 X 100 = 93.43%
<table>
<tr><th>총 수입 추정</th><th>총 지출 추정</th><th>종전자산총액 추정</th></tr>
<tr><td>1,375,515,000,000원
(약 13,755억원)</td><td>521,929,000,000원
(약 5,219억원)</td><td>913,580,882,000원
(약 9,136억원)</td></tr>
</table>
</td></tr>
<tr><td>개별 종전자산
추정액</td><td>
• 가락우성아파트 공동주택 소유자 : 보정률방식 추정(공동주택 공시가격 X 보정률)
※ 공동주택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hprice.kr)에서 확인
※ 적용 보정률 : 43형(약166%), 58형(약170%), 109형(약174%), 127형(약164%)
※ 적용 보정률은 실거래자료, 23.10.13 kb시세 하한 및 가격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 가락우성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자 : 감정평가법인 약식추정방식(전유면적당 단가 X 전유면적)
※ 전유면적당 추정 단가 : 상가 1층 전면 30,000천원/㎡, 1층 전면외 24,000천원/㎡,
(1층 평균 26,000천원/㎡), 2층 13,000천원/㎡, 3층 10,400천원/㎡, 지층 9,100천원/㎡
※ 상가의 종전자산 추정액은 본 단지 및 인근 상가의 실거래사례, 평가사례 및 가격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고 개략적인 층별 격차 수준(1층 100, 2층 50, 3층 40, 지하층 35)을 감안하되 구체적인 위치, 면적 등이 반영되지 아니한 평균적인 가격수준으로 추정하였음
• 공동주택 및 상가의 종전자산은 개별 · 구체적인 위치, 면적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개략적인 평균 가격 수준을 추정한 것으로서 감정평가한 것이 아니며, 향후 실제 감정평가시 층, 위치 등 개별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본 추정의 결과는 향후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td></tr>
<tr><td>추정분담금
산출</td><td>
• 추정분담금 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table>
<tr><th colspan="2">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th><th>추정 권리가액(b)</th><th>추정분담금(a-b)</th></tr>
<tr><td>전유 45㎡형</td><td>9.64억</td><td rowspan="10">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93.43%)</td><td rowspan="10">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td></tr>
<tr><td>전유 51㎡형</td><td>10.92억</td></tr>
<tr><td>전유 59㎡형</td><td>12.58억</td></tr>
<tr><td>전유 84㎡형</td><td>15.23억</td></tr>
<tr><td>전유 84M㎡형</td><td>15.30억</td></tr>
<tr><td>전유 104(접지)㎡형</td><td>16.98억</td></tr>
<tr><td>전유 109㎡형</td><td>18.15억</td></tr>
<tr><td>전유 135(펜트)㎡형</td><td>32.42억</td></tr>
<tr><td>상가 전유17㎡형(평균)</td><td>4.75억</td></tr>
</table>
※ 추정시점 현재 분양예정 상가는 위치 및 면적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상가의 신축 연면적 및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평균 전유면적(약 17㎡)을 기준하여 추정분양가를 예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위치 등이 고려되지 아니한 평균 가격수준임.
</td></tr>
</table>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정비계획 결정도서 참조

※ 해당 분담금은 추산액으로 향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 · 종후 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합 계	35,043.7	-	35,043.7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35,043.7	-	35,043.7	100.0	-

5.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주차장(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입체적 결정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용도	면적(㎡)	건폐율/ 용적률	수직적범위		
신설	Ⓐ	주차장	-	가락동 96-1	공용 주차장	2,900.0	(지하시설)	지하1층 일부	-	입체적 결정범위 외 비도시계획시설

※ 지하1층 주차장 일부(수평투영면적(전용면적) 2,900㎡) 입체적 결정(대지지분 599.0㎡)
※ 세부계획은 성능수준 등을 송파구(주차정책과)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시 반영하고 준공시 기부채납

나)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공지1	-	가락동 96-1	-	증) 9.1	9.1	-	-
	Ⓑ	공공공지2	-	가락동 96-1	-	증) 177.4	177.4	-	-
	Ⓒ	공공공지3	-	가락동 96-1	-	증) 17.3	17.3	-	-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비고
계		송파구 가락동 96-1번지	7,781.50	-
주민 공동 시설	계		5,049.50	-
	경로당		267.00	-
	어린이집		560.00	-
	작은도서관		396.50	-
	주민공동시설-1		426.00	다목적실
	주민공동시설-2		100.00	맘스테이션
	주민공동시설-3		100.00	티하우스
	주민공동시설-4		350.00	지역공동체지원센터

구분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비고
	주민공동시설-5		220.00	다함께돌봄센터
	주민운동시설		1,430.00	실내, 실외
	어린이놀이터		1,200.00	3개소
근린생활시설			2,540.00	
관리사무소			147.84	-
경비실			44.16	2개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8조, 제55조의2),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제8조의4)
※ 시설 설치면적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7.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설	가락우성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35,043.7	획지1	34,839.9	송파구 가락동 96-1 번지	9	-	-	9	-	-

8. 건축시설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정상한		
신설	가락 우성1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35,043.7	획지1	34,839.9	송파구 가락동 96-1 번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37.59% 이하	281.88% 이하	해발고도 109m이하 (26층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967세대
• 전체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구분		세대수 (세대)	비율(%)	비고
계		967	100.0	-
85㎡이하	60㎡미만	563	58.2	공공주택 92세대
	60~85㎡이하	267	27.6	
85㎡초과		137	14.2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정상한		
	※ 전용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85.8% (기준 60%이상)										
심의완화사항	• 2025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 – 기준용적률 210% → 허용용적률 230% •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상한용적률 237.59% → 법적상한용적률 281.8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지정 – 획지 경계선으로부터 3m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① : 양재대로6길(북서측)~중대로9길(북동측) 폭원 3m 조성 • 공공보행통로② : 송파대로32길(남서측)~중대로9길(남동측) 폭원 8m 조성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조정 될 수 있음

나) 용적률 계획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택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35,043.7㎡	34,839.9㎡	802.8㎡ (환산부지면적 123.8㎡)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802.8㎡ + 123.8㎡ – 0㎡ – 0㎡ = 926.6㎡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210%				
허용 용적률 (사업별 인센티브 항목 적용)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210%) + 인센티브(20%) = 230%				

<table>
<tr><th>구분</th><th>산 정 내 용</th></tr>
<tr><td></td><td>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인센티브 용적률</th></tr>
<tr><td colspan="2">합계</td><td>22% (20%적용)</td></tr>
<tr><td colspan="2">장수명주택 우수등급이상</td><td>10%</td></tr>
<tr><td>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td><td>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td><td>3%</td></tr>
<tr><td>지능형 건축물</td><td>3등급</td><td>9%</td></tr>
</table>
※ 위에서 적용된 허용용적률인센티브(장수명주택, 녹색건축물, 지능형건축물)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td></tr>
<tr><td>상한용적률</td><td>• 상한용적률 : 237.59%
= 허용용적률×{1+(1.3×1.0×(토지제공면적/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0.7×1.0×(시설물 설치비용 환산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230×{1+(1.3×(802.8/(35,043.7-802.8))+(0.7×(123.8/(35,043.7-802.8))}
= 237.59%</td></tr>
<tr><td>법적상한용적률</td><td>• 법적상한용적률 : 281.88%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결정된 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심의를 통해 확정예정</td></tr>
</table>

9.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특별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공공주택 배치계획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 · 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 · 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 · 동시에 공개추첨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 시 서울특별시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5">주요내용</th></tr>
<tr><td colspan="2">계획기준</td><td colspan="5">•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정비계획 용적률)</td><td colspan="5">• 237.59% 이하</td></tr>
<tr><td colspan="2">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td><td colspan="5">• 281.88% 이하(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td></tr>
<tr><td rowspan="3">공공주택 산출근거</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5">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281.88% - 237.59% = 44.29%</td></tr>
<tr><td>건립 용적률(%)</td><td colspan="5">44.29% × 0.5 = 22.145%</td></tr>
<tr><td>의무 연면적(지상층)</td><td colspan="5">34,839.9㎡(대지면적) × 22.145% = 7,715.29㎡ 이상</td></tr>
<tr><td colspan="2" rowspan="5">공공주택 확보계획
(법적상한용적률 완화)</td><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수</td><td>지상층 연면적</td><td>비고</td></tr>
<tr><td>51.95㎡</td><td>72.57㎡</td><td>36</td><td>2,612.52㎡</td><td rowspan="3">획지</td></tr>
<tr><td>59.95㎡</td><td>82.94㎡</td><td>42</td><td>3,483.48㎡</td></tr>
<tr><td>84.95㎡</td><td>116.92㎡</td><td>14</td><td>1,636.88㎡</td></tr>
<tr><td colspan="2">합계</td><td>92</td><td>7,732.88㎡</td><td>〉7,715.29㎡</td></tr>
</table>

▌공공주택 혼합계획

건립규모 (전용면적 기준)	전체 세대수	구성비 (%)	조합원 및 일반분양	공공주택 세대수	공공주택 비율(%)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계	967	100.0	875	92	9.5	100.0
60㎡이하	563	58.2	485	78세대 (51.95㎡:36세대, 59.95㎡:42세대)	8.1	84.8
60㎡초과 ~ 85㎡이하	267	27.6	253	14	1.4	15.2
85㎡초과	137	14.2	137	-	-	-

10. 환경성검토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자연환경	비오톱 및 동·식물상	-	○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 및 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 제외로 조사됨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톱 기능 향상
	녹지 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	•대상지 내 주거지 및 녹지가 분포하고 있음	•조경계획을 반영하여 녹지 확보
생활환경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	•건축물 터파기 공사에 의한 지형변화 및 토공량 발생	•현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발생 사토처리 계획 수립
	생태 면적률	30% 이상	○	•주거지 및 녹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에 따른 일부 수목 훼손이 예상됨	•대상지 내 충분한 녹지를 조성하여 법적기준 이상 적용
	일조	-	-	•대상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변 :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계획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주풍향 고려 및 통경축 확보	•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 고려하여 계획
	에너지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	•에너지 절약 설비 및 계획 고려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및 청정연료 사용
	경관	Skyline 보전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주변지역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폐기물	폐기물 성상별 분리처리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됨	•송파구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
	소음 및 진동	규제 기준 만족	○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예상됨 •운영시 인근 도로소음이 예상됨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도로소음 저감시설 설치

11.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재건축사업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이내 사업시행인가	가락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기존세대수 : 838 계획세대수 : 967 증) 129세대	-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북동측 신가초등학교 입지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건설공사 시 소음, 진동, 먼지 등의 교육환경 저해요인 억제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 • 공사시 학생 및 교직원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 소음·진동 발생 저감대책 •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 및 공법의 선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에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와 '소음·진동관리법(제49조2)'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 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를 사용 • 전달경로에서의 방지대책 - 공사시 방음벽을 학교 주변에 설치하여 소음 저감 효과를 높임 •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현장 방음대책 - 항타기, 굴삭기 등 발생소음이 크고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이동식 방음벽 또는 방음커버 등을 활용함으로써 소음저감효과를 높임	거리 200m 이내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분명한 시야선 확보	• 건축물 설계나 도시계획 시 분명한 시야 선을 확보하고, 숨을 수 있는 장소 최소화 • 산책길을 따라 관목을 식재하고, 안으로 교목을 식재하여 시야 확보 • 수목 식재 형태 및 크기의 일관성 유지로 은닉 장소를 없앰 • 공원 설계 시 도로에서 내부가 관찰 가능하도록 조성 등
적합한 조명의 사용	• 적절한 조명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둠이 없는 적합한 조명설계
고립지역 개선	• 시야 선이 닿지 않거나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곳, 사람의 통행이 적거나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유사시 구조 요청 또는 구조가 어려운 지역을 과감히 없애는 설계

구분	내용
사각지대의 개선	• 감시가 곤란한 지역은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사각 지대를 없애는 설계
대지의 복합적 사용증진	• 다양한 복합시설 배치로 활용도를 높여 시설이용을 증진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연적인 감시로 안전성 확보
활동인자 증대	• 일정지역에 모여 활동하도록 하여 도로나 공간에 생동감을 부여함으로써 범죄 기회를 감소
영역성 강화	• 특정지역에 대한 소유감·영역성 부여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에게는 허가받지 않은 영역침범에 불안심리를 증폭시켜 범죄를 예방
정확한 표시로 정보제공	• 표지판은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주민이나 방문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 산책로에 유도등 및 안내시설 설치로 통로의 인지성 확보와 비상장소 활용
쾌적한 공간설계 지향	• 보안장비 설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환경이 메말라 오히려 공포감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안락감을 제공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가락우성1차아파트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가락동 96-1번지	-	증) 35,043.7	35,043.7	-

2.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합 계	35,043.7	-	35,043.7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35,043.7	-	35,043.7	100.0	-

3. 기반시설 결정 조서

가) 주차장(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입체적 결정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용도	면적(㎡)	건폐율/ 용적률	수직적범위		
신설	Ⓐ	주차장	-	가락동 96-1	공용 주차장	2,900.0	(지하시설)	지하1층 일부	-	입체적 결정범위 외 비도시계획시설

※ 지하1층 주차장 일부(수평투영면적(전용면적) 2,900㎡) 입체적 결정(대지지분 599.0㎡)
※ 세부계획은 성능수준 등을 송파구(주차정책과)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시 반영하고 준공시 기부채납

나)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공지1	-	가락동 96-1	-	증) 9.1	9.1	-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공공공지2	-	가락동 96-1	-	증) 177.4	177.4	-	-
	Ⓒ	공공공지3	-	가락동 96-1	-	증) 17.3	17.3	-	-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가구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획지1	-	증) 34,839.9	34,839.9	99.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용 도	비 고
신설	허용 용도	획지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6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나)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폐율 계획

구분	지역	건폐율 (%)	비고
신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용적률 계획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신설	210% 이하	230% 이하	237.59% 이하	281.88% 이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분	인센티브			비고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지능형건축물 3등급	
신설	10%	3%	9%	총 22% (20% 적용)

▌상한(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분	용적률 완화		비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공공주택 건설	
신설	7.59%	44.29%	총 51.88%

▌높이 계획

구분	지역	높이기준	비고
신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최고 26층이하 (해발고도 109m 이하)	-

다)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도면참조	• 획지경계선으로부터 3m	-

라)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① 양재대로6길(북서측)~중대로9길(북동측)	• 원활한 보행 소통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계획 - 폭원 : 3m
	공공보행통로② 송파대로32길(남서측)~중대로9길(남동측)	• 원활한 보행 소통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계획 - 폭원 : 8m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차량동선계획	서측 주진출입구(송파대로32길) 북측 주진출입구(중대로9길)	• 3차로(B=10.5m, L=50.0m) • 2차로(B=8.0m, L=55.0m)
보행동선계획	대상지 주변도로	• 보행동선의 연속성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신설 설치(1개소)
주차계획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 법정주차대수 및 주차수요를 충족하는 주차대수 확보

마)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특별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공공주택 배치계획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 · 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 · 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 · 동시에 공개추첨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 시 서울특별시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공공주택 공급 산출 근거

구분		주요내용
계획기준		•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
상한용적률(정비계획 용적률)		• 237.59% 이하
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		• 281.88% 이하(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
공공주택 산출근거	용적률 증가분(%)	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281.88% - 237.59% = 44.29%
	건립 용적률(%)	44.29% × 0.5 = 22.145%
	의무 연면적(지상층)	34,839.9㎡(대지면적) × 22.145% = 7,715.29㎡ 이상

구분	주요내용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지상층 연면적	비고
공공주택 확보계획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51.95㎡	72.57㎡	36	2,612.52㎡	획지
	59.95㎡	82.94㎡	42	3,483.48㎡	
	84.95㎡	116.92㎡	14	1,636.88㎡	
	합계		92	7,732.88㎡	〉7,715.29㎡

▌공공주택 혼합계획

건립규모 (전용면적 기준)	전체 세대수	구성비 (%)	조합원 및 일반분양	공공주택 세대수	공공주택 비율(%)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계	967	100.0	875	92	9.5	100.0
60㎡이하	563	58.2	485	78세대 (51.95㎡:36세대, 59.95㎡:42세대)	8.1	84.8
60㎡초과 ~ 85㎡이하	267	27.6	253	14	1.4	15.2
85㎡초과	137	14.2	137	-	-	-

6. 환경성검토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자연환경	비오톱 및 동·식물상	-	○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 및 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로 조사됨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톱 기능 향상
	녹지 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	•대상지 내 주거지 및 녹지가 분포하고 있음	•조경계획을 반영하여 녹지 확보
생활환경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	•건축물 터파기 공사에 의한 지형변화 및 토공량 발생	•현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발생 사토처리 계획 수립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생태 면적률	30% 이상	○	•주거지 및 녹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에 따른 일부 수목 훼손이 예상됨	•대상지 내 충분한 녹지를 조성하여 법적기준 이상 적용
	일조	-	-	•대상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주변 :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계획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주풍향 고려 및 통경축 확보	•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 고려하여 계획
	에너지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	•에너지 절약 설비 및 계획 고려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및 청정연료 사용
	경관	Skyline 보전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주변지역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폐기물	폐기물 성상별 분리처리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됨	•송파구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
	소음 및 진동	규제 기준 만족	○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예상됨 •운영시 인근 도로소음이 예상됨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도로소음 저감시설 설치

Ⅲ. 2023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심의의견	조치계획
[수정사항]	
- 획지면적 : 34,839.9㎡ - 용적률 : 기준210%, 허용230%, 상한237.59%, 법적상한281.88% ※ 허용인센티브 : 장수명 10%, 지능형건축물 9%,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 3% - 공공기여 : 926.6㎡ (2.6%) ※ 공영주차장 722.8㎡, 공공공지 203.8㎡ - 높이계획 : 해발고도 109m 이하 (최고 26층) - 세 대 수 : 전체 967세대 (임대주택 92세대 포함) ※ 임대주택 연면적 : 7,732.88㎡ - 대지조성계획 : 3단 (+17.5~18m / +23m / +28.5m)	
[조건사항]	
공공보행통로계획(2개소)은 향후 이용이 담보 될 수 있도록 지역권을 설정할 것	공공보행통로계획(2개소)은 향후 이용이 담보 될 수 있도록 지역권을 설정하도록 하겠음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대상지 동북측 저층주거지 연접부 및 서측 도로 경계부는 저층주거지변 일조 부영향 최소화 및 가로변 개방감 등의 측면에서 주동배치계획 적정성을 검토할 것	건축위원회 심의 시 일조 부영향 최소화 및 가로변 개방감 등을 고려하여 주동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신설계획한 공영주차장 진출입구와 연계되는 구역 외 현황 도로(중대로9길)의 횡단구성계획(G-G')은 1개 차로의 폭원(2.6m 계획)은 관련 기준에 정합되도록 조정할 것	공영주차장 진출입구와 연계되는 구역 외 현황 도로(중대로9길)의 횡단구성계획(G-G')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한 개 최소 폭원 3m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차선 구분 없이 차도 6.2m, 보도 1.5m로 조정하도록 하겠음

Ⅳ. 관련도면 : 붙임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
2. 용도지역 결정도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4. 정비계획 결정도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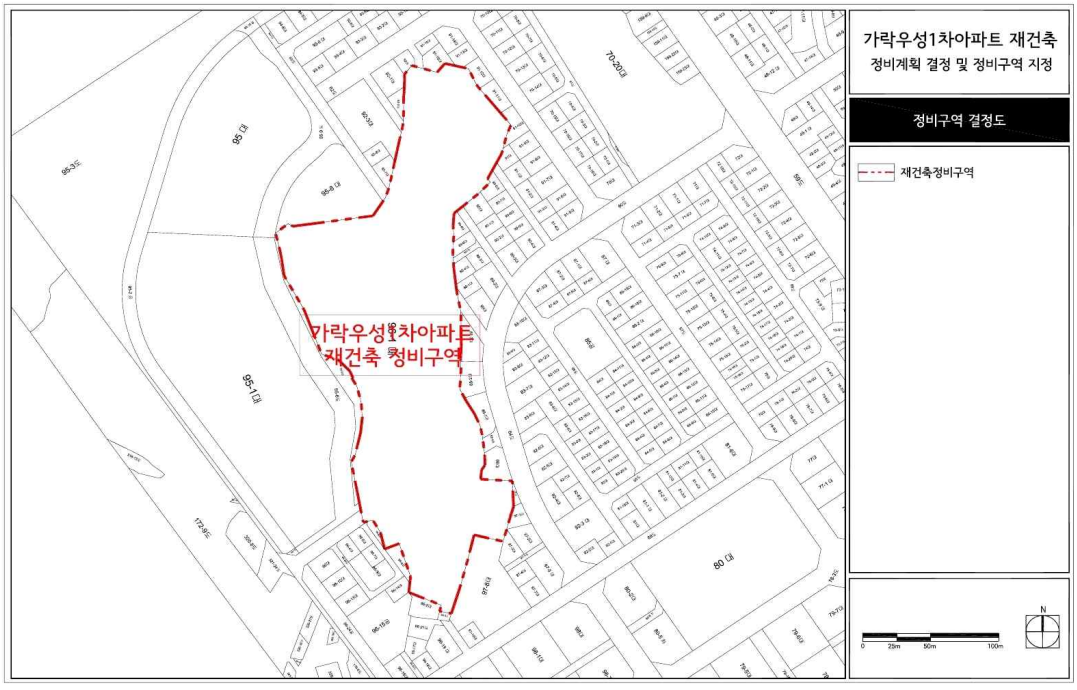
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Ⅵ.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44), 송파구청 주택사업과(☎02-2147-2888)에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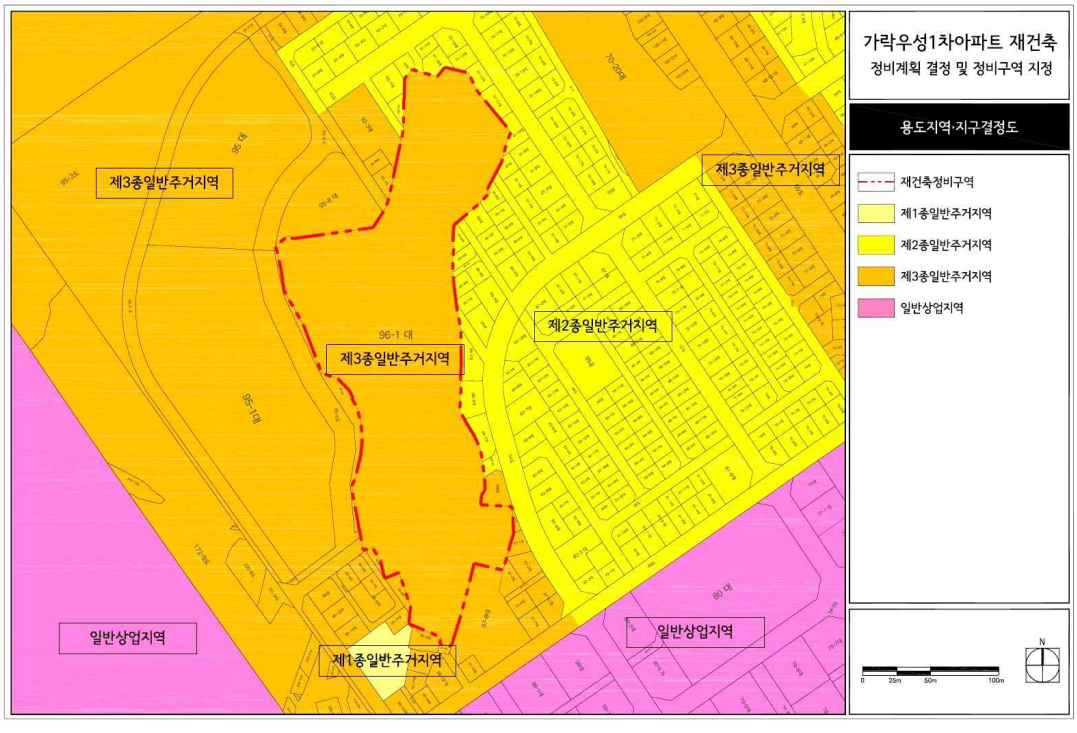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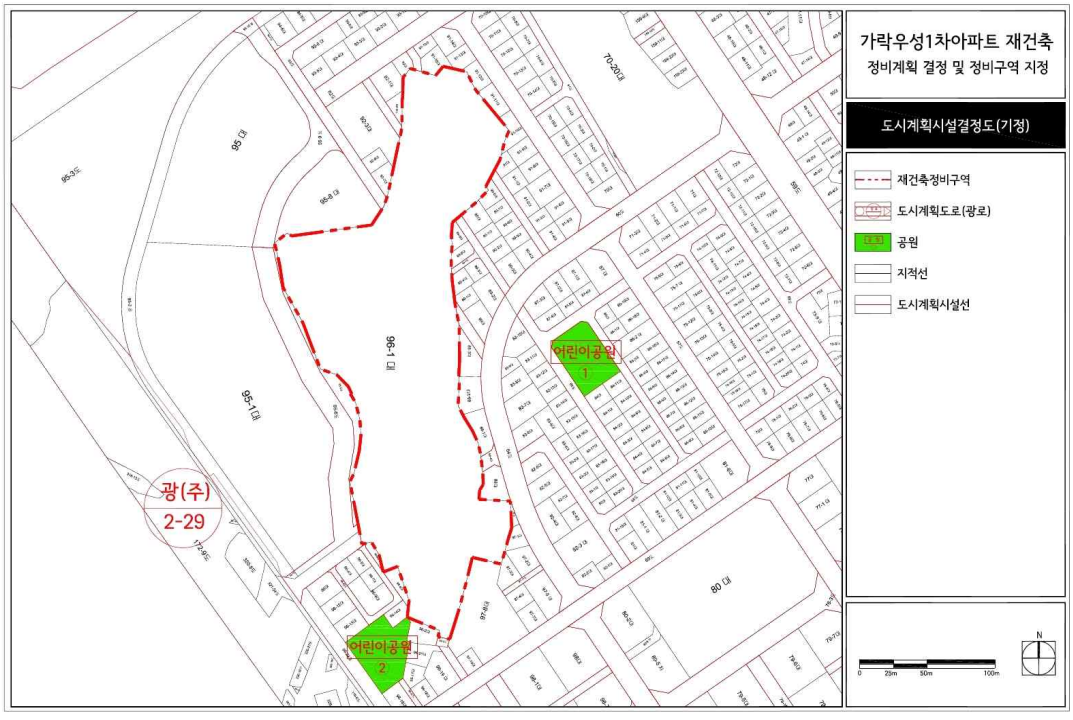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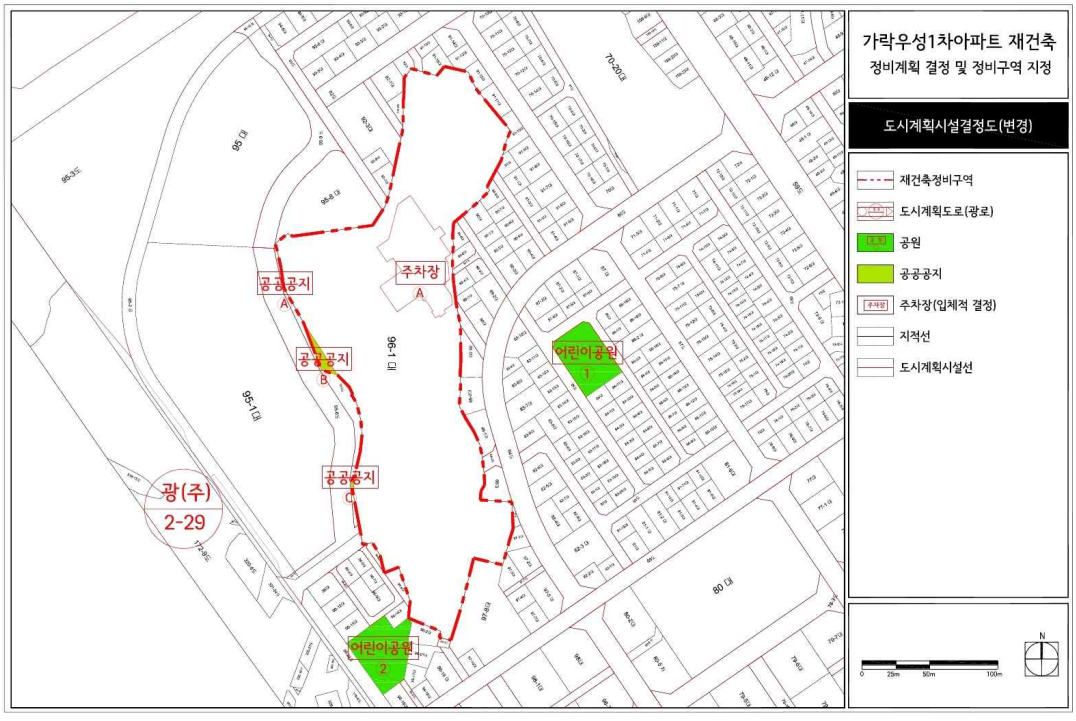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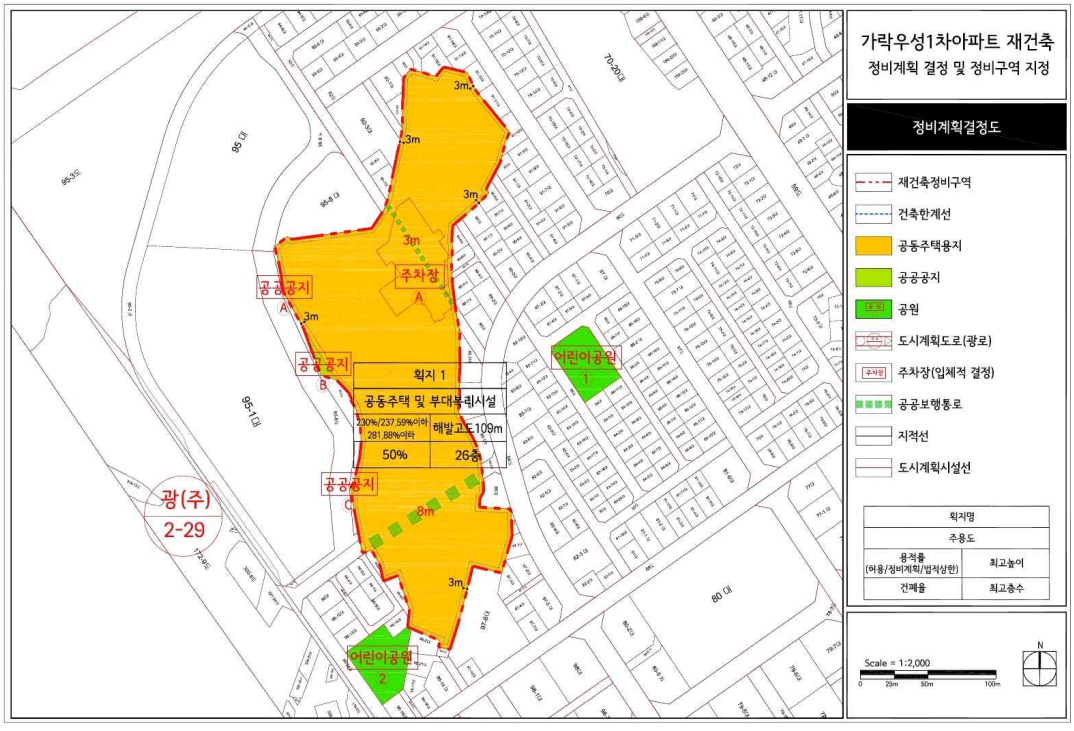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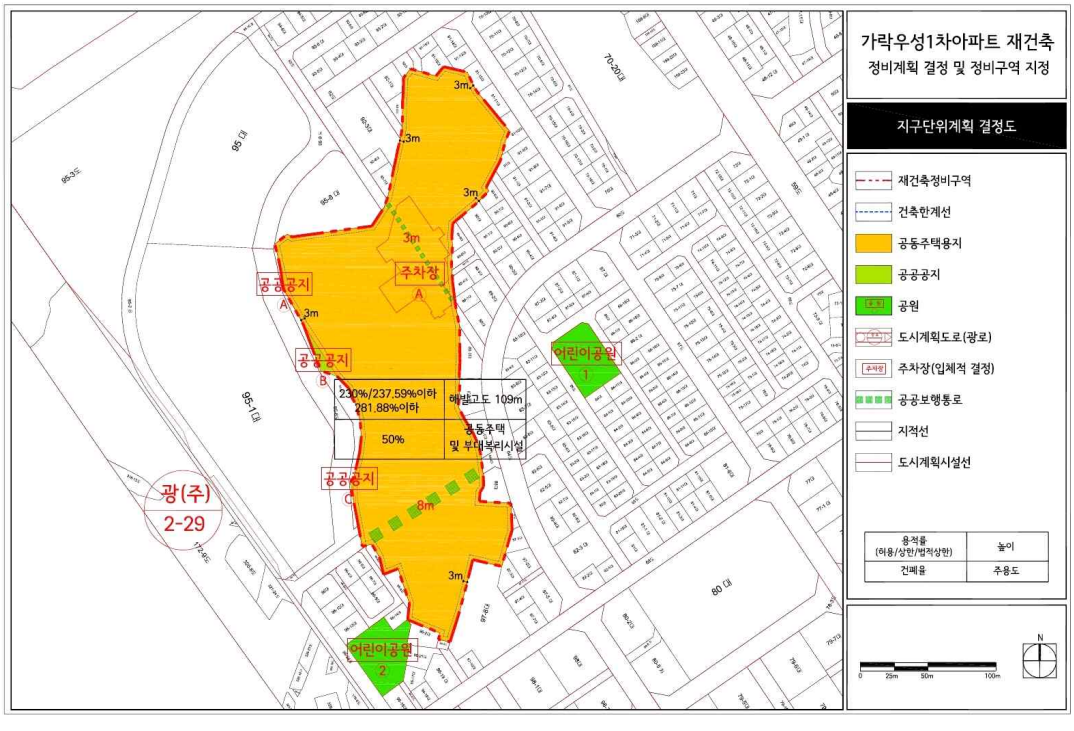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정비계획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0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일부 취소고시

행정소송 종결(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일부를 취소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취소사유
  - 행정소송 확정판결 내용 반영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일부 취소 내용
 가.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 일부 취소 조서 및 사유서
  - 취소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취소	-	북한산	근린공원	은평구 불광동 산42-5일대	366,391.9	감1,485㎡	364,906.9	'71.08.07 (건고46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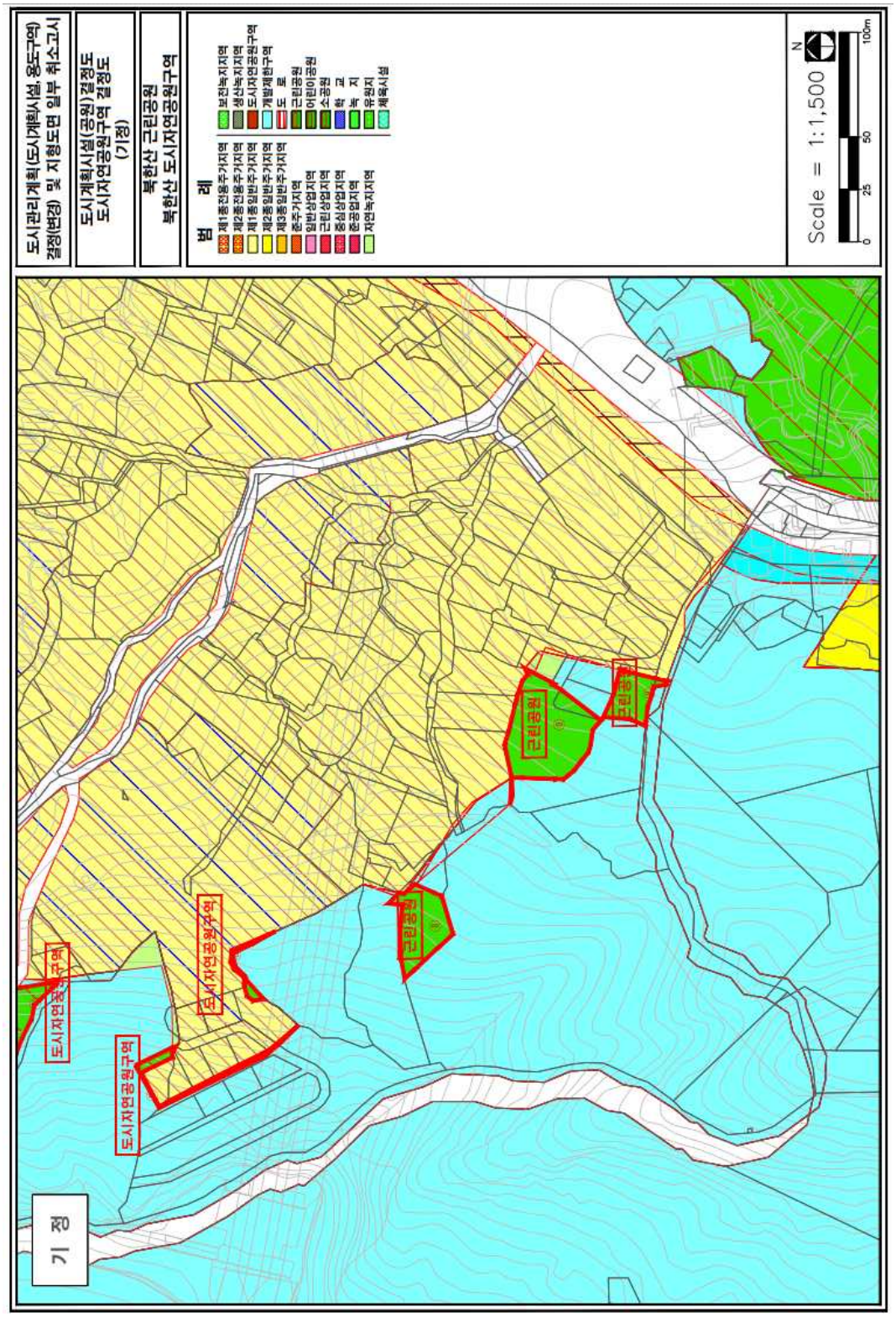
  - 취소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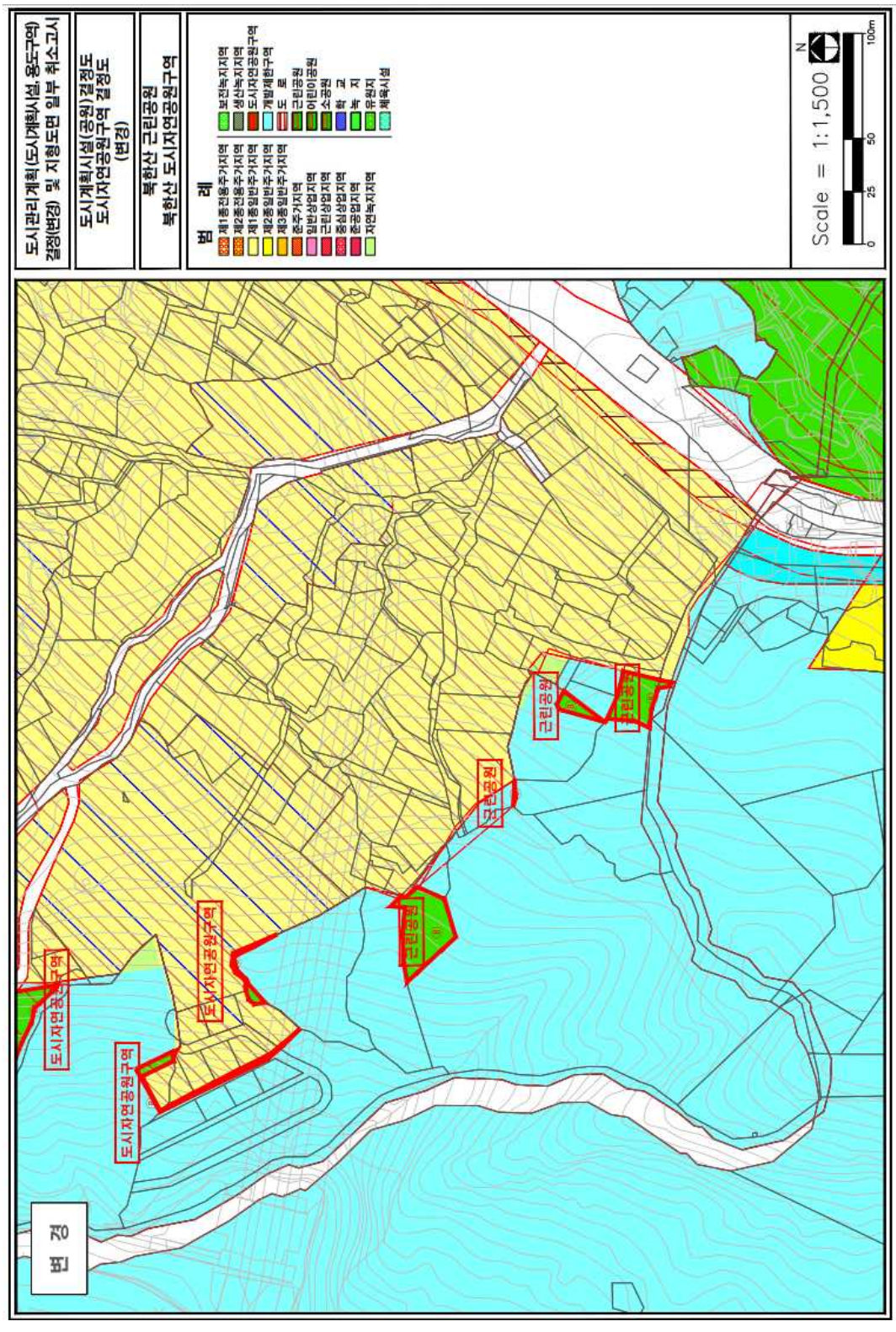
도면표시 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	북한산 근린공원	감 1,485㎡	• 행정소송 종결에 따라 사건토지(종로구 홍지동 36-15, 1,485㎡)의 북한산 근린공원 결정 취소

※ 본 고시의 내용은 서울특별시고시 2020-254호(2020.6.29.) 중 북한산근린공원 일부 (종로구 홍지동 36-15, 1,485㎡)에 한함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59), 공원조성과(☎02-2133-2071) 및 종로구청 도시녹지과(☎02-2148-283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일부 취소고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도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도
(기정)
북한산 근린공원
북한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범 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도 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학 교
녹 지
유원지
체육시설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Scale = 1:1,500
N
0
25
50
100m
기 정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일부 취소고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도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도
(변경)
북한산 근린공원
북한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범 례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산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도 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학 교
녹 지
유원지
체육시설
Scale = 1:1,500
N
0 25 50 100m
변 경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공원
근린공원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04호

상도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총독부 고시 제208호(1977.07.09.)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2020.06.29.)호로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01호(2021.07.29.)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상도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공원의 시설 및 종류 등이 변경된 사항을 조성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103-3번지 일대

3. 면 적 : 432,518.8㎡

4. 상도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조서 및 도면 : 별도첨부
※ 첨부된 도면 등(그외 세부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청 공원조성과(☏ 02-2133-2075) 및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02-879-6503)

상도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조서

가. 조성계획 총괄표(관악구 봉천동 산103-3번지 일대) - 관악구+동작구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동 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 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432,518.8	53,926	7	2,400.53	3,073.66	482	432,518.8	54,871	7	2,408.03	3,081.13	500	증) 945㎡
기반시설	소 계	25,085	22,727					25,367	23,009					증) 282㎡
	도 로	22,535	20,177 (2,358)					22,817	20,459 (2,358)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광 장	1,686	1,686					1,686	1,686					
	생태육교	864	864					864	864					
조경시설		5,240	5,240				31	5,700	5,700				37	증) 460㎡
휴양시설		7,480	7,480				299	7,500	7,500				305	증) 20㎡
유희시설		1,139	1,139				12	1,175	1,175				17	증) 36㎡
운동시설		10,991	10,991	1	1,996.73	1,996.73	124	11,119	11,119	1	1,996.73	1,996.73	125	증) 128㎡
교양시설		22,294	5,462	1	206.30	759.40	7	22,294	5,462	1	206.30	759.40	7	
편익시설		669	669	4	77.53	77.53		688	688	4	85.00	85.00		증) 19㎡
관리시설		218	218	1	120.0	240.0	9	218	218	1	120.0	240.0	9	
녹지 및 기타		359,402.8						358,457.8						감) 945㎡
시설율 (법정40%)		53,926 / 432,518.8 x 100(%) = 12.47%						54,871 / 432,518.8 x 100(%) = 12.69%						
건폐율 (법정10%)		2,400.53 / 432,518.8 x 100(%) = 0.56%						2,408.03 / 432,518.8 x 100(%) = 0.56%						
특정시설율 (법정20%)		10,991 / 53,926 x 100(%) = 20.38%						11,119 / 54,871 x 100(%) = 20.26%						

나. 세부시설조서 - 관악구+동작구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432,518.8	53,926		7	2,400.53	3,073.66	482			432,518.8	54,871		7	2,408.03	3,081.13	500	주) 945㎡
기반시설	소 계			25,085	22,727								25,367	23,009						주) 282㎡
	도 로		전지역	22,535	20,177 (2,358)							전지역	22,817	20,459 (2,358)						주) 282㎡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광 장	가	9개소	1,686	1,686						가	9개소	1,686	1,686						
		가-2	상도동 산65-240	142	142						가-2	상도동 산65-240	142	142						
		가-3	상도동 533-30	10	10						가-3	상도동 533-30	10	10						
		가-4	상도동 124-193	785	785						가-4	상도동 124-193	785	785						
		가-5	봉천동 산103-52	39	39						가-5	봉천동 산103-52	39	39						
		가-8	봉천동 1718-9	252	252						가-8	봉천동 1718-9	252	252						
		가-10	상도동 533-3	243	243						가-10	상도동 533-3	243	243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가-11	상도동 산58	54	54						가-11	상도동 산58	54	54						
		가-12	상도동 산57-64	153	153						가-12	상도동 산57-64	153	153						
		가-13	상도동 533-3	8	8						가-13	상도동 533-3	8	8						
	생태육교	2	2개소	864	864						2	2개소	864	864						
		2-1	상도동 산65-196	240	240						2-1	상도동 산65-196	240	240						
		2-2	상도동 531-15	624	624						2-2	상도동 531-15	624	624						
조경시설	소 계			5,240	5,240					31			5,700	5,700					37	지) 460㎡
	야생초화원	나	2개소	501	501						나	2개소	501	501						
		나-1	상도동 산57-64	297	297						나-1	상도동 산57-64	297	297						
		나-2	상도동 산65-116	204	204						나-2	상도동 산65-116	204	204						
조경시설	암석원	하	봉천동 산104-9	4,050	4,050						하	봉천동 산104-9	4,050	4,050						
	화계식옹벽	①	광장(가-4내)	-	-					1	①	광장(가-4내)	-	-					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팔각정	②	휴게소(라-8내) 상도동 531-15	-	-					2	②	휴게소(라-8내) 상도동 531-15	-	-					2	
	파고라	③	11개소	-	-			-		12	③	11개소	-	-					14	
		③-3	배드민턴장(바-1내)	-	-					1	③-3	배드민턴장(바-1내)	-	-					1	
		③-4	체력단련장(아-1내)	-	-					1	③-4	체력단련장(아-1내)	-	-					1	
		③-7	체력단련장(아-2내)	-	-					2	③-7	체력단련장(아-2내)	-	-					2	
		③-9	배드민턴장(바-6내)	-	-					2	③-9	배드민턴장(바-6내)	-	-					2	
		③-11	유아숲체험원(라-2내)	-	-					1	③-11	유아숲체험원(라-2내)	-	-					1	
		③-12	배드민턴장(바-3내)	-	-					1	③-12	배드민턴장(바-3내)	-	-					1	
		③-15	약수터(타-1내)	-	-					1	③-15	약수터(타-1내)	-	-					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조경시설	잔디마당	③-18	놀이터(마-4내)	-	-					1	③-18	놀이터(마-4내)	-	-					1	
											③-19	휴게소(라-35내)	-	-					1	(신설)
		③-20	베드민턴장(바-5내)	-	-					1	③-20	베드민턴장(바-5내)	-	-					1	
		③-21	휴게소(라-20내)	-	-					1	③-21	휴게소(라-20내)	-	-					1	
					-						③-22	체력단련장(아-21내)	-	-					1	(신설)
	목재데크	④	유아숲체험원(라-2내)	-	-					1	④	유아숲체험원(라-2내)	-	-					1	
	볼라드	⑤	전지역							14	⑤	전지역							18	
	앉음벽	⑥	체력단련장(아-9내)							1	⑥	체력단련장(아-9내)							1	
	잔디마당	거	봉천동 1718-9	625	625						거-1	봉천동 1718-9	625	625						
											거-2	봉천동 산103-61	460	460						신설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생태연못	더	상도동 산65-2174	64	64						더	상도동 산65-2174	64	64						
휴양시설	소 계			7,480	7,480					299			7,500	7,500					305	증) 20㎡
	피크닉장	다	상도동 283-226	409	409						다	상도동 283-226	409	409						
	휴게소	라	32개소	7,071	7,071						라	33개소	7,091	7,091						증) 20㎡
		라-1	상도동 산76-3	81	81						라-1	상도동 산76-3	81	81						
		라-4	상도동 산65-246	69	69						라-4	상도동 산65-246	69	69						
		라-5	상도동 산65-217	54	54						라-5	상도동 산65-217	54	54						
		라-6	상도동 산65-217	653	653						라-6	상도동 산65-217	653	653						
		라-7	상도동 산65-217	3	3						라-7	상도동 산65-217	3	3						
		라-8	상도동 산533-3	429	429						라-8	상도동 산533-3	429	429						
		라-9	상도동 산57-58	195	195						라-9	상도동 산57-58	195	195						
		라-10	상도동 124-193	269	269						라-10	상도동 124-193	269	269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라-11	상도동 123-91	594	594						라-11	상도동 123-91	594	594						
		라-12	봉천동 산115	187	187						라-12	봉천동 산115	187	187						
		라-13	봉천동 1712-6	57	57						라-13	봉천동 1712-6	57	57						
		라-14	봉천동 산117	98	98						라-14	봉천동 산117	98	98						
휴양시설	휴게소	라-15	봉천동 산117	224	224						라-15	봉천동 산117	224	224						
		라-16	봉천동 산116-5	161	161						라-16	봉천동 산116-5	161	161						
		라-17	봉천동 산103-3	140	140						라-17	봉천동 산103-3	140	140						
		라-18	봉천동 산103-84	176	176						라-18	봉천동 산103-84	176	176						
		라-19	봉천동 1712-3	73	73						라-19	봉천동 1712-3	73	73						
		라-20	상도동 산65-116	120	120						라-20	상도동 산65-116	120	120						
		라-21	봉천동 1718-9	117	117						라-21	봉천동 1718-9	117	117						
		라-22	상도동 산65-196	58	58						라-22	상도동 산65-196	58	58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라-23	상도동 524-1	16	16						라-23	상도동 524-1	16	16						
		라-24	봉천동 1718-9	95	95						라-24	봉천동 1718-9	95	95						
		라-25	봉천동 산133-10	383	383						라-25	봉천동 산133-10	383	383						
		라-26	봉천동 산113-48	140	140						라-26	봉천동 산113-48	140	140						
		라-27	봉천동 산104-1	117	117						라-27	봉천동 산104-1	117	117						
		라-28	봉천동 산104-1	82	82						라-28	봉천동 산104-1	82	82						
		라-29	봉천동 산104-1	436	436						라-29	봉천동 산104-1	436	436						
		라-30	봉천동 산103-3	937	937						라-30	봉천동 산103-3	937	937						
		라-31	상도동 산75-1	557	557						라-31	상도동 산75-1	557	557						
		라-32	봉천동 1712-6	271	271						라-32	봉천동 1712-6	271	271						
		라-33	봉천동 1712-6	270	270						라-33	봉천동 1712-6	270	270						
		라-34	상도동 산65-116	9	9						라-34	상도동 산65-116	9	9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라-35	봉천동 산103-61	20	20						신규
휴양시설	등벤치	⑨	전지역							196	⑨	전지역							202	
	평벤치	⑩	전지역							67	⑩	전지역							67	
	통나무의자	⑫	전지역							30	⑫	전지역							30	
	쉼돌	⑬	전지역							6	⑬	전지역							6	
유희시설	소 계			1,139	1,139					12			1,175	1,175					17	증 36㎡
	놀이터	마	5개소	1,139	1,139					12	마	5개소	1,175	1,175					17	증 36㎡
		마-1	상도동 산80-9	131	131					3	마-1	상도동 산80-9	131	131					3	
		마-3	상도동 산57-103	283	283					4	마-3	상도동 산57-103	283	283					4	
		마-4	봉천동 산103-61	264	264					1	마-4	봉천동 산103-61	300	300					6	증 36㎡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마-5	봉천동 647-175	163	163					3	마-5	봉천동 647-175	163	163					3	
		마-6	봉천동 635-429	298	298					1	마-6	봉천동 635-429	298	298					1	
운동시설	소 계			10,991	10,991			1,996.73	1,996.73	124			11,119	11,119			1,996.73	1,996.73	125	지) 128㎡
	배드민턴장	바	7개소	4,454	4,454			1,996.73	1,996.73		바	7개소	4,454	4,454			1,996.73	1,996.73		
		바-1	상도동 산65-150 임	439	439						바-1	상도동 산65-150 임	439	439						
		바-2	상도동 산65-217	643	643						바-2	상도동 산65-217	643	643						
		바-3	상도동 산57-103	352	352						바-3	상도동 산57-103	352	352						
		바-4	봉천동 산117	340	340						바-4	봉천동 산117	340	340						
		바-5	상도동 산65-149	439	439						바-5	상도동 산65-149	439	439						
		바-6	상도동 533-3	244	244						바-6	상도동 533-3	244	244						
		바-7	봉천동 산103-52	1,997	1,997			1,996.73	1,996.73		바-7	봉천동 산103-52	1,997	1,997			1,996.73	1,996.73		
운동시설	운동공간	사	2개소	741	741						사	3개소	741	74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시 설 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사-1	상도동 산58	272	272						사-1	상도동 산58	272	272						
		사-2	상도동 533-19	469	469						사-2	상도동 533-19	469	469						
	다목적운동장										어	봉천동 산103-61	460	460						신규
		아	20개소	5,796	5,796						아	21개소	5,924	5,924						지) 128㎡
		아-1	상도동 산65-149	610	610						아-1	상도동 산65-149	610	610						
		아-2	상도동 산65-217	396	396						아-2	상도동 산65-217	396	396						
		아-3	상도동 산65-161	89	89						아-3	상도동 산65-161	89	89						
		아-4	상도동 산65-116	28	28						아-4	상도동 산65-116	28	28						
		아-5	상도동 산57-64	226	226						아-5	상도동 산57-64	226	226						
	체력단련장	아-6	봉천동 산117	148	148						아-6	봉천동 산117	148	148						
		아-7	봉천동 산103-3	982	982						아-7	봉천동 산103-3	982	982						
		아-8	봉천동 산103-3	569	569						아-8	봉천동 산103-3	569	569						
		아-9	상도동 533-3	54	54						아-9	상도동 533-3	54	54						
		아-10	상도동 533-3	54	54						아-10	상도동 533-3	54	54						
		아-11	상도동 533-25	56	56						아-11	상도동 533-25	56	56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아-12	상도동 533-3	61	61						아-12	상도동 533-3	61	61						
		아-13	상도동 533-3	52	52						아-13	상도동 533-3	52	52						
		아-14	상도동 산65-116	22	22						아-14	상도동 산65-116	22	22						
		아-15	봉천동 산103-3	625	625						아-15	봉천동 산103-3	625	625						
		아-16	봉천동 산103-3	666	666						아-16	봉천동 산103-3	666	666						
		아-17	봉천동 1704-1	646	646						아-17	봉천동 1704-1	646	646						
		아-18	봉천동 산103-3	56	56						아-18	봉천동 산103-3	56	56						
		아-19	봉천동 산117	221	221						아-19	봉천동 산117	221	221						
		아-20	봉천동 산116-2	235	235						아-20	봉천동 산116-2	235	235						
											아-21	봉천동 산103-61	128	128						신규
	체력단련시설	⑮	전지역							34종 124	⑮	전지역							34종 125	
교양시설	소계			22,294	5,462		1	206.30	759.40	7			22,294	5,462		1	206.30	759.40	7	
	야외공연장	자	상도동 533-3	1,101	1,101						자	상도동 533-3	1,101	1,101						
	놀이마당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시 설 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어린이집	차	봉천동 산103-66	816	816		1	206.30	759.40	7	차	봉천동 산103-66	816	816		1	206.30	759.40	7	
	유아숲체험원	러	3개소	20,000	3,168						러	3개소	20,000	3,168						
		러-1	봉천동 산133-20	10,000	537						러-1	봉천동 산133-20	10,000	537						
		러-2	상도동 533-3	10,000	2,631						러-2	상도동 533-3	10,000	2,631						
	생태놀이터	머	2개소	377	377						머	2개소	377	377						
		머-1	봉천동 산117	64	64						머-1	봉천동 산117	64	64						
		머-2	상도동 산65-149	313	313						머-2	상도동 산65-149	313	313						
편익시설	소계			669	669		4	77.53	77.53				688	688		4	85.00	85.00		지) 19㎡
	주차장	카	상도동 281-2	18	18						카	상도동 281-2	18	18						
	약수터	타	1개소	278	278						타	1개소	278	278						
		타-1	봉천동 산117	278	278						타-1	봉천동 산117	278	278						
	화장실	1	4개소	78	78		4	77.53	77.53		1	4개소	88	88		4	85.00	85.00		지) 19㎡
		1-1	봉천동	35	35	이동식	1동	34.53	34.53		1-1	봉천동	45	45	이동식	1동	42.00	42.00		지) 19㎡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시 설 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산103-61									산103-61								관리실포함
		1-2	상도동 533-3	10	10	이동식	1동	10.0	10.0		1-2	상도동 533-3	10	10	이동식	1동	10.0	10.0		
		1-3	상도동 산65-149	17	17	이동식	1동	17.0	17.0		1-3	상도동 산65-149	17	17	이동식	1동	17.0	17.0		
		1-4	상도동 산65-217	16	16	이동식	1동	16.0	16.0		1-4	상도동 산65-217	16	16	이동식	1동	16.0	16.0		
	전망데크	버	2개소	295	295						버	2개소	295	295						
		버-1	상도동 533-8	241	241						버-1	상도동 533-8	241	241						(신설)
		버-2	상도동 533-24	54	54						버-2	상도동 533-24	54	54						(신설)
	음수대	서									서	봉천동 산103-61	9	9						(신설)
관리시설	소계			218	218			120.0	240.0	9			218	218			120.0	240.0	9	
	관리사무소	3	1개소	218	218			120.0	240.0		3	1개소	218	218			120.0	240.0		
		3-1	상도동 산77-13	218	218	R.C조	지상1층; 지하1층	120.0	240.0		3-1	상도동 산77-13	218	218	R.C조	지상1층; 지하1층	120.0	240.0		
	표석	⑯	전지역							4	⑯	전지역							4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표지판	㉮	전지역							5									5	
녹지 및 기타	소계			359,402.8									358,457.8							감) 945㎡
	녹지			359,402.8									358,457.8							감) 945㎡

다. 도로조서 - 관악구+동작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9,462	20,177 (2,358)				
변경					9,629	20,459 (2,358)				
당초	소로	소계			588	1,587 (2,358)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변경					603	1,785 (2,358)				
당초		3	1	8	39	(340)		상도동 459-1공	소로 3-5	도시계획도로
당초		3	2	6	57	340		상도동 283-226임	상도동 280종	
당초		3	3	6	57	341		봉천동 산103-61임	산책로 25	
당초		3	4	6	38	245		광장 (가-5)	산책로 28	
변경		3	4	6	44	443		광장 (가-5)	산책로 28	
당초		3	5	6	95	(569)		봉천동 산133-20공	상도동 산76-4임	도시계획도로
당초		3	6	4	111	445		상도동 산64-104임	광장 (가-10)	
당초		3	7	10	144	(1,449)		상도동 533-2도	상도동 533-2도	도시계획도로
당초		3	8	5	47	216		봉천동 1718-9공	광장 (가-8)	
당초	산책로	소계			8,874	18,590				
변경					9,026	18,674				
당초			1	1.5	13	19		상도동 산80-9임	놀이터 (마-1)	
당초			2	1.5	25	39		놀이터 (마-1)	상도동 산80-30도	
당초			3	1.5	2	3		산책로 110	상도동 산80-32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5	2	62	127		유아숲체험원(러-1)	산책로 8	
당초			6	1.5	6	27		상도동 281전	소로 3-2	
당초			8	2.5	190	454		소로 3-5	체력단련장(아-6)	
당초			9	1.5	34	61		봉천동 산115임	약수터(타-1)	
당초			10	1.5	8	13		봉천동 산115임	약수터(타-1)	
당초			11	1.5	116	175		약수터(타-1)	산책로 17	
당초			12	1.5	2	4		봉천동 산115임	산책로 13	
당초			13	1.5	44	66		산책로 14	휴게소(라-12)	
당초			14	1.5	94	141		봉천동 산113-48임	산책로 13	
당초			15	1.5	121	181		봉천동 산113-49임	산책로 13	
당초			16	1.5	140	212		휴게소(라-12)	휴게소(라-16)	
당초			17	1.5	60	95		산책로 30	휴게소(타-15)	
당초			18	1.5	62	95		휴게소(라-15)	휴게소(라-16)	
당초			19	1.5	84	127		휴게소(라-15)	휴게소(라-17)	
당초			20	1.5	37	57		휴게소(라-16)	휴게소(라-17)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21	1.5	83	126		휴게소(라-17)	산책로 30	
당초			22	1.5	33	51		산책로 24	휴게소(라-17)	
당초			23	1.5	82	124		휴게소(라-18)	휴게소(라-16)	
당초			24	1.5	235	353		산책로 23	봉천동 산103-3공	
당초			25	2	41	82		소로 3-3	휴게소(라-18)	
당초			26	1.5	113	170		봉천동 산635-434공	휴게소(라-18)	
당초			27	1.5	99	160		배드민턴장(바-7)	산책로 24	
당초			28	3	103	309		소로 3-3	소로 3-4	
변경			28	3	90	327		소로 3-3	소로 3-4	
당초			29	1.5	87	131		산책로 24	산책로 49	
당초			30	3	9	448		상도동 산76-1임	휴게소(라-30)	
당초			31	1.5	48	77		상도동 281-2구	산책로 32	
당초			32	3	414	1,227		소로 3-2	상도동 산65-149임	
당초			33	1.5	85	131		상도동 산75-1임	산책로 32	
당초			34	1.5	95	144		산책로 32	상도동 산76-1임	
당초			35	1.5	169	257		산책로 32	휴게소(라-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6	1.5	33	51		산책로 32	상도동 산75-1임	
당초			37	1.5	119	178		상도동 산75-4임	산책로 32	
당초			38	2	26	53		휴게소 (라-4)	상도동 산65-223공	
당초			39	2	157	317		산책로 32	휴게소 (라-4)	
당초			40	2	54	111		산책로 41	산책로 32	
당초			41	2	32	56		산책로 43	산책로 40	
당초			42	2	31	65		산책로 43	산책로 41	
당초			43	2	185	362		상도동 산65-150임	체력단련장 (아-1)	
당초			44	1.5	81	130		상도동 산65-151임	산책로 43	
당초			45	3	8	24		상도동 산65-41임	상도동 산65-41임	
당초			46	1.5	4	6		상도동 산65-41임	휴게소 (라-6)	
당초			47	3	29	87		휴게소 (라-6)	체력단련장 (아-2)	
당초			48	1.5	71	107		휴게소 (라-6)	상도동 산65-229임	
당초			49	3	44	119		상도동 산65-229임	휴게소 (라-30)	
당초			50	3	73	254		광장 (가-2)	상도동 산65-217공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51	2	75	140		휴게소 (라-7)	상도동 산65-229임	
당초			52	1.5	48	71		체력단련장 (아-2)	상도동 산65-233임	
당초			53	3	142	412		광장 (가-2)	체력단련장 (아-2)	
당초			55	3	236	712		휴게소 (라-24)	산책로 65	
당초			56	2	53	106		산책로 112	휴게소 (라-22)	
당초			57	1.5	40	60		봉천동 1712-3공	봉천동 1712-3공	
당초			58	2	14	31		산책로 65	휴게소 (라-8)	
당초			59	2	14	30		산책로 65	휴게소 (라-8)	
당초			60	1.5	30	45		상도동 산65-159임	산책로 65	
당초			61	1.5	32	49		산책로 65	산책로 65	
당초			62	1.5	275	414		산책로 65	산책로 65	
당초			63	1.5	17	29		산책로 62	산책로 65	
당초			64	1.5	43	69		상도동 533-3공	산책로 62	
당초			65	3	782	2,368		소로 3-7	광장 (가-10)	
당초			67	1.5	123	186		산책로 65	산책로 6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68	1.5	22	34		산책로 67	진입광장(가-13)	
당초			69	2	65	130		소로 3-6	산책로 70	
당초			70	2	146	292		상도동 산65-161임	광장(가-10)	
당초			71	1.5	55	83		유아숲체험원(러-2)	산책로 65	
당초			72	1.5	49	72		상도동 533-3공	산책로 118	
당초			73	1.5	12	20		산책로 72	산책로 118	
당초			74	1.5	12	19		산책로 71	산책로 118	
당초			75	3	88	264		상도동 531-15공	생태육교(2-2)	
당초			78	1.5	43	68		상도동 531-15공	놀이터(마-3)	
당초			79	1.5	215	311		광장(가-11)	산책로 78	
당초			80	3	205	591		광장(가-12)	봉천동 1712-6공	
당초			81	1.5	44	60		놀이터(마-3)	산책로 80	
당초			82	2	23	45		산책로 80	휴게소(라-9)	
당초			83	2	28	57		광장(가-12)	휴게소(라-9)	
당초			84	2	19	39		야생초화원(나)	광장(가-1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85	1.5	13	20		체력단련장(아-5)	야생초화원(나)	
당초			86	2	21	43		산책로 89	야생초화원(나)	
당초			87	3	57	175		상도동 산57-35임	산책로 89	
당초			88	1.5	26	40		산책로 89	체력단련장(아-5)	
당초			89	3	241	759		광장(가-4)	광장(가-12)	
당초			90	1.5	62	92		광장(가-4)	휴게소(라-10)	
당초			91	2	90	182		봉천동 1712-6공	산책로 80	
당초			92	1.5	11	16		상도동 123-91대	휴게소(라-11)	
당초			93	3	6	19		상도동 123-91대	휴게소(라-11)	
당초			94	1.5	31	47		상도동 123-91대	휴게소(라-11)	
당초			95	2	30	67		산책로 28	산책로 28	
변경			95	2	32	77		산책로 28	산책로 28	
당초			96	2	28	56		산책로 28	산책로 28	
변경			96	2	15	43		공원경계부	산책로 28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97	2	73	147		산책로 28	소로 3-4	
변경			97	2	127	247		순환산책로	순환산책로	
폐지			98	1.5	18	31		산책로 97	산책로 28	
당초			99	2	10	21		휴게소 (라-22)	휴게소 (라-23)	
당초			100	2	33	66		휴게소 (라-23)	휴게소 (라-24)	
당초			101	2	35	70		휴게소 (라-21)	산책로 55	
당초			102	2	65	130		휴게소 (라-21)	생태육교 (2-1)	
당초			104	1.5	132	198		암석원 (하)	봉천동 산104-1임	
당초			105	1.5	29	44		산책로 104	휴게소 (라-28)	
당초			106	1.5	224	335		휴게소 (라-27)	휴게소 (라-29)	
당초			107	1.5	18	27		휴게소 (라-12)	휴게소 (라-27)	
당초			108	1.5	68	102		산책로 106	휴게소 (라-29)	
당초			109	1.5	69	103		휴게소 (라-18)	휴게소 (라-29)	
당초			110	2	17	34		소로 3-5	유아숲체험원 (러-1)	
당초			111	1.5	29	44		상도동 산75-1임	산책로 3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112	2	45	90		봉천동 1718-9공	봉천동 1718-9공	
당초			113	1.5	22	33		상도동 산65-159임	산책로 65	
당초			114	1.5	28	42		산책로 65	상도동 산65-159임	
당초			115	1.5	176	264		상도동 531-15공	상도동 산64-34임	
당초			116	1.5	36	55		상도동 531-14공	산책로 115	
당초			117	1.5	64	96		상도동 산64-34임	산책로 115	
당초			118	3	43	130		유아숲체험원 (러-2)	산책로 65	
당초			119	1.5	42	63		산책로 65	산책로 75	
당초			120	1.5	29	44		상도동 산57-64공	산책로 90	
당초			121	2	13	28		산책로 5	상도동 산76-1임	
당초			122	1.5	38	52		상도동 산65-41임	휴게소 (라-6)	
당초			123	1.5	22	32		유아숲체험원 (러-1)	약수터 (타-1)	
당초			124	1.5	22	33		휴게소 (라-30)	휴게소 (라-30)	
당초			125	2	132	264		운동공간 (사-2)	상도동 533-11공	
당초			126	2.5	33	83		산책로 69	산책로 70	

상도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조서

가. 조성계획 총괄표(관악구 봉천동 산103-3번지 일대) - 관악구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동 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 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87,438.3	25,396	3	2,237.56	2,790.66	200	187,438.3	26,341.0	3	2,245.03	2,798.13	218	증) 945㎡
기반시설	소 계	8,132	7,801					8,414	8,083					증) 282㎡
	도 로	7,841	7,510 (331)					8,123	7,792 (331)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광 장	291	291					291	291					
조경시설		4,675	4,675				8	5,135	5,135				14	증) 460㎡
휴양시설		3,980	3,980				124	4,000	4,000				130	증) 20㎡
유희시설		725	725				5	761	761				10	증) 36㎡
운동시설		6,485	6,485	1	1,996.73	1,996.73	52	6,613	6,613	1	1,996.73	1,996.73	53	증) 128㎡
교양시설		10,880	1,417	1	206.30	759.40	7	10,880	1,417	1	206.30	759.40	7	
편익시설		313	313	1	34.53	34.53		332	332	1	42.00	42.00		증) 19㎡
관리시설		-	-				4	-	-				4	
녹지 및 기타		152,248.3						151,303.3						감) 945㎡
시설율 (법정40%)		25,396 / 187,438.3 x 100(%) = 13.55%						26,341 / 187,438.3 x 100(%) = 14.05%						
건폐율 (법정10%)		2,357.56 / 187,438.3 x 100(%) = 1.19%						2,245.03 / 187,438.3 x 100(%) = 1.2%						

나. 세부시설조서 - 관악구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 계				187,438.3	25,396		3	2,237.56	2,790.66	200			187,438.3	26,341.0		3	2,245.03	2,798.13	218	증) 945㎡
기반시설	소 계			8,132	7,801								8,414	8,083						증) 282㎡
	도 로		전지역	7,841	7,510 (331)							전지역	8,123	7,792 (331)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광 장	가	2개소	291	291						가	2개소	291	291						
		가-5	봉천동 산103-52	39	39						가-5	봉천동 산103-52	39	39						
		가-8	봉천동 1718-9	252	252						가-8	봉천동 1718-9	252	252						
조경시설	소 계			4,675	4,675					8			5,135	5,135					14	증) 460㎡
	암석원	하	봉천동 산104-9	4,050	4,050						하	봉천동 산104-9	4,050	4,050						
	파고라	③	2개소							2	③	3개소							4	
		③-15	약수터 (타-1내)							1	③-15	약수터 (타-1내)							1	
		③-18	놀이터 (마-4내)							1	③-18	놀이터 (마-4내)							1	
											③-19	휴게소 (라-35내)							1	
											③-22	체력단련장 (아-21내)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볼라드	⑤	전지역							6	⑤	전지역							10	
	잔디마당	거	거-1	봉천동 1718-9	625	625					거-1	봉천동 1718-9	625	625						
											거-2	봉천동 산103-61	460	460						(신설)
휴양시설	소 계			3,980	3,980					124			4,000	4,000					130	주) 20㎡
	휴게소	라	19개소	3,980	3,980						라	20개소	4,000	4,000						주) 20㎡
		라-12	봉천동 산115	187	187						라-12	봉천동 산115	187	187						
		라-13	봉천동 1712-6	57	57						라-13	봉천동 1712-6	57	57						
		라-14	봉천동 산117	98	98						라-14	봉천동 산117	98	98						
		라-15	봉천동 산117	224	224						라-15	봉천동 산117	224	224						
		라-16	봉천동 산116-5	161	161						라-16	봉천동 산116-5	161	161						
		라-17	봉천동 산103-3	140	140						라-17	봉천동 산103-3	140	140						
휴양시설	휴게소	라-18	봉천동 산103-84	176	176						라-18	봉천동 산103-84	176	176						
		라-19	봉천동 1712-3	73	73						라-19	봉천동 1712-3	73	73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라-21	봉천동 1718-9	117	117						라-21	봉천동 1718-9	117	117						
		라-23	상도동 524-1	16	16						라-23	상도동 524-1	16	16						
		라-24	봉천동 1718-9	95	95						라-24	봉천동 1718-9	95	95						
		라-25	봉천동 산133-10	383	383						라-25	봉천동 산133-10	383	383						
		라-26	봉천동 산113-48	140	140						라-26	봉천동 산113-48	140	140						
		라-27	봉천동 산104-1	117	117						라-27	봉천동 산104-1	117	117						
		라-28	봉천동 산104-1	82	82						라-28	봉천동 산104-1	82	82						
		라-29	봉천동 산104-1	436	436						라-29	봉천동 산104-1	436	436						
		라-30	봉천동 산103-3	937	937						라-30	봉천동 산103-3	937	937						
		라-32	봉천동 1712-6	271	271						라-32	봉천동 1712-6	271	27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유희시설	등벤치	라-33	봉천동 1712-6	270	270						라-33	봉천동 1712-6	270	270						
											라-35	봉천동 산103-61	20	20						(신설)
		⑨	전지역							84	⑨	전지역							90	
	평벤치	⑩	전지역							24	⑩	전지역							24	
	통나무의자	⑫	전지역							13	⑫	전지역							13	
	쉼돌	⑬	전지역							3	⑬	전지역							3	
	소 계			725	725					5			761	761					10	칭, 36㎡
	놀이터	마	3개소	725	725					5	마	3개소	761	761					10	칭, 36㎡
		마-4	봉천동 산103-61	264	264					1	마-4	봉천동 산103-61	300	300					6	칭, 36㎡
		마-5	봉천동 647-175	163	163					3	마-5	봉천동 647-175	163	163					3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마-6	봉천동 635-429	298	298					1	마-6	봉천동 635-429	298	298					1	
운동시설	소 계			6,485	6,485		1	1,996.73	1,996.73	52			6,613	6,613		1	1,996.73	1,996.73	53	증) 128㎡
	배드민턴장	바	2개소	2,337	2,337		1	1,996.73	1,996.73		바	2개소	2,337	2,337		1	1,996.73	1,996.73		
		바-4	봉천동 산117	340	340						바-4	봉천동 산117	340	340						
		바-7	봉천동 산103-52	1,997	1,997		1	1,996.73	1,996.73		바-7	봉천동 산103-52	1,997	1,997		1	1,996.73	1,996.73		
	체력단련장	아	9개소	4,148	4,148						아	10개소	4,276	4,276						증) 128㎡
		아-6	봉천동 산117	148	148						아-6	봉천동 산117	148	148						
		아-7	봉천동 산103-3	982	982						아-7	봉천동 산103-3	982	982						
		아-8	봉천동 산103-3	569	569						아-8	봉천동 산103-3	569	569						
		아-15	봉천동 산103-3	625	625						아-15	봉천동 산103-3	625	625						
		아-16	봉천동 산103-3	666	666						아-16	봉천동 산103-3	666	666						
		아-17	봉천동 1704-1	646	646						아-17	봉천동 1704-1	646	646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아-18	봉천동 산103-3	56	56						아-18	봉천동 산103-3	56	56						
		아-19	봉천동 산117	221	221						아-19	봉천동 산117	221	221						
		아-20	봉천동 산116-2	235	235						아-20	봉천동 산116-2	235	235						
											아-21	봉천동 산103-61	128	128						(신설)
	체력단련시설	⑮	전지역							34종 52	⑮	전지역							34종 53	
교육시설	소계			10,880	1,417		1	206.30	759.40	7			10,880	1,417		1	206.30	759.40	7	
	어린이집	차	봉천동 산103-66	816	816		1	206.30	759.40	7	차	봉천동 산103-66	816	816		1	206.30	759.40	7	
	유아숲체험원	러	1개소	10,000	537						러	1개소	10,000	537						
		러-1	봉천동 산118-7	10,000	537						러-1	봉천동 산118-7	10,000	537						
	생태놀이터	머	1개소	64	64						머	1개소	64	64						
		머-1	봉천동 산117	64	64						머-1	봉천동 산117	64	64						
편의시설	소계			313	313		1	42.00	42.00				332	332		1	42.00	42.00		증) 19㎡
	약수터	타	1개소	278	278						타	1개소	278	278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타-1	봉천동 산117	278	278						타-1	봉천동 산117	278	278						
	화장실	1	1개소	35	35		1	34.53	34.53		1	1개소	45	45		1	42.00	42.00		증) 10㎡
		1-1	봉천동 산103-61	35	35		1	34.53	34.53		1-1	봉천동 산103-61	45	45		1	42.00	42.00		증) 10㎡ 관리실포함
	음수대										서	봉천동 산103-61	9	9						(신설)
관리시설	소계			-	-					4			-	-					4	
	표석	⑯	전지역							2	⑯	전지역							2	
	표지판	⑰	전지역							2	⑰	전지역							2	
녹지 및 기타	소계			152,248.3									151,303.3							감) 945㎡
	녹지			152,248.3									151,303.3							감) 945㎡

다. 도로조서 – 관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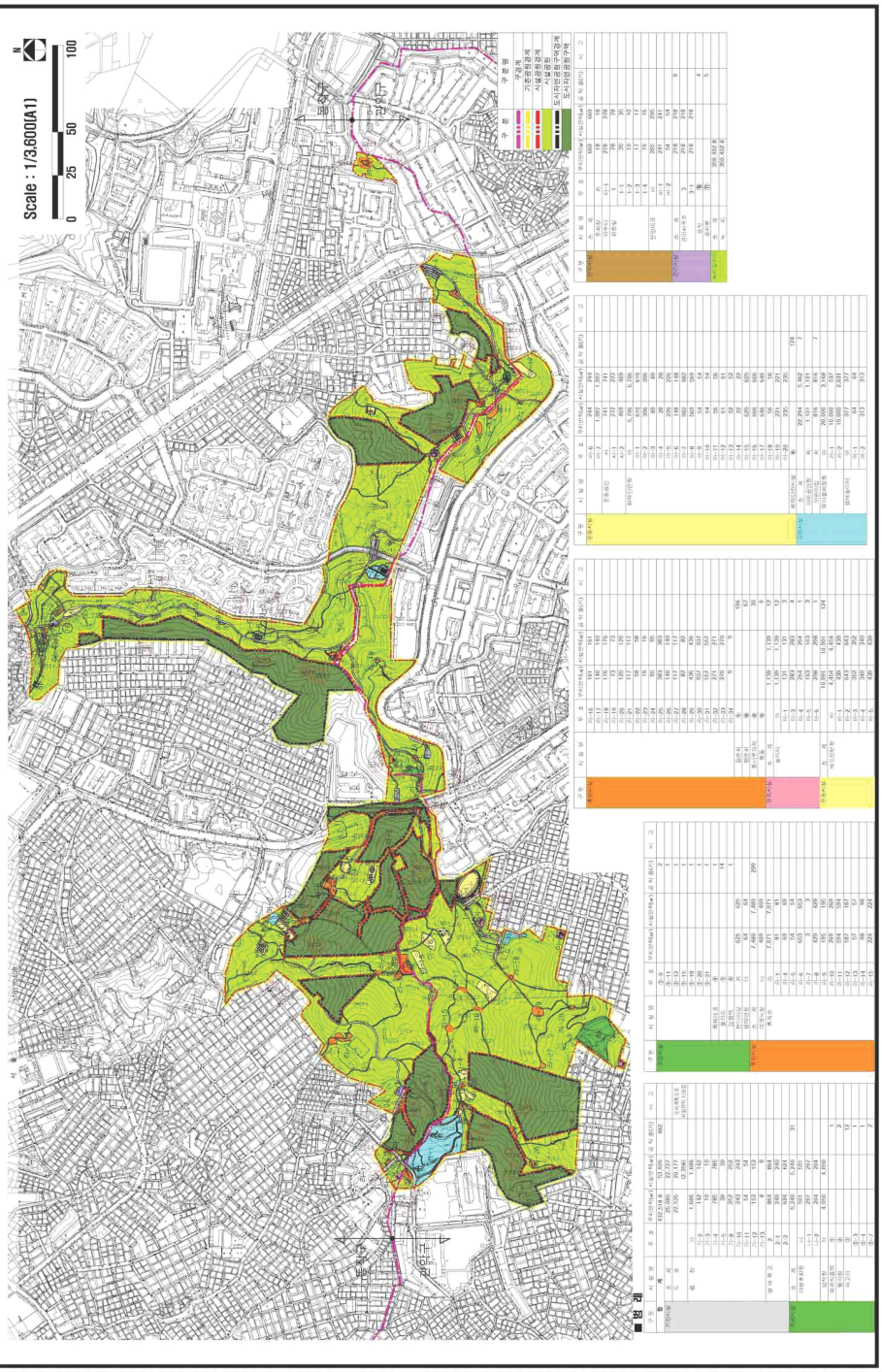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3,696	7,510.0				
변경					3,723	7,792.0				
당초	소로	소계			196	802 (331)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변경					211	1,000 (331)				
당초		3	3	6	57	341		봉천동 산103-61임	산책로 25	
당초		3	4	6	38	245		광장 (가-5)	산책로 28	
변경		3	4	6	44	443		광장 (가-5)	산책로 28	
당초		3	5	6	53	(319)		봉천동 산133-20공	상도동 산76-4임	도시계획도로
당초		3	7	10	10	(12)		상도동 533-2도	상도동 533-2도	도시계획도로
당초		3	8	5	47	216		봉천동 1718-9공	광장 (가-8)	
당초	산책로	소계			3,500	6,708				
변경					3,512	6,792				
당초			5	2	57	118		유아숲체험원 (러-1)	산책로 8	
당초			8	2.5	190	454		소로 3-5	체력단련장 (아-6)	
당초			9	1.5	34	61		봉천동 산115임	약수터 (타-1)	
당초			10	1.5	8	13		봉천동 산115임	약수터 (타-1)	
당초			11	1.5	116	175		약수터 (타-1)	산책로 17	
당초			12	1.5	2	4		봉천동 산115임	산책로 13	
당초			13	1.5	44	66		산책로 14	휴게소 (라-12)	
당초			14	1.5	94	141		봉천동 산113-48임	산책로 13	
당초			15	1.5	121	181		봉천동 산113-49임	산책로 13	
당초			16	1.5	140	212		휴게소 (라-12)	휴게소 (라-16)	
당초			17	1.5	60	95		산책로 30	휴게소 (타-15)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18	1.5	62	95		휴게소(라-15)	휴게소(라-16)	
당초			19	1.5	84	127		휴게소(라-15)	휴게소(라-17)	
당초			20	1.5	37	57		휴게소(라-16)	휴게소(라-17)	
당초			21	1.5	78	118		휴게소(라-17)	산책로 30	
당초	산책로		22	1.5	33	51		산책로 24	휴게소(라-17)	
당초			23	1.5	82	124		휴게소(라-18)	휴게소(라-16)	
당초			24	1.5	235	353		산책로 23	봉천동 산103-3공	
당초			25	2	41	82		소로 3-3	휴게소(라-18)	
당초			26	1.5	113	170		봉천동 산635-434공	휴게소(라-18)	
당초			27	1.5	99	160		배드민턴장(바-7)	산책로 24	
당초			28	3	103	309		소로 3-3	소로 3-4	
변경			28	3	90	327		소로 3-3	소로 3-4	
당초			29	1.5	87	131		산책로 24	산책로 49	
당초			30	3	30	92		상도동 산76-1임	휴게소(라-30)	
당초			49	3	33	99		상도동 산65-229임	휴게소(라-30)	
당초			50	3	2	13		광장(가-2)	상도동 산65-217공	
당초			55	3	226	684		휴게소(라-24)	산책로 65	
당초			56	2	29	58		산책로 112	휴게소(라-22)	
당초			57	1.5	40	60		봉천동 1712-3공	봉천동 1712-3공	
당초			62	1.5	13	20		산책로 65	산책로 65	
당초			65	3	95	285		소로 3-7	광장(가-10)	
당초			80	3	155	463		광장(가-12)	봉천동 1712-6공	
당초			91	2	80	161		봉천동 1712-6공	산책로 80	
당초			95	2	30	67		산책로 28	산책로 28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변경			95	2	32	77		산책로 28	산책로 28	
당초			96	2	28	56		산책로 28	산책로 28	
변경			96	2	15	43		공원경계부	산책로 28	
당초			97	2	73	147		산책로 28	소로 3-4	
변경			97	2	127	247		순환산책로	순환산책로	
폐지			98	1.5	18	31		산책로 97	산책로 28	
당초			99	2	10	21		휴게소(라-22)	휴게소(라-23)	
당초			100	2	33	66		휴게소(라-23)	휴게소(라-24)	
당초	산책로		101	2	35	70		휴게소(21)	산책로 55	
당초			101	2	35	70		휴게소(라-21)	산책로 55	
당초			102	2	31	62		휴게소(라-21)	생태육교(2-1)	
당초			104	1.5	132	198		암석원(하)	봉천동 산104-1임	
당초			105	1.5	29	44		산책로 104	휴게소(라-28)	
당초			106	1.5	224	335		휴게소(라-27)	휴게소(라-29)	
당초			107	1.5	18	27		휴게소(라-12)	휴게소(라-27)	
당초			108	1.5	68	102		산책로 106	휴게소(라-29)	
당초			109	1.5	69	103		휴게소(라-18)	휴게소(라-29)	
당초			112	2	45	90		봉천동 1718-9공	봉천동 1718-9공	
당초			121	2	12	25		산책로 5	상도동 산76-1임	
당초			123	1.5	22	32		유아숲체험원(러-1)	약수터(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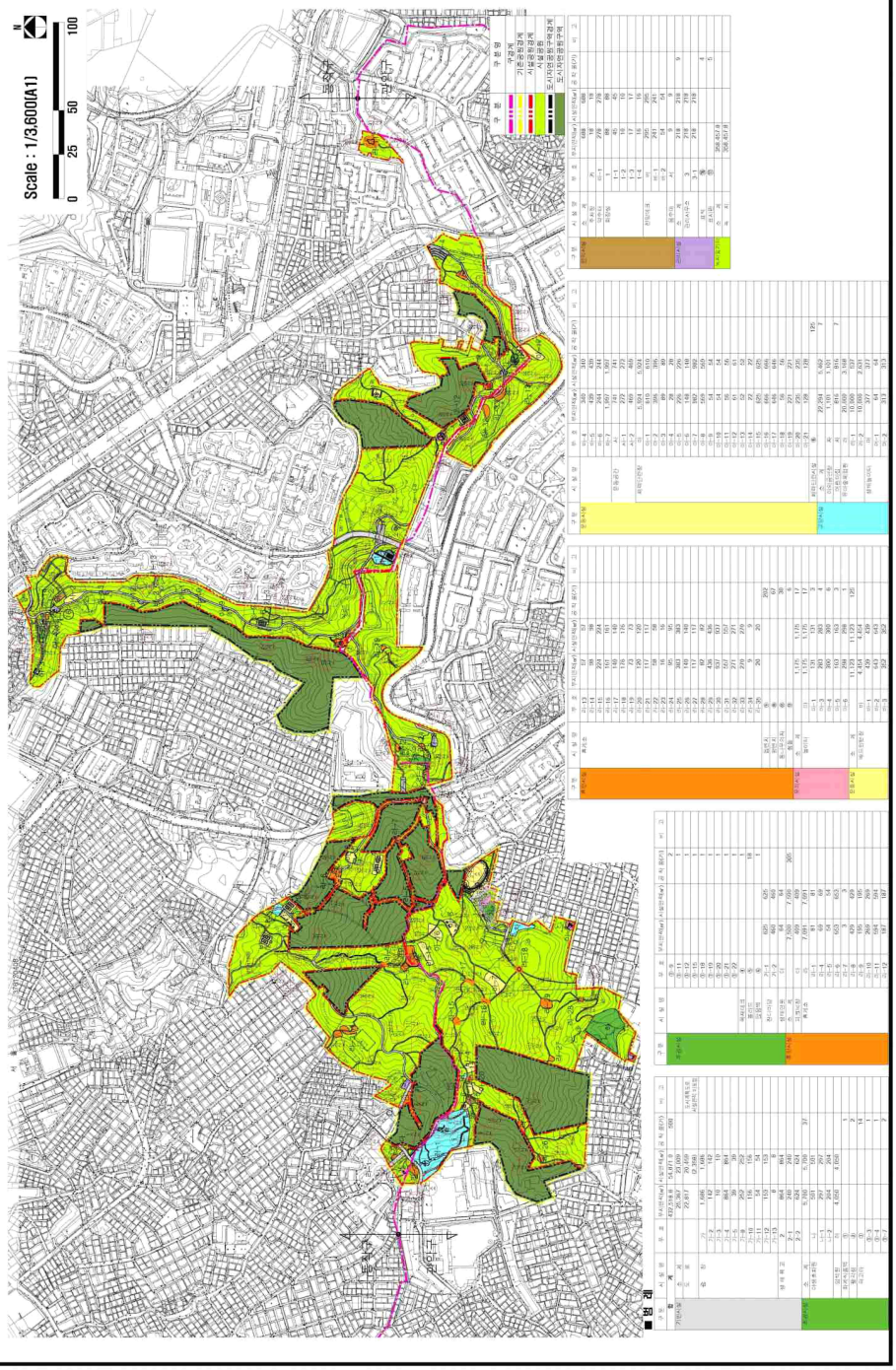
조성계획도[변경전]

상도근린공원



조성계획도[변경후]

상도근린공원



부분조성계획도(변경전)

상도근린공원(관악구)



■ 범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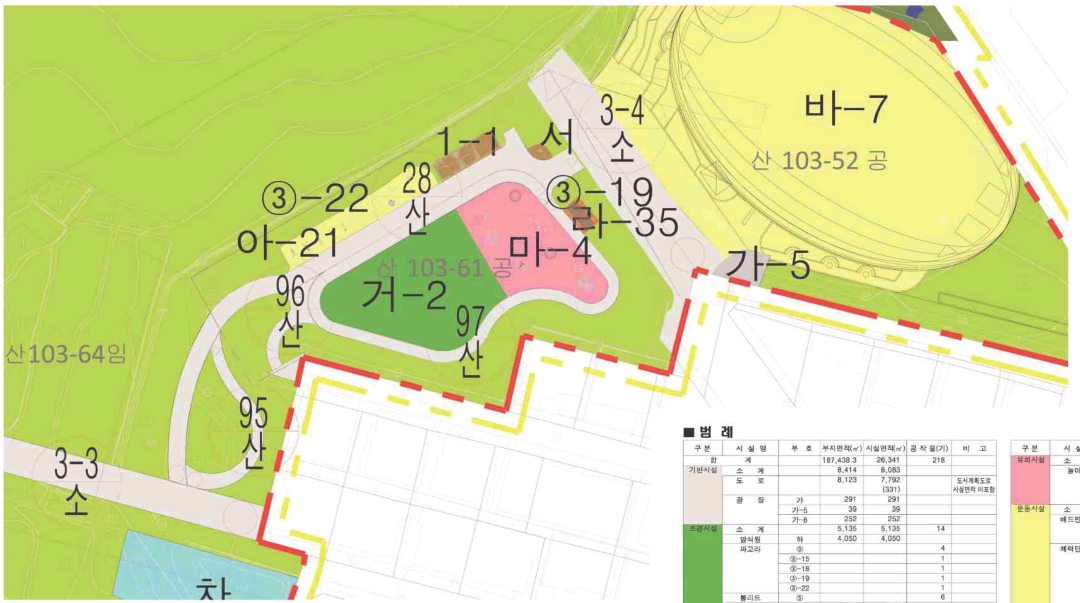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고
합계			167,438.3	25,396	200	
기반시설	소계		6,132	7,801		
	도로		7,841	7,510 (331)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광장	가	291	291		
		가-5	39	39		
		가-8	252	252		
조경시설	소계		4,675	4,875	8	
	암석원	하	4,050	4,050		
	싸고라	①			2	
		①-15			1	
		①-16			1	
	볼라드	⑥			6	
	컨디이냥	거	625	625		
휴양시설	소계		3,980	3,980	124	
	휴게소	라	3,980	3,980		
		라-12	187	187		
		라-13	57	57		
		라-14	98	98		
		라-15	224	224		
		라-16	161	161		
		라-17	140	140		
		라-18	176	176		
		라-19	73	73		
		라-21	117	117		
		라-23	16	16		
		라-24	95	95		
		라-25	383	383		
		라-26	140	140		
		라-27	117	117		
		라-28	82	82		
		라-29	436	436		
		라-30	937	937		
		라-32	271	271		
		라-33	270	270		
	탕벤치	⑨			84	
	평벤치	⑩			24	
	휴나무의자	⑪			13	
	원통	⑬			3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고
유희시설	소계		725	725	5	
	놀이터	마	725	725	5	
		마-4	264	264	1	
		마-5	163	163	3	
		마-6	298	298	1	
운동시설	소계		6,485	6,485	52	
	배드민턴장	바	2,337	2,337		
		바-4	340	340		
		바-7	1,997	1,997		
	체력단련장	아	4,148	4,148		
		아-6	148	148		
		아-7	982	982		
		아-8	569	569		
		아-15	625	625		
		아-16	666	666		
		아-17	646	646		
		아-18	56	56		
		아-19	221	221		
		아-20	235	235		
	체력단련시설	⑯			52	
교양시설	소계		10,880	1,417	7	
	어린이집	차	816	816	7	
	유아숲체험원	러-1	10,000	537		
	생태놀이터	머-1	64	64		
편익시설	소계		313	313		
	막수터	따-1	278	278		
	화장실	1	35	35		
		1-1	35	35		
관리시설	소계				4	
	표석	⑭			2	
	표지판	⑮			2	
녹지및기타	소계		152,248.3			
	녹지		152,248.3			

구분	구분명
	구경계
	기존공원경계
	시설공원경계
	시설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경계
	도시자연공원구역

부분조성계획도(변경후)

상도근린공원



구 분	구 분 명
	구경계
	기존공원경계
	시설공원경계
	시설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경계
	도시자연공원구역

■ 범 례

구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187,438.3	26,341	218	
기반시설	소 계		8,414	8,083		
	도 로		8,123	7,792		도시계획도로
				(331)		시설면적 미포함
	광 장	가	291	291		
		가-5	39	39		
		가-8	252	252		
조경시설	소 계		5,135	5,135	14	
	암석원	하	4,050	4,050		
	싸고리	③			4	
		③-15			1	
		③-18			1	
		③-19			1	
		③-22			1	
	볼라드	⑤			6	
	잔디마당	거-1	625	625		
		거-2	460	460		
휴양시설	소 계		4,000	4,000	130	
	휴게소	라	4,000	4,000		
		라-12	187	187		
		라-13	57	57		
		라-14	98	98		
		라-15	224	224		
		라-16	161	161		
		라-17	140	140		
		라-18	176	176		
		라-19	73	73		
		라-21	117	117		
		라-23	16	16		
		라-24	95	95		
		라-25	383	383		
		라-26	140	140		
		라-27	117	117		
		라-28	82	82		
		라-29	436	436		
		라-30	937	937		
		라-32	271	271		
		라-33	270	270		
		라-34	270	270		
		라-35	20	20		
	등받이	⑤			90	
	분수시	⑥			24	
	통나무의자	⑥			13	
	원홀	⑥			3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유희시설	소 계		761	761	10	
	놀이터	마	761	761	10	
		마-4	300	300	6	
		마-5	163	163	3	
		마-6	298	298	1	
운동시설	소 계		7,073	7,073	53	
	배드민턴장	바	2,337	2,337		
		바-4	340	340		
		바-7	1,997	1,997		
	체력단련장	아	4,276	4,276		
		아-6	148	148		
		아-7	982	982		
		아-8	569	569		
		아-15	625	625		
		아-16	666	666		
		아-17	646	646		
		아-18	56	56		
		아-19	221	221		
		아-20	235	235		
		아-21	128	128		
	체력단련시설	⑥			53	
교양시설	소 계		10,880	1,417	7	
	어린이집	차	816	816	7	
	유아숲체험원	러-1	10,000	537		
	생태놀이터	마-1	64	64		
편익시설	소 계			332	332	
	약수터	타-1	278	278		
	화장실	1-1	45	45		
	음수대	서	9	9		
관리시설	소 계				4	
	표석	⑥			2	
	표지판	⑦			2	
녹지및기타	소 계		151,303.3			
	녹 지		151,303.3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05호

보행자우선도로 변경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4항 규정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의 구간을 변경하고자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대상: 보행자우선도로 1개소

<기 존>

연번	자치구	도로명	폭원(m)	연장(m)
1	은평구	은평로21길	6~8	470



<변 경>

연번	자치구	도로명	폭원(m)	연장(m)
1	은평구	은평로21길	6~8	370



2. 변경사유: 일부구간 보도 신설로 인해 보행자의 보도통행의무 발생(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02-2133-2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06호

중곡 4-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787호(1990.11.17.)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5호(1992.6.19.)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3호(1995.7.1.)로 주거환경개선 계획 변경수립,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59호(2003.9.25.)로 주거환경개선 계획 변경수립된 중곡 4-1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변경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계획의 (경미한)변경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중곡 4-1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전	변경	변경 후		
변경	중곡 4-1 주거환경개선사업	중곡동 72번지 일대	12,584.1	감)1,035.5	11,548.6	’90.11.17.	

2. 정비계획 변경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고 (변경 필지)
		변경 전	변경	변경 후	구성비(%)	
계		12,584.1	감) 1,035.5	11,548.6	100.00	8필지
주택용지		6,927.0	감) 894.1	6,032.9	52.24	(6필지)
공공용지	소계	5,657.1	감) 141.4	5,515.7	47.76	
	근린공공시설	100.0	감) 100.0	0.0	0.00	중곡동 72-59 (실 면적: 113.4)
	도로	1,895.8	감) 41.4	1,854.4	16.06	소로 3-5 (중곡동 72-65)
	녹지	2,008.5	0	2,008.5	17.39	
	주차장	1,652.8	0	1,652.8	14.31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1	소로	3	3-1	6	국지도로	38	중곡동 72-27	중곡동 72-114	일반 도로	' 92.06.19	
기정2	소로	3	3-2	4	국지도로	99	중곡동 72-22	중곡동 72-138	일반 도로	' 92.06.19	
기정3	소로	3	3-3	4	국지도로	137	중곡동 72-102	중곡동 72-69	일반 도로	' 92.06.19	
기정4	소로	3	3-4	4	국지도로	127.8	중곡동 72-102	중곡동 72-66	일반 도로	' 92.06.19	
폐지5	**소로**	**3**	**3-5**	**4**	**국지도로**	**9.5**	**중곡동 72-68**	**중곡동 72-66**	**일반 도로**	**' 92.06.19**	**폐지**
기정6	소로	3	3-6	4	국지도로	17.5	중곡동 72-119	중곡동 72-120	일반 도로	' 92.06.19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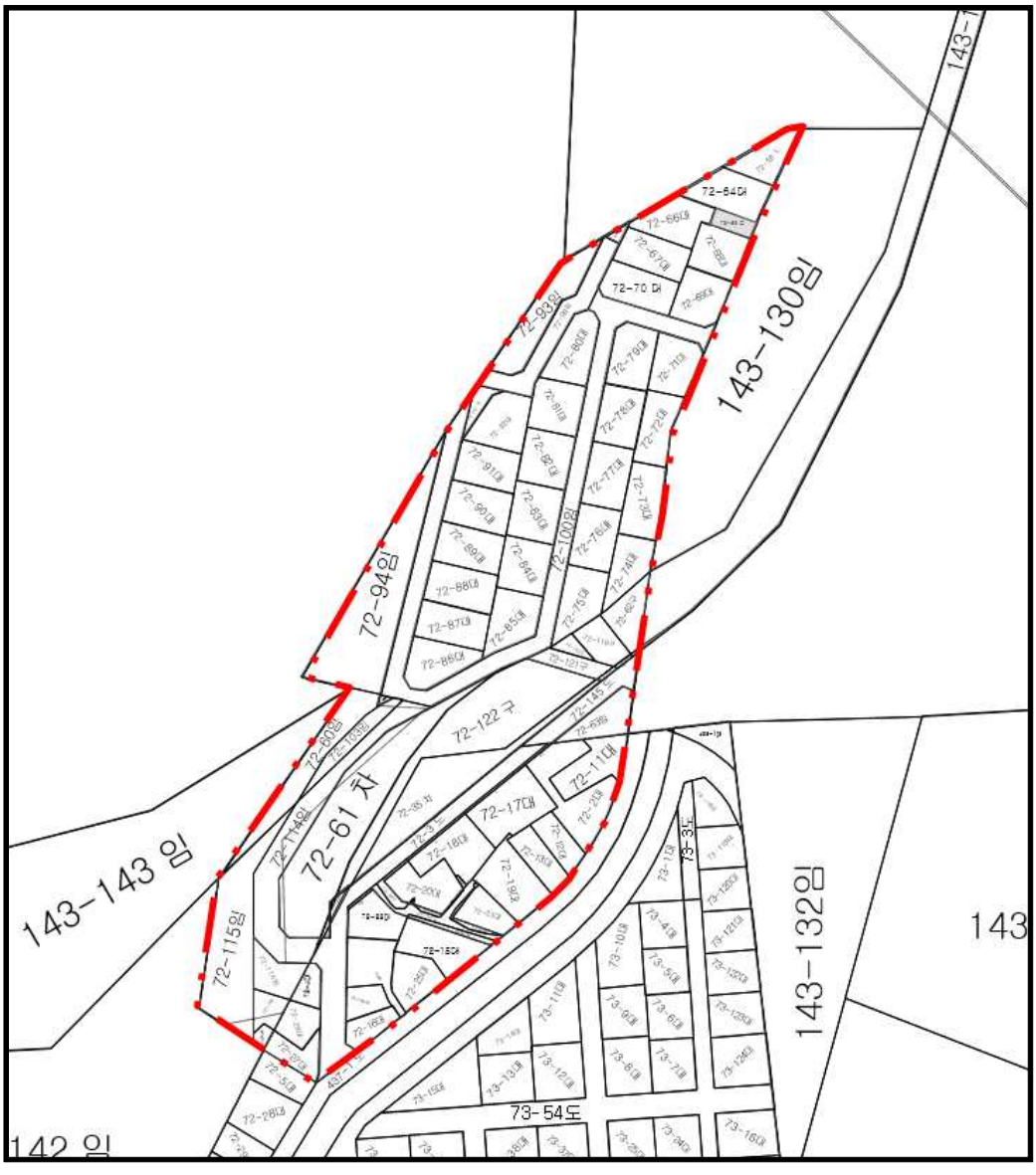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지	근린공공 시설	공공공지	중곡동 72-59	100	감)100	0	'95.7.1	

다. 관계도면 : 별첨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시민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02-2133-2073, 담당 함준기) 및 광진구 주거사업과 (☎02-450-9705, 담당 최윤서)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정비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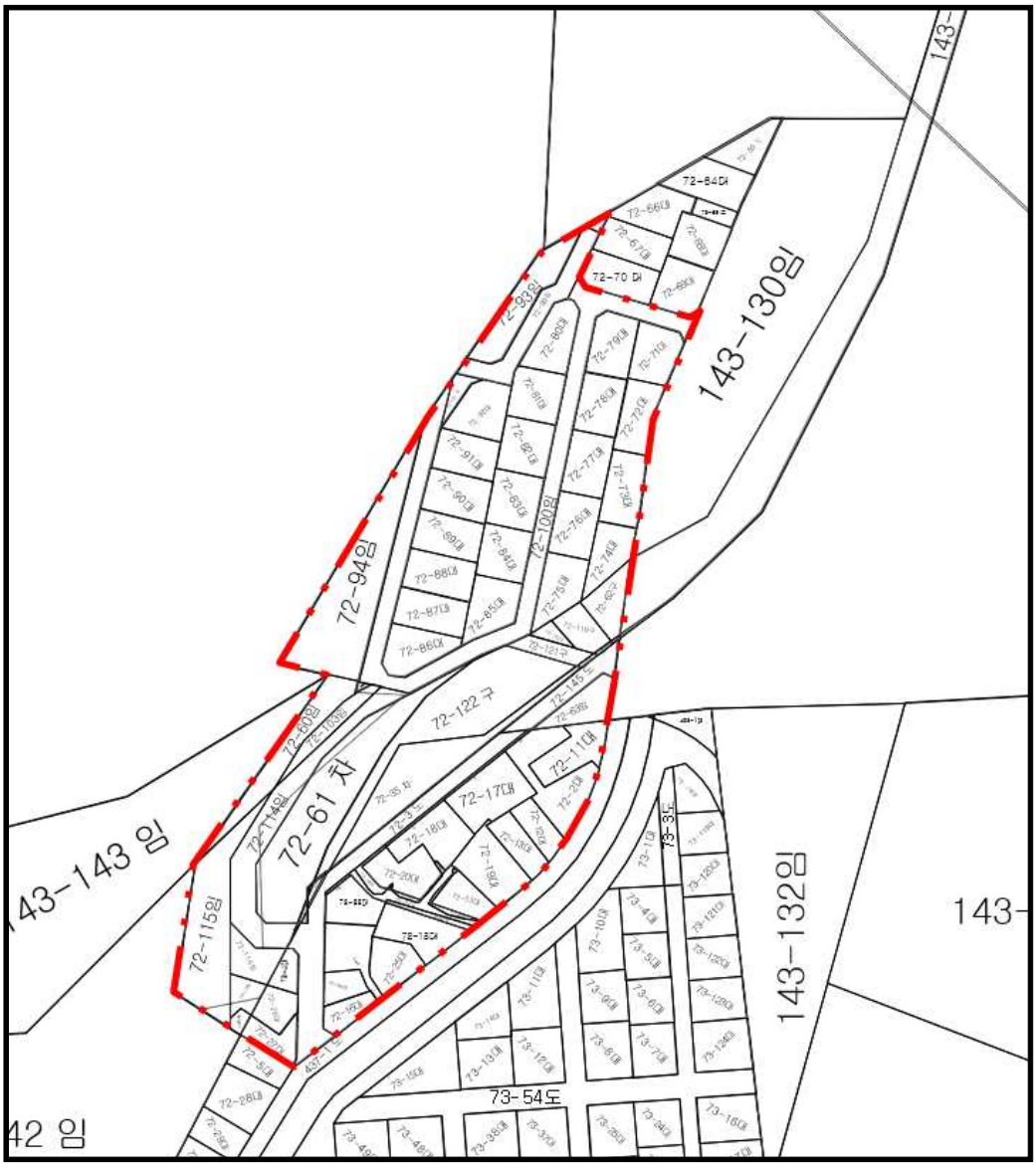


중곡 4-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결정(기정)도

범 례
정비구역

■ 정비구역 결정(변경)도



중곡 4-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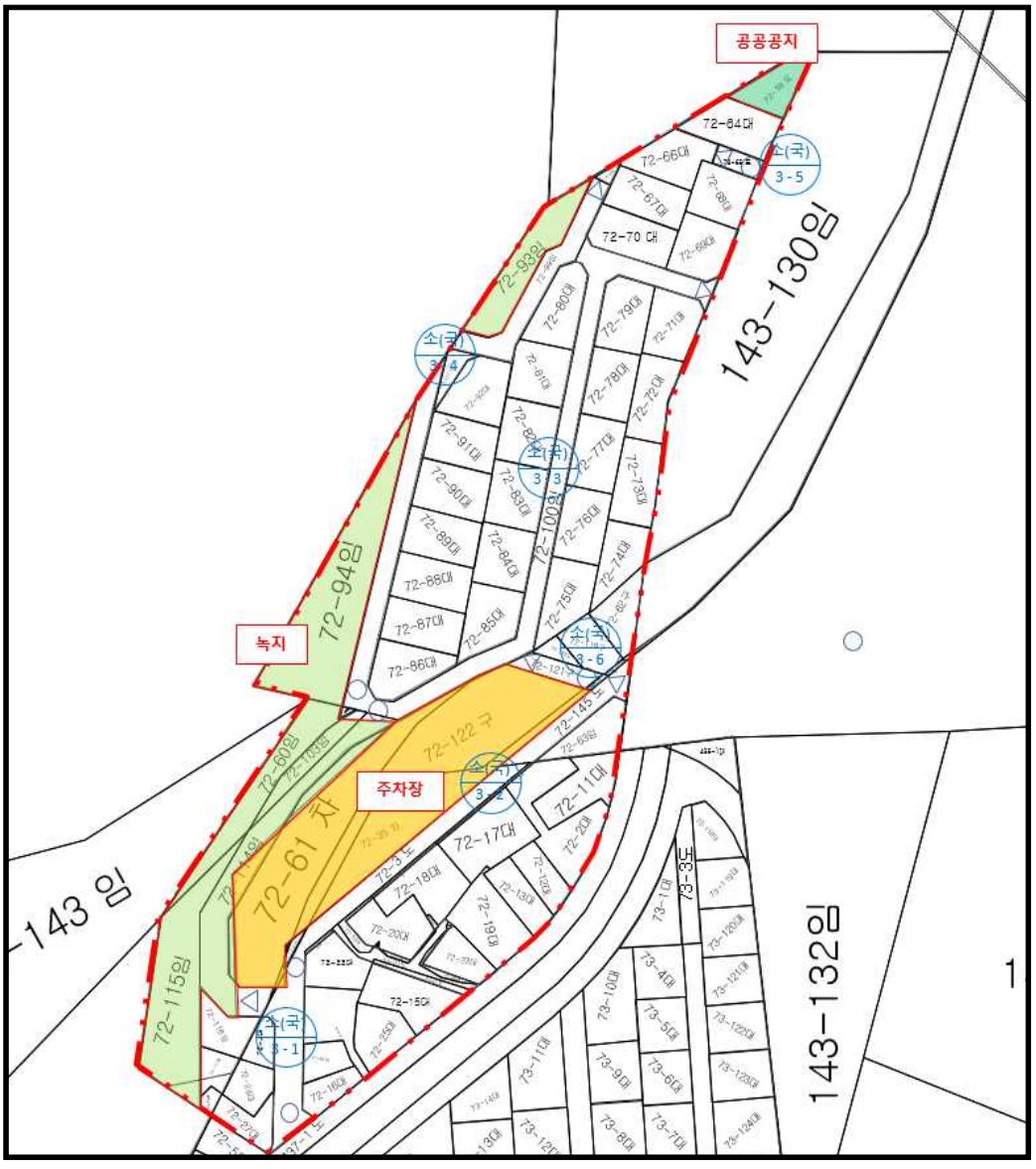
N

0 25 75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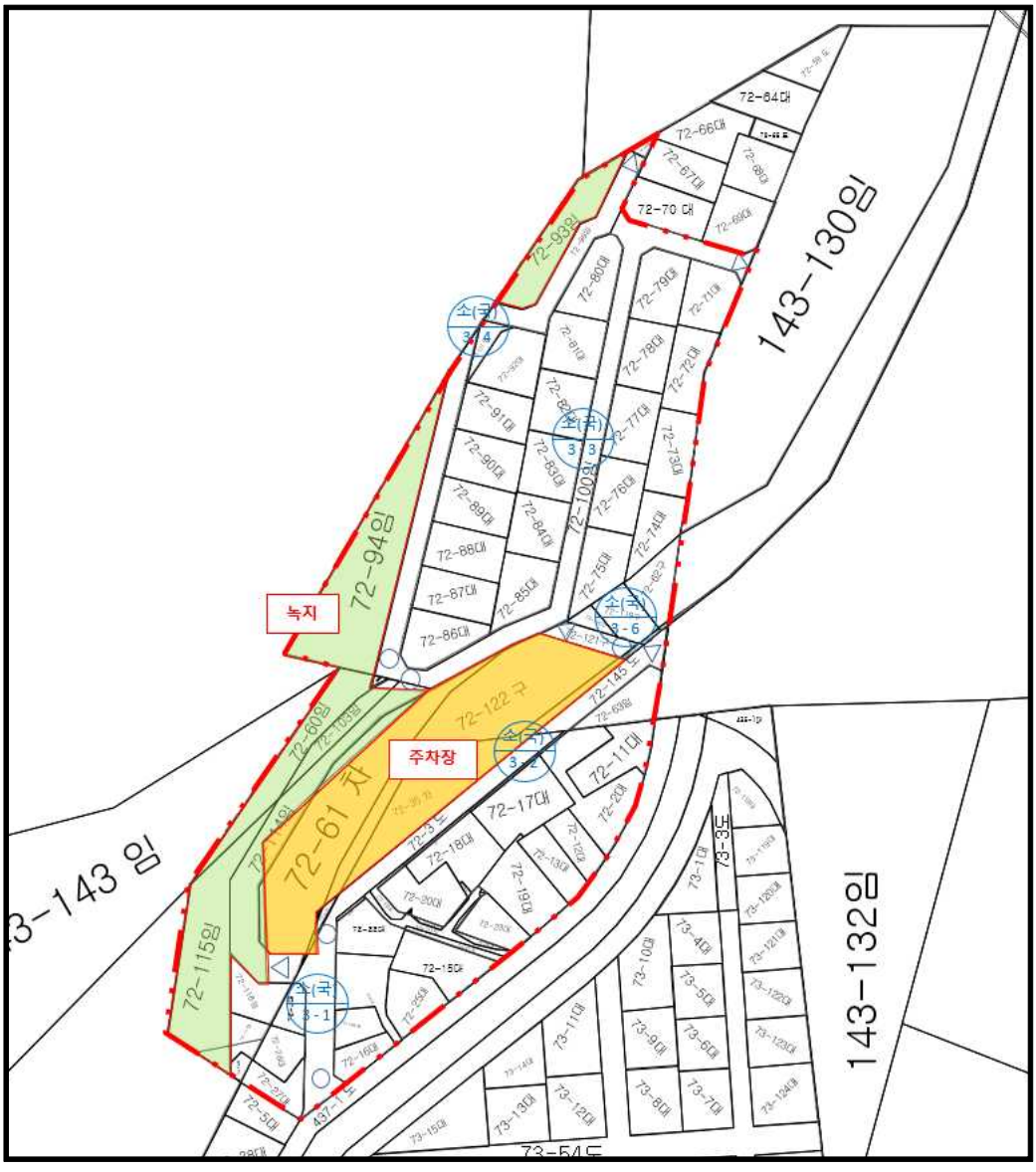
범 례

정비구역

■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중곡 4-1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0 25 75 150 N

범 례
- 정비구역
- 완충녹지
- 공공공지
- 주차장
- 도시계획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07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신정 뉴타운 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의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90호(2010.8.5.)로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 1~5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신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1항,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5조 제5항,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라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합니다.
2. 또한,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638,847.6	증) 1,000.0	639,847.6	노후 · 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 ·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월2 · 6동, 신정3동 일원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 · 체계적 도시 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33호(2023. 6. 15.)의 단순 오기 정정으로 인한 면적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639,847.6	-	639,847.6	100.0	오기 정정
주거용지	소 계	456,936.6	증) 691.0	457,627.6	71.5	
	공동주택	383,901.0	-	383,901.0	60.0	
	주상복합	73,035.6	증) 691.0	73,726.6	11.5	
종교·근린생활시설		3,909.5	-	3,909.5	0.6	
업무상업용지		11,963.3	-	11,963.3	1.9	
계획기반시설	소 계	167,038.2	감) 691.0	166,347.2	26.0	중복결정 면적 제외
	공공청사	8,260.9	감) 235.8	8,025.1	1.3	공공공지와 중복결정(1)
	문화·복지시설	6,618.9	-	6,618.9	1.0	
	학교시설	27,767.6	-	27,767.6	4.3	
	공원녹지	38,835.6	감) 2,040.0	36,795.6	5.7	
	공공공지	6,380.2	-	6,380.2	1.0	
	도 로	79,295.2	증) 1,584.8	80,880.0	12.6	
	주 차 장	1,283.3	-	1,283.3	0.2	

※ (1) : 중복결정 된 공공공지 면적(1,403.5㎡) 포함
※ 신정1~5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인한 면적 변경

2)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3)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1] 공원·녹지계획

1. 총괄표(변경)

구분	명칭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	11	38,835.6	감) 2,040.0	36,795.6	
공원시설	소공원	11	10	30,270.5	감) 2,040.0	28,230.5	
	어린이공원	-	-	-	-	-	
	계남근린공원등 존치	-	-	3,627.1	-	3,627.1	
녹지시설	경관녹지	1	1	4,938.0	-	4,938.0	

※ 신정1~5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인한 면적 변경

2. 공원 · 녹지계획(변경)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소공원	신월6동 570-26 일원	4,862.8	-	4,862.8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기정	소공원	신월6동 584-8 일대	1,298.3	-	1,298.3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기정	소공원	신월2동 605 일대	1,026.1	-	1,026.1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기정	소공원	신월2동 615-4 일대	3,001.0	-	3,001.0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기정	소공원	신월6동 568-1 일대	6,035.9	-	6,035.9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기정	소공원	신정동 1205-15 일원	789.2	-	789.2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기정	소공원	신정동 1150-53 일원	2,690.8	-	2,690.8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기정	소공원	신정동 1192-13 일대	3,196.3	-	3,196.3	신정3재정비촉진구역
폐지	소공원	신월6동 575-1 일대	2,040.0	감) 2,040.0	-	신정2존치관리구역
기정	소공원	신정동 1196-1 일대	4,532.7	-	4,532.7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기정	소공원	신정동 1219-9 일대	797.4	-	797.4	신정4재정비촉진구역
기정	소공원	신정동 1165-3 일대	4,938.0	-	4,938.0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4) 교통계획(변경)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5) 경관계획(변경)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6)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없음)

7)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10)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없음)

11)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12)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3) 광고물 관리계획(변경)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14)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5) 특성화계획(변경없음)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없음)

17)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신정1~5존치관리구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정동 1148-4번지 일대	89,794.3	서고시 제2010-290호 (2010.08.05.)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 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89,794.3	-	89,794.3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46.3	-	446.3	0.5	
	제2종(7층이하)	1,729.2	-	1,729.2	1.9	
	제2종일반주거지역	816.0	-	816.0	0.9	
	제3종일반주거지역	60,182.2	-	60,182.2	67.0	
	준주거지역	25,686.6	-	25,686.6	28.6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934.0	-	934.0	1.1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합계	13	951	7,064	1	52	520	7	575	4,600	5	345	2,070
중로	-	-	-	-	-	-	-	-	-	-	-	-
소로	13	951	7,064	1	52	520	7	575	4,600	5	345	2,070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23	신정 1147-13	신정 1147-13	일반도로	5구역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00	신월 628	신월 628	일반도로	2구역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72	신월 629	신월 629	일반도로	2구역
기정	소로	2	4	8	특수도로	50	신정 1226	신정 1226	보행자전용도로	5구역
변경	소로	2	4	8	국지도로	50	신정 1226	신정 1226	일반도로	5구역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223	신정 1230	신정 1225	일반도로	5구역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57	신정 653-7	신정 653-7	일반도로	5구역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50	신월 628	신월 628	일반도로	1구역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53	신월 629	신월 629	일반도로	2구역
기정	소로	3	4	6	특수도로	48	신월 619	신월 619	보행자전용도로	3구역
변경	소로	3	4	6	국지도로	48	신월 619	신월 619	일반도로	3구역
기정	소로	2	8	8	특수도로	110	신월 617-2	신월 609-2	보행자전용도로	4구역
변경	소로	3	6	6	국지도로	89	신월 617-2	신월 617-2	일반도로	4구역
신설	소로	3	7	6	국지도로	84	신월 617-2	신월 617-2	일반도로	4구역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71	신정 1234	신정 1234	일반도로	4구역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52	신정 1225	신정 1225	일반도로	5구역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4	소로 2-4	• 변경 - 기능 : 특수도로 → 국지도로	• 공동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대지의 차량진출입을 위해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를 국지도로로 변경
소로 3-4	소로 3-4	• 변경 - 기능 : 특수도로 → 국지도로	• 공동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대지의 차량진출입을 위해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를 국지도로로 변경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8	소로 3-6	• 변경 - 기능 : 특수도로 → 국지도로 - 폭원 : 8 → 6m (감)2m - 연장 : 110 → 89m (감)21m	• 특별계획4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대지의 차량진출입을 위해 2010년 이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환원
-	소로 3-7	• 신설	• 특별계획4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대지의 차량진출입을 위해 2010년 이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환원

나. 유통 · 공급시설(변경없음)

1) 시장

▌ 시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5	시장	신곡시장	신월동 575-17 일원	2,292.9	-	2,292.9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최소 · 최대개발규모 결정조서(변경)

위치	계획내용	
	기정	변경
간선변	• 최소개발규모 : 250㎡ • 최대개발규모 : 3,000㎡	• 최소개발규모 : 200㎡ • 최대개발규모 : 가구단위규모 이하
이면부	• 최소개발규모 : 90㎡ • 최대개발규모 : 1,000㎡	• 최소개발규모 : 90㎡ • 최대개발규모 : 가구단위규모 이하

주1) 개발규모 3,000㎡ 초과할 경우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제3종일반주거지역은 토지 형상 및 간선도로 접도여부 등을 고려하여 준주거지 역으로 상향 검토 가능)

주2) 최소개발규모는 필요시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건축허가) 가능

▌ 최소 · 최대개발규모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간선변	• 최소개발규모 완화 : 250㎡ → 200㎡	• 간선변 최소필지를 고려하여 간선변 내 자율적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최소개발규모 변경
	• 최대개발규모 완화 : 3,000㎡ → 가구단위규모 이하	• 적정 규모의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최대 개발규모 완화
이면부	• 최대개발규모 완화 : 1,000㎡ → 가구단위규모 이하	• 적정 규모의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최대 개발규모 완화

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 특별계획가능구역 및 공동개발 설정기준

구분			설정기준	비고
특별계획가능구역			•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획지	공동개발	지정	• 동일소유자, 기개발필지 • 간선변 차량출입 최소화	
		권장	• 건축행위가 어려운 비정형 필지(부정형 필지 등) • 적정개발규모 유도(자루형 필지, 분할 필지 등)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 공동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전 필지 • 최소개발규모 이상에서 자율적으로 공동개발 계획 수립	

▌ 공동개발 계획내용

위치	기정	변경	비고
공동개발(지정)	7개소	14개소	
공동개발(권장)	17개소	32개소	

▮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기정			변경		
			위치	면적(㎡)	획지계획	위치	면적(㎡)	획지계획
존치관리 1구역	1	4,897.1	신월동 559-3	808.0	•권장 : 신월동 559-4,5	신월동 559-3	1,687.7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559-4	879.7	•권장 : 신월동 559-3,5			
			신월동 559-5	1,046.1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9-3,4	신월동 559-5	1,046.1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559-2	510.2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9-6,7,12,13,14	신월동 559-2	510.2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559-6	835.4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9-2,7,12,13,14	신월동 559-6	835.4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559-7	145.2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9-2,6,12,13,14	신월동 559-7	145.2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9-12
			신월동 559-12	114.8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9-2,6,7,13,14	신월동 559-12	114.8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9-7
			신월동 559-13	47.4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9-2,6,7,12,14	신월동 559-13	47.4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559-14	510.3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9-2,6,7,12,13	신월동 559-14	510.3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존치관리 2구역	2-1	5,890.7	신월동 558-1	872.8	•존치지역	신월동 558-1	872.8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558-3	562.6	•공동개발 지정 : 신월동 558-4	신월동 558-3	562.6	•공동개발 지정 : 신월동 558-4
			신월동 558-4	497.0	•공동개발 지정 : 신월동 558-3	신월동 558-4	497.0	•공동개발 지정 : 신월동 558-3
			신월동 558-5	498.5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8-6,7,11,19	신월동 558-5	498.5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8-6,11,19
			신월동 558-6	275.2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8-5,7,11,19	신월동 558-6	275.2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8-5,11,19
			신월동 558-7	1,473.5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8-5,6,11,19	신월동 558-7	1,473.5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558-8	133.4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8-9,14,15,16,20	신월동 558-8	133.4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8-9,14,15,16,20
			신월동 558-9	1,092.2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8-8,14,15,16,20	신월동 558-9	1,092.2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8-8,14,15,16,20
			신월동 558-11	13.3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8-5,6,7,19	신월동 558-11	13.3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8-5,6,19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기정			변경		
			위치	면적(㎡)	획지계획	위치	면적(㎡)	획지계획
			신월동 558-14	3.6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8-8,9,15,16,20	신월동 558-14	3.6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8-8,9,15,16,20
			신월동 558-15	0.1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8-8,9,14,16,20	신월동 558-15	0.1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8-8,9,14,16,20
			신월동 558-16	2.0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8-8,9,14,15,20	신월동 558-16	2.0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8-8,9,14,15,20
			신월동 558-19	289.0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8-5,6,7,11	신월동 558-19	289.0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8-5,6,11
			신월동 558-20	177.5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8,9,14,15,16	신월동 558-20	177.5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8-8,9,14,15,16
존치관리 2구역	2-2	2,464.3	신월동 548-1	983.7	•존치지역	신월동 548-1	983.7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548-2	212.0		신월동 548-2	212.0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48-7
			신월동 548-3	348.7		신월동 548-3	348.7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48-6
			신월동 548-4	150.1		신월동 548-4	150.1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548-5	165.0	•특별계획(1)구역	신월동 548-5	165.0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548-6	165.3		신월동 548-6	165.3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48-3
			신월동 548-7	299.6		신월동 548-7	299.6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48-2
			신월동 548-8	139.9		신월동 548-8	139.9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2-3	4,718.8	신월동 549-1	734.0		신월동 549-1	734.0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49-2
			신월동 549-2	781.0		신월동 549-2	781.0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49-1
			신월동 549-9	177.4		신월동 549-9	177.4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549-10	181.7	•특별계획(1)구역	신월동 549-10	181.7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549-12	131.1		신월동 549-12	131.1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549-21	131.1		신월동 549-21	131.1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549-3	308.9	•특별계획(2)구역	신월동 549-3	308.9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48-4
			신월동 549-4	947.3		신월동 549-4	947.3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48-3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기정			변경		
			위치	면적(㎡)	획지계획	위치	면적(㎡)	획지계획
			신월동 549-5	311.4		신월동 549-5	311.4	•공동개발 권장 : 549-15,17
			신월동 549-7	193.0		신월동 549-7	193.0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49-18
			신월동 549-15	197.6		신월동 549-15	197.6	•공동개발 권장 : 549-5,17
			신월동 549-17	158.8		신월동 549-17	158.8	•공동개발 권장 : 549-5,15
			신월동 549-18	465.5		신월동 549-18	465.5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49-7
	2-4	6,615.3	신월동 550-1	1,229.5	•특별계획(2)구역	신월동 550-1	1,229.5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550-3	2,091.4	•존치지역	신월동 550-3	2,091.4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550-5	552.0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0-6	신월동 550-5	552.0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550-6	193.3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0-5	신월동 550-6	193.3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0-8,9,21
			신월동 550-8	109.4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0-9,10,21	신월동 550-8	109.4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0-6,9,21
			신월동 550-9	141.9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0-8,10,21	신월동 550-9	141.9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0-6,8,21
			신월동 550-10	325.2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0-8,9,21	신월동 550-10	325.2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550-11	188.4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0-12,13	신월동 550-11	188.4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존치관리 2구역			신월동 550-12	213.8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0-11,13	신월동 550-12	213.8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550-13	281.6	•공동개발 지정 : 신월동 550-11,12	신월동 550-13	281.6	•공동개발 지정 : 신월동 550-23
			신월동 550-14	193.6	•특별계획(2)구역	신월동 550-14	193.6	•공동개발 지정 : 신월동 550-15,16,17,20
			신월동 550-15	202.8		신월동 550-15	202.8	•공동개발 지정 : 신월동 550-14,16,17,20
			신월동 550-16	202.9		신월동 550-16	202.9	•공동개발 지정 : 신월동 550-14,15,17,20
			신월동 550-17	197.0		신월동 550-17	197.0	•공동개발 지정 : 신월동 550-14,15,16,20
			신월동 550-18	223.6		신월동 550-18	223.6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550-19	152.8		신월동 550-19	152.8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550-20	60.7		신월동 550-20	60.7	•공동개발 지정 : 신월동 550-14,15,16,17
			신월동 550-21	51.6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0-8,9,10	신월동 550-21	51.6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50-6,8,9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기정			변경		
			위치	면적(㎡)	획지계획	위치	면적(㎡)	획지계획
			-	-	•특별계획(2)구역	신월동 550-23	3.8	•공동개발 지정 : 신월동 550-13 (기정누락)
	2-5	8,281	신월동 575-1	440.5	•특별계획(3)구역	신월동 575-1	639.5	•특별계획구역 해제됨에 따라 필지 완전 편입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75-2
			신월동 575-2	609.4		신월동 575-2	609.4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75-1
			신월동 575-3	117.8		신월동 575-3	117.8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75-4,13,14,15,16,27
			신월동 575-4	116.8		신월동 575-4	116.8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75-3,13,14,15,16,27
			신월동 575-5	114.0		신월동 575-5	114.0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75-6,9,10,11,12,25
			신월동 575-6	90.3		신월동 575-6	151.1	•특별계획구역 해제됨에 따라 필지 완전 편입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75-5,9,10,11,12,25
			신월동 575-7	26.8		신월동 575-7	101	•특별계획구역 해제됨에 따라 필지 완전 편입 •공동개발 지정 : 신월동 575-29
			신월동 575-8	127.7		신월동 575-8	206.8	•특별계획구역 해제됨에 따라 필지 완전 편입
			신월동 575-9	147.5		신월동 575-9	147.5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75-5,6,10,11,12,25
			신월동 575-10	110.0		신월동 575-10	110.2	•특별계획구역 해제됨에 따라 필지 완전 편입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75-5,6,9,11,12,25
			신월동 575-11	114.2		신월동 575-11	114.2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75-5,6,9,10,12,25
			신월동 575-12	144.5		신월동 575-12	144.5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75-5,6,9,10,11,25
			신월동 575-13	143.9		신월동 575-13	143.9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75-3,4,14,15,16,27
			신월동 575-14	114.8		신월동 575-14	114.8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75-3,4,13,15,16,27
존치관리 2구역			신월동 575-15	112.9		신월동 575-15	112.9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75-3,4,13,14,16,27
			신월동 575-16	142.3		신월동 575-16	142.3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75-3,4,13,14,15,27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기정			변경		
			위치	면적(㎡)	획지계획	위치	면적(㎡)	획지계획
			신월동 575-17	2,292.8		신월동 575-17	2,292.8	•공동개발 지정 : 신월동 575-30
			신월동 575-18	158.5		신월동 575-18	158.5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75-19,20,21,28
			신월동 575-19	115.5		신월동 575-19	115.5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75-18,20,21,28
			신월동 575-20	111.9		신월동 575-20	111.9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75-18,19,21,28
			신월동 575-21	154.2		신월동 575-21	154.2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75-18,19,20,28
			신월동 575-22	182.3		신월동 575-22	182.3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575-23	156.8		신월동 575-23	156.8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575-24	1,070.5		신월동 575-24	1,070.5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575-25	98.6		신월동 575-25	98.6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75-5,6,9,10,11,12
			신월동 575-26	2.2		신월동 575-26	2.2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575-27	97.3		신월동 575-27	97.3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75-3,4,13,14,15,16
			신월동 575-28	50.5		신월동 575-28	50.5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575-18,19,20,21
			신월동 575-29	7.5		신월동 575-29	14.0	•특별계획구역 해제됨에 따라 필지 완전 편입 •공동개발 지정 : 신월동 575-7
			신월동 575-30	689.2		신월동 575-30	689.2	•공동개발 지정 : 신월동 575-17
	2-6	5,040.8	신월동 601-1	649.7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2,17,18,19,20,21,22	신월동 601-1	649.7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601-2	633.4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1,17,18,19,20,21,22	신월동 601-2	633.4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601-3	380.1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4,5,6,9,10,11,12,13,14,15,16,23,24,25,26,27	신월동 601-3	380.1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4,5,6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기정			변경		
			위치	면적(㎡)	획지계획	위치	면적(㎡)	획지계획
			신월동 601-4	382.6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3,5,6,9,10,11,12,13, 14,15,16,23,24,25,26,27	신월동 601-4	382.6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3,5,6
			신월동 601-5	471.7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3,4,6,9,10,11,12,13, 14,15,16,23,24,25,26,27	신월동 601-5	471.7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3,4,6
			신월동 601-6	34.7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3,4,5,9,10,11,12,13, 14,15,16,23,24,25,26,27	신월동 601-6	34.7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3,4,5
존치관리 2구역			신월동 601-9	58.1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3,4,5,6,10,11,12,13, 14,15,16,23,24,25,26,27	신월동 601-9	58.1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10,11,12,24
			신월동 601-10	118.0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3,4,5,6,9,11,12,13, 14,15,16,23,24,25,26,27	신월동 601-10	118.0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9,11,12,24
			신월동 601-11	138.9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3,4,5,6,9,10,12,13, 14,15,16,23,24,25,26,27	신월동 601-11	138.9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9,10,12,24
			신월동 601-12	159.7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3,4,5,6,9,10,11,13, 14,15,16,23,24,25,26,27	신월동 601-12	159.7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9,10,11,24
			신월동 601-13	179.1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3,4,5,6,9,10,11,12, 14,15,16,23,24,25,26,27	신월동 601-13	179.1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14,15,16,23
			신월동 601-14	157.3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3,4,5,6,9,10,11,12, 13,15,16,23,24,25,26,27	신월동 601-14	157.3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13,15,16,23
			신월동 601-15	160.7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3,4,5,6,9,10,11,12, 13,14,16,23,24,25,26,27	신월동 601-15	160.7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13,14,16,23
			신월동 601-16	181.4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3,4,5,6,9,10,11,12, 13,14,15,23,24,25,26,27	신월동 601-16	181.4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13,14,15,23
			신월동 601-17	179.3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1,2,18,19,20,21,22	신월동 601-17	179.3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18,19,20,22
			신월동 601-18	163.1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1,2,17,19,20,21,22	신월동 601-18	163.1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17,19,20,22
			신월동 601-19	169.4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1,2,17,18,20,21,22	신월동 601-19	169.4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17,18,20,22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기정			변경		
			위치	면적(㎡)	획지계획	위치	면적(㎡)	획지계획
			신월동 601-20	181.2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1,2,17,18,19,21,22	신월동 601-20	181.2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17,18,19,22
			신월동 601-21	447.3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1,2,17,18,19,20,22	신월동 601-21	447.3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601-22	62.6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1,2,17,18,19,20,21	신월동 601-22	62.6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17,18,19,20
			신월동 601-23	63.1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3,4,5,6,9,10,11,12, 13,14,15,16,24,25,26,27	신월동 601-23	63.1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13,14,15,16
			신월동 601-24	62.7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3,4,5,6,9,10,11,12, 13,14,15,16,23,25,26,27	신월동 601-24	62.7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9,10,11,12
			신월동 601-25	2.2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3,4,5,6,9,10,11,12, 13,14,15,16,23,24,26,27	신월동 601-25	2.2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601-26	2.2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3,4,5,6,9,10,11,12, 13,14,15,16,23,24,25,27	신월동 601-26	2.2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601-27	2.3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1-3,4,5,6,9,10,11,12, 13,14,15,16,23,24,25,26	신월동 601-27	2.3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존치관리 3구역	3-1	6,038.7	신월동 602-1	408.3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2-7,11,12,13	신월동 602-1	408.3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2-7
			신월동 602-3	348.1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2-4,5,9	신월동 602-3	348.1	•공동개발 지정 : 신월동 602-4
			신월동 602-4	470.7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2-3,5,9	신월동 602-4	470.7	•공동개발 지정 : 신월동 602-3
			신월동 602-5	289.2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2-3,4,9	신월동 602-5	289.2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602-6	931.8	•공동개발 지정 : 신월동 602-8	신월동 602-6	931.8	•공동개발 지정 : 신월동 602-8
			신월동 602-7	330.6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2-1,11,12,13	신월동 602-7	330.6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2-1
			신월동 602-8	2,281.8	•공동개발 지정 : 신월동 602-6	신월동 602-8	2,281.8	•공동개발 지정 : 신월동 602-6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기정			변경		
			위치	면적(㎡)	획지계획	위치	면적(㎡)	획지계획
			신월동 602-9	289.1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2-3,4,5	신월동 602-9	289.1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602-11	212.5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2-1,7,12,13	신월동 602-11	212.5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2-12,13
			신월동 602-12	166.7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2-1,7,11,13	신월동 602-12	166.7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2-11,13
			신월동 602-13	309.9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2-1,7,11,12	신월동 602-13	309.9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2-11,12
	3-2	1,841.2	신월동 606-9	639.3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6-10,44	신월동 606-9	639.3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606-10	647.4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6-9,44	신월동 606-10	647.4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606-44	554.5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6-9,10,23	신월동 606-44	554.5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3-3	2,776.6	신월동 606-1	627.7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6-2,7,8,26,35	신월동 606-1	627.7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6-8
			신월동 606-2	919.8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6-1,7,8,26,35	신월동 606-2	919.7	•공부상면적변경 •공동개발 지정 : 신월동 606-7
			신월동 606-7	264.6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6-1,2,8,26,35	신월동 606-7	264.6	•공동개발 지정 : 신월동 606-2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6-26,35
			신월동 606-8	686.2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6-1,2,7,26,35	신월동 606-8	686.2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6-1
			신월동 606-26	165.0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6-1,2,7,8,35	신월동 606-26	165.0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6-7,35
			신월동 606-35	113.3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6-1,2,7,8,26	신월동 606-35	113.3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6-7,26
존치관리 4구역	4-1	3,458.2	신월동 607-1	948.0	•공동개발 지정 : 신월동 607-2, 존치지역	신월동 607-1	948.0	•공동개발 지정 : 신월동 607-2
			신월동 607-2	1,066.6	•공동개발 지정 : 신월동 607-1, 존치지역	신월동 607-2	2,303.2	•면적오차정정 •공동개발 지정 : 신월동 607-1
			신월동 607-3	167.3	•도로	신월동 607-3	167.3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기정			변경		
			위치	면적(㎡)	획지계획	위치	면적(㎡)	획지계획
			신월동 607-5	39.7	•도로, 특별계획(4)구역	신월동 607-5	39.7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4-2	3,485.4	신월동 608-1	702.9		신월동 608-1	702.9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8-2, 14
			신월동 608-2	351.5		신월동 608-2	351.5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8-1, 14
			신월동 608-3	174.5		신월동 608-3	174.5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608-4	171.4		신월동 608-4	171.4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608-5	175.5		신월동 608-5	175.5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608-6	168.8		신월동 608-6	168.8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8-7
			신월동 608-7	241.5		신월동 608-7	241.5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8-6
			신월동 608-8	205.9		신월동 608-8	205.9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608-9	212.0		신월동 608-9	212.0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608-10	338.2		신월동 608-10	338.2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608-11	198.4	•특별계획(4)구역	신월동 608-11	198.4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8-15
			신월동 608-12	335.4		신월동 608-12	335.4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608-14	173.0		신월동 608-14	173.0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8-1,2
			신월동 608-15	9.4		신월동 608-15	9.4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8-11
	4-3	1,218.0	신월동 609	225.1		신월동 609	225.1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9-14
			신월동 609-2	226.1		신월동 609-2	226.5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 신설(중로)됨에 따라 지적선 정리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609-3	175.4		신월동 609-3	175.5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 신설(중로)됨에 따라 지적선 정리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9-11
			신월동 609-8	8.3		신월동 609-8	11.6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 신설(중로)됨에 따라 지적선 정리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기정			변경		
			위치	면적(㎡)	획지계획	위치	면적(㎡)	획지계획
			신월동 609-10	56.7		신월동 609-10	58.5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 신설(중로)됨에 따라 지적선 정리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609-11	178.5		신월동 609-11	178.5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9-3
			신월동 609-12	15.5		신월동 609-12	19.1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 신설(중로)됨에 따라 지적선 정리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609-13	48.8		신월동 609-13	50.8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 신설(중로)됨에 따라 지적선 정리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609-14	197.8		신월동 609-14	197.8	•공동개발 권장 : 신월동 609
			신월동 609-15	74.0		신월동 609-15	74.6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 신설(중로)됨에 따라 지적선 정리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월동 617-2	564.0		-	-	•특별계획구역 해제됨에 따라 가구(획지)에서 제외
	4-4	2,447.7	신정동 1194-3	1,120.7	•공동개발 지정 : 신정동 1194-4,7,8, 존치지역	신정동 1194-3	1,120.7	•공동개발 지정 : 신정동 1194-4,7,8
			신정동 1194-4	995.3	•공동개발 지정 : 신정동 1194-3,7,8, 존치지역	신정동 1194-4	995.3	•공동개발 지정 : 신정동 1194-3,7,8
			신정동 1194-7	165.8	•공동개발 지정 : 신정동 1194-3,4,8, 존치지역	신정동 1194-7	165.8	•공동개발 지정 : 신정동 1194-3,4,8
			신정동 1194-8	165.9	•공동개발 지정 : 신정동 1194-3,4,7, 존치지역	신정동 1194-8	165.9	•공동개발 지정 : 신정동 1194-3,4,7
	4-5	3,261.4	신정동 1194-5	3,261.4	•존치지역	신정동 1194-5	3,261.4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4-6	5,859.7	신정동 1304	2,159.5	•존치지역	신정동 1304	2,697.1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537.6	•특별계획(5)구역			
			신정동 1193-4	357.8	•특별계획(5)구역	신정동 1193-4	357.8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정동 1193-5	191.6		신정동 1193-5	191.6	
			신정동 1193-6	142.8		신정동 1193-6	142.8	
			신정동 1193-7	134.4		신정동 1193-7	134.4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기정			변경		
			위치	면적(㎡)	획지계획	위치	면적(㎡)	획지계획
			신정동 1193-8	138.2		신정동 1193-8	138.2	
			신정동 1193-9	101.4		신정동 1193-9	101.4	
			신정동 1193-10	160.2		신정동 1193-10	160.2	
			신정동 1193-12	150.0		신정동 1193-12	150.0	
			신정동 1193-13	138.7		신정동 1193-13	138.7	
			신정동 1193-14	137.3		신정동 1193-14	137.3	
			신정동 1193-15	144.5		신정동 1193-15	144.5	
			신정동 1193-16	144.3		신정동 1193-16	144.3	
			신정동 1193-17	133.1		신정동 1193-17	133.1	
			신정동 1193-18	300.1		신정동 1193-18	300.1	
			신정동 1193-19	166.5		신정동 1193-19	166.5	
			신정동 1193-21	281.7		신정동 1193-21	281.7	
			신정동 1193-24	239.3		신정동 1193-24	239.3	
			신정동 1193-25	68.8		신정동 1193-25	68.8	
			신정동 1193-27	31.9		신정동 1193-27	31.9	
존치관리 5구역	5-1	2,894.4	신정동 1182-11	1,715.6	•존치지역	신정동 1182-11	1,704.4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 신설(중로)됨에 따라 지적선 정리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정동 1182-12	206.4	•공동개발 권장 : 신정동 1182-13,14	신정동 1182-12	206.4	•공동개발 권장 : 신정동 1148-13,14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기정			변경		
			위치	면적(㎡)	획지계획	위치	면적(㎡)	획지계획
			신정동 1182-13	168.5	•공동개발 권장 : 신정동 1182-12,14	신정동 1182-13	168.5	•공동개발 권장 : 신정동 1148-12,14
			신정동 1182-14	164.9	•공동개발 권장 : 신정동 1182-12,13	신정동 1182-14	164.9	•공동개발 권장 : 신정동 1148-12,13
			신정동 1182-15	164.2	•공동개발 지정 : 신정동 1182-16	신정동 1182-15	164.2	•공동개발 지정 : 신정동 1148-16
			신정동 1182-16	164.7	•공동개발 지정 : 신정동 1182-15	신정동 1182-16	164.7	•공동개발 지정 : 신정동 1148-15
			신정동 1182-17	159.0	•공동개발 지정 : 신정동 1182-18	신정동 1182-17	159.0	•공동개발 지정 : 신정동 1148-18
			신정동 1182-18	170.8	•공동개발 지정 : 신정동 1182-17	신정동 1182-18	162.3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 신설(중로)됨에 따라 지적선 정리 •공동개발 지정 : 신정동 1148-17
	5-2	5,521.1	신정동 1148-1	374.0	•공동개발 권장 : 신정동 1148-2,8,9,10	신정동 1148-1	374.0	•공동개발 권장 : 신정동1148-8
			신정동 1148-2	356.1	•공동개발 권장 : 신정동 1148-1,8,9,10	신정동 1148-2	356.1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정동 1148-3	462.9	•공동개발 권장 : 신정동 1148-11,12	신정동 1148-3	462.9	•공동개발 권장 : 신정동 1148-11,12
			신정동 1148-4	1,405.7	•존치지역	신정동 1148-4	1,405.7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정동 1148-7	1,605.1	•존치지역	신정동 1148-7	1,605.1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정동 1148-8	155.2	•공동개발 권장 : 신정동 1148-1,2,9,10	신정동 1148-8	155.2	•공동개발 권장 : 신정동1148-1
			신정동 1148-9	548.5	•공동개발 권장 : 신정동 1148-1,2,8,10	신정동 1148-9	548.5	•공동개발 지정 : 신정동1148-10
			신정동 1148-10	73.5	•공동개발 권장 : 신정동 1148-1,2,8,9	신정동 1148-10	73.5	•공동개발 지정 : 신정동1148-9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기정			변경		
			위치	면적(㎡)	획지계획	위치	면적(㎡)	획지계획
			신정동 1148-11	200.6	•공동개발 권장 : 신정동 1148-3,12	신정동 1148-11	200.6	•공동개발 권장 : 신정동 1148-3,12
			신정동 1148-12	339.5	•공동개발 권장 : 신정동 1148-3,11	신정동 1148-12	339.5	•공동개발 권장 : 신정동 1148-3,11
	5-3	4,284.7	신정동 1147-1	97.7	•공동개발 권장 : 신정동 1147-2,3,4,8,14	신정동 1147-1	97.7	•공동개발 지정 : 신정동 1147-3,4,8,14 •공동개발 권장 : 신정동 1147-2
			신정동 1147-2	96.7	•공동개발 권장 : 신정동 1147-1,3,4,8,14	신정동 1147-2	96.7	•공동개발 권장 : 신정동 1147-1,3,4,8,14
			신정동 1147-3	91.9	•공동개발 권장 : 신정동 1147-1,2,4,8,14	신정동 1147-3	91.9	•공동개발 지정 : 신정동 1147-1,4,8,14 •공동개발 권장 : 신정동 1147-2
			신정동 1147-4	96.8	•공동개발 권장 : 신정동 1147-1,2,3,8,14	신정동 1147-4	96.8	•공동개발 지정 : 신정동 1147-1,3,8,14 •공동개발 권장 : 신정동 1147-2
			신정동 1147-5	790.3	•존치지역	신정동 1147-5	790.3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정동 1147-8	506.0	•공동개발 권장 : 신정동 1147-1,2,3,4,8	신정동 1147-8	506.0	•공동개발 지정 : 신정동 1147-1,3,4,14 •공동개발 권장 : 신정동 1147-2
			신정동 1147-9	511.9	•공동개발 지정 : 신정동 1147-10,11	신정동 1147-9	511.9	•공동개발 지정 : 신정동 1147-10,11
			신정동 1147-10	765.8	•공동개발 지정 : 신정동 1147-9,11	신정동 1147-10	765.8	•공동개발 지정 : 신정동 1147-9,11
			신정동 1147-11	754.4	•공동개발 지정 : 신정동 1147-9,10	신정동 1147-11	754.4	•공동개발 지정 : 신정동 1147-9,10
			신정동 1147-12	557.6	•존치지역	신정동 1147-12	557.6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정동 1147-14	15.6	•공동개발 권장 : 신정동 1147-1,2,3,4,8	신정동 1147-14	15.6	•공동개발 지정 : 신정동 1147-1,3,4,8 •공동개발 권장 : 신정동 1147-2

주)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1) 건축물의 불허용도

▌기정

구분			불허용도	비고
A1	준주거 지역	전층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주상복합건축물 중 비주거는 건축물의 3개층이상이고, 주거비율이 용적률 60%이하인 경우 제외 • 장례식장(의료시설 부속시설 제외) • 공장(아파트형 공장 제외)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중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 자동차관련시설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전층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주상복합건축물 중 비주거는 2층이하인 경우만 제외 • 장례식장(의료시설 부속시설 제외) • 공장(아파트형 공장 제외)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중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 자동차관련시설	
A2		전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 장례식장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주)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 및 절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불허

▌변경

구분		불허용도	비고
A1	전층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중 주거비율 용적률이 90% 이하인 경우 제외) • 장례식장(의료시설 부속시설 제외)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 자동차관련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수리점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간선변 (준주거, 제3종일반 주거지역)
A2	전층	• 장례식장(의료시설 부속시설 제외)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수리점, 안마시술소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이면부 (준주거,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주1) 관계법령에 따른 불허용도는 원칙적으로 불허
주2)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 및 절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불허
주3)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남부순환로변에 면한 필지는 자동차관련시설 허용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불허용도 적용구간 구분 설정(간선변, 이면부)	• 간선변 가로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불허용도 적용 구간을 간선변, 이면부로 구분
비주거 용도 비율 완화 및 단독주택 삭제	• 사업실현성 및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내 비주거 비율 완화 및 이면부 불허용도 내 단독주택 삭제(간선변 단독주택은 주거복합건축물로 조성)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수리점, 정신병원 불허용도 추가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수리점, 정신병원 등 불허용도 추가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괄호내용 삭제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한 괄호내용 삭제

2) 건축물의 권장용도

▌기정

구분		권장용도(전층)	비고
B1	전층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연면적이 2,000㎡ 이상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운동시설 • 업무시설 중 연면적이 2,000㎡ 이상	
B2	전층	• 판매시설 중 연면적이 1,000㎡ 이상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 중 연면적이 1,000㎡ 이상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C1	전층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변경

구분	권장용도(전층)	비고
B1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시설 중 학원, 도서관	간선변 (준주거, 제3종 일반주거지역)
B2	• 판매시설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시설 중 학원, 도서관	이면부 (준주거, 제3종 일반주거지역)
C1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시장
공통	[1층 가로활성화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1,000㎡ 이상 소매점, 500㎡ 게임제공업소)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500㎡ 이상)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판매시설, 업무시설 연면적 기준 삭제	• 자율적인 건축 행위가 가능하도록 판매시설, 업무시설에 대한 연면적 기준 삭제
가로활성화 시설 추가 및 자동차관련시설 삭제	• 배후 주거지역을 지원하는 가로활성화 시설 추가 및 자동차관련시설 삭제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1) 건축물의 건폐율(변경없음)

구분	제어기준	비고
제2종일반주거/ 준주거지역	60%이하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2) 건축물의 용적률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제2종일반주거지역	170% 이하	200% 이하	α (관련 법에 따름)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이하 (235% 이하) - 주1	250% 이하	α (관련 법에 따름)	
준주거지역	300% 이하	400% 이하	α (관련 법에 따름)	

주) 공동개발 권장 준수하지 않고 개별필지 개발시 기준용적률 : 235%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00% 이하	α (법적용적률의 2배)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 이하	250% 이하	α (법적용적률의 2배)	
준주거지역	300% 이하	360% 이하	400% 이하	

상한 용적률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공공시설 부지 제공)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1.0×α현금·건축물)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공공시설 제공부지 중 별도 구획되는 시설(획지 내 건축물 기부채납 대지지분 제외)은 용도지역 변경(하향 또는 상향)되는 경우에도 변경 전 용적률을 적용함 ※ 사업부지의 용적률과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로 적용(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허용용적률로 봄)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α현금·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건축물 계수 완화(1.2 적용) : 권역서비스시설 또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 변경	• 특별계획구역 해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 완화 • 가로활성화 유도 등 계획적 관리를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 조정
준주거지역 허용용적률 변경	• 준주거지역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등을 고려하여 조정

3)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기정

항목 \ 내용		기준	완화 조건	적용사항	비고
유도형	공동 개발	지정/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a	• 2필지 : a=0.1 • 3필지이상 : a=0.15
		자율적 공동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0.5×a	• 최소대지규모 이상, 최대개발규모이내 • 2필지 : a=0.1 • 3필지이상 : a=0.15
유도형	건축물 권장용도	전층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 제외 건축연면적)×0.1	• 건축연면적의 20%이상 수용시 인정
규제형 또는 유도형	대지내 공지	건축 한계선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3	–

항목 \ 내용		기준	완화 조건	적용사항	비고
		쌈지형, 침상형 공지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a	• 폭 5m이상, 최소 45㎡이상 • a=0.25(필로티) • a=0.5(개방형)
		공개공지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a	• 의무면적제외, 의무 아닌 경우 대지면적 5%이상 • a=0.25(필로티) • a=0.5(개방형)
유도형	건축물내 공공시설 제공시	건물내 공공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1	•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한 경우
의무형	환경 친화적 건축물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04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 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중수도 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0.01	• 총 사용수량의 10% 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시 •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 제외
		빗물이용 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0.01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설치
		자연지반 보존	준수시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01	
		신재생 에너지	준수시	기준용적률×0.01	• 건축공사비의 1%이상 투자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시

주1) 굵은글씨 부분은 규제형 인센티브 항목임
주2) 공개공지 사항은 개별필지 건축, 개발시 미준수

▌변경

구분		공간특성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면부	200%	200%
유형1	제3종일반주거지역	간선부, 이면부	230%	250%
유형2	준주거지역	간선부, 이면부	300%	360%

■ 유형1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인센티브 항목 및 기준

구분		세분	세부 계획기준	비고
중점	획지 계획	공동개발(권장), 자율적 공동개발	기준용적률×a	• 2필지:a=0.06, 3필지:a=0.08, 4필지 이상 또는 가구단위: a=0.1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	기준 용적률× (권장용도면적/주차장제외 연면적)×0.1	• 20%이상 설치시(주차장 제외)
		권장용도 (1층)	기준용적률×0.02	• 도로변 1층 벽면길이의 50% 이상 설치시
계획 유도	건축물 용도	특정층(꼭대기 층) 개방	기준용적률×((설치면적)/연면적) ×0.2	•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 한함 • 설치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함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3	
		건축지정선	기준용적률×0.03	• 1층부 벽면이 1/2이상 접할 시
		쌈지형 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a	• a=0.25(필로티), a=0.5(개방형)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a	• a=0.25(필로티), a=0.5(개방형)
	건축물 개방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0.01	•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 (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한 경우
	주차 계획	공동주차통로, 공동주차장	기준용적률 ×0.05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위치가 결정된 곳에 설치시
	건축물 형태	건축물 형태, 재료 및 색채	기준용적률×0.03	• 건축물 형태, 재료 및 색채 준수 시
	보행 및 가로 경관 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지하연결통로 설치 등	기준용적률×0.06	• 건축내부 또는 대지 내 설치 시
		지상 전주 및 전선 지중화	기준용적률×0.06	• 주변도로의 기존 지상 전주 및 전선 (통신케이블 등 포함) 지중화 시
	친환경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참고		

주1) 공개공지 의무대상이 아닌 필지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할 경우, 보행자 이동경로 및 이용이 용이한 위치에 조성시 인센티브 적용 가능
주2) 조경면적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음
주3) 공동개발 지정 필지는 공동개발(권장) 또는 자율적 공동개발 시 1개의 필지로 간주함

■ 유형2 : 준주거지역 인센티브 항목 및 기준

구분		세분	세부 계획기준	비고
중점	획지 계획	공동개발(권장), 자율적 공동개발	기준용적률×a	• 2필지:a=0.12, 3필지:a=0.15, 4필지 이상 또는 가구단위: a=0.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	기준 용적률× (권장용도면적/주차장제외 연면적)×0.1	• 20%이상 설치시(주차장 제외)
		권장용도 (1층)	기준용적률×0.04	• 도로변 1층 벽면길이의 50% 이상 설치시
계획 유도	건축물 용도	특정층(꼭대기 층) 개방	기준용적률×((설치면적)/연면적) ×0.4	•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 한함 • 설치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함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3	
		건축지정선	기준용적률×0.04	• 1층부 벽면이 1/2이상 접할 시
		쌈지형 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a	• a=0.25(필로티), a=0.5(개방형)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a	• a=0.25(필로티), a=0.5(개방형)
	건축물 개방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0.01	•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 (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한 경우
	주차 계획	공동주차통로, 공동주차장	기준용적률 ×0.05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위치가 결정된 곳에 설치시
	건축물 형태	건축물 형태, 재료 및 색채	기준용적률×0.05	• 건축물 형태, 재료 및 색채 준수 시
	보행 및 가로 경관 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지하연결통로 설치 등	기준용적률×0.12	• 건축내부 또는 대지 내 설치 시
		지상 전주 및 전선 지중화	기준용적률×0.12	• 주변도로의 기존 지상 전주 및 전선 (통신케이블 등 포함) 지중화 시
	친환경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참고		

주1) 공개공지 의무대상이 아닌 필지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할 경우, 보행자 이동경로 및 이용이 용이한 위치에 조성시 인센티브 적용 가능
주2) 조경면적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음
주3) 공동개발 지정 필지는 공동개발(권장) 또는 자율적 공동개발 시 1개의 필지로 간주함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항목	세분		산정식	비고
친환경	물환경	빗물 이용시설	기준용적률×0.01 이내	• 빗물저류 · 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이상이 되도록 설치
		중수도	기준용적률×0.01 이내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자연지반	기준용적률×(보존면적 /대지면적)×0.01 이내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옥상녹화	기준용적률×(녹화면적 /대지면적)×0.04 이내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20%까지만 허용
		녹색 주차장, 투수성포장	기준용적률×(설치면적 /대지면적)×0.1 이내	• 기준용적률×0.05 이내
	대기 환경	저공해 자동차	기준용적률×0.04 이내	[주거 : 300세대 이상] •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면수의 2% 이상 전기차충전용 콘센트 설치 시 [비주거 : 연면적 1만㎡ 이상] •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면수의 1% 이상 전기차충전기 설치 시 ※ 의무설치 대상은 제외
		미세먼지 저감장치	기준용적률×0.01 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지역기여시설로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 미세먼지 저감장치 예시 : 그린룸, 기후적응형 벤치, 기후텐트, 공기정화장치 등
	자원 순환	재활용 보관시설	기준용적률×0.01 이내	• 일정지역 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활용5종 분리수거함 보관시설을 대지 내 확보하는 경우 • 의무기준의 120% 이상 설치(의무기준이 없는 경우 최소 9.9㎡이상 설치)
		녹색건축자재	기준용적률×0.01 이내	• 주요 건축부재 6개 중 2개 이상에 녹색건축자재 제품을 해당부재 총사용량의 50% 이상 사용한 경우 - 콘크리트, 골재, 철근, 형강, 단열재, 창호 등 • 사용승인시 자재 사용승인서 제출 • 녹색건축자재란, 환경부에 인증하는 제품을 의미 ① 환경성선언제품 (EPD), ②저탄소자재, ③ 자원순환자재, ④ 유해물질저감자재 등 • 재활용건축자재 인센티브와 중복 적용 불가
	열환경	생태 면적률	기준용적률×(생태면적률 인정면적/대지면적)×0.04 이내	•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은 미적용 • 자연지반, 옥상녹화, 녹색주차장과 중복 적용불가
		냉방부하 저감	기준용적률×0.01 이내	• 거실의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 취득량에 따라 차등 적용 • 차양장치 : 수평 고정형, 외부차양, 수직 고정형 외부차양, 가동형 차양

<table>
<tr><th>항목</th><th colspan="2">세분</th><th>산정식</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table><tr><th>태양열취득량</th><th>가중치</th></tr><tr><td>14W/㎡미만</td><td>1.0</td></tr><tr><td>14~19W/㎡미만</td><td>0.9</td></tr><tr><td>19~24W/㎡미만</td><td>0.8</td></tr><tr><td>24~29W/㎡미만</td><td>0.7</td></tr><tr><td>29~34W/㎡미만</td><td>0.6</td></tr></table></td></tr>
<tr><td></td><td>에너지</td><td>유니버셜디자인
(BF인증)</td><td>기준용적률×0.01 이내</td><td>• 의무대상 : 일반등급 초과시
• 비의무대상 : 일반등급 취득시</td></tr>
</table>

주) 친환경 부문의 ‘주거’, ‘비주거’ 범위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름

다.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1) 건축물 높이

▌기정

구분	도로 폭원	계획내용 (최저층수/최고층수)	비고
건축물의 높 이	간선변 (30~40m)	- / 50m	
	이면부 (8~10m)	- / 35m	

▌변경

구분		계획내용 (최저층수/최고층수)	비고
건축물의 높 이	신월로, 남부순환로 변	- / 70m	존치1~4구역
	중앙로 변	- / 100m	존치5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최고높이 변경	• 유연한 높이계획을 위해 최고높이 계획 변경

라.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1)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기정

구분		위치	제어기준	비고
건축선	건축한계선	간선가로변	3m, 10m	
		이 면 부	2m	

주) 조성 후 공공에게 제공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미관지구 내 제외)
일반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과 전면부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 설치 금지

▌변경

구분		위치	제어기준	비고
건축선	건축한계선	간선가로변	3m	
		이 면 부	2m, 1m	
	건축지정선	이 면 부	1m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건축한계선 조정	• 특별계획구역 해제 및 공동개발 재정비에 따라 건축한계선 조정(2~10m → 1~3m)
건축지정선 설정	• 이면부 필지규모를 고려하고, 통일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지정선 1m 설정

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1층 바닥높이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외벽	• 외벽의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통일성을 유지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된 양질의 재료와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색조 사용 • 폭12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은 노출 금지 (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한 경우는 제외)	

구분		계획내용	비고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 폭 12m이상의 가로에 면한 건축물 1층 전면 벽면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 1층 전면 셔터는 투시형을 사용	
	측면공지 차폐	•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조경식재 • 이때 담, 문, 지하층 출입구 등은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 및 색채를 사용	
	기타 구조물	•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 설치 금지 • 보행로에 면한 건축물의 외벽면은 기계환기설비 및 쓰레기통 등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금지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1층 바닥높이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외벽	• 외벽의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통일성을 유지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된 양질의 재료와 인접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색조 사용 • 폭 8m 이상의 도로에 면한 1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 노출 금지 (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한 경우는 제외)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 폭 8m 이상의 도로에 면한 1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 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 셔터 설치를 지양하되, 셔터 설치 시 1층 전면 셔터는 투시형으로 설치	
	측면공지 차폐	•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 미만이고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조경식재 • 이때 담, 문, 지하층 출입구 등은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 및 색채를 사용	
	옥외 광고물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기타 구조물	•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 설치금지 • 보행로에 면한 건축물의 외벽면은 기계환기설비 및 쓰레기통 등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금지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외벽, 투시벽 및 투시형셔터	• 1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건축물 외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
옥외 광고물 추가	• 가로 경관 향상을 위해 옥외 광고물 지침 추가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가. 대지 내 공지(변경)

▌ 기정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 간선변 가각부 • 특별계획구역	• 대지면적의 5% 이상 조성 • 신정1,2구역내 가로활성화를 위한 위치지정(권장) • 개별건축시 공개공지 미준수	
	쌈지형공지	• 공공보행통로 인접부 • 구역내 주요지점	• 실현성이 미비한 공지 삭제 • 공동개발(자율적 공동개발 포함)로 건축연면적 3,000㎡이상 개발시 조성 • 폭 5m이상, 최소45㎡이상	

주)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쌈지형 공지의 위치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도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에는 공개공지, 쌈지형 공지 중 하나만 선택하여 관련 규정에 의해 설치하여야 함

▌ 변경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대지내 공 지	전면공지	• 건축선 지정 구역	• 건축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신월동 606-23번지, 신정동 1230번지 도로변 전면공지는 차도부속형으로 계획) • 주차장, 통행방해물 등의 설치 지	
	공개공지	• 간선변 가각부	•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조성	

주)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쌈지형 공지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도 개별법에 따른 설치대상일 경우 공개공지, 쌈지형 공지 중 하나만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함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전면공지 조성형태	• 교통영향평가 심의 조치계획에 따라 일부 전면공지를 차도부속형으로 계획
공개공지 위치 변경	• 특별계획구역 해제 및 공동개발 변경, 필지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면부에 배치되었던 공개공지를 간선변으로 이동
쌈지형 공지 삭제	• 특별계획구역 해제 및 공동개발 변경, 필지규모 등을 고려하여 쌈지형 공지 삭제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

나. 대지 내 통로(변경)

▌대지 내 통로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공공보행통로	• 존치관리3구역 간선변 세장비 과다블럭	• 필로티로 조성시 필로티 부분의 높이는 6m이상 • 접하는 보도 및 도로, 인접대지와 단차발생금지 • 담장, 계단, 화단등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처물 설치금지	
변경	공공보행통로	-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공공보행통로 삭제	• 공동개발 해제 및 변경에 따라 차량 진출입을 위해 공공보행통로 폐지

다. 차량동선(변경)

▌기정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 가로변	• 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 불허(대지의 입지상 차량출입 불가피할 경우 허용) • 남부순환도로변은 기존 아파트등 기존건축 진출입을 위한 부분적인 차량허용 • 존치관리 2구역과 촉진1구역 사이 소로1류(B=10m)는 부분적인 차량출입 허용	

주) 간선부 공동개발(권장 및 자율)시 차량출입을 이면부로 제한

▌변경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 가로변	• 도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 불허 • 남부순환도로변은 기존 아파트등 기존건축 진출입을 위한 부분적인 차량허용	
공동주차 출입구	간선 가로변	• 공동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주차진출입은 연접필지와 공동으로 설치 (6m 이상) • 공동개발(권장) 미준수 시, 주차출입구 지정 가능	•2개소

주) 공동개발(권장) 미준수에 따른 주차출입구 지정은 간선도로변 진출입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며, 시행지침에 따라 주차출입구 지정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간선도로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조정	• 특별계획구역 해제 및 공동개발 변경에 따라 간선도로변 차량 진출입불허구간 조정
공동주차 출입구 신설 (2개소)	• 특별계획구역 해제 및 공동개발 변경에 따라 간선도로변 공동주차출입구 및 주차출입구(공동개발 미준수 시) 신설
주차출입구 신설 (간선도로변 진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시행지침 준수)	

라. 친환경적 요소(변경)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옥상녹화	• 각종 구조물들로 인한 경관악화를 완화하고 생태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옥상녹화 권장 • 서울특별시 보급형 옥상녹화조성기법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생태면적률	• 생태면적률은 공간 유형별 면적에 가중치를 곱해 구한 자연순환기능 환산면적을 전체 공간계획 대상지 면적으로 나누어 구한 값으로 산정 • 구역내 생태면적률은 20%이상이 되도록 하며, 개발면적 660㎡ 이상의 공동주택과 공공시설·공공건축물은 30%이상이 되도록 함 • 기타 생태면적률의 기준은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편람』을 준용토록 함	
녹색주차장	• 불투수성 주차장을 잔디 등의 투수성 재료로 개선하여 도심열섬효과 및 지하수의 고갈을 방지하고 녹지공간을 확충,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주차장에 녹색(잔디, 투수성 포장)주차장을 권장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자연지반 보존	• 지하수 및 생태면적확보, 열섬현상 방지를 위한 자연지반 보존을 권장	
옥상녹화	•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2017)’ 등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권장	
벽면녹화	• ‘서울특별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기법’ 등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녹색주차장	• ‘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 등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신·재생 에너지시설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등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생태면적률	• 건축물의 신축 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에 따라 생태면적률 적용 권장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전체항목 및 내용	• 각 분야별로 서울시에서 현재 운영중인 관련 기준 등에 의거하여 계획내용 변경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가. 특별계획구역 해제 및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

1)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해제	특별계획구역1	신월동 548-3번지 일원	4,029.8	감) 4,029.8	-	-
해제	특별계획구역2	신월동 549-4번지 일원	5,393.7	감) 5,393.7	-	
해제	특별계획구역3	신월동 575-17번지 일원	7,861.2	감) 7,861.2	-	
해제	특별계획구역4	신월동 608-1번지 일원	7,243.2	감) 7,243.2	-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해제	특별계획구역5	신정동 1193-5번지 일원	3,700.2	감) 3,700.2	-	
신설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정동 1193-5번지 일원	-	증) 3,162.6	3,162.6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해제	특별계획구역1	신월동 548-3번지 일원	4,029.8	• 지역 여건 및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특별계획구역 해제
해제	특별계획구역2	신월동 549-4번지 일원	5,393.7	
해제	특별계획구역3	신월동 575-17번지 일원	7,861.2	
해제	특별계획구역4	신월동 608-1번지 일원	7,243.2	
해제	특별계획구역5	신정동 1193-5번지 일원	3,700.2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신설)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신설 사유
해제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정동 1193-5번지 일원	3,162.6	• 지역 여건 조사 및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장기 미시행된 기존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효율적인 사업유도 및 관리방안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을 통해 관리코자 함

주) 특별계획가능구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신청이 없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특별계획구역 가능지에 대한 효력은 잃으며, 이 경우 일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행위 가능. 단, 주민요청(대상토지의 1/2 이상 동의) 및 입안권자(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2년 이내(총 5년 범위 이내)에서 효력기간 연장 가능

주) 특별계획가능구역의 효력이 상실하는 경우 결정조서를 참조하여 운영

2)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

▌특별계획구역(1) ~ (5) 해제

■ 기정 _ 특별계획구역(1)~(2) 계획지침

구분		계획지표	비고
공공시설	도 로	• 확폭(2m), 건축한계선 활용	
건축물 용 도	권 장	• 판매시설 중 연면적이 2,000㎡이상 • 업무시설 중 연면적이 2,000㎡이상	
	불 허	• 단독주택(주상복합제외), 공동주택(주상복합건축물중 비주거용도는 건축물의 3개층이상, 주거비율이 용적률 60%이하인 경우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물 밀 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준주거 유지)	• 기준용적률 : 300%이하 • 허용용적률 : 400%이하	
건축물 배치		• 저층부는 판매시설 유도(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한 연도형상가)	신정1구역 일조장애 최소
건축물 높이		• 최고높이 지정(-/50m)	세부계획수립시높이변경 가능
기타사항	건축한계선	• 건축선지정 : 건축한계선 3m(간선변), 2m(이면부)	
	대지내 공지	• 이면부 쌈지형 공지 확보	
	기 타	• 간선변 및 공원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특별계획구역 구분 또는 합동으로 사업추진 및 계획수립 가능 • 관련 법규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근 지역과 별도 정비사업 가능	

주) 공공시설(공원, 도로)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
향후 공원, 녹지는 세대당 3㎡ 또는 구역면적 5%이상 중 큰 면적 적용

■ 기정 _ 특별계획구역(3) 계획지침

구분		계획지표	비고
공공시설	도 로	• 확폭(2m), 건축한계선 활용	
	공 원	• A=2,040㎡확보, 촉진1구역 소공원과 연계	
건축물 용 도	권 장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연면적이 1,000㎡이상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불 허	• 단독주택(주상복합제외), 공동주택(주상복합건축물중 비주거용도는 건축물의 3개층이상, 주거비율이 용적률 60%이하인 경우 제외) •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창고시설	

구분		계획지표	비고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물 높이		• 최고높이 지정(-/50m)	세부계획수립시높이변경 가능
건축물 밀 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300%이하 • 허용용적률 : 400%이하	세부계획시 준주거상향
기타사항	건축한계선	• 건축선지정 : 건축한계선 3m(간선변), 2m(이면부)	
	대지내 공지	• 위치 권장 및 대지면적의 5%이상 조성 (공개공지 확보)	
	기 타	• 간선변 및 공원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특별계획구역 구분 또는 합동으로 사업추진 및 계획수립 가능 • 관련 법규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근 지역과 별도 정비사업 추진 가능(재래시장 및 상점 육성가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유도)	

주) 공공시설(공원, 도로)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
향후 공원, 녹지는 세대당 3㎡ 또는 구역면적 5%이상 중 큰 면적 적용

■ 기정 _ 특별계획구역(4) 계획지침

구분		계획지표	비고
공공시설	도 로	• 확폭(2m), 건축한계선 활용	
	공공청사	• A=2714㎡확보 (기존 신월2동 치안센터 이전)	
건축물 용 도	권 장	• 판매시설, 영업시설 중 연면적이 1,000㎡이상 • 노유자시설	
	불 허	• 단독주택(주상복합제외), 공동주택(주상복합건축물중 비주거용도는 건축물의 3개층이상, 주거비율이 용적률 60%이하인 경우 제외) •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물 높이		• 최고높이 지정(간선변: -/50m, 이면부: -/35m)	세부계획수립시 높이변경 가능
건축물 밀 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300%이하 • 허용용적률 : 400%이하 (공공청사(기준/허용)-170%/200% : 용도지역 존치)	세부계획시 준주거상향

구분		계획지표	비고
기타사항	건축한계선	• 건축선지정 : 건축한계선 3m(간선변), 2m(이면부)	
	대지내 공지	• 위치 권장 및 대지면적의 5%이상 조성 (공개공지 확보)	
	기 타	• 간선변 및 공원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특별계획구역 구분 또는 합동으로 사업추진 및 계획수립 가능 • 관련 법규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파트와 공동사업 추진	

주) 향후 공원, 녹지는 세대당 3㎡ 또는 구역면적 5%이상 중 큰 면적 적용

■ 기정 _ 특별계획구역(5) 계획지침

구분		계획지표	비고
공공시설	도 로	• 확폭(2m), 건축한계선 활용	
건축물 용 도	권 장	• 판매시설, 영업시설 중 연면적이 1,000㎡이상 • 노유자시설	
	불 허	• 단독주택(주상복합제외), 공동주택(주상복합건축물중 판매, 업무시설은 건축물의 3개층이상, 주거비율이 용적률 60%이하인 경우 제외) •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물 높이		• 최고높이 지정(간선변: -/50m, 이면부: -/35m)	세부계획수립시 높이변경 가능
건축물 밀 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300%이하 • 허용용적률 : 400%이하	세부계획시 준주거상향
기타사항	건축한계선	• 건축선지정 : 건축한계선 3m(간선변), 2m(이면부)	
	대지내 공지	• 위치 권장 및 대지면적의 5%이상 조성 (공개공지 확보)	
	기 타	• 간선변 및 공원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특별계획구역 구분 또는 합동으로 사업추진 및 계획수립 가능 • 관련 법규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파트와 공동사업 추진	

주) 향후 공원, 녹지는 세대당 3㎡ 또는 구역면적 5%이상 중 큰 면적 적용

3) 특별계획구역 신설에 관한 사항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

■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

구분		계획지표		비고
		지침1(통합개발)	지침2(분리시행)	
구역면적		• 3,162.6㎡	• 1-1구역 : 947.6㎡ / 1-2구역 : 2,215.0㎡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준주거지역 변경 검토)	•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용도·밀도·높이	권 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독서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판매시설		
	불 허	•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중 주거비율이 용적률 90% 이하인 경우 제외) •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1-1구역 -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중 주거비율이 용적률 90% 이하인 경우 제외) - 그 외 불허용도 좌동 동일 •1-2구역 -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건폐율	• 60%이하	• 50%이하	
	용적률	• 기준250%/ 허용350%/ 상한400%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공기여시	• 기준230%/ 허용250%/ 상한α	
	높이	• 최고높이 : 70m 이하(공항고도 제한 준수)	• 최고높이 : 70m 이하(공항고도 제한 준수)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계획지침	• 기부채납 : 15% 이상 - 도로 및 건축물(공공주택 및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	
기타 사항	건축선	• 건축한계선 3m(간선변), 2m(이면부)/ 건축지정선 1m(이면부)		
	기 타	• 간선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관련 법규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근 지역과 별도 정비사업 추진 가능 • 특별계획가능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에 관한 구체적 조성계획 및 도입용도는 서울시 통합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함		

▌특별계획가능구역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내용

■ 특별계획가능구역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검토 - 지침1(통합개발)

구분		세분	세부 계획기준	비고
중점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	기준 용적률× (권장용도면적/주차장제외 연면적)×0.4	• 20%이상 설치시(주차장 제외)
		권장용도 (1층)	기준용적률×0.15	• 도로변 1층 벽면길이의 50% 이상 설치시
계획 유도	건축물 용도	특정층(꼭대기 층) 개방	기준용적률×((설치면적)/연면적) ×0.5	•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 한함 • 설치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함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1	
		건축지정선	기준용적률×0.1	• 1층부 벽면이 1/2이상 접할 시
		쌈지형 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a	• a=0.25(필로티), a=0.5(개방형)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a	• a=0.25(필로티), a=0.5(개방형)
	건축물 개방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0.01	•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한 경우
	건축물 형태	건축물 형태, 재료 및 색채	기준용적률×0.05	• 건축물 형태, 재료 및 색채 준수 시
	보행 및 가로 경관 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지하연결통로 설치 등	기준용적률×0.15	• 건축내부 또는 대지 내 설치 시
		지상 전주 및 전선 지중화	기준용적률×0.15	• 주변도로의 기존 지상 전주 및 전선 (통신케이블 등 포함) 지중화 시
	친환경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참고		

주1) 공개공지 의무대상이 아닌 필지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할 경우, 보행자 이동경로 및 이용이 용이한 위치에 조성시 인센티브 적용 가능
주2) 조경면적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음
주3) 공동개발 지정 필지는 공동개발(권장) 또는 자율적 공동개발 시 1개의 필지로 간주함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항목	세분		산정식	비고
친환경	물환경	빗물 이용시설	기준용적률×0.01 이내	• 빗물저류 · 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이상이 되도록 설치
		중수도	기준용적률×0.01 이내	•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자연지반	기준용적률×(보존면적 /대지면적)×0.01 이내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옥상녹화	기준용적률×(녹화면적 /대지면적)×0.04 이내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20%까지만 허용
		녹색 주차장, 투수성포장	기준용적률×(설치면적 /대지면적)×0.1 이내	• 기준용적률×0.05 이내
	대기 환경	저공해 자동차	기준용적률×0.04 이내	[주거 : 300세대 이상] •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면수의 2% 이상 전기차충전용 콘센트 설치 시 [비주거 : 연면적 1만㎡ 이상] •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면수의 1% 이상 전기차충전기 설치 시 ※ 의무설치 대상은 제외
		미세먼지 저감장치	기준용적률×0.01 이내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지역기여시설로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 미세먼지 저감장치 예시 : 그린룸, 기후적응형 벤치, 기후텐트, 공기정화장치 등
	자원 순환	재활용 보관시설	기준용적률×0.01 이내	• 일정지역 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활용5종 분리수거함 보관시설을 대지 내 확보하는 경우 • 의무기준의 120% 이상 설치(의무기준이 없는 경우 최소 9.9㎡이상 설치)
		녹색건축자재	기준용적률×0.01 이내	• 주요 건축부재 6개 중 2개 이상에 녹색건축자재 제품을 해당부재 총사용량의 50% 이상 사용한 경우 - 콘크리트, 골재, 철근, 형강, 단열재, 창호 등 • 사용승인시 자재 사용승인서 제출 • 녹색건축자재란, 환경부에 인증하는 제품을 의미 ① 환경성선언제품 (EPD), ②저탄소자재, ③ 자원순환자재, ④ 유해물질저감자재 등 • 재활용건축자재 인센티브와 중복 적용 불가
	열환경	생태 면적률	기준용적률×(생태면적률 인정면적/대지면적)×0.04 이내	•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은 미적용 • 자연지반, 옥상녹화, 녹색주차장과 중복 적용불가
		냉방부하 저감	기준용적률×0.01 이내	• 거실의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 취등량에 따라 차등 적용 • 차양장치 : 수평 고정형, 외부차양, 수직 고정형 외부차양, 가동형 차양

<table>
<tr><th>항목</th><th colspan="2">세부</th><th>산정식</th><th>비고</th></tr>
<tr><td></td><td></td><td></td><td></td><td>
<table>
<tr><th>태양열취득량</th><th>가중치</th></tr>
<tr><td>14W/㎡미만</td><td>1.0</td></tr>
<tr><td>14~19W/㎡미만</td><td>0.9</td></tr>
<tr><td>19~24W/㎡미만</td><td>0.8</td></tr>
<tr><td>24~29W/㎡미만</td><td>0.7</td></tr>
<tr><td>29~34W/㎡미만</td><td>0.6</td></tr>
</table>
</td></tr>
<tr><td></td><td>에너지</td><td>유니버셜디자인
(BF인증)</td><td>기준용적률×0.01 이내</td><td>• 의무대상 : 일반등급 초과시
• 비의무대상 : 일반등급 취득시</td></tr>
</table>

주) 친환경 부문의 '주거', '비주거' 범위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름

■ 특별계획가능구역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검토 - 지침2(분리시행) 1-1BL

구분		세분	세부 계획기준	비고
중점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	기준 용적률× (권장용도면적/주차장제외 연면적)×0.2	• 20%이상 설치시(주차장 제외)
		권장용도 (1층)	기준용적률×0.035	• 도로변 1층 벽면길이의 50% 이상 설치시
계획 유도	건축물 용도	특정층(꼭대기 층) 개방	기준용적률×(설치면적/연면적) ×0.2	•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 한함 • 설치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함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3	
		쌈지형 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a	• a=0.25(필로티), a=0.5(개방형)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a	• a=0.25(필로티), a=0.5(개방형)
	건축물 개방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0.01	•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한 경우

구분		세분	세부 계획기준	비고
	건축물 형태	건축물 형태, 재료 및 색채	기준용적률×0.03	• 건축물 형태, 재료 및 색채 준수 시
	보행 및 가로 경관 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지하연결통로 설치 등	기준용적률×0.06	• 건축내부 또는 대지 내 설치 시
		지상 전주 및 전선 지중화	기준용적률×0.06	• 주변도로의 기존 지상 전주 및 전선 (통신케이블 등 포함) 지중화 시
	친환경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참고		

주1) 공개공지 의무대상이 아닌 필지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할 경우, 보행자 이동경로 및 이용이 용이한 위치에 조성시 인센티브 적용 가능
주2) 조경면적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음
주3) 공동개발 지정 필지는 공동개발(권장) 또는 자율적 공동개발 시 1개의 필지로 간주함

■ 특별계획가능구역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검토 - 지침2(분리시행) 1-2BL

구분		세분	세부 계획기준	비고
중점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	기준 용적률× (권장용도면적/주차장제외 연면적)×0.2	• 20%이상 설치시(주차장 제외)
		권장용도 (1층)	기준용적률×0.035	• 도로변 1층 벽면길이의 50% 이상 설치시
계획 유도	건축물 용도	특정층(꼭대기 층) 개방	기준용적률×(설치면적/연면적) ×0.2	•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 한함 • 설치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함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3	
		건축지정선	기준용적률×0.03	• 1층부 벽면이 1/2이상 접할 시

구분		세분	세부 계획기준	비고
		쌈지형 공지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a	• a=0.25(필로티), a=0.5(개방형)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a	• a=0.25(필로티), a=0.5(개방형)
	건축물 개방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용적률×0.01	•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한 경우
	건축물 형태	건축물 형태, 재료 및 색채	기준용적률×0.03	• 건축물 형태, 재료 및 색채 준수 시
	보행 및 가로 경관 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지하연결통로 설치 등	기준용적률×0.06	• 건축내부 또는 대지 내 설치 시
		지상 전주 및 전선 지중화	기준용적률×0.06	• 주변도로의 기존 지상 전주 및 전선(통신케이블 등 포함) 지중화 시
	친환경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참고		

주1) 공개공지 의무대상이 아닌 필지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할 경우, 보행자 이동경로 및 이용이 용이한 위치에 조성시 인센티브 적용 가능
주2) 조경면적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음
주3) 공동개발 지정 필지는 공동개발(권장) 또는 자율적 공동개발 시 1개의 필지로 간주함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필지의 규모와 조성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기정			변경		
			위치	면적(㎡)	획지계획	위치	면적(㎡)	획지계획
존치관리 4구역	4-6	3,162.6	신정동 1193-4	357.8	•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정동 1193-4	357.8	•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정동 1193-5	191.6		신정동 1193-5	191.6	•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정동 1193-6	142.8		신정동 1193-6	142.8	•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정동 1193-7	134.4		신정동 1193-7	134.4	•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기정			변경		
			위치	면적(㎡)	획지계획	위치	면적(㎡)	획지계획
			신정동 1193-8	138.2		신정동 1193-8	138.2	• 공동개발 지정 :신월동 1193-27,10,9
			신정동 1193-9	101.4		신정동 1193-9	101.4	• 공동개발 지정 :신월동 1193-27,10,8
			신정동 1193-10	160.2		신정동 1193-10	160.2	• 공동개발 지정 :신월동 1193-27,9,8
			신정동 1193-12	150.0		신정동 1193-12	150.0	•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정동 1193-13	138.7		신정동 1193-13	138.7	•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정동 1193-14	137.3		신정동 1193-14	137.3	•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정동 1193-15	144.5		신정동 1193-15	144.5	•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정동 1193-16	144.3		신정동 1193-16	144.3	•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정동 1193-17	133.1		신정동 1193-17	133.1	•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정동 1193-18	300.1		신정동 1193-18	300.1	•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정동 1193-19	166.5		신정동 1193-19	166.5	•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정동 1193-21	281.7		신정동 1193-21	281.7	•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정동 1193-24	239.3		신정동 1193-24	239.3	•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정동 1193-25	68.8		신정동 1193-25	68.8	•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
			신정동 1193-27	31.9		신정동 1193-27	31.9	• 공동개발 지정 :신월동 1193-10,9,8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1)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1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제4항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9호(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 구역 내 공동개발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 대지안의 공지(공개공지, 쌈지형 공지)의 위치변경 및 조성방법의 변경
-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 차량출입구 지정 및 그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 통로의 성격, 설계계획(보행자 및 차량전용 통로의 위치변경 및 신규설치)

6. 2023년 제10차(2023.11.21.)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 수정가결

7. 관계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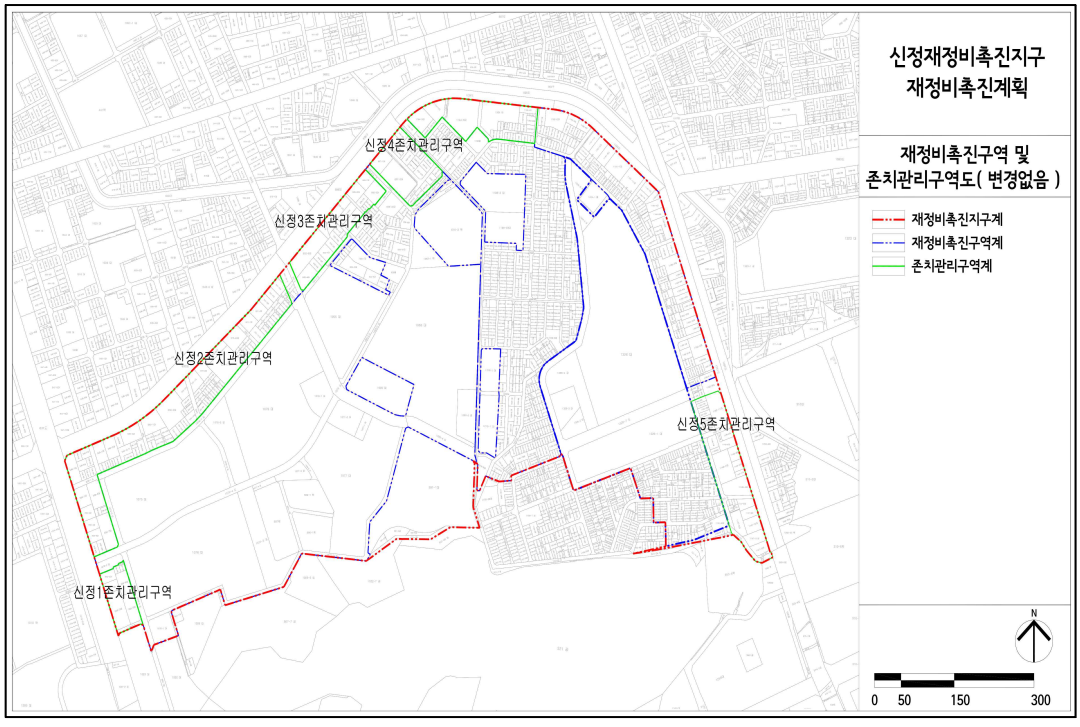
1)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도 (변경없음)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도 (기정/변경)
4)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기정/변경)
5) 지구단위계획 종합지침도 (기정/변경)

8. 결정(변경)도서 :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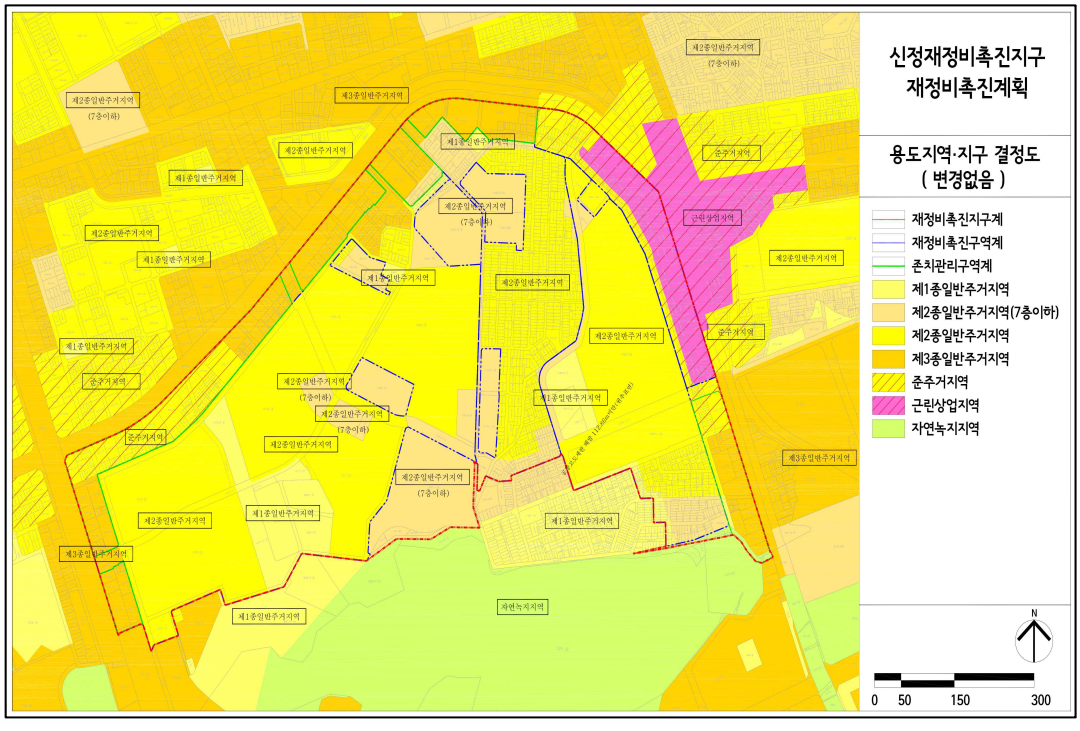
9.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28), 양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02-2620-3516)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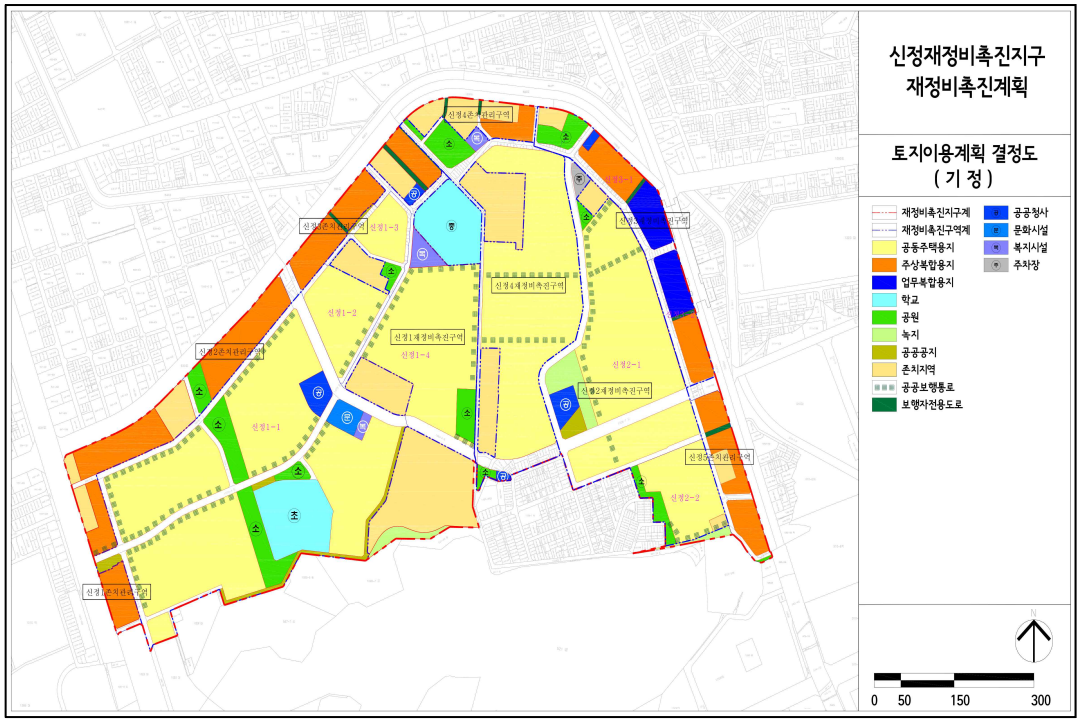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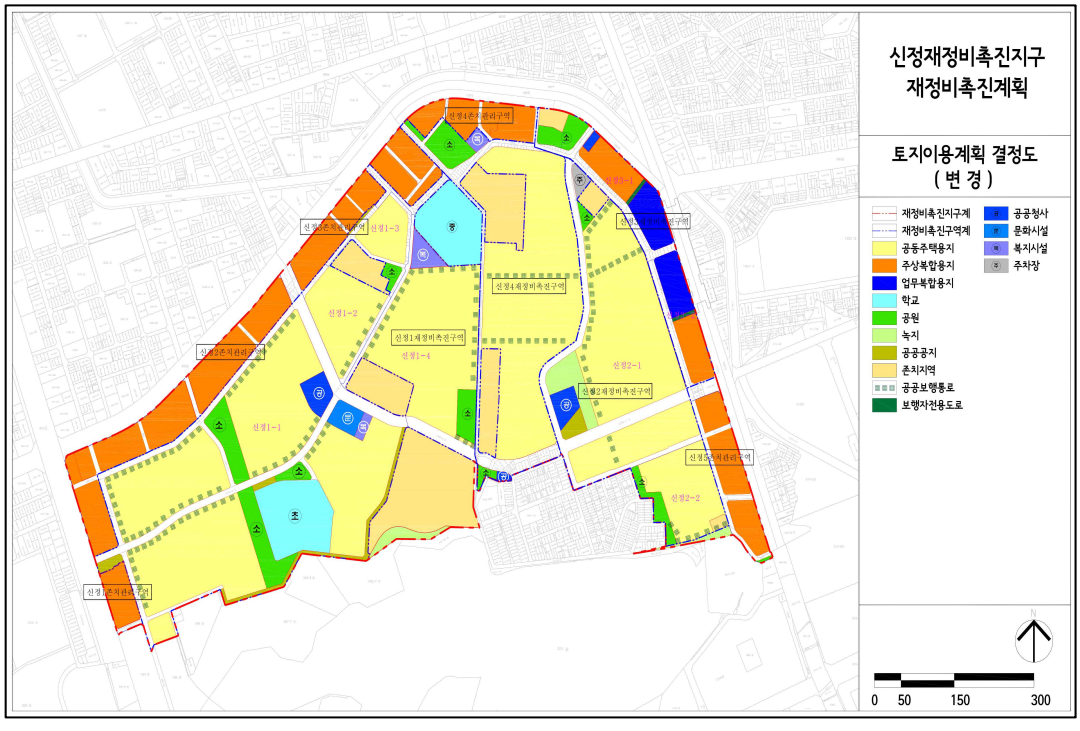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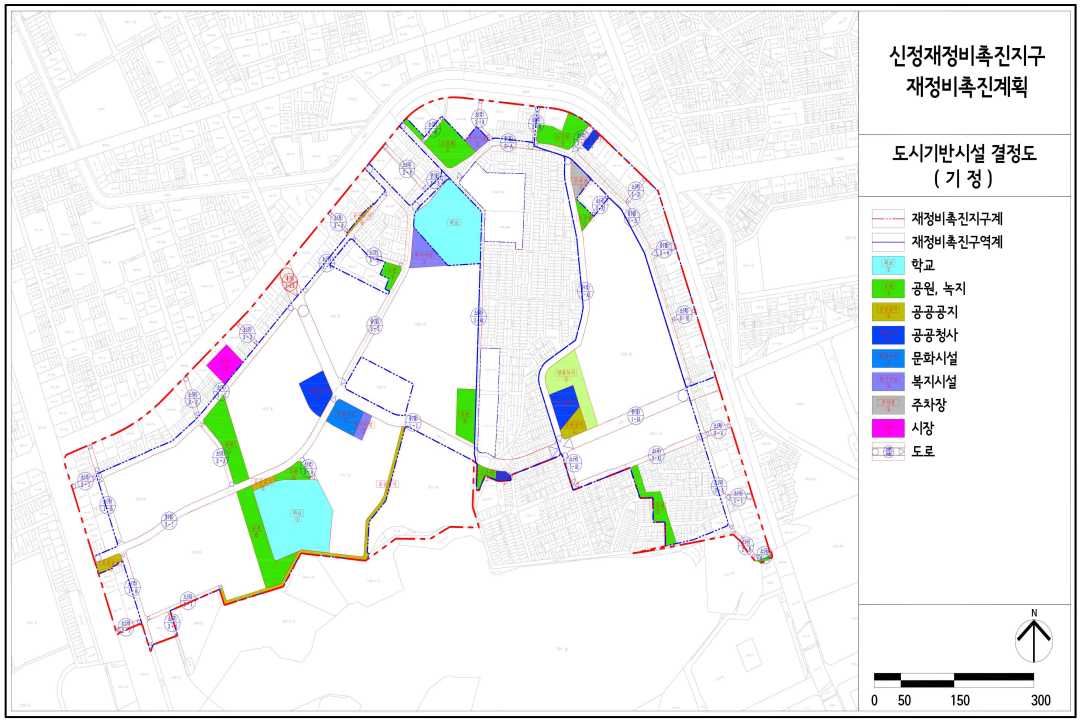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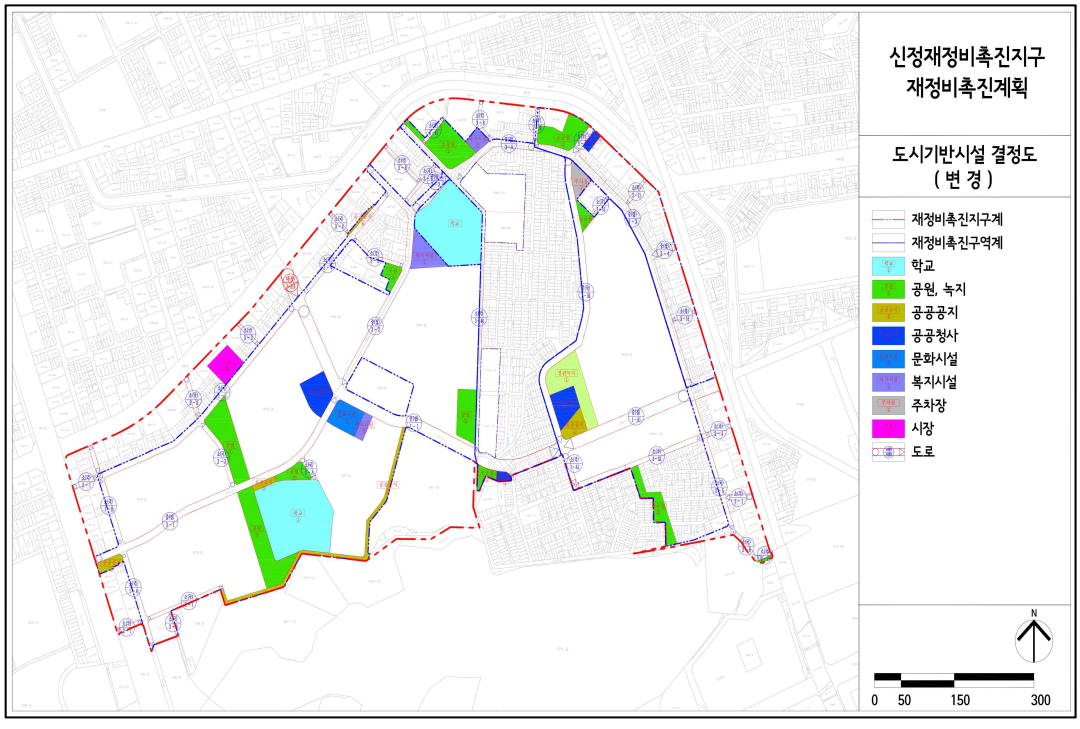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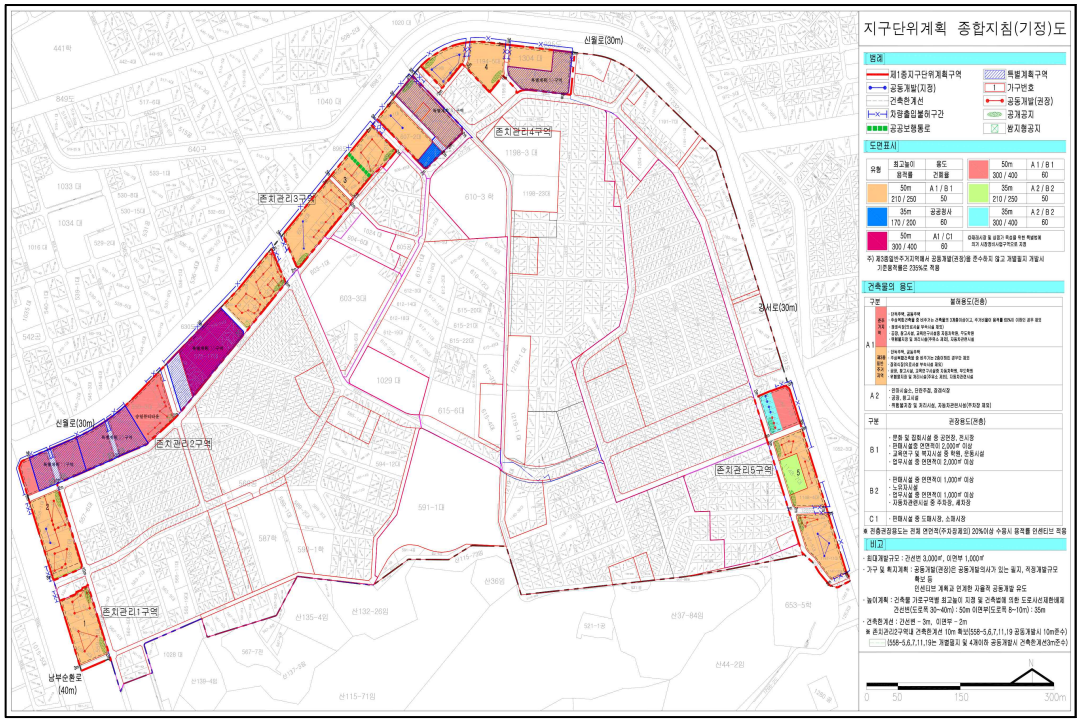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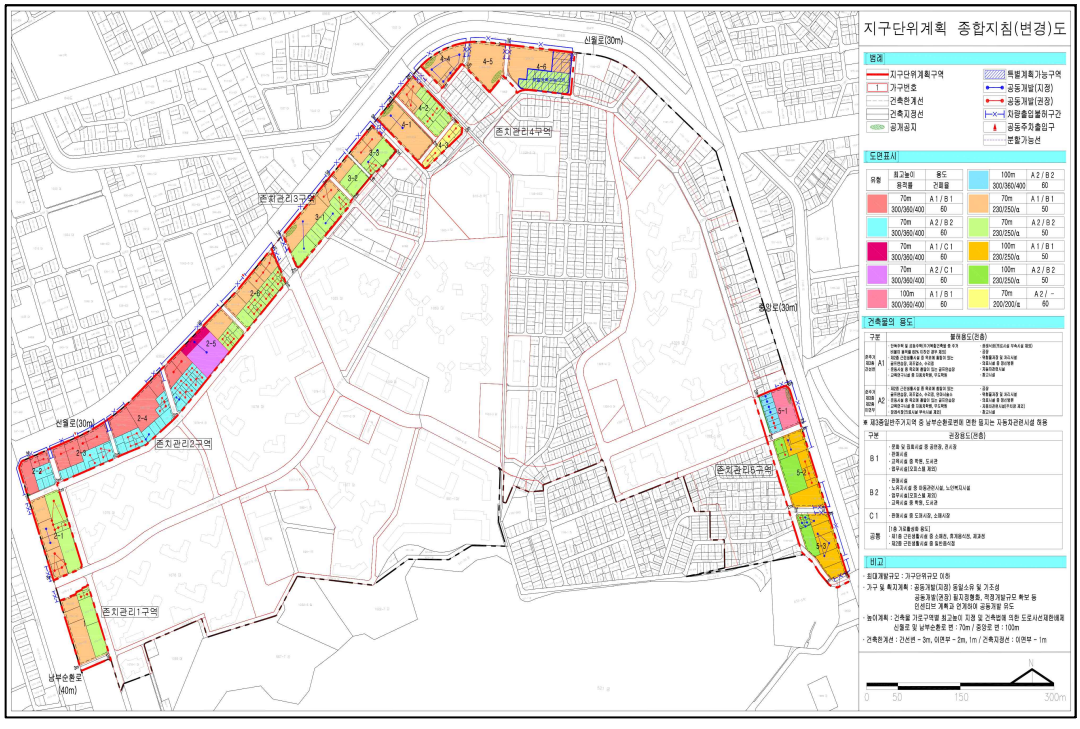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변경)



■ 지구단위계획 종합지침도(기정)



■ 지구단위계획 종합지침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08호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등 보행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을 위하여 같은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보행환경개선지구 : 2개소

연번	자치구	위 치	지구면적	지구 지정 기준	지정연도
1	송파구	석촌호수로 일대	31,150㎡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024
2	관악구	남현1길 일대	22,110㎡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위치도(축척 없음) : 따로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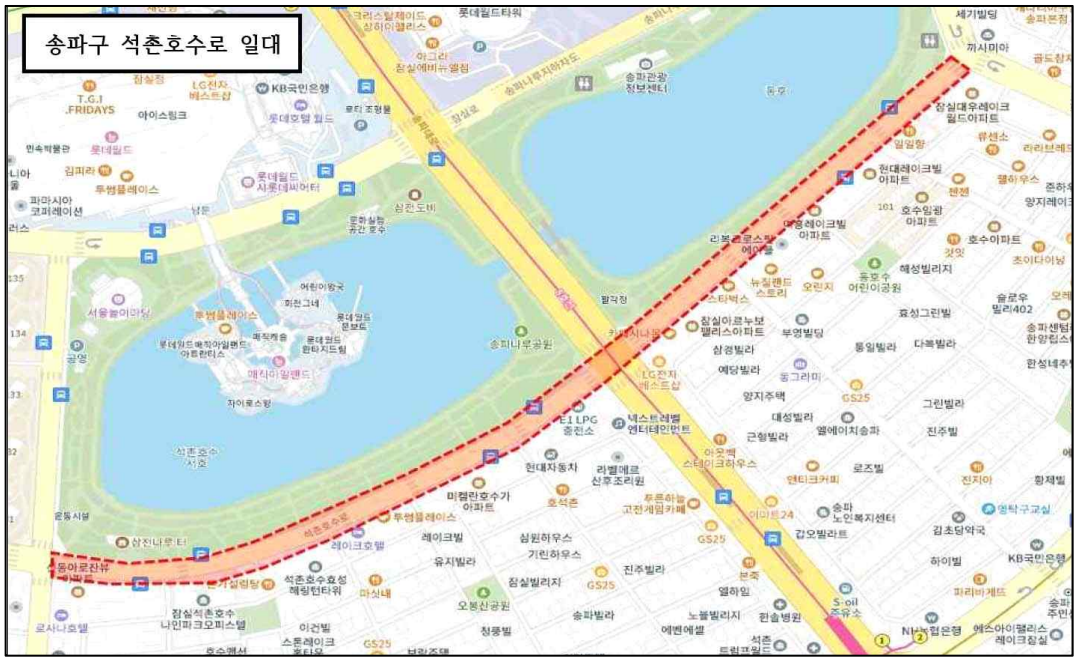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02-2133-24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행환경개선지구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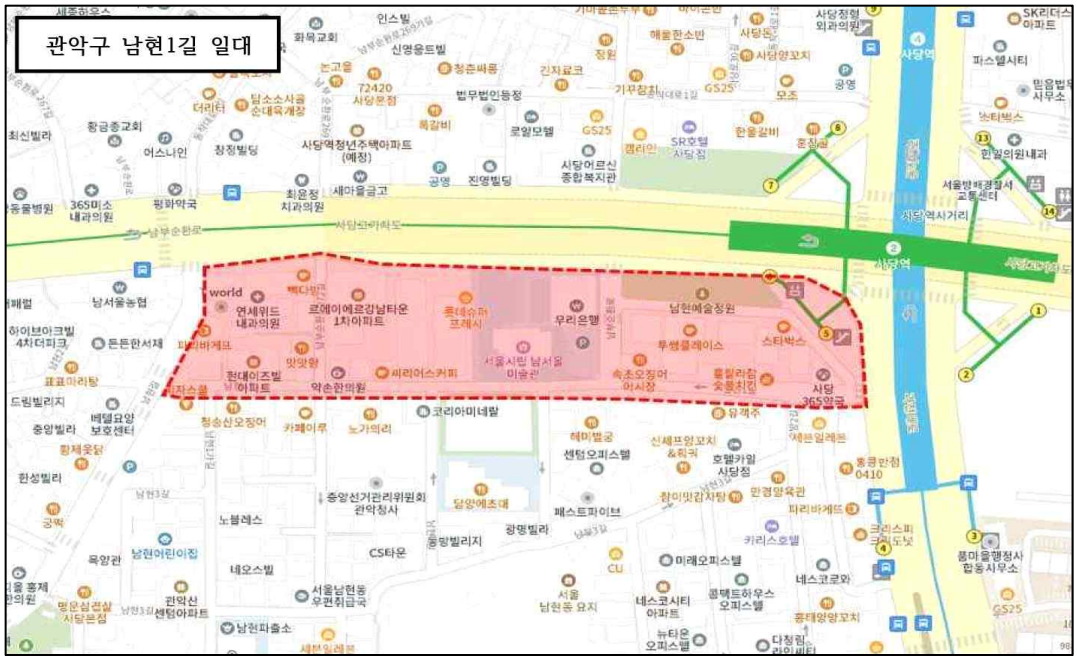
위 치 도

▢ 보행환경개선지구

① 송파구 석촌호수로 일대



② 관악구 남현1길 일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09호

도시철도 역명 개정 확정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역명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철도 역명 개정(1개역)

구 분	대상역명	위 치	고시역명
개정	7호선 뚝섬유원지	광진구 능동로 10 일대	자양(뚝섬한강공원)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10호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장위10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96호(2007.06.2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11호(2008.04.0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45호(2009.04.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2호(2010.04.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1호(2010.09.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4호(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7호(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2호(2011.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31호(2011.0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44호(2011.0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90호(2011.09.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4호(2012.02.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8호(2012.0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69호(2012.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호(2013.0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5호(2013.04.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1호(2013.05.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01호(2013.09.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73호(2014.07.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27호(2014.09.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06호(2014.11.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08호(2015.04.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2호(2015.05.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20호(2015.10.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73호(2016.03.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9호(2016.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82호(2017.10.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7호(2019.0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88호(2019.03.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0호(2019.0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99호(2020.03.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49호(2020.04.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14호(2020.05.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13호(2020.07.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25호(2020.07.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76호(2020.12.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02호(2021.02.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54호(2021.06.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06호(2021.07.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02호(2022.07.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56호(2022.0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6호(2023.02.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70호(2023.03.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07호(2023.07.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80호(2023.12.2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합니다.
2.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장위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성북구 장위동 일원	1,127,246.7	증) 43.0	1,127,289.7	-

※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1호(2008.4.3.) 당시 미반영된 장위초등학교 현황면적 반영

2.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총 계				1,127,246.7	증) 43.0	1,127,289.7	
촉진구역	소 계 (11개 구역)			1,051,987.8	감) 2,675.0	1,049,312.8	
	장위1구역	장위동 144-24 일원		80,316.6	-	80,316.6	
	장위2구역	장위동 290-9 일원		25,344.0	-	25,344.0	
	장위3구역	장위동 305 일원		66,011.0	-	66,011.0	
	장위4구역	장위동 62-1 일원		153,501.0	-	153,501.0	
	장위5구역	장위동 173-114 일원		88,765.7	-	88,765.7	
	장위6구역	장위동 25-55 일원		105,136.9	-	105,136.9	
	장위7구역	장위동 189-3 일원		87,635.6	-	87,635.6	
	장위8구역	장위동 85 일원		121,634.0	-	121,634.0	
	장위9구역	장위동 238-83 일원		84,248.0	-	84,248.0	
	장위10구역	장위동 68-37 일원		94,037.0	감) 2,675.0	91,362.0	
	장위14구역	장위동 233-552 일원		145,358.0	-	145,358.0	
존치지역	존치관리구역	소 계		75,258.9	증) 2,718.0	77,976.9	
		존치구역	존치시설	75,258.9	증) 2,718.0	77,976.9	

※ 변경사유 : 장위10구역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 (종교시설용지 제척 및 장위초등학교 선형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1호(2008.4.3.) 당시 미반영된 장위초등학교 현황면적 반영

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장위10구역)

구분	재정비촉진 사업 명칭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기정	장위10구역	성북구 장위동 68-37일대	94,037.0	감) 2,675.0	91,362.0	-

※ 변경사유 : 장위10구역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 (종교시설용지 제척 및 장위초등학교 선형 변경)

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구역 내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추산액 - 총 추정 사업비)/분양대상자의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X 100(%) • 추정비례율 : 102.53% - [(1,260,717,012,687원-1,121,510,105,951원)/135,778,363,245원] X 100(%) = 102.53% • 구역 내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추산액 : 1,264,269,439,314원 • 총 추정 사업비 : 1,121,510,105,951원 • 분양대상자의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 135,778,363,245원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인가번호 2013-장위10-4)일인 2013년 7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가람감정평가법인 및 중앙감정평가법인이 2016년에 실시한 종전자산감정평가에 따름. (단, 장위동 74-44, 74-231, 74-352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가람감정평가법인 및 중앙감정평가법인이 2018년 4월 24일 조합에 통지한 재감정평가액에 따름)			
추정 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전용면적 45㎡형	255,000,000원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102.53%)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 추정 권리가액(B) (+ : 부담금, - : 환급금)
	전용면적 59㎡형	330,000,000원		
	전용면적 74㎡형	389,000,000원		
	전용면적 84㎡형	432,000,000원		
	전용면적 101㎡형	482,000,000원		
	전용면적 114㎡형	652,000,000원		

※ 종전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등 사업진행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장위10구역)

구분	명칭	면 적(㎡)			비율(%)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합 계		94,037.0	감) 2,675.0	91,362.0	100.0	-

구분	명칭	면 적(㎡)			비율(%)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17,823.0	증) 1,746.0	19,569.0	21.4	-
	도 로	9,916.0	증) 1,166.0	11,082.0	12.1	-
	공 원	6,012.0	-	6,012.0	6.6	-
	학 교	480.0	증) 580.0	1,060.0	1.2	-
	공공청사	1,415.0	-	1,415.0	1.5	-
택지(획지)	소 계	76,214.0	감) 4,421.0	71,793.0	78.6	-
	10-1	73,140.0	감) 2,838.0	70,302.0	77.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0-2	2,429.0	감) 2,429.0	-	-	종교시설 제척
	10-3	645.0	-	645.0	0.7	종교시설
	10-4	-	증) 225.0	225.0	0.2	획지
	10-5	-	증) 320.0	320.0	0.4	
	10-6	-	증) 205.0	205.0	0.2	
	10-7	-	증) 96.0	96.0	0.1	

※ 변경사유 : 장위10구역 구역경계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 (종교시설용지 제척 및 장위초등학교 선형 변경)
※ 학교부지 정형화에 따른 구역계 조정으로 구역 내 학교 편입 면적 변경
- 전체 편입면적 : 1,060㎡ (기부채납 면적 : 480㎡ / 대토부지 면적 : 580㎡)

라.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장위10구역)

구분		면 적(㎡)			비율(%)
		기 정	증 · 감	변 경	
합 계		94,037.0	감) 2,675.0	91,362.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94,037.0	감) 2,675.0	91,362.0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장위10 재정비촉진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감) 2,675.0㎡	•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 - 제척되는 토지는 기존 용도지역으로 환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마.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장위10구역)

1)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A	20 ~26.5	보조 간선	1,348 (250)	장위동 64-89	장위동 310-22	일반 도로	-	총고시722 (36.12.26.)	돌곶이로
기정	중로	1	514	20	집산 도로	396	장위동 238-238	장위동 74-54	일반 도로	-	서고시111 (08.04.03.)	장위로
기정	중로	3	A	13	집산 도로	140	장위동 68-77	장위동 69-49	일반 도로	-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변경	중로	3	A	15	집산 도로	140	장위동 68-77	장위동 69-49	일반 도로	-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기정	소로	1	B	10	국지 도로	270	장위동 68-63	장위동 68-1110	일반 도로	-	서고시240 (19.07.25.)	
기정	중로	3	-	12 ~15	집산 도로	651	장위동 238-534	상월곡동 35-7	일반 도로	-	서고시111 (08.04.03.)	장월로
신설	소로	2	D	6	국지 도로	189	장위동 68-1320	장위동 74-223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C	4	국지 도로	162	장위동 68-39	장위동 74-208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A	중로 3-A	• 도로 폭원 변경 - 13m → 15m	• 유턴차로 확보를 위한 도로 폭원 확폭
-	소로 2-D	• 도로 신설 - 폭원 : 6m	• 종교시설용지(사랑제일교회) 제척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	소로 3-C	• 도로 신설 - 폭원 : 4m	• 종교시설용지(사랑제일교회) 이면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폐지	A	주차장	장위동 239-229일대	6,012.0	감) 6,012.0	-	서고시240 (19.07.25.)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주차장	• 폐지	• 주변 개발현황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공원 하부 주차장 폐지

3)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기정	A	-	어린이 공원	장위동 238-229일대	6,012.0	-	6,012.0	서고시240 (19.07.25.)	-
변경			문화 공원	장위동 69-36일대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문화공원	• 시설의 종류 변경 - 어린이공원 → 문화공원 • 위치 변경 - 위치 : 장위동 238-229 일대 → 장위동 69-36 일대	• 상위계획(예술문화가로)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을 위한 도서관확보 등 통합문화공원 조성 • 토지이용계획 변경(종교시설 제척)에 따른 돌곶이로변으로 공원위치 변경 • 공원 내 도서관(교양시설) 확보 - 연면적 : 3,530㎡

※ 연면적은 향후 부지가액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기정	A	장위2동 주민센터	공공청사	장위동 68-1355일대	1,007.0	증) 408.0	1,415.0	서고시240 (19.07.25.)	-
변경				장위동 69-53일대					
폐지	B	공공청사	공공청사	장위동 68-942일대	408.0	감) 408.0	-	서고시240 (19.07.25.)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장위2동 주민센터	공공청사	• 위치변경 - 위치 : 장위동 68-1335일대 → 장위동 69-53일대	• 토지이용계획 변경(종교시설 제척) 에 따른 공공청사 위치 변경 및 공공청사B 통합배치
B	공공청사	공공청사	• 폐지	•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공공청사A와의 통합배치

5)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	장위 초등학교	학교	장위동 68-8	15,784.0 (480.0)	증) 43.0	15,827.0 (1,060.0)	시교위고시5 (87.02.17.)	학교 선형변경 (정형화)

※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1호(2008.4.3.) 당시 미반영된 장위초등학교 현황면적 반영
※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10구역 내 면적을 의미함
※ 장위10구역 내 학교 편입면적 : 1,060㎡ (기부채납 면적 : 480㎡ / 대토부지 면적 : 580㎡)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	장위 초등학교	학교	• 현황면적 반영 - 면적 : 증)43.0㎡ • 장위초등학교부지 선형조정	• 고시면적과 편입토지조서 면적 오차 정정 • 학교부지 정형화를 위해 장위10구역과 대토 진행 (면적:580㎡)

바.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구분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공동이용시설	관리사무소 등	장위동 68-37 일대	474.98	감) 233.85	241.13	-
	주민공동시설		1,589.54	증) 4,081.90	5,671.44	-
	문고, 독서실 등		556.16	감) 179.67	376.49	-
	경로당		250.32	증) 269.68	520.00	-
	보육시설		879.54	증) 11.16	890.70	-
	주민운동시설		1,428.42	감) 50.80	1,479.22	-
	어린이놀이터		2,205.36	증) 5.80	2,211.16	-
	다함께돌봄센터		-	증) 150.00	150.00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사.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1)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장위 10구역	94,037.0	장위동 68-37일대	453	-	-	453	-	-
변경		91,362.0		449	-	-	449	-	-

※ 변경사유 : 제척되는 종교시설용지 내 건축물 4개동은 정비개량계획에서 제외

2)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최고
기정	장위 10구역	94,037.0	10-1	73,140.0	장위동 68-37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64.79 이하	22.3층 이하	32층 이하 (97m이하)
			10-2	2,429.0	장위동 74-32일대	종교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최고
			10-3	645.0	장위동 238-401일대					
			공공 청사A	1,007.0	장위동 68-1335일대	공공청사				
			공공 청사B	408.0	장위동 68-942일대					
변경	장위 10구역	91,362.0	10-1	70,302.0	장위동 68-37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74.38 이하	-	35층 이하 (105m이하)
			10-3	645.0	장위동 69-54일대	종교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10-4	225.0	장위동 68-39일대	획지				
			10-5	320.0	장위동 68-1027일대					
			10-6	205.0	장위동 68-1074일대					
			10-7	96.0	장위동 74-277일대					
			공공 청사A	1,415.0	장위동 69-53일대	공공청사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건립예정세대수 : 2,004세대 (공공주택 : 341세대) - 전용면적 40㎡ 이하 : 186세대(9.28%) [공공 : 139세대] - 전용면적 40~50㎡ : 172세대(8.59%) [공공 : 137세대] - 전용면적 50~60㎡ : 630세대(31.43%) [공공 : 65세대] - 전용면적 60~85㎡ : 958세대(47.80%) - 전용면적 85㎡ 이상 : 58세대(2.90%)					
			변경	• 건립예정세대수 : 2,004세대 (공공주택 : 341세대) - 전용면적 40㎡ 이하 : 156세대(7.8%) [공공 : 128세대] - 전용면적 40~50㎡ : 146세대(7.3%) [공공 : 118세대] - 전용면적 50~60㎡ : 705세대(35.2%) [공공 : 75세대] - 전용면적 60~85㎡ : 862세대(43.0%) [공공 : 20세대] - 전용면적 85㎡ 이상 : 135세대(6.7%)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최고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한천로 : 8m, 회랑로 : 10m (단, 지하부는 6m로 완화적용) • 월계로, 장위로, 장월로, 돌곶이로, 순환도로, 국지도로변 : 6m • 보차혼용통로(장위동 38-217일대)변 : 3m									
기 타	• 장위초교 우측변 보차혼용통로(폭10m)를 설정하여 현황도로를 연결 및 장위초교 통학로 확보 • 구분지상권 설정(토지소유권 : 민간, 유지관리 : 공공) • 보차혼용통로 : 입주자모집공고, 분양계획서 등을 통해 보차혼용통로 제한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고, 이를 근거로 구분지상권등기를 설정하며,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여 공공의 이용을 충분히 담보토록 함 • 공공보행통로 : 동·서방향 남·북방향 (폭10m) [도면참조]									

3) 용적률 계획(변경)

■ 기정

<table>
<tr><td>구분</td><td colspan="7">산정내용</td></tr>
<tr><td rowspan="2">토지이용
계획</td><td>계
(구역면적)</td><td>획지</td><td>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td><td>기부채납
공공시설
제공면적
(토지)</td><td>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td><td>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td></tr>
<tr><td>94,037.0㎡</td><td>76,214.0㎡</td><td>17,823.0㎡</td><td>10,246.0㎡</td><td>3,932.9㎡</td><td>2,174.0㎡</td><td>5,403.0㎡</td></tr>
<tr><td>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7">•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14,178.9㎡
• 기부채납 공공시설 제공면적(토지) : 10,246.0㎡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면적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면적
= 17,823.0㎡ − 2,174.0㎡ − 5,403.0㎡ = 10,246.0㎡
• 기부채납 공공시설(건축물) 환산 부지면적 : 총 3,932.9㎡</td></tr>
<tr><td>기반시설
부담률</td><td colspan="7">• 기반시설 부담률 : (14,178.9㎡ ÷ 94,037.0㎡) × 100% = 15.07% (구역면적 대비)</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7">• 기준용적률 : 211%</td></tr>
<tr><td>상한용적률</td><td colspan="7">•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α+β))
= 211% × (1+ 1.3 × 0.1961) = 264.79%</td></tr>
<tr><td>토지</td><td colspan="7">• 공공시설 기부채납(토지) 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3 × α = 211% × 1.3 × 0.1417 = 38.87%
※ α = 기부채납 공공시설 제공면적(토지)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10,246.0 ÷ (76,214.0 - 3,932.9) = 0.1417</td></tr>
<tr><td>건축물</td><td colspan="7">• 공공시설 설치비용 용적률
= 허용용적률 × 1.3 × β = 211% × 1.3 × 0.0544 = 14.92%
※ β = 기부채납 공공시설(건축물) 환산 부지면적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3,932.9 ÷ (76,214.0 - 3,932.9) = 0.0544</td></tr>
<tr><td>정비계획
용적률</td><td colspan="7">• 정비계획용적률 = 264.79%</td></tr>
</table>

■ 변경

<table>
<tr><th>구분</th><th colspan="7">산정내용</th></tr>
<tr><td rowspan="2">토지이용
계획</td><td>계
(구역면적)</td><td>획지</td><td>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td><td>기부채납
공공시설
제공면적
(토지)</td><td>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td><td>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td></tr>
<tr><td>90,782.0㎡</td><td>71,793.0㎡</td><td>18,989.0㎡</td><td>13,806.0㎡</td><td>5,171.5㎡</td><td>642.0㎡</td><td>4,541.0㎡</td></tr>
<tr><td>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7">•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18,977.5㎡
• 기부채납 공공시설 제공면적(토지) : 13,806.0㎡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면적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면적
= 18,989.0㎡ − 642.0㎡ − 4,541.0㎡ = 13,806.0㎡
• 기부채납 공공시설(건축물) 환산 부지면적 : 총 5,171.5㎡</td></tr>
<tr><td>기반시설
부담률</td><td colspan="7">• 기반시설 부담률 : (18,977.5㎡ ÷ 90,782.0㎡) × 100% = 20.90% (구역면적 대비)</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7">• 기준용적률 : 211%</td></tr>
<tr><td>상한용적률</td><td colspan="7">•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α토지 + 0.7 × α건축물)
= 211% × (1+ 1.3 × 0.1923 + 0.7 × 0.0720) = 274.38%</td></tr>
<tr><td>α토지</td><td colspan="7">• 공공시설 기부채납(토지) 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3 × α = 211% × 1.3 × 0.1923 = 52.75%
※ α토지 = 기부채납 공공시설 제공면적(토지)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13,806.0 ÷ 71,793.0 = 0.1923</td></tr>
<tr><td>α건축물</td><td colspan="7">• 공공시설 설치비용 용적률
= 허용용적률 × 0.7 × α건축물= 211% × 0.7 × 0.0720 = 10.63%
※ α건축물 = 기부채납 공공시설(건축물) 환산 부지면적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5,171.5 ÷ 71,793.0 = 0.0720</td></tr>
<tr><td>정비계획
용적률</td><td colspan="7">• 정비계획용적률 = 274.38%</td></tr>
</table>

※ 향후,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라 건축 인·허가 시점 적용

4) 공공시설(건축물) 환산부지면적 산정(변경)

구분			내용	비고
기정	공공청사	도입용도	공공청사	• 성북구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청사(동청사) 계획
		기부채납 연면적	1,800㎡	-
		건축비	2,556,000 원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2017) - 동청사(주민자치센터) 1,500㎡이상 2,000㎡미만
		설치비용	4,600,800,000 원	• 건축비 × 기부채납 연면적
		부지가액	4,328,368 원/㎡	• 사업시행인가 당시 부지가액 적용 [성북구고시 제2013-70호(2013.07.01.)]
		환산부지 면적	1,062.9㎡	• 설치비용 / 부지가액
	주차장	도입용도	주차장	• 성북구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주차장 계획
		기부채납 연면적	5,000㎡	• 공원 하부 중복 결정
		건축비	1,897,000 원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2017) - 공영주차장 3,000㎡이상 5,000㎡미만
		설치비용	9,485,000,000 원	• 건축비 × 기부채납 연면적
		부지가액	3,304,916 원/㎡	• 사업시행인가 당시 부지가액 적용 [성북구고시 제2013-70호(2013.07.01.)]
		환산부지 면적	2,870.0㎡	• 설치비용 / 부지가액
변경	공공청사	도입용도	공공청사	• 성북구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청사(동청사) 계획
		기부채납 연면적	1,800㎡	-
		건축비	3,678,000 원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2022) - 동청사(주민자치센터) 1,500㎡이상 2,000㎡미만
		설치비용	6,018,545,454 원	• 건축비 × 기부채납 연면적 / 1.1(면세)
		부지가액	4,328,368 원/㎡	• 사업시행인가 당시 부지가액 적용 [성북구고시 제2013-70호(2013.07.01.)]
		환산부지 면적	1,390.5㎡	• 설치비용 / 부지가액
	도서관	도입용도	도서관	• 성북구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문화공원 내 도서관 계획
		기부채납 연면적	3,530㎡	• 공원 부지 내 건립
		건축비	3,894,000 원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2022) - 도서관 2,000㎡이상 6,000㎡미만

구분			내용	비고
		설치비용	12,496,200,000 원	• 건축비 × 기부채납 연면적 / 1.1(면세)
		부지가액	3,304,916 원/㎡	• 사업시행인가 당시 부지가액 적용 [성북구고시 제2013-70호(2013.07.01.)]
		환산부지 면적	3,781.0㎡	• 설치비용 / 부지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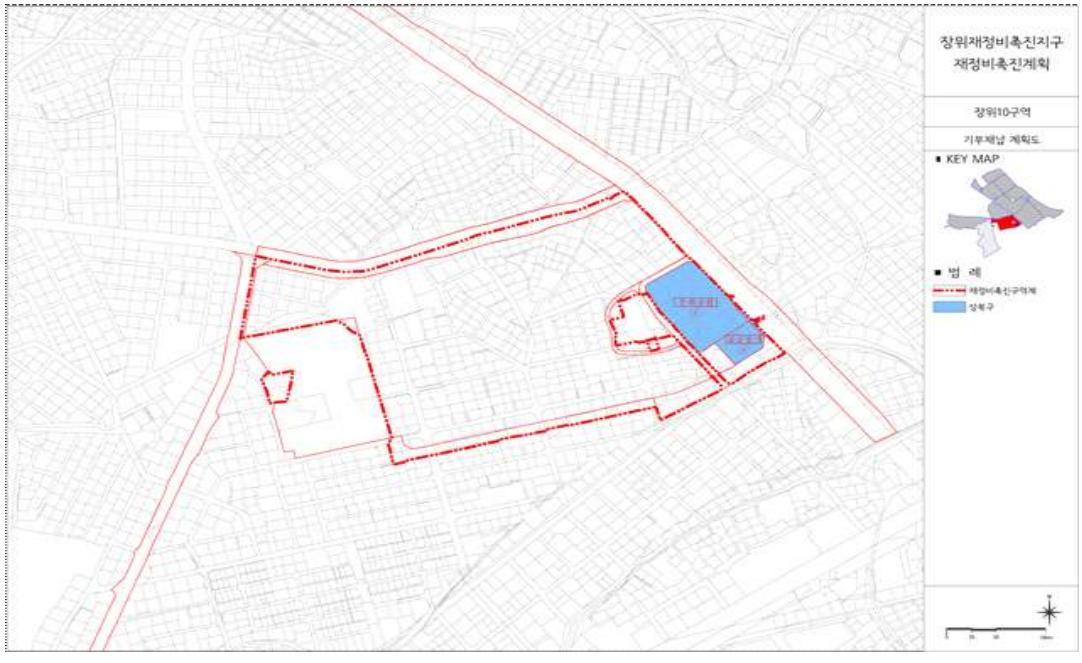
※ 향후,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라 건축 인·허가 시점 적용

■ 무상귀속(기부채납) 계획(변경)

– 기부채납시설은 준공인가시 관리청에 귀속시키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세부용도, 면적 등을 확정

구분	시설명	시설규모	관리청
공공시설 등	공공청사	• 공공청사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 위치 : 장위동 69-53번지 일대 – 토지면적 : 1,415㎡ / 건축면적 : 1,800㎡ – 세부용도 : 동청사	성북구
	도서관	• 도서관 건축물 기부채납 (문화공원 내 설치) – 위치 : 장위동 69-36번지 일대 – 건축면적 : 3,530㎡ – 세부용도 : 도서관	성북구

※ 향후 토지평가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건축연면적이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용도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함



바. 도시경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변경없음)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아.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자.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기정	장위 10구역	73,140.0	-	23,119.73	• 139세대(6.94%)	• 40㎡이하	-
					• 137세대(6.84%)	• 40~50㎡이하	
					• 65세대(3.24%)	• 50~60㎡이하	
					• 전체:341세대(17.02%)	-	
변경	장위 10구역	70,302.0	-	23,413.62	• 128세대(6.39%)	• 40㎡이하	-
					• 118세대(5.89%)	• 40~50㎡이하	
					• 75세대(3.74%)	• 50~60㎡이하	
					• 20세대(1.00%)	• 60~85㎡ 이하	
					• 전체:341세대(17.02%)	-	

※ 세대수 항목의 ( )는 전체 건립 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 구역 내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을 혼재배치하여 별도의 부지 구획하지 않음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기정	장위10구역	성북구 장위동 68-37일대	94,037.0	감) 2,675.0	91,362.0	100.0	-

※ 변경사유 : 장위10구역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 (종교시설용지 제척 및 장위초등학교 선형 변경)

2.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비율(%)
		기 정	증 · 감	변 경	
합 계		94,037.0	감) 2,675.0	91,362.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94,037.0	감) 2,675.0	91,362.0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장위10 재정비촉진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감) 2,675.0㎡	•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 - 제척되는 토지는 기존 용도지역으로 환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A	20 ~26.5	보조 간선	1,348 (250)	장위동 64-89	장위동 310-22	일반 도로	-	총고시722 (36.12.26.)	돌곶이로
기정	중로	1	514	20	집산 도로	396	장위동 238-238	장위동 74-54	일반 도로	-	서고시111 (08.04.03.)	장위로
기정	중로	3	A	13	집산 도로	140	장위동 68-77	장위동 69-49	일반 도로	-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변경	중로	3	A	15	집산 도로	140	장위동 68-77	장위동 69-49	일반 도로	-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기정	소로	1	B	10	국지 도로	270	장위동 68-63	장위동 68-1110	일반 도로	-	서고시240 (19.07.25.)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	12 ~15	집산 도로	651	장위동 238-534	상월곡동 35-7	일반 도로	-	서고시111 (08.04.03.)	장월로
신설	소로	2	D	6	국지 도로	189	장위동 68-1320	장위동 74-223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C	4	국지 도로	162	장위동 68-39	장위동 74-208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A	중로 3-A	• 도로 폭원 변경 - 13m → 15m	• 유턴차로 확보를 위한 도로 폭원 확폭
-	소로 2-D	• 도로 신설 - 폭원 : 6m	• 종교시설용지(사랑제일교회) 제척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	소로 3-C	• 도로 신설 - 폭원 : 4m	• 종교시설용지(사랑제일교회) 이면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

나.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폐지	A	주차장	장위동 239-229일대	6,012.0	감) 6,012.0	-	서고시240 (19.07.25.)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주차장	• 폐지	• 주변 개발현황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공원 하부 주차장 폐지

다.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기정	A	-	어린이 공원	장위동 238-229일대	6,012.0	-	6,012.0	서고시240 (19.07.25.)	-
변경			문화 공원	장위동 69-36일대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문화공원	• 시설의 종류 변경 - 어린이공원 → 문화공원 • 위치 변경 - 위치 : 장위동 238-229 일대 → 장위동 69-36 일대	• 상위계획(예술문화가로)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을 위한 도서관확보 등 통합문화공원 조성 • 토지이용계획 변경(종교시설 제척)에 따른 돌곶이로변으로 공원위치 변경 • 공원 내 도서관(교양시설) 확보 - 연면적 : 3,530㎡

※ 연면적은 향후 부지가액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기정	A	장위2동 주민센터	공공청사	장위동 68-1355일대	1,007.0	증) 408.0	1,415.0	서고시240 (19.07.25.)	-
변경				장위동 69-53일대					
폐지	B	공공청사	공공청사	장위동 68-942일대	408.0	감) 408.0	-	서고시240 (19.07.25.)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장위2동 주민센터	공공청사	• 위치변경 - 위치 : 장위동 68-1335일대 → 장위동 69-53일대	• 토지이용계획 변경(종교시설 제척) 에 따른 공공청사 위치 변경 및 공공청사B 통합배치
B	공공청사	공공청사	• 폐지	•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공공청사A와의 통합배치

마.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	장위 초등학교	학교	장위동 68-8	15,784.0 (480.0)	증) 43.0	15,827.0 (1,060.0)	시교위고시5 (87.02.17.)	학교 선형변경 (정형화)

※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1호(2008.4.3.) 당시 미반영된 장위초등학교 현황면적 반영
※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10구역 내 면적을 의미함
※ 장위10구역 내 학교 편입면적 : 1,060㎡ (기부채납 면적 : 480㎡ / 대토부지 면적 : 580㎡)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	장위 초등학교	학교	• 현황면적 반영 - 면적 : 증)43.0㎡ • 장위초등학교부지 선형조정	• 고시면적과 편입토지조서 면적 오차 정정 • 학교부지 정형화를 위해 장위10구역과 대토 진행 (면적:580㎡)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명칭	면 적(㎡)			비율(%)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획지	소계	76,214.0	감) 4,421.0	71,793.0	78.6	
	10-1	73,140.0	감) 2,838.0	70,302.0	77.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0-2	2,429.0	감) 2,429.0	-	-	종교시설 제척
	10-3	645.0	-	645.0	0.7	종교시설
	10-4	-	증) 225.0	225.0	0.2	획지
	10-5	-	증) 320.0	320.0	0.4	
	10-6	-	증) 205.0	205.0	0.2	
	10-7	-	증) 96.0	96.0	0.1	

※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 (종교시설용지 제척 및 장위초등학교 선형 변경)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획지	용도	비고
기정	허용 용도	10-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지정 용도	10-2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종교집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지정 용도	10-3		
변경	허용 용도	10-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지정 용도	10-3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종교집회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허용 용도	10-4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10-5		
		10-6		
		10-7		

※ 지정용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주용도(해당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로서 건축연면적(지하층은 포함, 부설주차장, 기계실, 계단 등의 공용면적은 제외)의 50% 이상 설치를 기준으로 한다.

※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획지 변경 (종교시설용지 제척 및 장위초등학교 선형 변경)

2) 건폐율 계획(변경)

구분		용도지역	건폐율	비고
기정	10-1(공동주택)	제2종일반주거지역	30%이하	-
	10-2, 10-3, 공공청사A, 공공청사B	제2종일반주거지역	관련법령에 의함	-
변경	10-1(공동주택)	제2종일반주거지역	30%이하	-
	10-3, 10-4, 10-5, 10-6, 10-7, 공공청사A	제2종일반주거지역	관련법령에 의함	-

※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획지 변경 (종교시설용지 제척 및 장위초등학교 선형 변경)

3) 용적률 계획(변경)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10-1(공동주택)	211% 이하	211% 이하	264.79% 이하	-
	10-2, 10-3, 공공청사A, 공공청사B	관련법령에 의함			-
변경	10-1(공동주택)	211% 이하	211% 이하	274.38% 이하	-
	10-3, 10-4, 10-5, 10-6, 10-7, 공공청사A	관련법령에 의함			-

※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획지 변경 (종교시설용지 제척 및 장위초등학교 선형 변경)

4)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변경)

구분		용적률 완화		비고
		공공시설 기부채납(토지)	기반시설 설치비용	
기정	10-1(공동주택)	38.87%	14.92%	53.79%
변경	10-1(공동주택)	52.75%	10.63%	63.38%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 면적 변경

5) 높이 계획(변경)

구분		높이기준	비고
기정	10-1(공동주택)	• 최고층수 32층 이하 / 최고높이 97m이하	-
	10-2, 10-3, 공공청사A, 공공청사B	관련법령에 의함	
변경	10-1(공동주택)	• 최고층수 35층 이하 / 최고높이 105m이하	-
	10-3, 10-4, 10-5, 10-6, 10-7, 공공청사A	관련법령에 의함	-

※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획지 변경 (종교시설용지 제척 및 장위초등학교 선형 변경)

6)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한천로	8m
	화랑로	10m(지하부는 6m 완화적용)
	월계로, 장위로, 장월로, 순환도로, 국지도로변	6m
	보차혼용통로변(장위동 38-217일대)	3m
	돌곶이로	6m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전면공지	10-1 획지 내 도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조경 및 보행자 공간으로 조성 - 폭원 : 3m ~ 8m
보차혼용통로	장위초교 우측변	• 현황도로를 연결 및 장위초교 통학로 확보 - 폭원 : 10m
공공보행통로	동·서방향 남·북방향	• 보행자의 보행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보행통로 확보 - 폭원 : 10m

※ 구분지상권 설정(토지소유권 : 민간, 유지관리 : 공공)
※ 보차혼용통로 : 입주자모집공고, 분양계획서 등을 통해 보차혼용통로 제한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고, 이를 근거로 구분지상권등기를 설정하며,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여 공공의 이용을 충분히 담보토록 함

2)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기정	장위 10구역	73,140.0	-	23,119.73	• 139세대(6.94%)	• 40㎡이하	-
					• 137세대(6.84%)	• 40~50㎡이하	
					• 65세대(3.24%)	• 50~60㎡이하	
					• 전체:341세대(17.02%)	-	
변경	장위 10구역	70,302.0	-	23,413.62	• 128세대(6.39%)	• 40㎡이하	-
					• 118세대(5.89%)	• 40~50㎡이하	
					• 75세대(3.74%)	• 50~60㎡이하	
					• 20세대(1.00%)	• 60~85㎡ 이하	
					• 전체:341세대(17.02%)	-	

※ 세대수 항목의 ( )는 전체 건립 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 구역 내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을 혼재배치하여 별도의 부지 구획하지 않음

3) 환경관리계획(변경없음)

검토항목		검토 결과	환경영향	보전대책	비고
자연 환경	토양포장 우수유출	X	-	• 현재보다 공원녹지 증가로 환경측면 유리	-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O	지하터파기에 따른 지형변화	• 발생토량은 조경토, 되메우기 등 실시 • 외부로의 토사유출입 자제	-
	녹지변동 녹지체계	X	-	• 현재보다 공원녹지 증가로 환경측면 유리	-
	습지보전	X	보전대상 습지 없음	-	-
	비오톱	X	-	• 공원과 우이천을 연계하여 단지내 생물서식공간 확보	-

검토항목		검토 결과	환경영향	보전대책	비고
생활환경	일 조	O	일조침해 예상	• 공간에 도로, 조경녹지, 휴게공간 등 계획	-
	바 람	O	영향 미약	• 풍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충분한 오픈페이스 확보	-
	경 관	O	고층건축물 신축에 따른 경관변화	•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건축설계	-
	에 너 지	O	건물 신축으로 에너지사용 변화 예상	• 지역특성상 도시가스를 사용할 계획으로 지상의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에너지절약형 단지를 조성할 계획	-
	환경오염	O	오수량 및 생활폐기물 증가	• 중랑물재생센터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	-
도시재정비계획 시행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O	건축폐기물의 발생, 비산먼지, 공사장 소음 문제 및 강우시 토사유출 예상	• 건축폐기물의 적법처리 및 비산먼지와 토사유출, 소음 저감방안 수립	-

라.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변경)

■ 기정

구분 및 범례	세부지침	계획 지표 및 예시 이미지
탑상형 배치구간	• '탑상형 배치구간' 은 탑상형아파트가 건축되는 주택용지로 정한다. • 탑상형아파트는 '탑상형 배치구간' 에만 건축 가능하다. • '탑상형 배치구간' 내 건축물의 높이는 최고 33층으로 정한다. • '탑상형 배치구간' 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 "탑상형 아파트" 라 함은 주동을 수평 투영하였을 때 단변과 장변의 비례가 1:2 이하 이고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로 구성된 단일 코아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진. 출입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단지의 조망감 및 경관형성 등 개방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한다.	최고층수 33층 최저층수 -
저층배치 구간	• '저층 배치구간' 의 주거동은 7층이하 정한다. • '저층 배치구간' 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최고층수 7층 최저층수 -
중층배치 구간	• '중층 배치구간' 의 주거동은 8~12층으로 정한다. • '중층 배치구간' 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최고층수 12층 최저층수 8층
고층배치 구간	• '고층 배치구간' 의 주거동은 13~29층으로 정한다. • '고층 배치구간' 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최고층수 29층 최저층수 13층

구분 및 범례	세부지침	계획 지표 및 예시 이미지
초고층배치 구간	• '초고층 배치구간' 의 주거동은 30층이상으로 정한다. • '초고층 배치구간' 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최고층수 32층 최저층수 30층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 및 지하부분이 돌출되지 못한다 • '건축한계선' 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한 전면공지는 조경 및 보행자 공간으로 조성한다.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 불허구간' 은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 차량출입이 전면 금지되는 구간을 말한다. • '차량출입 불허구간' 의 위치는 지침도를 따른다.	-

■ 변경

구분 및 범례	세부지침	계획 지표 및 예시 이미지
탑상형 배치구간	• '탑상형 배치구간' 은 탑상형아파트가 건축되는 주택용지로 정한다. • 탑상형아파트는 '탑상형 배치구간' 에만 건축 가능하다. • '탑상형 배치구간' 내 건축물의 높이는 최고 35층으로 정한다. • '탑상형 배치구간' 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 "탑상형 아파트" 라 함은 주동을 수평 투영하였을 때 단변과 장변의 비례가 1:2 이하 이고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로 구성된 단일 코아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진. 출입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단지의 조망감 및 경관형성 등 개방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한다.	최고층수 35층 최저층수 -
저층배치 구간	• '저층 배치구간' 의 주거동은 7층이하 정한다. • '저층 배치구간' 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최고층수 7층 최저층수 -
중층배치 구간	• '중층 배치구간' 의 주거동은 8~12층으로 정한다. • '중층 배치구간' 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최고층수 12층 최저층수 8층
고층배치 구간	• '고층 배치구간' 의 주거동은 13~29층으로 정한다. • '고층 배치구간' 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최고층수 29층 최저층수 13층
초고층배치 구간	• '초고층 배치구간' 의 주거동은 30층이상으로 정한다. • '초고층 배치구간' 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최고층수 35층 최저층수 30층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 및 지하부분이 돌출되지 못한다 • '건축한계선' 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한 전면공지는 조경 및 보행자 공간으로 조성한다.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 불허구간' 은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 차량출입이 전면 금지되는 구간을 말한다. • '차량출입 불허구간' 의 위치는 지침도를 따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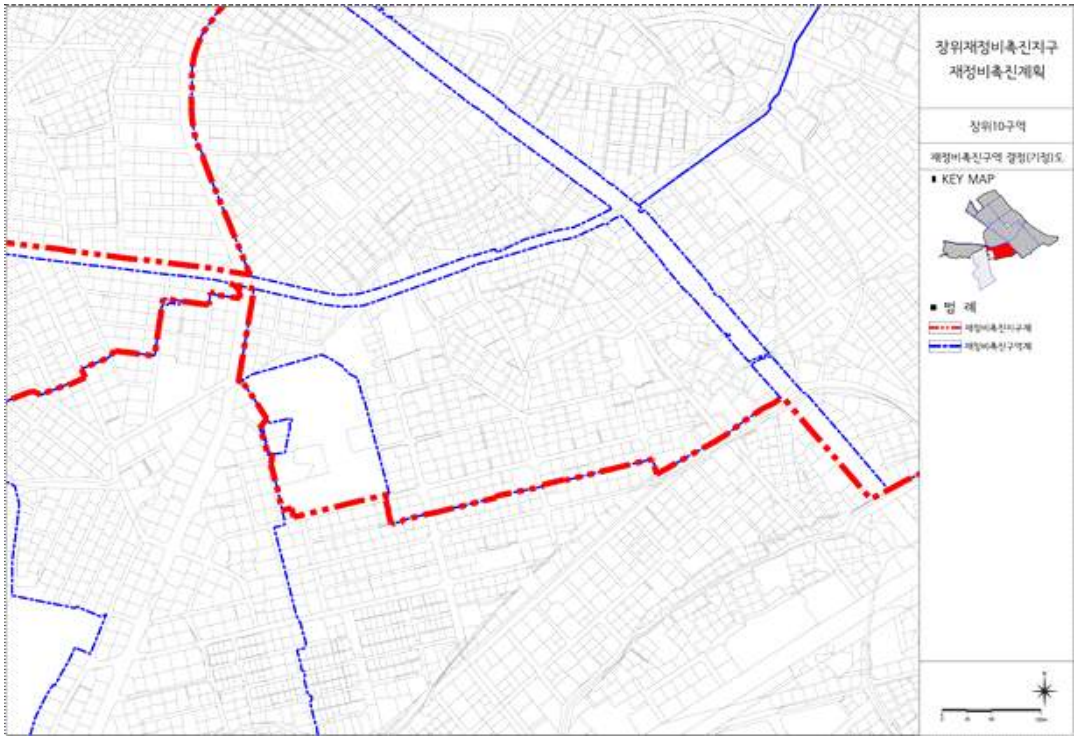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관련 사항은 붙임(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총괄)고시) 및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도서」에 명시 : 결정(변경)도서 게재 생략

6.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및 성북구 주거정비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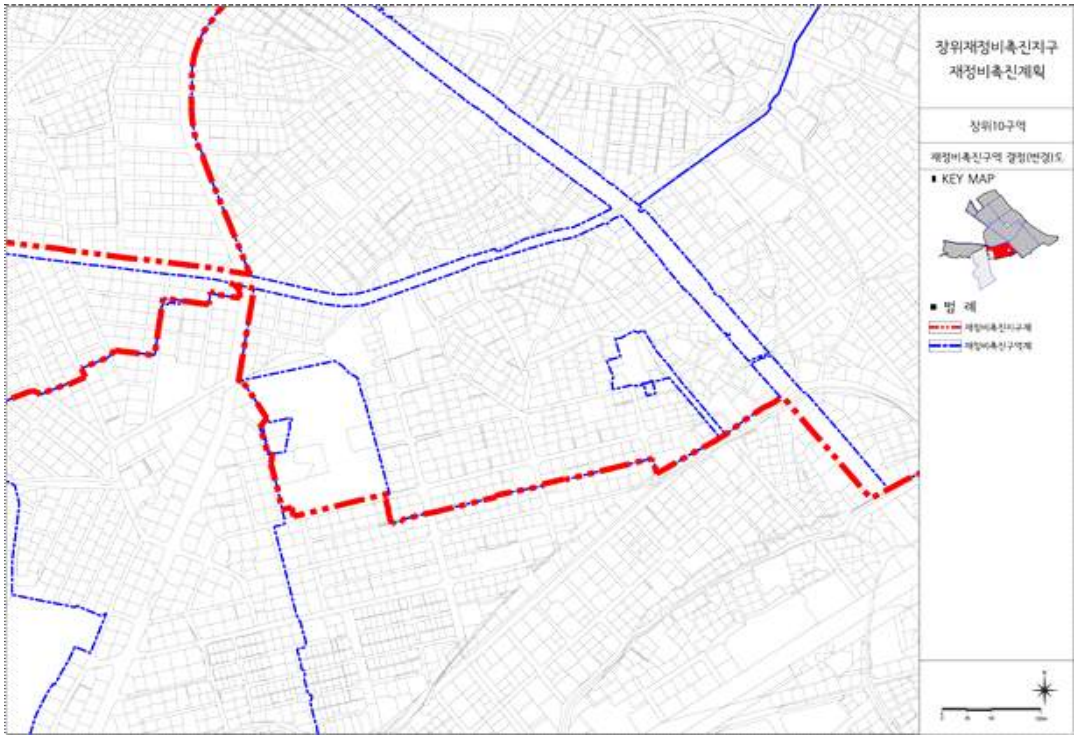
※ 첨부한 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02-2133-7223) 및 성북구 주거정비과(☎02-2241-2834)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결정(기정)도]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도]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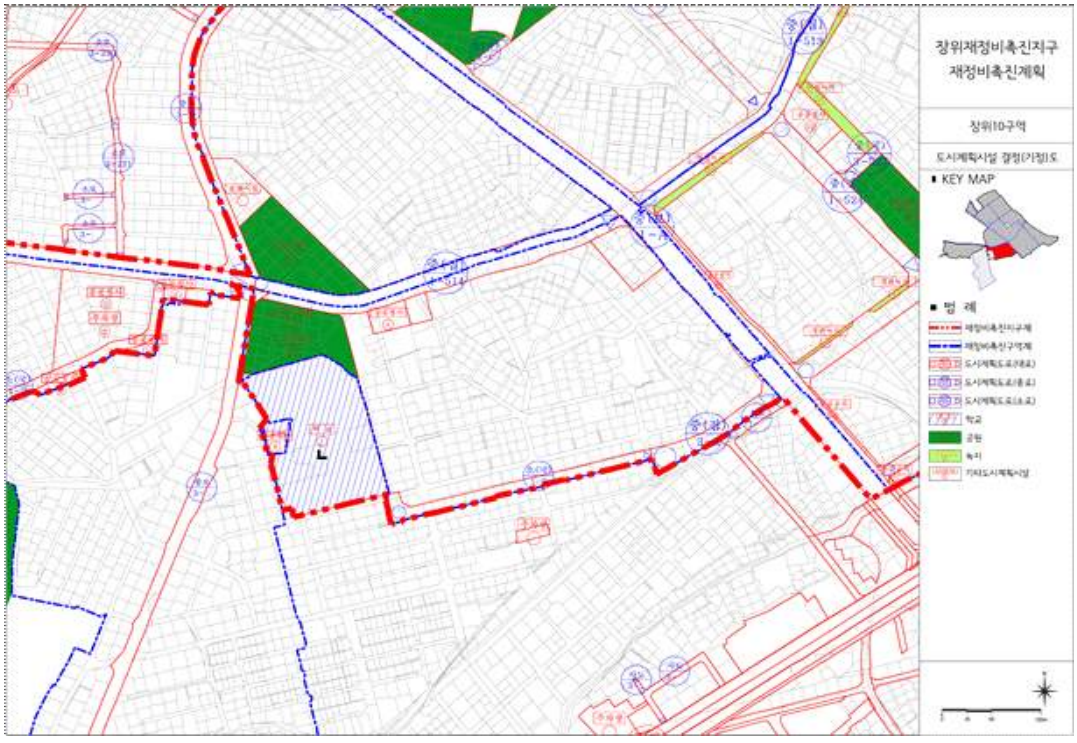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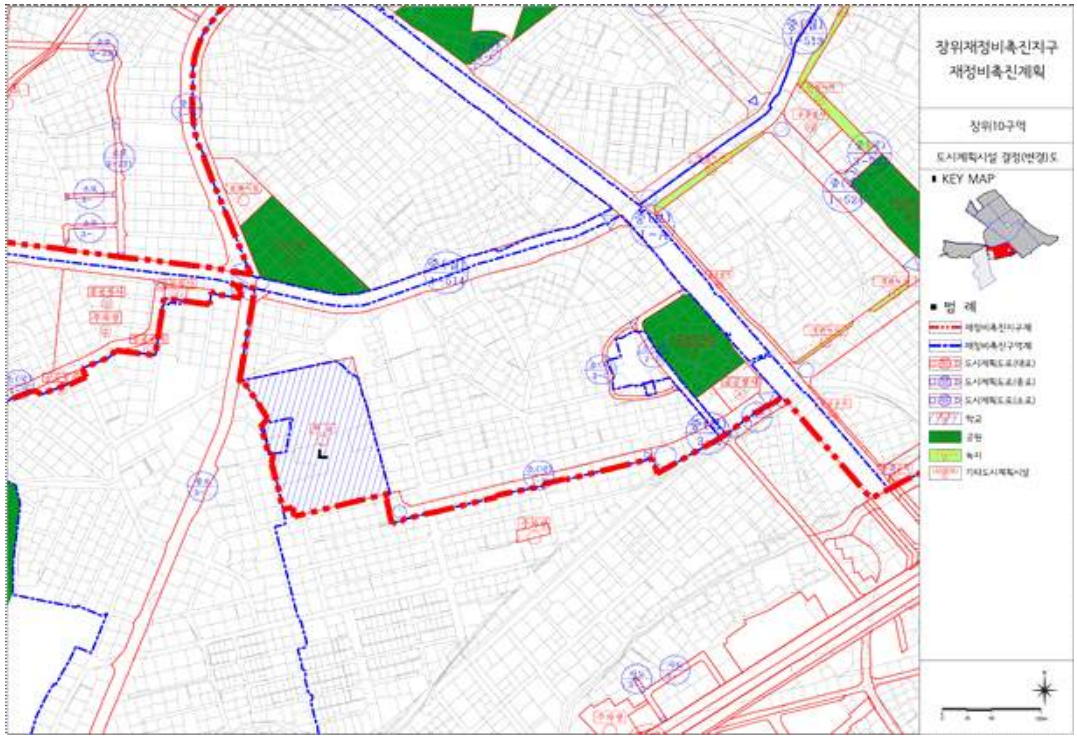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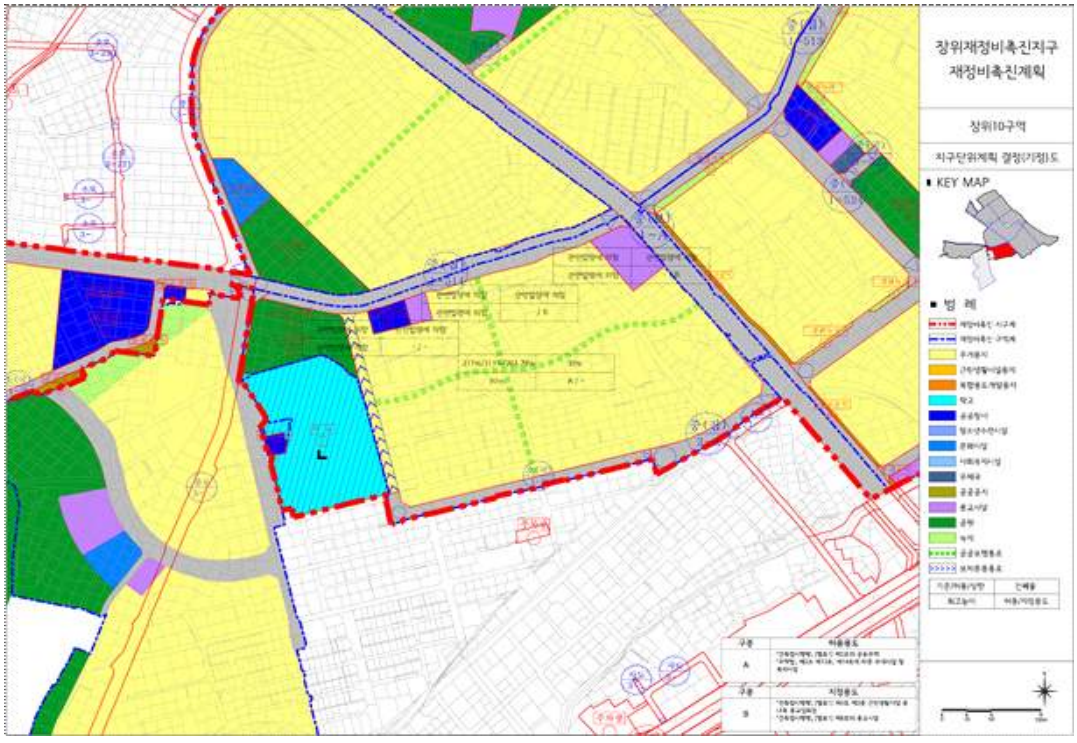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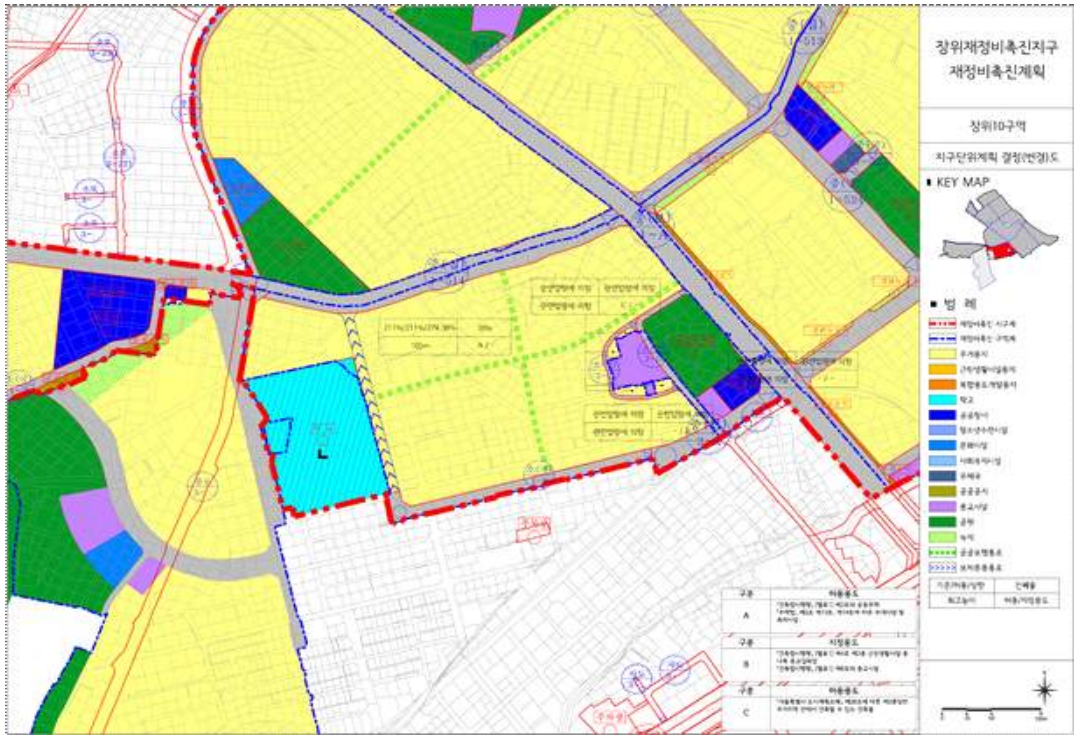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기정)도]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붙임 :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총괄) 고시

1.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장위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성북구 장위동 일원	1,127,246.7	증) 43.0	1,127,289.7	-

※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1호(2008.4.3.) 당시 미반영된 장위초등학교 현황면적 반영

2. 재정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2030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 적(㎡)			비율(%)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합 계		1,127,246.7	증) 43.0	1,127,289.7	100.0	-
주거	소 계	743,591.5	감) 1,992.0	741,599.5	65.8	-
	공동주택	701,646.5	감) 2,838.0	698,808.5	62.0	-
	복합용지	41,945.0	-	41,945.0	3.7	-
	획 지	-	증) 846.0	846.0	0.1	-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365,442.9	증) 2,141.0	367,583.9	32.6	-
	도 로	205,422.1	증) 2,098.0	207,520.1	18.4	-
	공 원	75,139.4	-	75,139.4	6.7	-
	녹 지	16,776.7	-	16,776.7	4.5	-
	학 교	33,242.0	증) 43.0	33,285.0	3.0	-
	공공공지	7,975.3	-	7,975.3	0.7	-
	공공청사	14,500.4	-	14,500.4	1.3	-
	주차장	2,590.0	-	2,590.0	0.2	-
	사회복지시설	3,827.0	-	3,827.0	0.3	-
	문화시설	3,190.1	-	3,190.1	0.3	-

구분		면 적(㎡)			비율(%)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청소년수련시설	2,779.9	-	2,779.9	0.2	-
기타	소 계	18,212.3	감) 106.0	18,106.3	1.6	-
	종교시설	12,961.5	감) 106.0	12,855.5	1.1	-
	근린생활시설	4,332.8	-	4,332.8	0.4	-
	우체국	542.0	-	542.0	0.0	-
	기타	376.0	-	376.0	0.0	-

※ 변경사유 : 장위10구역 구역경계 조정(종교시설용지 제척 및 장위초등학교 선형조정) 및 토지이용계획 재수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80호(2023.12.28.) 당시 공동주택 면적 오기사항 정정 (701,682.5㎡ → 701,646.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1호(2008.4.3.) 당시 미반영된 장위초등학교 현황면적 반영

나. 인구 및 주택수용 계획(변경)

구분	기 정	증 · 감	변 경	비고
인구(인)	53,595	-	53,595	-
세대수(세대)	19,850	-	19,850	-

※ 변경인구(인) : 세대당 2.7인 적용
※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인구 및 세대수 변경 없으나 장위10구역 내 타입별 세대수 변경

1) 구역별 주택공급계획(변경)

구분	구역별	합계				공공				분양			
		세대수 (비율%)	60㎡ 미만	60 ~85㎡	85㎡ 초과	소계	40㎡ 이하	40 ~50㎡	50㎡ 초과	소계	60㎡ 미만	60 ~85㎡	85㎡ 초과
계		19,850 (100%)	9,633 (48.5%)	9,038 (45.5%)	1,179 (6.0%)	4,105 (20.7%)	1,339	1,086	1,680	15,745 (79.3%)	5,808	8,758	1,179
기정	1구역	939	356	556	27	162	71	69	22	777	194	556	27
기정	2구역	513	242	268	3	92	40	37	15	421	150	268	3
기정	3구역	1,078	216	432	430	184	84	79	21	894	32	432	430
기정	4구역	2,840	1,309	1,438	93	484	194	200	90	2,356	825	1,438	93

구분	구역별	합계				공공				분양			
		세대수 (비율%)	60㎡ 미만	60 ~85㎡	85㎡ 초과	소계	40㎡ 이하	40 ~50㎡	50㎡ 초과	소계	60㎡ 미만	60 ~85㎡	85㎡ 초과
기정	5구역	1,562	660	756	146	276	123	117	36	1,286	384	756	146
기정	6구역	1,637	758	818	61	285	129	126	30	1,352	473	818	61
기정	7구역	1,711	844	825	42	295	125	137	33	1,416	549	825	42
변경	8구역	2,846	1,777	999	70	784	144	-	640	2,062	1,052	940	70
변경	9구역	2,230	1,203	967	60	763	112	-	651	1,467	641	766	60
기정	10구역	2,004	988	958	58	341	139	137	65	1,663	647	958	58
변경	10구역	2,004	1,007	862	135	341	128	118	95	1,663	686	842	135
기정	14구역	2,490	1,261	1,117	112	439	189	203	47	2,051	822	1,117	112

※ 전용85㎡ 초과 주택수 1,179세대 6.0%로 기준 20%미만 충족
※ 공공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20.7%(4,105세대)로 기준 17%이상 충족
※ 장위1구역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40㎡이하 173세대(공공 30세대) 미포함

다. 기반시설 설치계획(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변경)

1) 교육시설계획(변경)

구분	학교명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변경	장위초등학교	장위동 68-8	15,784.0	증) 43.0	15,827.0	-
기정	광운초등학교	장위동 128	17,458.0	-	17,458.0	-
기정	남대문중학교	장위동 124-1				

※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1호(2008.4.3.) 당시 미반영된 장위초등학교 현황면적 반영

2) 공공시설계획(변경)

구분	현황			계획			비고
	시설명	위치	면적 (㎡)	시설명	위치	면적 (㎡)	
기정	공공청사 (장위2동 주민센터)	장위동 69-54	798	공공청사 (장위2동 주민센터)	장위동 68-1335 일대	1,007	장위11구역 해제에 따라 장위10구역 내 대체확보

구분	현황			계획			비고
	시설명	위치	면적(㎡)	시설명	위치	면적(㎡)	
변경	복지시설(장위2동 경로당)	장위동 68-1055	165				• 장위2동주민센터 • 주민커뮤니티센터 - 생활체육관, 주민센터, 취미교실, 경로당, 유치원(어린이집) • 연면적:1,800.0㎡
변경	공공청사(장위2동 주민센터)	장위동 69-54	798	공공청사(장위2동 주민센터)	장위동 69-53 일대	1,415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공청사 통합배치 - 기정 : 1,007㎡ - 변경 : 1,415㎡(증,408㎡)
변경	복지시설(장위2동 경로당)	장위동 68-1055	165				• 장위2동주민센터 • 주민커뮤니티센터 - 생활체육관, 주민센터, 취미교실, 경로당, 유치원(어린이집) • 연면적:1,800.0㎡
기정	공공청사(장위우체국)	장위동 69-4	427	장위우체국	장위동 110-26	542	• 4구역 내 대체확보
기정	복지시설(장위3동 어린이집)	장위동 77-64	987	복지시설(장위3동어린이집)	장위동 77-64	987	• 장위8구역 편입에 따른 현황시설 존치
기정	청소년수련시설(성북청소년수련관)	장위동 135-2	2,696	청소년수련시설(성북청소년수련관)	장위동 135-2	2,779.9	장위1구역 • 성북청소년수련관(지상4/지하2)
기정	-	-	-	문화시설	장위동 158-63 일대	1,090.1	장위1구역 • 1구역 문화시설 용지에 건축물 기부채납 예정(3구역)

구분	현황			계획			비고
	시설명	위치	면적(㎡)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	공공청사(장위3동 주민센터)	장위동 117-5	508	공공청사(장위3동 주민센터)	장위동 98-1	2,050	장위4구역 • 장위3동주민센터 • 주민커뮤니티센터(지상3/지하1) - 생활체육관, 주민센터, 취미교실, 도서실, 경로당,유치원(어린이집) • 연면적: 2,500.0㎡ ※ 장위종합사회복지관(연면적1,500㎡), 건강생활지원센터(연면적 600㎡) 4구역 공공청사 대체 확보예정
기정	복지시설(장위3동 경로당)	장위동 135-5	165				
기정	공공청사(장위소방 치안센터)	장위동 34	419	공공청사(소방치안센터)	장위동 270-172	986.9	장위6구역 • 장위동 소방치안센터(지상3/지하1)
기정	-	-	-	공공청사(장위3치안센터)	장위동 270-388	754.8	장위6구역
기정	-	-	-	공공청사(주민커뮤니티센터)	장위동 158-15	1,297.2	장위5구역 • 주민커뮤니티센터 - 생활체육관, 취미교실, 도서실, 경로당, 유치원, 복지센터(실버센터) • 연면적: 1,500.0㎡
기정	-	-	-	사회복지시설	장위동 176-9	1,000	장위3구역 • 복지센터 • 연면적: 2,000.0㎡ ※ 시설용도 변경 검토중
기정	-	-	-	공공청사(치안센터)	장위동 155-1	299.5	• 장위1구역 치안센터
기정	공공청사(장위1주민센터)	장위동 225-100	662	-	-	-	-
	복지시설(장위1동 어린이집)	장위동 218-27	307	-	-	-	
	복지시설(장수경로당)	장위동 218-27	307	-	-	-	

구분	현황			계획			비고
	시설명	위치	면적(㎡)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	복지시설(장위1동경로당)	장위동 산3-101	165	공공청사 ①	장위동 233-631 일대	7,370	• 장위14구역 공공청사 내 경로당 (연면적 200㎡)
	공공청사(장위1치안센터)	장위동 233-250	65.36	공공청사 ②	장위동 233-436 일대	327	• 장위14구역 치안센터
기정	-	-	-	공공청사	장위동 68-942	408	장위10구역 • 해제구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청사 신설
변경	-	-	-	-	-	-	장위10구역 • 공공청사(장위2동 주민센터) 와 통합배치 - 기정 : 408㎡ - 변경 : - (감,408㎡)
기정	-	-	-	사회복지시설	장위동 137-2 일대	1,840	장위8구역 •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신설 (연면적 4,350㎡)
기정	-	-	-	문화시설	장위동 238-83 일대	2,100	장위9구역 •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신설 (연면적 6,600㎡)

※ 향후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면적은 향후 부지가액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1) 공원 · 녹지계획(변경)

구분		시설번호	명칭	면적(㎡)			명칭의 유래
				기정	증 · 감	변경	
합 계				91,916.1	-	91,916.1	
주제공원	소 계			75,139.4	-	75,139.4	
	문화공원		1개소	4,081.3	증) 6,012.0	10,093.3	
		415	상길례문화공원	4,081.3	-	4,081.3	덕온공주의 하가의식인 '길례' 에서 공원명칭 부여
		A	장위공원	-	증) 6,012.0	6,012.0	예술문화가로(돌곶이로) 연계하는 공원
생활권공원	소공원		1개소	6,690.0	-	6,690.0	
		A	소공원	6,690.0	-	6,690.0	문화시설과 연계한 소공원
	근린공원		3개소	39,396.0	-	39,396.0	
		411	아랫말공원	22,625.0	-	22,625.0	옛 장위동을 이루는 마을이름
		140	오동근린공원	7,623.0	-	7,623.0	대상지의 남북축을 연결하는 공원
		A	근린공원	9,148.0	-	9,148.0	서울시문화재 김진흥가와 연계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4개소	24,972.1	감) 6,012.0	18,960.1	
		417	석촌공원	8,321.0	-	8,321.0	석촌 윤용구 선생을 주제로 한 공원
		418	간대공원	4,990.1	-	4,990.1	옛 장위동을 이루는 마을이름
		419	장석공원	5,649.0	-	5,649.0	장석시장의 지역적 맥락에서 유래
		A	장위공원	6,012.0	감) 6,012.0	-	
녹지	소 계			16,776.7	-	16,776.7	
	연결녹지		8개소	10,091.9	-	10,091.9	
		22	장위산내길 (중앙연결녹지)	1,441.0	-	1,441.0	장위동 + 산 + 내 오동근린공원↔우이천 통경축확보
		25 ~27	푸른에움길 (수계연결녹지)	4,863.5	-	4,863.5	푸른 녹지와 물로 둘러싸인 길
		31 ~36	푸른에움길 (보행연결녹지)	2,733.4	-	2,733.4	보행중심의 환경생태녹지로 조성
		37	보행연결녹지	1,054.0	-	1,054.0	우이천 및 석계역 보행연결
	경관녹지		5개소	6,684.8	-	6,684.8	
		a	경관녹지	2,232.4	-	2,232.4	우이천변(한천로) 경관향상
		b	경관녹지	378.9	-	378.9	우이천변(한천로) 경관향상
		c	경관녹지	1,208.0	-	1,208.0	우이천변(한천로) 경관향상
		d	경관녹지	2,651.5	-	2,651.5	우이천변(한천로) 경관향상
		e	경관녹지	214.0	-	214.0	우이천변(한천로) 경관향상

※ 변경사유 : 장위10구역 구역경계 조정(종교시설용지 제척 및 장위초등학교 선형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재수립
장위공원 위치 및 시설의 종류 변경 (면적변경 없음)

2)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마. 교통계획(변경)

구 분	도로명	현 황	기 정	변 경	비 고
간선도로	월계로	• 폭원 : 25m • 차로수 : 6차로	• 폭원 : 25m • 차로수 : 5~6차로	• 폭원 : 25m • 차로수 : 5~6차로	• 현황 유지
	한천로	• 폭원 : 25~31m • 차로수 : 6차로	• 폭원 : 31m • 차로수 : 6차로 • 가감속차로, 좌회전차로 설치	• 폭원 : 31m • 차로수 : 6차로 • 가감속차로, 좌회전차로 설치	• 한천로 단절 구간 8구역 개설, 선형변경
	화랑로	• 폭원 : 35m • 차로수 : 6차로	• 폭원 : 35m • 차로수 : 6차로	• 폭원 : 35m • 차로수 : 6차로	• 현황 유지
보조간선도로	돌곶이로	• 폭원 : 20m • 차로수 : 4차로	• 폭원 : 20~26.5m • 차로수 : 4~5차로	• 폭원 : 25~26.5m • 차로수 : 4~5차로	• 8·9구역 양측 구간 5m 확폭
집산도로	장위로	• 폭원 : 12m • 차로수 : 2차로	• 폭원 : 12~20m • 차로수 : 2~3차로	• 폭원 : 12~20m • 차로수 : 2~3차로	• 해제구역 현황 유지 • 15구역 단절구간 14구역 개설
	장월로	• 폭원 : 12m • 차로수 : 2차로	• 폭원 : 12~20m • 차로수 : 2~3차로	• 폭원 : 12~20m • 차로수 : 2~3차로	• 9구역 구간 8m확폭 • 해제구역 현황유지
	순환도로	-	• 폭원 : 10~20m • 차로수 : 2~3차로	• 폭원 : 10~20m • 차로수 : 2~3차로	• 8구역 단절구간 20m 신설 • 해제구역 폐지 • 폭원 축소

※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는 변경 없으나, 장위10구역 내 일부 국지도로(소로) 변경

바. 경관계획(변경없음)

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1) 주거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

구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	비고
기정	장위1	-	장위동	144-24	8.0	-	-	-	1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2	-	장위동	290-9	2.5	-	-	-	2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3	-	장위동	305	6.6	-	-	-	6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4	-	장위동	62-1	15.4	-	-	-	3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5	-	장위동	173-114	9.0	-	-	-	3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6	-	장위동	25-55	10.5	-	-	-	5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구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	비고
기정	장위7	-	장위동	189-3	8.8	-	-	-	2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8	-	장위동	85	12.2	-	-	-	7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9	-	장위동	238-83	8.4	-	-	-	7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10	-	장위동	68-37	9.4	-	-	-	3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변경	장위10	-	장위동	68-37	9.1	-	-	-	3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14	-	장위동	233-552	14.5	-	-	-	4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주) 1단계(2009년부터), 2단계(2011년부터), 3단계(2012년부터), 4단계(2013년부터), 5단계(2014년부터), 6단계(2015년부터), 7단계(2023년부터) 용적률, 건폐율, 층수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름
※ 변경사유 : 장위10구역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 (종교시설용지 제척 및 장위초등학교 선형 변경)

2) 재건축사업(해당없음)

아.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사업방식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총 계				1,127,246.7	증) 43.0	1,127,289.7	-	
촉진 구역	소 계 (11개 구역)			1,051,987.8	감) 2,675.0	1,049,312.8	-	
	장위1구역	장위동 144-24 일원		80,316.6	-	80,316.6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2구역	장위동 290-9 일원		25,344.0	-	25,344.0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3구역	장위동 305 일원		66,011.0	-	66,011.0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4구역	장위동 62-1 일원		153,501.0	-	153,501.0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5구역	장위동 173-114 일원		88,765.7	-	88,765.7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6구역	장위동 25-55 일원		105,136.9	-	105,136.9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7구역	장위동 189-3 일원		87,635.6	-	87,635.6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8구역	장위동 85 일원		121,634.0	-	121,634.0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9구역	장위동 238-83 일원		84,248.0	-	84,248.0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10구역	장위동 68-37 일원		94,037.0	감) 2,675.0	91,362.0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14구역	장위동 233-552 일원		145,358.0	-	145,358.0	주거정비형재개발	
존치 지역	존치 관리구역	소 계		75,258.9	증) 2,718.0	77,976.9	-	
		존치구역	존치시설	75,258.9	증) 2,718.0	77,976.9	-	

※ 변경사유 : 장위10구역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 (종교시설용지 제척 및 장위초등학교 선형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1호(2008.4.3.) 당시 미반영된 장위초등학교 현황면적 반영

자.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 · 감	변 경	
계		1,127,246.7	증) 43.0	1,127,289.7	100.0
일반주거지역	소계	1,122,369.2	-	1,122,369.2	99.5
	제1종일반주거지역	60,551.0	-	60,551.0	5.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83,335.5	증) 3,255.0	86,590.5	7.6
	제2종일반주거지역	937,175.5	감) 3,212.0	933,963.5	82.8
	제3종일반주거지역	41,307.2	-	41,307.2	3.7
자연녹지지역		4,877.5	-	4,877.5	0.4

※ 변경사유 : 장위10구역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 (종교시설용지 제척 및 장위초등학교 선형 변경)

2) 재정비촉진구역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가) 장위1구역 ~ 자) 장위9구역, 카) 장위14구역(변경없음)

차) 장위10구역(재개발사업)(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94,037.0	감) 2,675.0	91,362.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94,037.0	감) 2,675.0	91,362.0	100.0

※ 변경사유 : 장위10구역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 (종교시설용지 제척 및 장위초등학교 선형 변경)
- 장위10구역 면적 : 90,782.0㎡ (학교부지 선형조정을 위해 학교면적 580㎡을 장위10구역 내 포함하여 조서 작성 : 91,362.0㎡)

차.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 건폐율 ·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1) 장위1구역 ~ 9) 장위9구역, 11) 장위14구역(변경없음)

10) 장위10구역(변경)

구분	주용도	획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m)	
				기준	상한	평균/최고층수	최고높이(m)
기정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73,140.0	30이하	211이하	264.79이하	22.3층이하/ 32층 이하	97m 이하
변경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70,302.0	30이하	211이하	274.38이하	- /35층 이하	105m 이하

※ 변경사유 : 장위10구역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용적률 및 최고높이 등 건축계획 변경

카.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구 분		면 적(㎡)							
		소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기정	변경						
촉진구역 면적(㎡)		1,051,987.8	1,048,732.8	80,316.6	25,344.0	66,011.0	153,501.0	88,765.7	105,136.9
분 담 률 (%)		15.38%							
기반시설면적(㎡)	계획기반시설①	295,448.8 (28.08%)	296,614.8 (28.28%)	39,663.2 (49.38%)	7,481.4 (29.52%)	13,330.0 (20.19%)	44,315.0 (28.86%)	31,071.7 (35.0%)	43,716.3 (41.59%)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②	86,580.8	85,048.8	23,782.0	627.0	607.0	5,237.0	12,382.6	19,018.0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③	84,712.75	83,850.8	7,627.0	787.0	5,522.0	7,951.0	3,981.3	13,556.0
	공공시설 설치 대지환산④	31,801.8	33,040.4	-	-	1,399.0	2,185.6	999.0	-
	대지지분⑤	494.5	494.5	-	-	-	-	-	-
	순부담면적(㎡) ①-②-③+④+⑤	156,451.6	161,250.1	8,254.2	6,067.4	8,600.0	33,312.6	15,706.8	11,142.3

구 분		면 적(㎡)					
		7구역	8구역	9구역	10구역		14구역
					기정	변경	
촉진구역 면적(㎡)		87,635.6	121,634.0	84,248.0	94,037.0	90,782.0	145,358.0
분 담 률 (%)		15.38%					
기반시설면적(㎡)	계획기반시설①	22,861.9 (26.09%)	24,775.0 (20.36%)	11,892.3 (14.12%)	17,823.0 (18.93%)	18,989.0 (20.92%)	38,519.0 (26.50%)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②	4,613.7	4,188.0	2,985.5	2,174.0	642.0	10,966.0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③	4,227.95	11,079.0	3,540.5	5,403.0	4,541.0	21,038.0
	공공시설 설치 대지환산④	-	2,675.0	3,898.3	3,932.9	5,171.5	14,746.0 (공공청사 건축물 및 기부채납 공공주택) 1,966.0 (구역외 한천로 및 장월로 가각부 개설)
	대지지분⑤	-	-	-	-	-	494.5
	순부담면적(㎡) ①-②-③+④+⑤	14,020.3	12,183.0	9,246.6	14,178.9	18,977.5	23,721.5

※ 장위14구역 : 대토되는 공공청사②(327㎡)는 계획기반시설에서 제외함
※ 14구역 한천로 및 장월로 가각부 개설 환산면적은 장위8구역의 촉진지구 편입으로 인하여 8구역이 부담하며, 14구역 환산면적 추후 정리 필요
※ 존치관리구역 기반시설 포함 시 전체 지구 기반시설률 32.6%

타. 공공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 분	구 역 명	전용면적 40㎡ 이하	전용면적 40~50㎡ 이하	전용면적 50~6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계
기정	장위 1구역	71(30)	69	22	-	162(30)
기정	장위 2구역	40	37	15	-	92
기정	장위 3구역	84	79	21	-	184
기정	장위 4구역	194	200	90	-	484
기정	장위 5구역	123	117	36	-	276
기정	장위 6구역	129	126	30	-	285
기정	장위 7구역	125	137	33	-	295
기정	장위 8구역	144	-	581	59	784
기정	장위 9구역	112	-	450	201	763
기정	장위10구역	139	137	65	-	341
변경		128	118	75	20	341
기정	장위14구역	189	203	47	-	439
계(세대)		1,339(30)	1,086	1,400	280	4,105(30)
비율(%)		32.6	26.5	34.1	6.8	100.0

※ 장위1구역 ( )는 도시형생활주택 내 공공주택임
※ 변경사유 : 장위10구역 구역경계 조정 및 토지이용계획 재수립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파.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하. 기타 계획(에너지순환,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특성화계획)(변경없음)

거.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너.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더.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촉진지구		1,127,246.7	증) 43.0	1,127,289.7	100.0	
존치관리구역	소계	75,258.9	증) 2,718.0	77,976.9	6.9	
	②	15,304.0	감) 537.0	14,767.0	1.3	장위초등학교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③	2,408.0	-	2,408.0	0.2	장위동교회
	⑤	4,215.0	-	4,215.0	0.4	공공공지 및 사회복지시설
	⑥	2,453.0	-	2,453.0	0.2	성북청소년수련관
	⑦	3,183.8	-	3,183.8	0.3	장석시장
	⑫	47,695.1	증) 932.0	48,627.1	4.3	도로
	⑬	-	증) 2,323.0	2,323.0	0.2	사랑제일교회 등

※ 변경사유 : 장위10구역 구역경계 조정(종교시설용지 제척)에 따른 존치지역 면적 변경

러.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1) 장위1구역 ~ 9) 장위9구역, 11) 장위14구역(변경없음)

10) 장위10구역 : Ⅰ-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참고

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 조서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증 감	변경	
장위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성북구 장위동 일원	1,127,246.7	증) 43.0	1,127,289.7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1호(2008.4.3.) 당시 미반영된 장위초등학교 현황면적 반영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 감	변 경	
계	1,127,246.7	증) 43.0	1,127,289.7	100.0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 감	변 경	
일반주거지역	소계	1,122,369.2	증) 43.0	1,122,412.2	99.5
	제1종일반주거지역	60,551.0	-	60,551.0	5.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83,335.5	증) 3,255.0	86,590.5	7.6
	제2종일반주거지역	937,175.5	감) 3,212.0	933,963.5	82.8
	제3종일반주거지역	41,307.2	-	41,307.2	3.7
자연녹지지역		4,877.5	-	4,877.5	0.4

※ 변경사유 : 장위10구역 구역경계 조정(종교시설용지 제척 및 장위초등학교 선형조정) 및 토지이용계획 재수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1호(2008.4.3.) 당시 미반영된 장위초등학교 현황면적 반영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3	35~38	간선 도로	9,500 (623)	종암동	장지리	일반 도로	장위동	건고시267 (71.06.10)	화랑로
기정	대로	3	39	25~30	간선 도로	5,110 (1,120)	미아동 42-13	하계동 184-1	일반 도로	-	-	월계로
기정	대로	3	40	25~31	간선 도로	11,530 (1,310)	군자동 (광로5호)	수유동	일반 도로	장위동	총고시722 (36.12.26)	한천로
기정	중로	1	A	25~26.5	보조 간선	1,348	장위동 64-89	장위동 310-22	일반 도로	-	총고시722 (36.12.26)	돌곶이로
기정	중로	1	510	20~25	집산 도로	489	장위동 154-9	장위동 237-90	일반 도로	-	-	장월로
기정	중로	1	512	20	집산 도로	55	장위동 158-43	장위동 157-22	일반 도로	-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1	513	20	집산 도로	356	장위동 74-140	장위동 119-1	일반 도로	-	서고시23 (74.03.02)	장위로
기정	중로	1	514	20	집산 도로	396	장위동 238-238	장위동 74-54	일반 도로	-	서고시111 (08.04.03)	장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15	20	집산 도로	784	장위동 231-170	장위동 233-32	일반 도로	-	서고시 111 (08.04.03)	장위로 선형변경
기정	중로	1	516	20~23	집산 도로	93	장위동 135-4	장위동 122-1	일반 도로	-	서고시111 (08.04.03)	장위로
기정	중로	1	517	20	집산 도로	570	장위동 165-3	장위동 291	일반 도로	-	건고시123 (73.04.04)	순환도로
기정	중로	1	521	18~20	집산 도로	366	장위동 69-48	장위동 36-9	일반 도로	-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기정	중로	1	522	20	집산 도로	289	장위동 178-1	장위동 201-5	일반 도로	-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1	523	20	집산 도로	441	장위동 143-38	장위동 89-74	일반 도로	-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기정	중로	1	524	18~23	집산 도로	232	장위동 93-4	장위동 62-1	일반 도로	-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기정	중로	2	510	15	집산 도로	251	장위동 293-9	장위동 295-25	일반 도로	-	-	샘터길
기정	중로	2	511	15	집산 도로	371	장위동 316-9	장위동 316-9	일반 도로	-	건고시123 (73.04.04)	
기정	중로	2	512	15	집산 도로	167	장위동 60-2	장위동 55-28	일반 도로	-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3	A	13	집산 도로	140	장위동 68-77	장위동 69-49	일반 도로	-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변경	중로	3	A	15	집산 도로	140	장위동 68-77	장위동 69-49	일반 도로	-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기정	중로	3	520	12~15	국지 도로	269	장위동 43-3	월계동 492-11	일반 도로	-	서고시3 (69.01.18)	
기정	중로	3	521	12	국지 도로	364	장위동 63-75	장위동 43-6	일반 도로	-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3	524	12	집산 도로	26	장위동 55-25	장위동 55-21	일반 도로	-	서고시111 (08.04.03)	석관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정	중로	3	526	13	집산 도로	197	장위동 300	장위동 317-2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3	527	12	국지 도로	43	장위동 110-28	장위동 110-21	일반 도로	-	서고시231 (11.08.11)	
기정	중로	2	-	20	집산 도로	378	장위동 237-268	장위동 238-510	일반 도로	-	-	장월로 (9구역)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	12~15		651	장위동 238-534	상월곡동 35-7	일반도로	-	-	장월로(10구역)
기정	소로	1	S1	10	국지도로	103	장위동 8-2	장위동 8-3	일반도로	-	서고시212(02.06.12)	석관지구단위계획구역
기정	소로	1	520	10	국지도로	85	장위동 231-280	장위동 산 3-110	일반도로	장위동	서고시 111(08.04.03)	
기정	소로	1	524	10	국지도로	80	장위동 270-346	장위동 120-14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S6	10~11		227	장위동 50-17	장위동 63-61	일반도로	-	서고시212(02.06.12)	석관지구단위계획구역
기정	소로	1	A	10		30	장위동 270-164	장위동 127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B	10	국지도로	270	장위동 68-63	장위동 68-1110	일반도로	-	서고시240(19.07.25)	
기정	소로	1	①	10~15	국지도로	673	장위동 231-39	장위동 233-636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②	10	국지도로	340	장위동 233-20	장위동 233-156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A	10	국지도로	10	장위동 63-58	장위동 63-7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65	장위동 205-1	장위동 207-15	일반도로	-	서고시406(14.11.27)	
기정	소로	2	A	8	국지도로	50	장위동 272-122	장위동 272-122	일반도로	-	서고시240(19.07.25)	
기정	소로	2	B	8	국지도로	8	장위동 156	장위동 157-9	일반도로	-	서고시99(20.03.12)	빗물펌프장(쓰레기적환장)진출입로
기정	소로	2	C	8	국지도로	52	장위동 75-462	장위동 279	일반도로	-	-	김진흥가진입로
신설	소로	2	D	6	국지도로	200	장위동 68-1320	장위동 74-223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38	장위동 205-17	장위동 270-214	일반도로	-	서고시406(14.11.27)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239	6		25	장위동 63-59	장위동 63-60	일반도로	-	서고시212 (02.06.12)	석관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정	소로	3	501	8	국지도로	153	장위동 270-463	장위동 270-465	일반도로	-	서고시111 (08.04.03)	
기정	소로	3	524	6~8	국지도로	142	장위동 37-31	장위동 56	일반도로	-	서고시231 (11.08.11)	
기정	소로	3	A	4	국지도로	38	장위동 272-122	장위동 272-122	일반도로	-	서고시240 (19.07.25)	
기정	소로	3	B	6		185	장위동 136-53	장위동 77-66	일반도로	-	서고시88 (19.03.07)	
기정	소로	3	234	6		220	장위동 274	장위동 65-3	일반도로	-	서고시3 (69.01.18)	
신설	소로	3	C	4	국지도로	162	장위동 68-39	장위동 74-208	일반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A	중로 3-A	• 도로 폭원 변경 - 13m → 15m	• 유턴차로 확보를 위한 도로 폭원 확폭
-	소로 2-D	• 도로 신설 - 폭원 : 6m	• 종교시설용지(사랑제일교회) 제척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	소로 3-C	• 도로 신설 - 폭원 : 4m	• 종교시설용지(사랑제일교회) 이면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

(2)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폐지	A	주차장	주차장	장위동 238-229일대	6,012.0	감) 6,012.0	-	서고시240 (19.07.25)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①	주차장	주차장	장위동 231-47 일대	2,590.0	-	2,590.0	서고시302 (22.07.14)	-
기정	②	주차장	주차장	장위동 233-631 일대	7,370.0	-	7,370.0	서고시302 (22.07.14)	공공청사 중복결정 (하부조성)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주차장	• 폐지	• 주변 개발현황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공원 하부 주차장 폐지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140	오동 근린공원	근린 공원	미아,장위,번동, 상하월곡동	1,453,858.0 (7,623.0)	-	1,453,858.0 (7,623.0)	건고시2181 (66.02.05)	-
기정	411	아랫말 공원	근린 공원	월계동 479-4일대	22,625.0	-	22,625.0	서고시111 (08.04.03)	-
기정	A	근린공원	근린 공원	장위동 76-3일대	9,148.0	-	9,148.0	-	-
기정	A	소공원	소공원	장위동 238-38일대	6,690.0	-	6,690.0	-	-
기정	415	상길례 공원	문화 공원	장위동 289-29일대	4,081.3	-	4,081.3	서고시111 (08.04.03)	-
기정	417	석촌 공원	어린이 공원	장위동 180-1일대	8,321.0	-	8,321.0	-	-
기정	418	간대 공원	어린이 공원	장위동 207-48일대	4,990.1	-	4,990.1	서고시111 (08.04.03)	-
기정	419	장석 공원	어린이 공원	장위동 110-53일대	5,649.0	-	5,649.0	서고시111 (08.04.03)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A	-	어린이 공원	장위동 238-229일대	6,012.0	-	6,012.0	서고시240 (19.07.25)	-
변경			문화 공원	장위동 69-36일대					

※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면적을 의미함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문화공원	• 시설의 종류 변경 - 어린이공원 → 문화공원 • 위치 변경 - 위치 : 장위동 238-229 일대 → 장위동 69-36 일대	• 상위계획(예술문화가로)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을 위한 도서관확보 등 통합문화공원 조성 • 토지이용계획 변경(종교시설 제척)에 따른 돌곶이로변으로 공원 위치 변경 • 공원 내 도서관(교양시설) 확보 - 연면적 : 3,530㎡

※ 연면적은 향후 부지가액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녹지(변경없음)

(3) 공공공지(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공공청사(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52	장위3동 주민센터	공공청사	장위동 98-1일대	2,050.0	-	2,050.0	서고시111 (08.04.03)	-
기정	53	소방 치안센터	공공청사	장위동 270-172일대	986.9	-	986.9	서고시111 (08.04.03)	-
기정	54	장위3동 치안서비스센터	공공청사	장위동 270-388일대	754.8	-	754.8	서고시111 (08.04.03)	-
기정	55	장위3동 커뮤니티센터	공공청사	장위동 158-15일대	1,297.2	-	1,297.2	서고시111 (08.04.03)	-
기정	59	치안센터	공공청사	장위동 275-18일대	299.5	-	299.5	서고시290 (11.09.29)	-
기정	A	장위2동 주민센터	공공청사	장위동 68-1335일대	1,007.0	증) 408.0	1,415.0	서고시240 (19.07.25)	-
변경				장위동 69-53일대					
폐지	B	공공청사	공공청사	장위동 68-942일대	408.0	감) 408.0	-	서고시240 (19.07.25)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장위2동 주민센터	공공청사	• 위치변경 - 위치 : 장위동 68-1335일대 → 장위동 69-53일대	• 토지이용계획 변경(종교시설 제척) 에 따른 공공청사 위치 변경 및 공공청사B 통합배치
B	공공청사	공공청사	• 폐지	•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공공청사A와의 통합배치

(2)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	장위초등학교	학교	장위동 68-8	15,784.0 (480.0)	증) 43.0	15,827.0 (1,060.0)	시교위고시5 (87.02.17.)	학교선형 변경 (정형화)
기정	-	광운초등학교	학교	장위동 128	17,457.6	-	17,457.6	시교위고시5 (87.02.17.)	-
		남대문중학교	학교	장위동 124-1					

※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1호(2008.4.3.) 당시 미반영된 장위초등학교 현황면적 반영
※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10구역 내 면적을 의미함
※ 장위10구역 내 학교 편입면적 : 1,060㎡ (기부채납 면적 : 480㎡ / 대토부지 면적 : 580㎡)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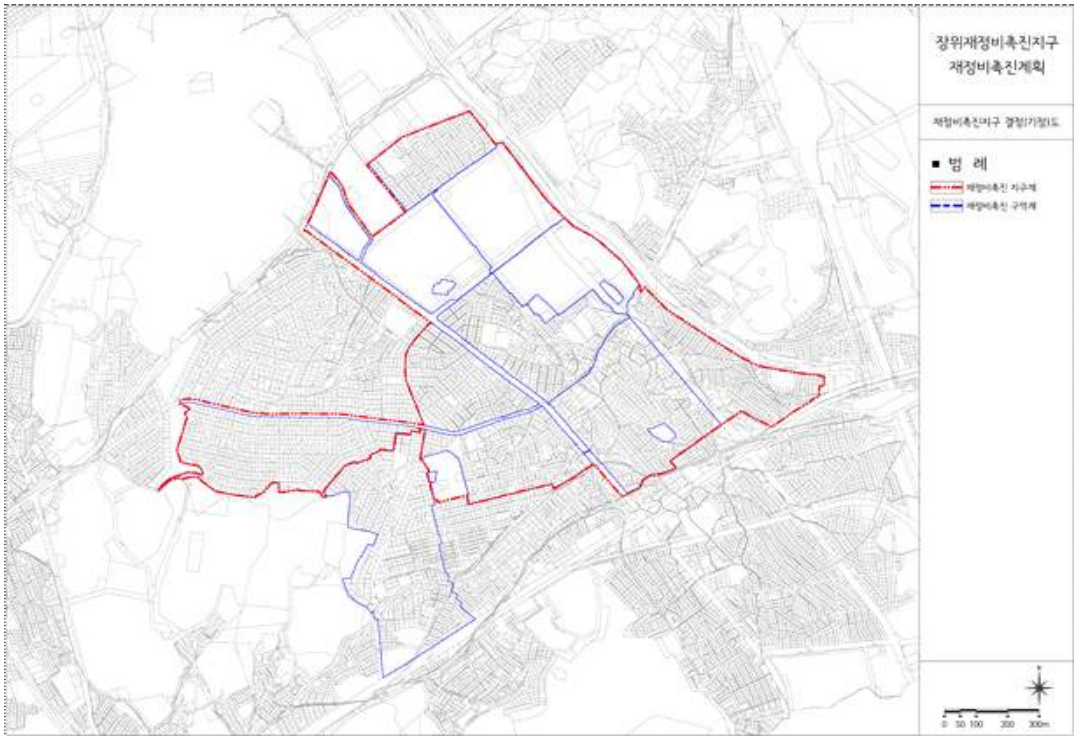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	장위 초등학교	학교	• 현황면적 반영 - 면적 : 증)43.0㎡ • 장위초등학교부지 선형조정	• 고시면적과 편입토지조서 면적 오차 정정 • 학교부지 정형화를 위해 장위10구역과 대토 진행 (면적:580㎡)

(3)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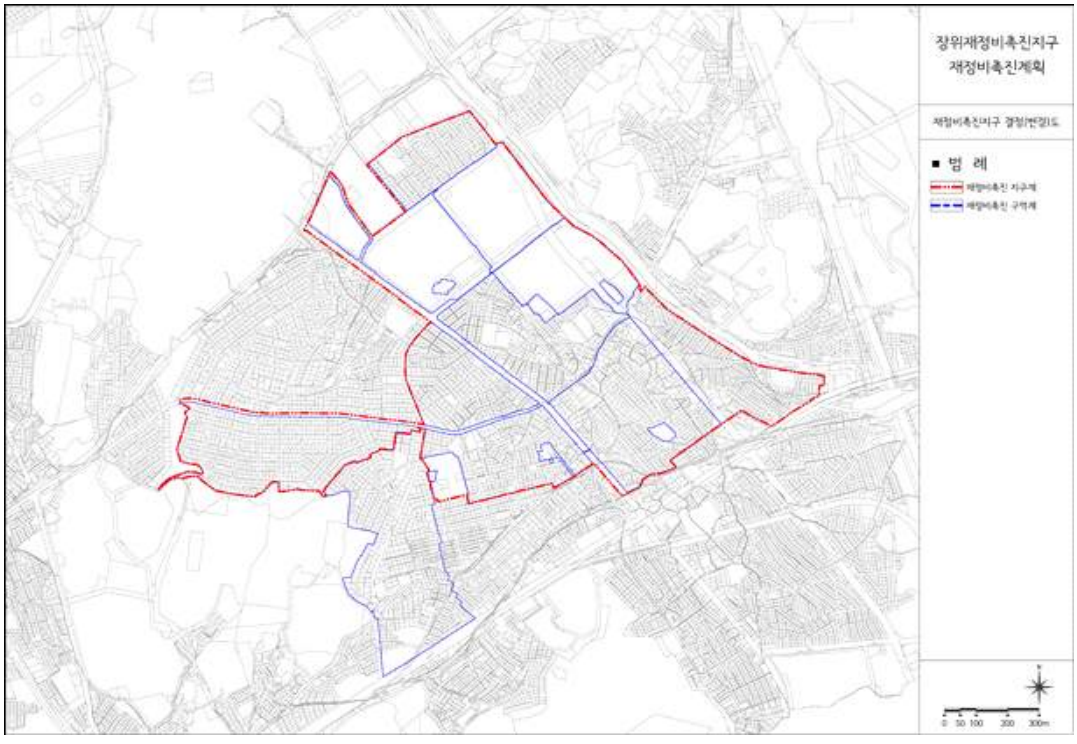
(4) 청소년수련시설(변경없음)

(5) 문화시설(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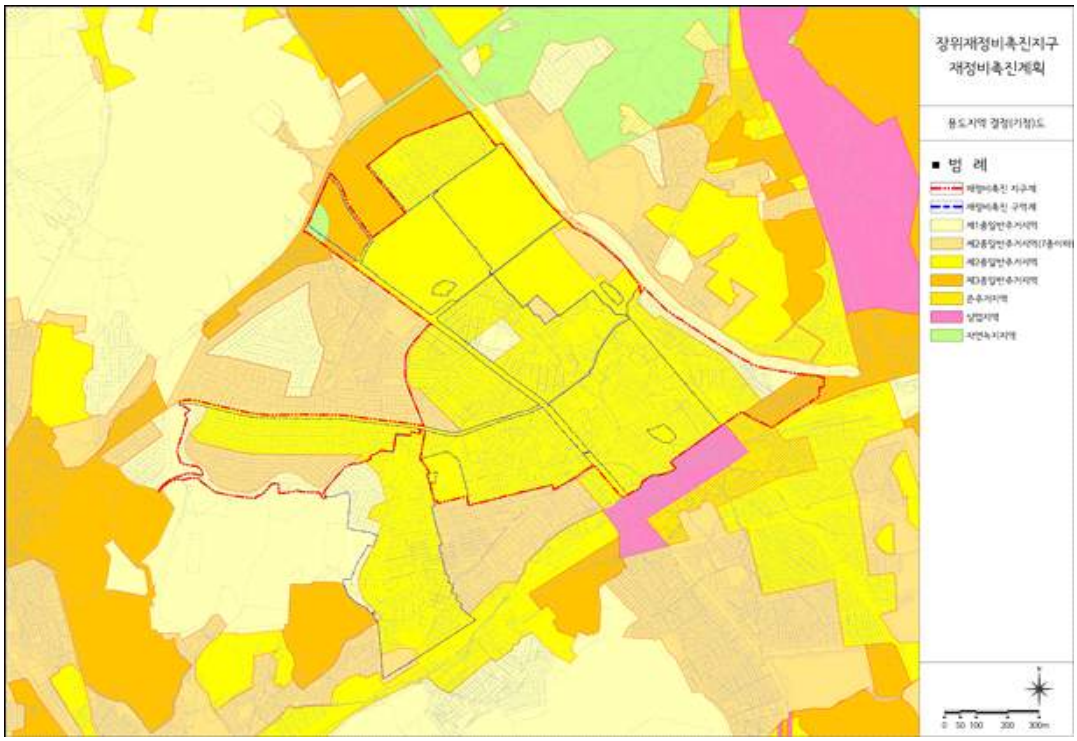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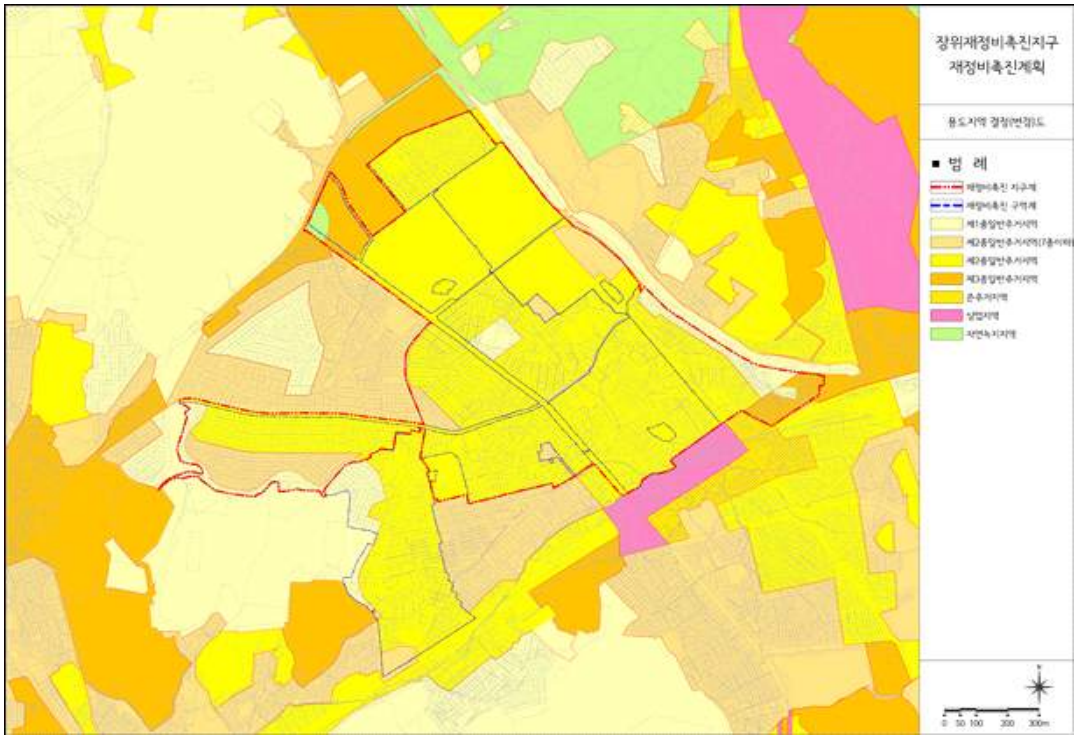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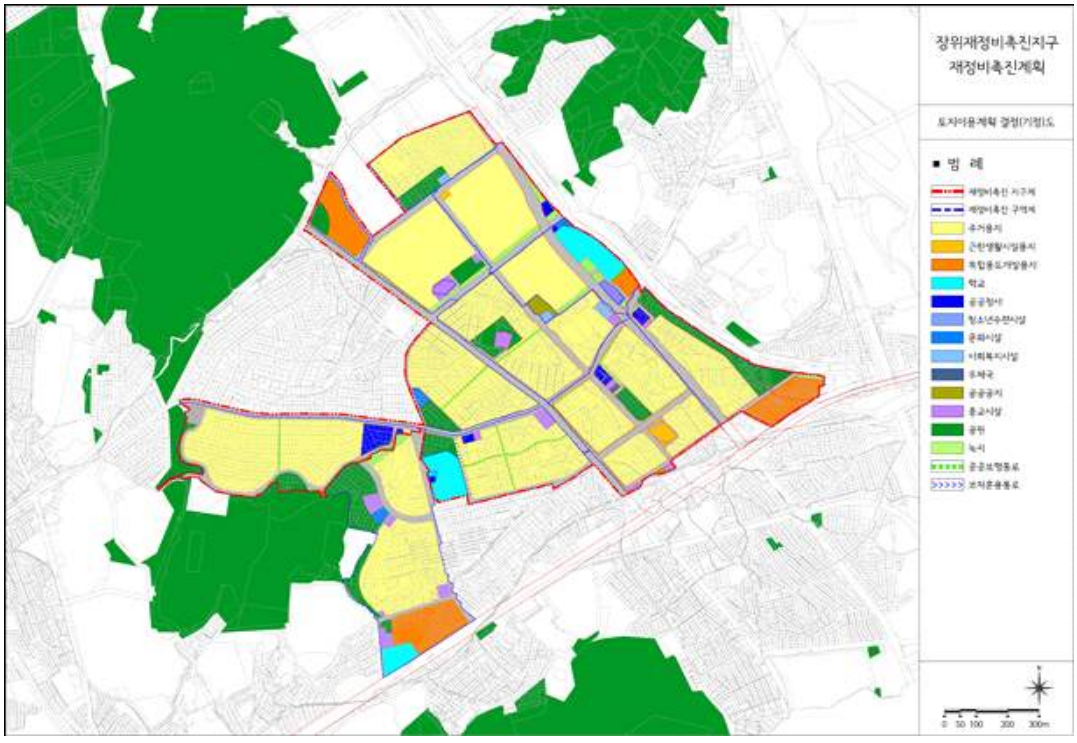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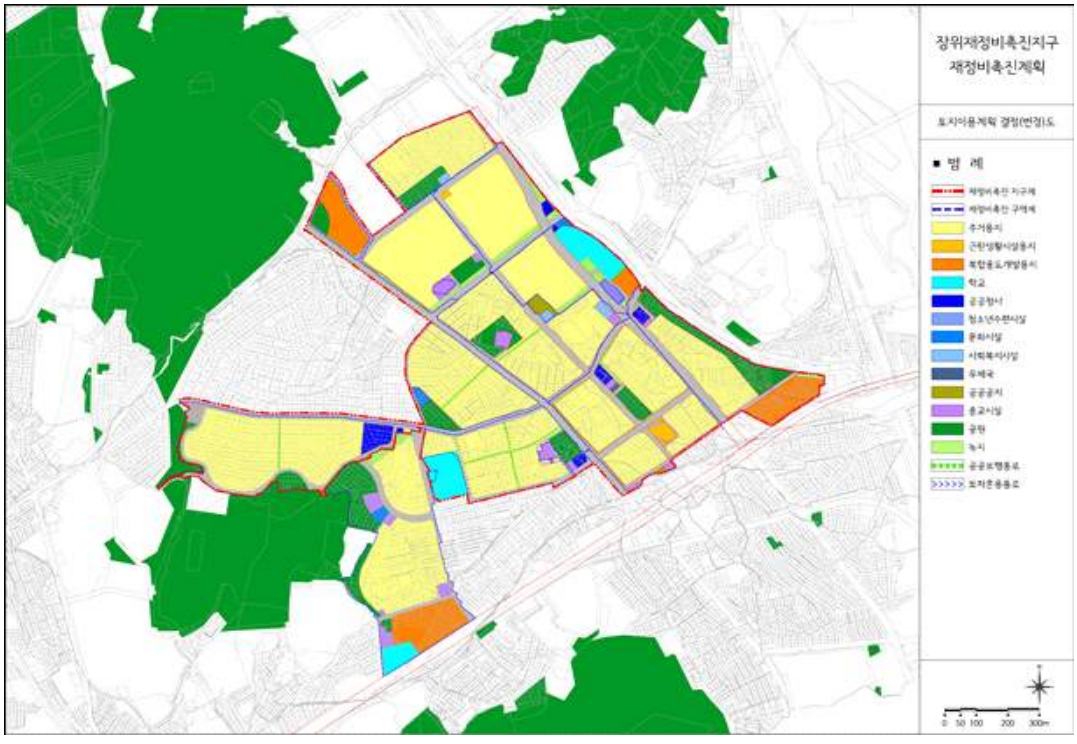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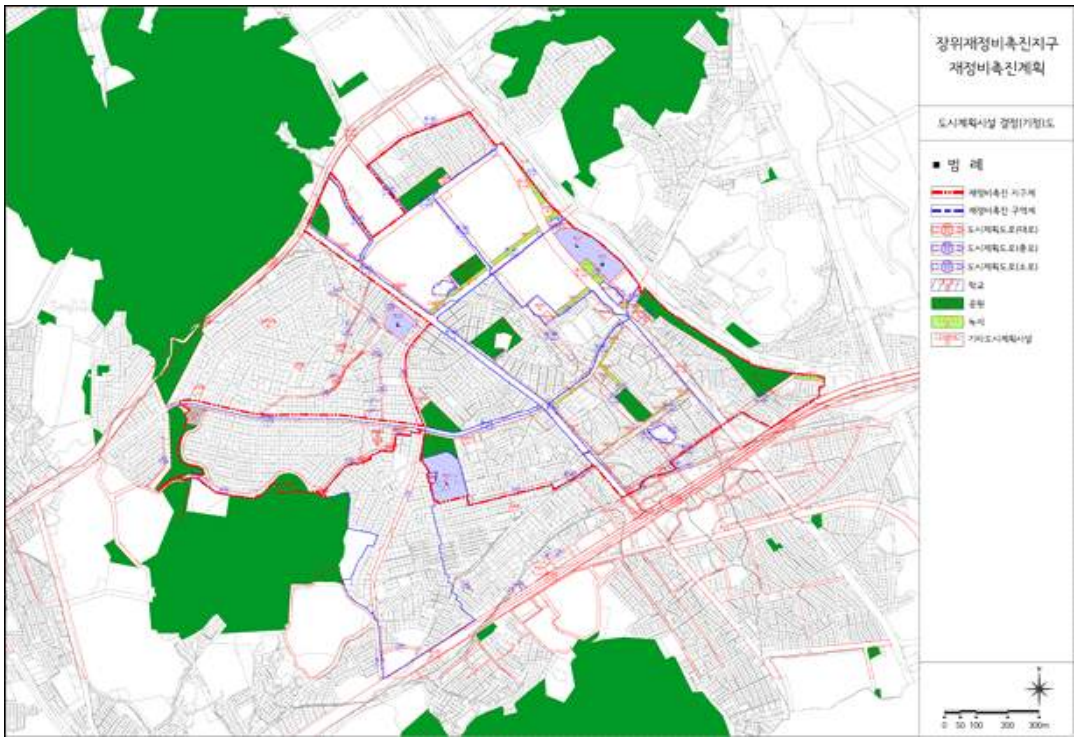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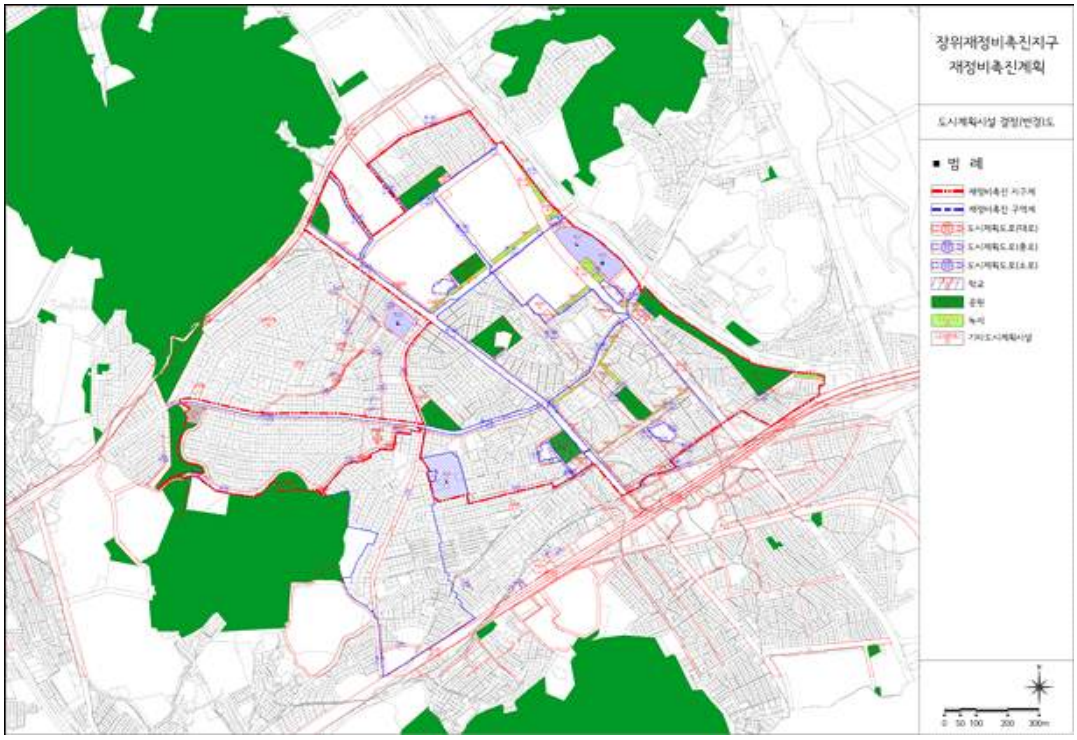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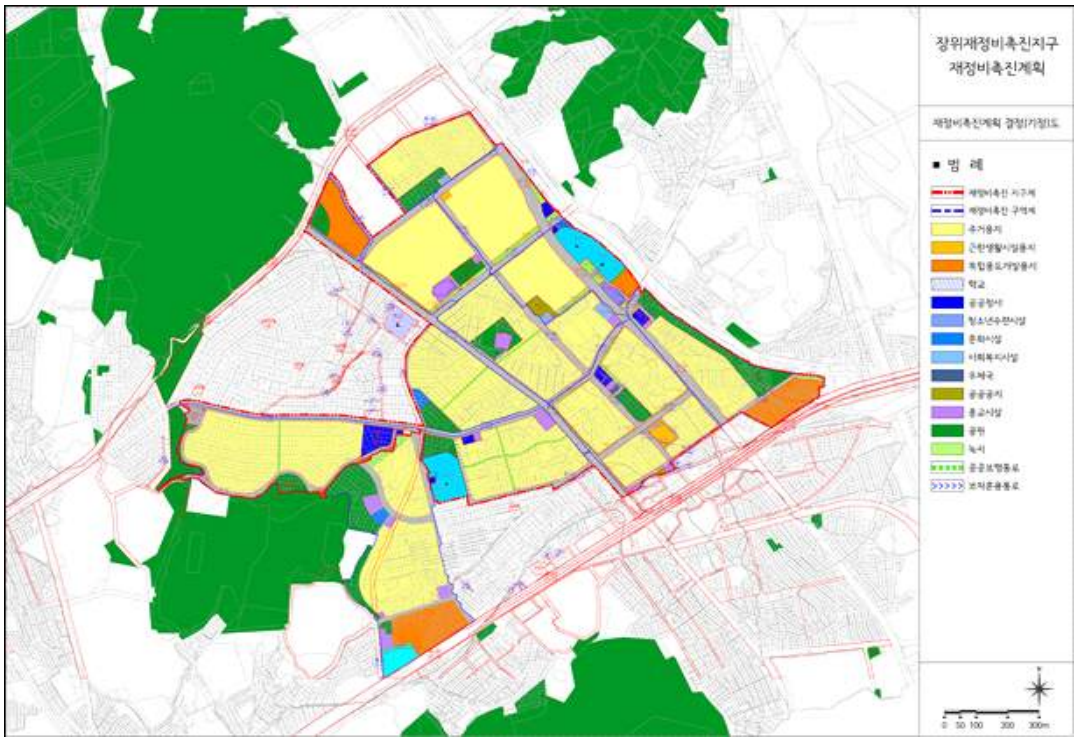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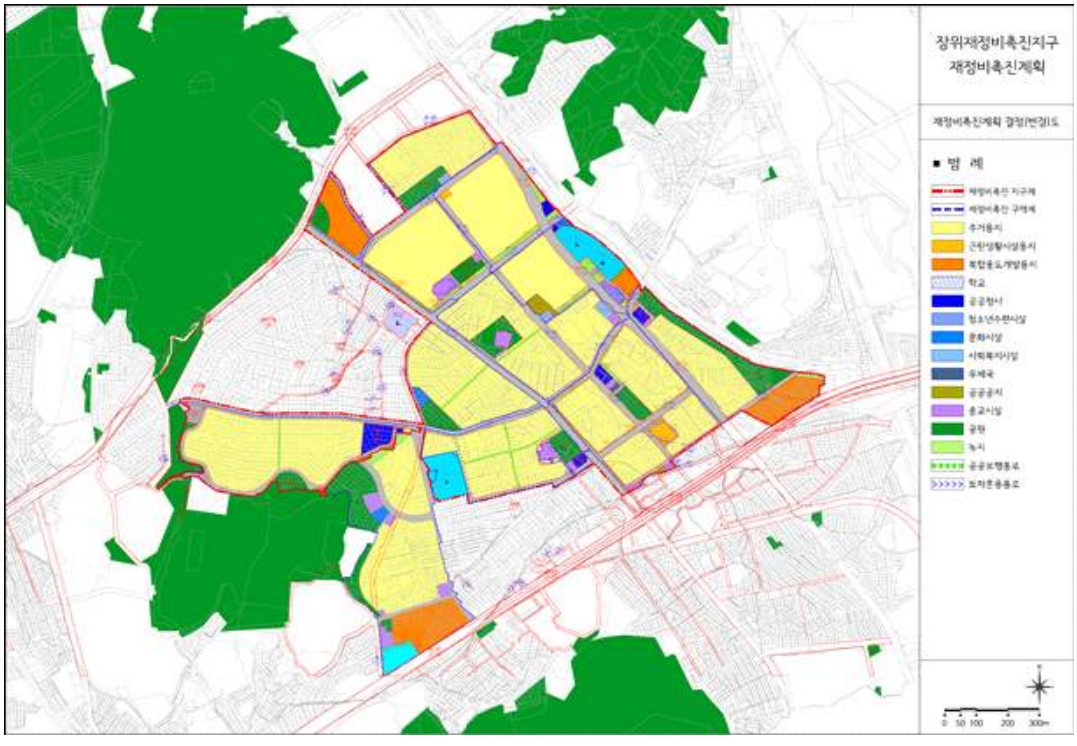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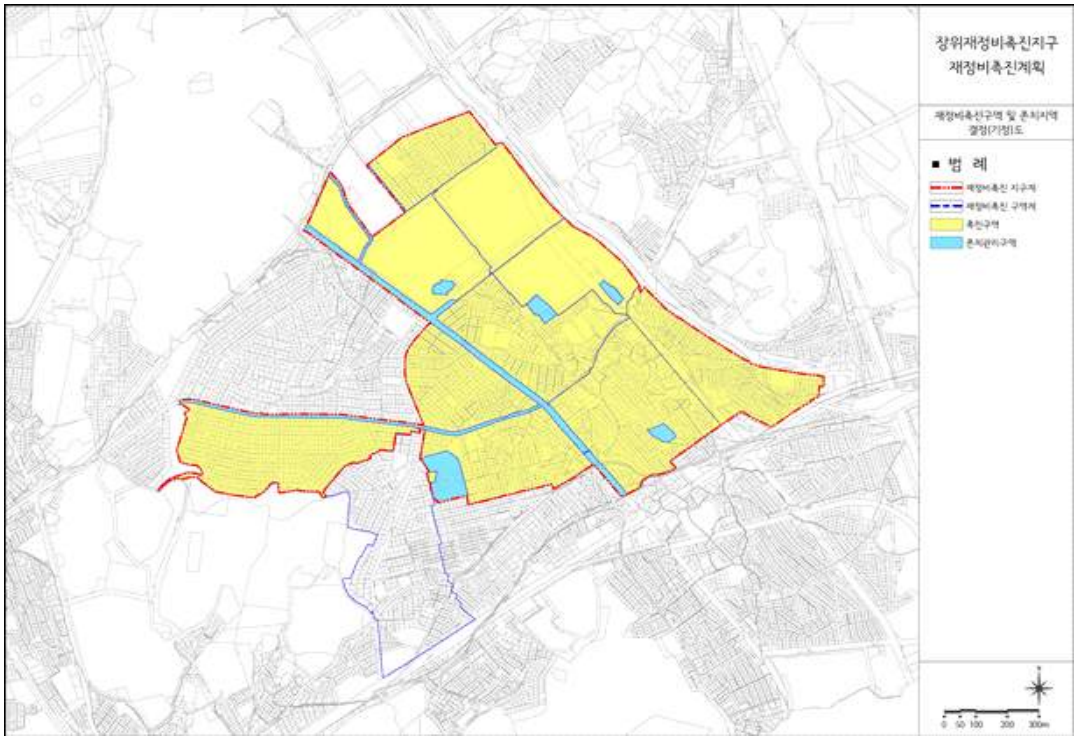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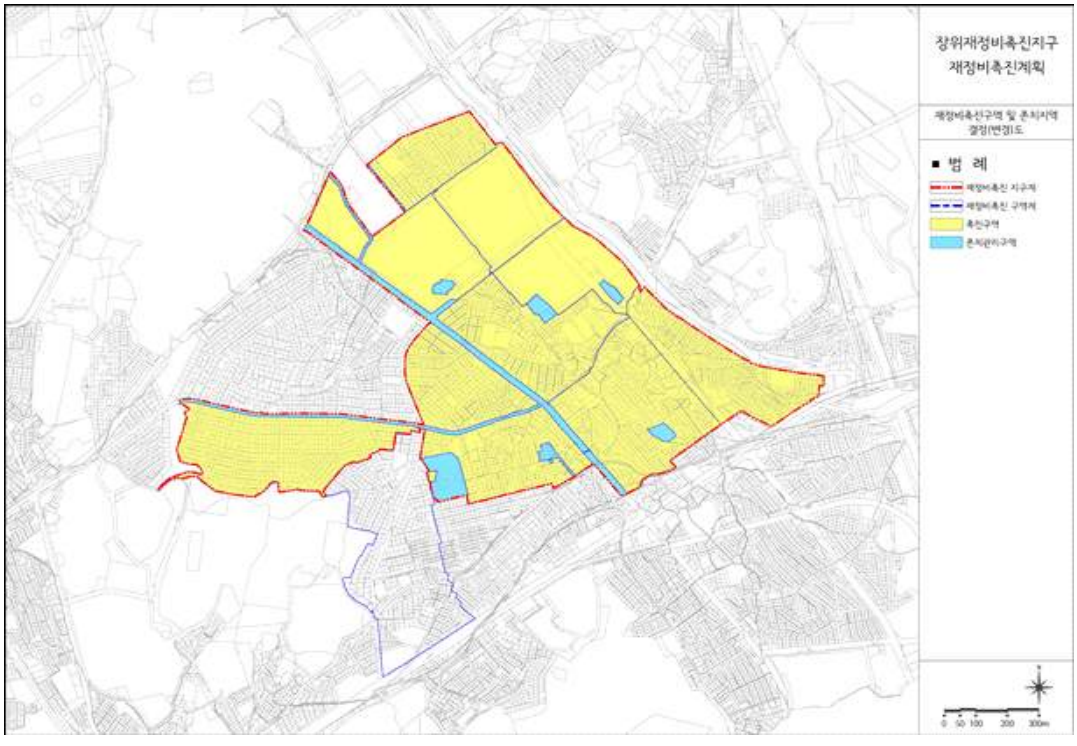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결정(기정)도]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11호

상계동 177-6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77-66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상계동 177-6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 치	관리계획의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노원구 상계동 177-66번지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현황		96,468.5㎡	전체 : 400동 노후·불량 : 322동(80.5%)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1) 관리지역 결정 조서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상계동 177-6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노원구 상계동 177-66번지 일대	-	증) 96,468.5	96,468.5	-

2) 관리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명칭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상계동 177-6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위치 : 노원구 상계동 177-66번지 일대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면적 : 96,468.5㎡	노후·불량 주택이 혼재되어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계획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지역 지정

나.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96,468.5	100.0	-
기사업시행구역	공동주택용지	소계		4,353.0	4.5	-
		A1	모아주택	4,104.0	4.3	오성빌라
	정비기반시설	-	도로	249.0	0.2	-
사업가능구역	공동주택 용지	소계		54,647.1	56.6	-
		B1	모아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5,804.9	6.0	-
		B2	모아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5,962.5	16.5	-
		B3	모아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1,220.5	11.6	-
		B4	모아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9,251.6	9.6	-
		B5	모아5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2,407.6	12.9	-
	정비기반시설	소계		6,354.8	7.8	-
		-	도로	1,846.6	1.9	-
		-	공원	4,508.2	4.7	-
	기타	소계		1,172.0	1.2	-
		-	종교	1,172.0	1.2	-
사업가능구역 외		소계		29,941.6	31.0	-
		C1~7 / 그 외	도로	14,013.6	14.5	-
			공공청사	869.0	0.9	-
			사회복지시설	342.0	0.4	-
			주차장	197.0	0.2	-
			대지	14,520.0	15.1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다.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1)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조성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35	8	국지도로	131	상계동 소1-54	상계동 167-63	일반도로	서고 1974-60 (1974.5.11)	-
변경	소로	2	35	8	국지도로	120	상계동 387-225	상계동 387-1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36	8	국지도로	202	상계동 소 2-35	상계동 177-16	일반도로	서고 1974-60 (1974.5.11)	-
변경	소로	2	36	9	국지도로	202	상계동 181-4	상계동 177-59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30	8	국지도로	650	상계동 407-8	상계동 소1-54	일반도로	서고 1974-60 (1974.5.11)	-
변경	소로	2	30	8	국지도로	160	상계동 387-104	상계동 181-3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85	8	국지도로	129	상계동 소1-56	상계동 소2-89	일반도로	서고 1974-60 (1974.5.11)	-
변경	소로	2	85	8	국지도로	129	상계동 387-186	상계동 180-1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39	8	국지도로	476	상계동 851-1	상계동 579	일반도로	서고 1974-60 (1974.5.11)	-
변경	소로	2	39	8	국지도로	212	상계동 373-1	상계동 321-1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120	상계동 321-17	상계동 321-12	일반도로	서고 1974-60 (1974.5.11)	-
변경	소로	2	-	8	국지도로	120	상계동 321-14	상계동 321-1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80	8	국지도로	160	상계동 178-3	상계동 321-26	일반도로	서고 1974-60 (1974.5.11)	-
변경	소로	2	80	8	국지도로	112	상계동 1282	상계동 178-9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82	8	국지도로	100	상계동 321-9	상계동 190-1	일반도로	서고 1974-60 (1974.5.11)	-
변경	소로	2	82	8	국지도로	102	상계동 321-78	상계동 320-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81	8	국지도로	202	상계동 320-11	상계동 179-4	일반도로	서고 1974-60 (1974.5.11)	-
변경	소로	2	81	8	국지도로	263	상계동 320-11	상계동 179-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82	8	국지도로	225	상계동 193-122	상계동 320-8	일반도로	서고 1974-60 (1974.5.11)	-
변경	소로	2	83	8	국지도로	100	상계동 320-8	상계동 193-4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84	8	국지도로	128	상계동 196-5답	상계동 193-5전	일반도로	서고 1974-60 (1974.5.11)	-
변경	소로	2	84	10	국지도로	375	상계동 196-5	상계동 1309	일반도로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조성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92	상계동 322-50	상계동 322-8	일반도로	노고 2024-10 (2024.2.1)	-
변경	소로	3	-	8	국지도로	120	상계동 322-50	상계동 178-8	일반도로		-
폐지	소로	2	31	8	국지도로	572	상계동 404	상계동 소2-81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3	-	6	국지도로	30	상계동 193-3	상계동 193-2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	13 ~14	국지도로	467	상계동 385-1	상계동 197-12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	10 ~11	국지도로	111	상계동 387-196	상계동 387-96	일반도로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주차장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상계2동 공영주차장	상계동 178-28	197.0	-	197.0	노고 2013-11 (2013.4.4.)	-

3)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	어린이공원	상계동 177-30 일대	-	증)2,176.5	2,176.5	-	-
신설	②	-	소공원	상계동 180-5 일대	-	증)2,331.7	2,331.7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4) 공공청사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상계2동청사	상계동 385-1	864.0	-	864.0	노고 2012-44 (2012.7.12.)	-

5)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사회복지시설	상계동 330-13	342.0	-	342.0	노고 2014-33 (2014.6.26.)	-

6) 공동이용시설

구분		설치기준	비고
1	사업가능구역(모아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세대당 2.5㎡ × 1.25 이상 설치	구역내
2	사업가능구역(모아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내
3	사업가능구역(모아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내
4	사업가능구역(모아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내
5	사업가능구역(모아5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내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라. 교통계획(안)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상계로변 접속부	• 상계로변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안전을 위해 설정	가각부 35m
공공보행통로	상계로18길 (소로 2-31)일원	• 블록통합으로 중앙 차도 폐지 후 공공보행통로로 전환하여 보행연속성 유지(모아2구역, 모아3구역)	-
건축한계선	상계로변	• 5m로 설정하여 고가도로 하부 열악한 보행환경 개선	-
	그 외 구간	• 3m로 설정하여 보행환경 개선	-
차량진출입구	모아1~5구역	• 커뮤니티가로인 상계로 12길, 18길을 가급적 배제하며 필요시 협의하여 결정함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도면 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사 업 계 획					비 고
				토지등 소유자	기존 호수	시행자	추진 단계	최초 결정일	
합 계			62,173.9	483	769	-	-	-	-
B1	사업가능구역(모아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상계동 387-49번지 일대	5,939.2	64	44	-	-	-	-
B2	사업가능구역(모아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상계동 387-73번지 일대	18,418.9	170	147	-	-	-	-
B3	사업가능구역(모아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상계동 387-114번지 일대	11,723.5	108	116	-	-	-	-
B4	사업가능구역(모아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상계동 322-47번지 일대	11,093.1	65	172	-	-	-	-
B5	사업가능구역(모아5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상계동 188-9번지 일대	14,999.2	76	290	-	-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바.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사. 건폐율 ·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안)

구분	내용			비고
사업 가능구역	건폐율	50%이하		모아1~5구역
	용적률	기준 250%이하 (상한 300%이하)		모아1~5구역
	높이	용도지역에 따른 높이 적용		모아1~5구역
기사업 시행구역	건폐율	60%이하		모아주택(오성빌라)
	용적률	기 심의결과에 따름		
	높이	기 심의결과에 따름		
사업 가능구역 외	건폐율	2종일반	60% 이하	-
		3종일반	50% 이하	아파트 인접지역 일부
	용적률	2종일반	200% 이하	-
		3종일반	250% 이하	아파트 인접지역 일부
	높이	용도지역에 따른 높이 적용		-

1) 법 제48조 및 제43조의4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정할 수 있음
2) 모아주택사업 시행시 건축물의 규모(높이, 밀도 등)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아.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용도 ·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1) 건축물의 용도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기사업 시행 구역	유 형	•공동주택 용지	모아주택 (오성빌라)
	허 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 · 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업 가능 구역	유 형	•공동주택 용지	모아 1~5구역
	허 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 · 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구분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상계로변 : 고가도로 하부 열악한 보행환경개선 위해 5m 적용 • 기타지역 : 3m • 가로 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결정도 참고
공공보행통로	• 모아2구역 : 어린이공원과 인접 배치하여 공공성 및 보행 활성화 도모 • 모아3구역 : 모아2구역과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조성으로 어린이공원의 접근성 확보	-
통경축	• 모아1구역 : 상계로18길변 도로확폭 및 건축한계선을 통한 오픈스페이스 조성으로 어린이공원과 연계된 통경축 확보 • 모아2, 3구역 : 상계로 12길, 18길변 도로확폭 및 건축한계선을 통한 오픈스페이스 조성으로 공원과 연계된 통경축 확보 • 모아4, 5구역 : 상계로 12길변 도로확폭 및 건축한계선을 통한 오픈스페이스 조성으로 공원과 연계된 통경축 확보	-

구분	내용	비고
저층부 가로활성화 시설 배치구간	• 가로활성화가 필요한 상계로12길변 가로의 1/2이상 대지안의 공지 또는 건축한계선에 맞추어 건축물의 저층부(1~2층)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조성 권장 • 가로활성화 권장용도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커뮤니티가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배치 유도	상계로12길
담장 미설치	• 도로변 및 구역간 담장 미설치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자.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안)

구분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도면 표시번호	사업구역					
합 계			1,683	423	-	-
B1	사업가능구역(모아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상계동 387-49번지 일대	173	51	-	-
B2	사업가능구역(모아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상계동 387-73번지 일대	499	100	-	-
B3	사업가능구역(모아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상계동 387-114번지 일대	347	106	-	-
B4	사업가능구역(모아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상계동 322-47번지 일대	302	88	-	-
B5	사업가능구역(모아5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상계동 188-9번지 일대	362	78	-	-

1)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2)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차.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안)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6,468.5	-	96,468.5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3,970.5	-	3,970.5	4.1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89,208.2	감) 57,503.9	31,704.3	32.9	-
제3종일반주거지역	3,289.8	증) 57,503.9	60,793.7	63.0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카.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도면 표시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계획내용	계획사유	비고
특별건축구역	모아 1구역	-	증) 5,939.2	5,939.2	•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및 건축물 계획	-
	모아 2구역	-	증) 18,418.9	18,418.9			
	모아 3구역	-	증) 11,723.5	11,723.5			
	모아 4구역	-	증) 11,093.1	11,093.1			
	모아 5구역	-	증) 14,999.2	14,999.2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27) 및 노원구 재건축사업과(☎ 02-2116-3984)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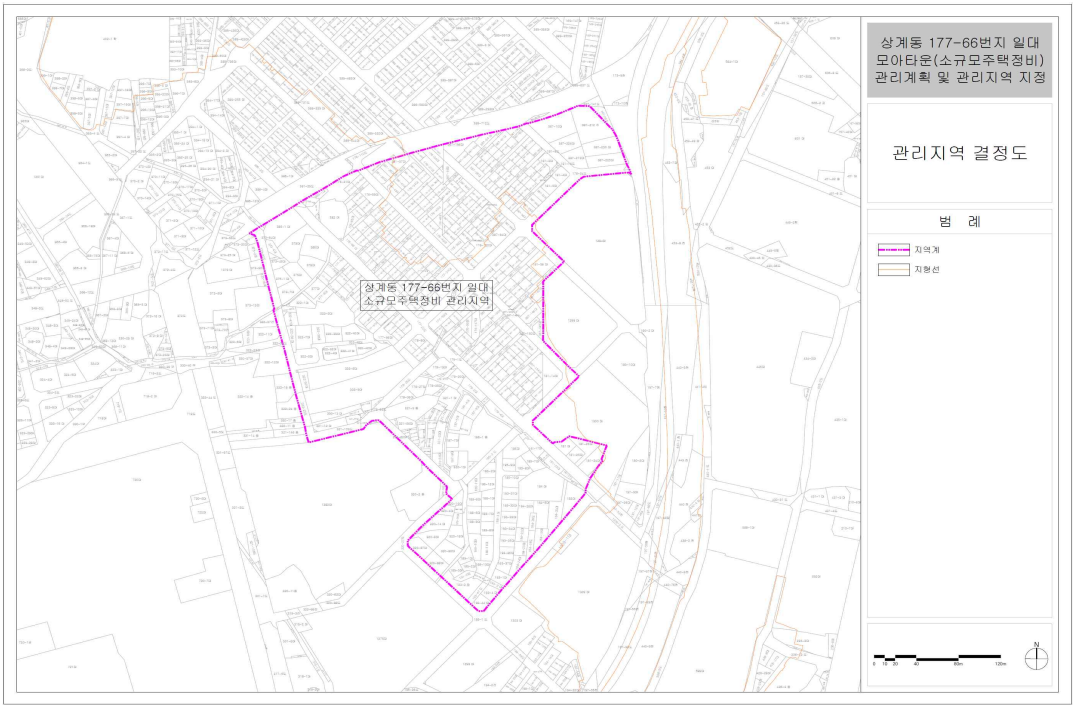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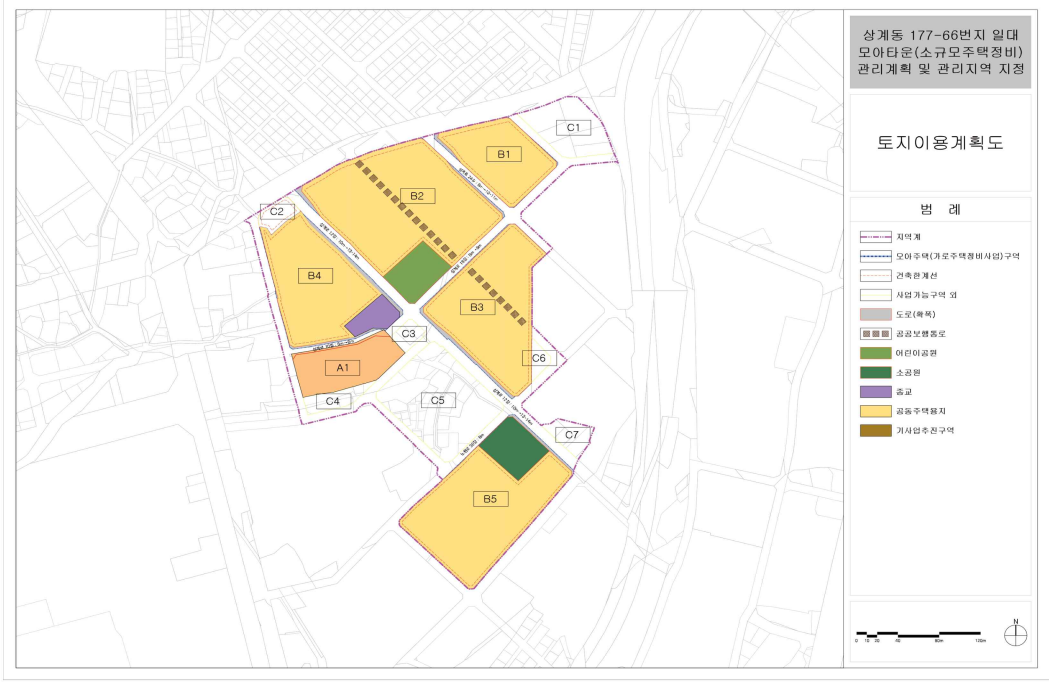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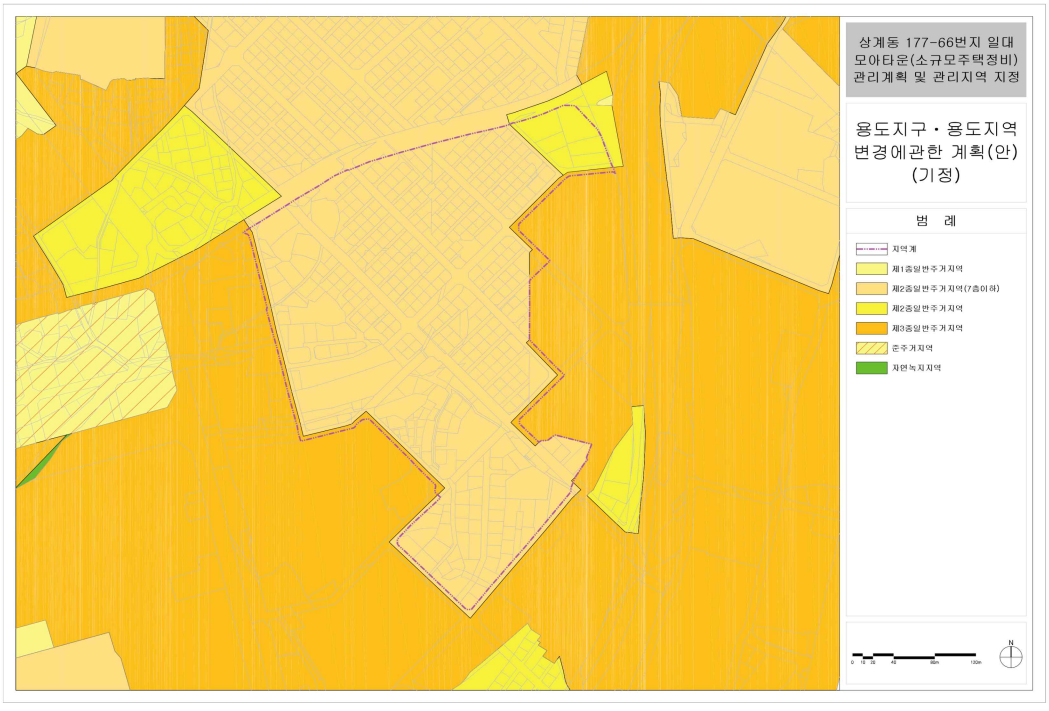
▪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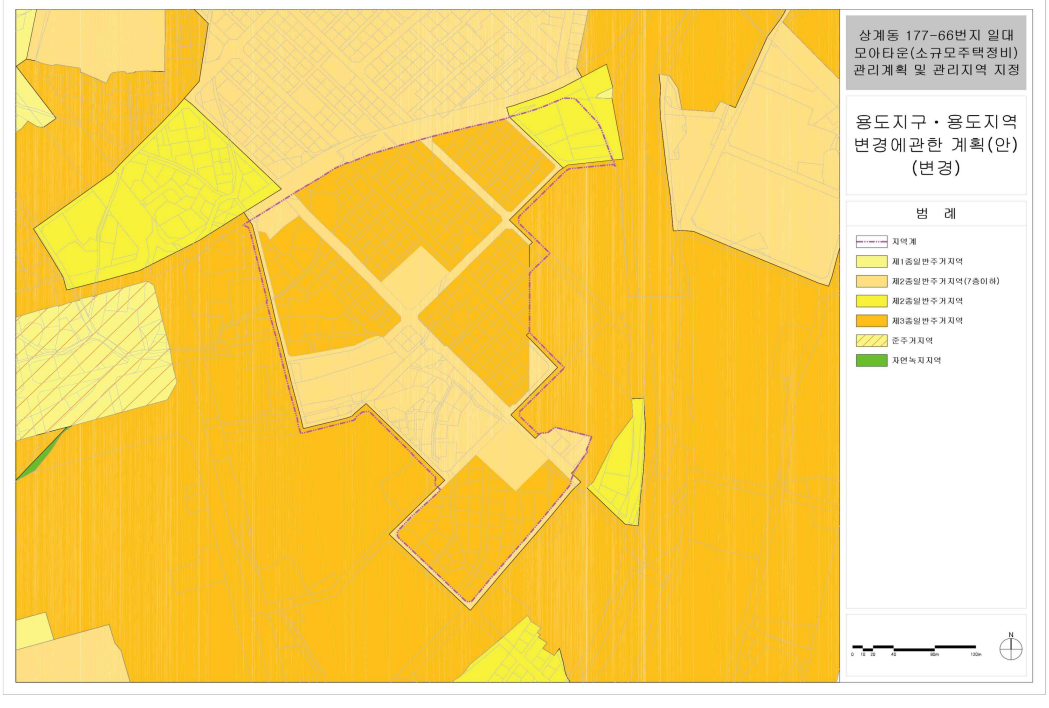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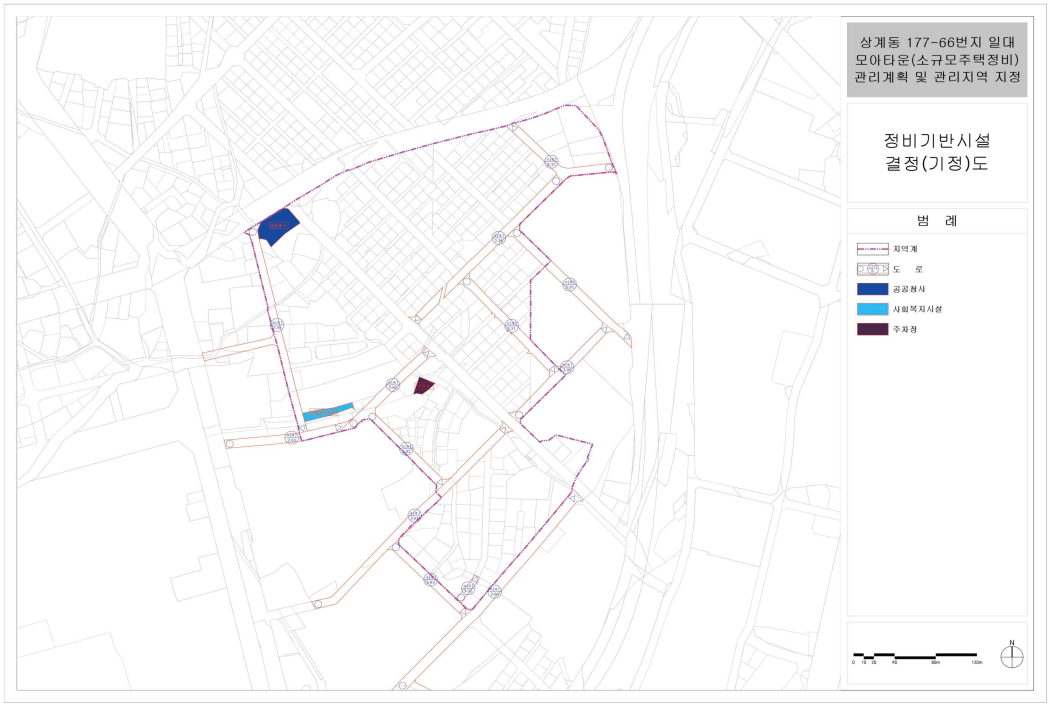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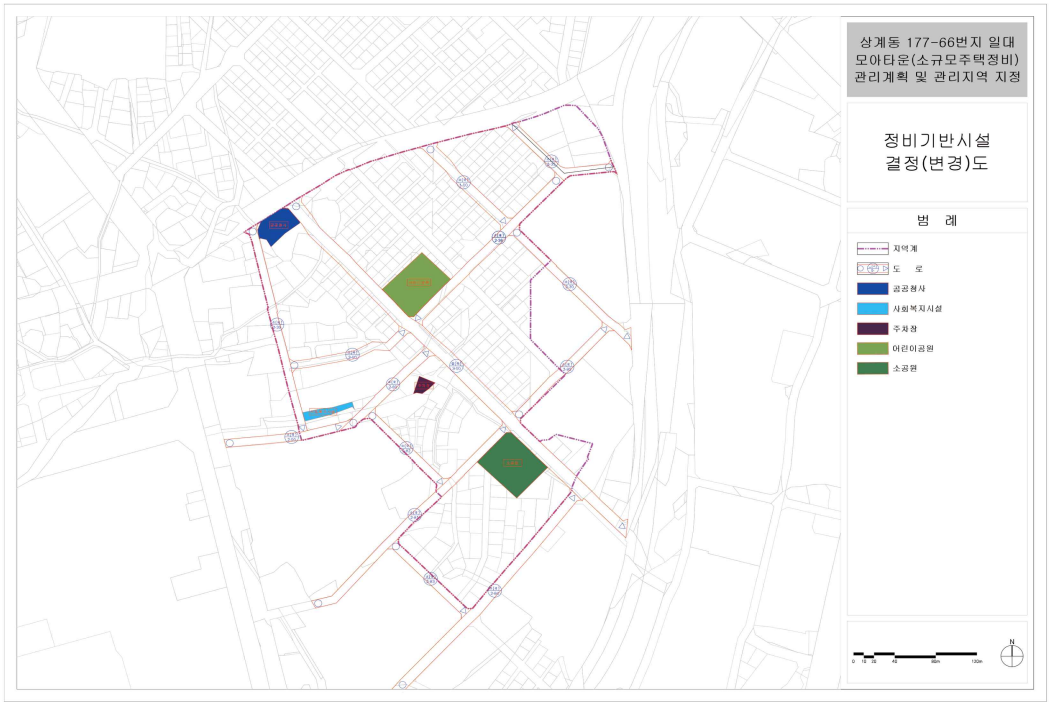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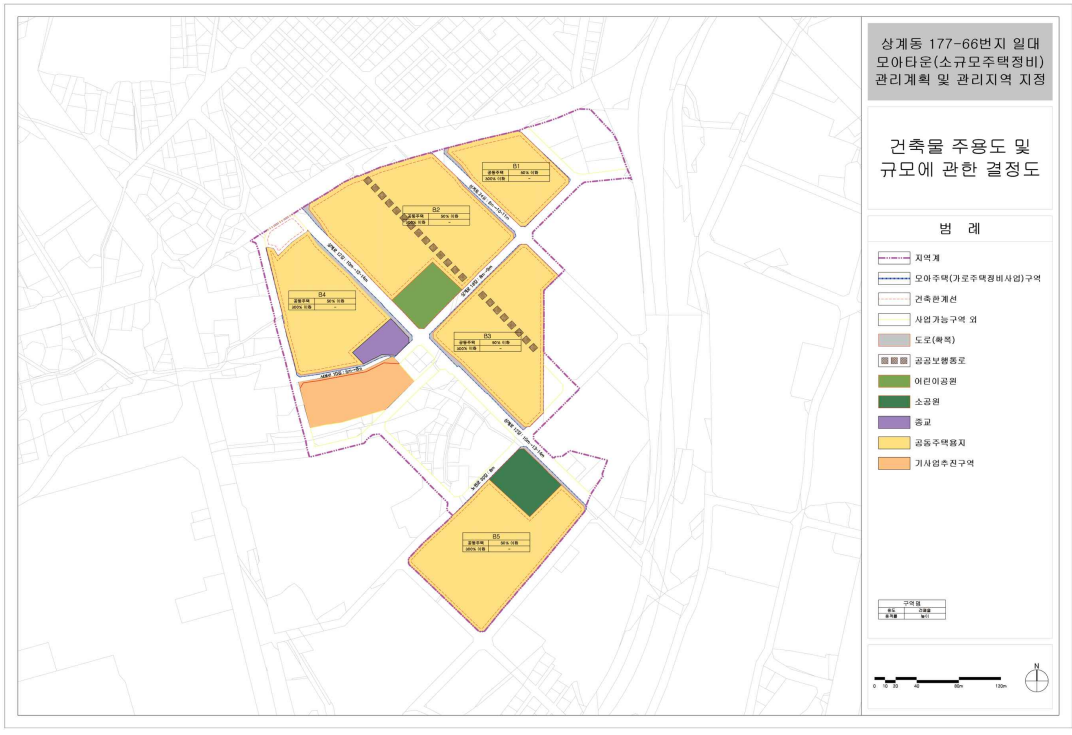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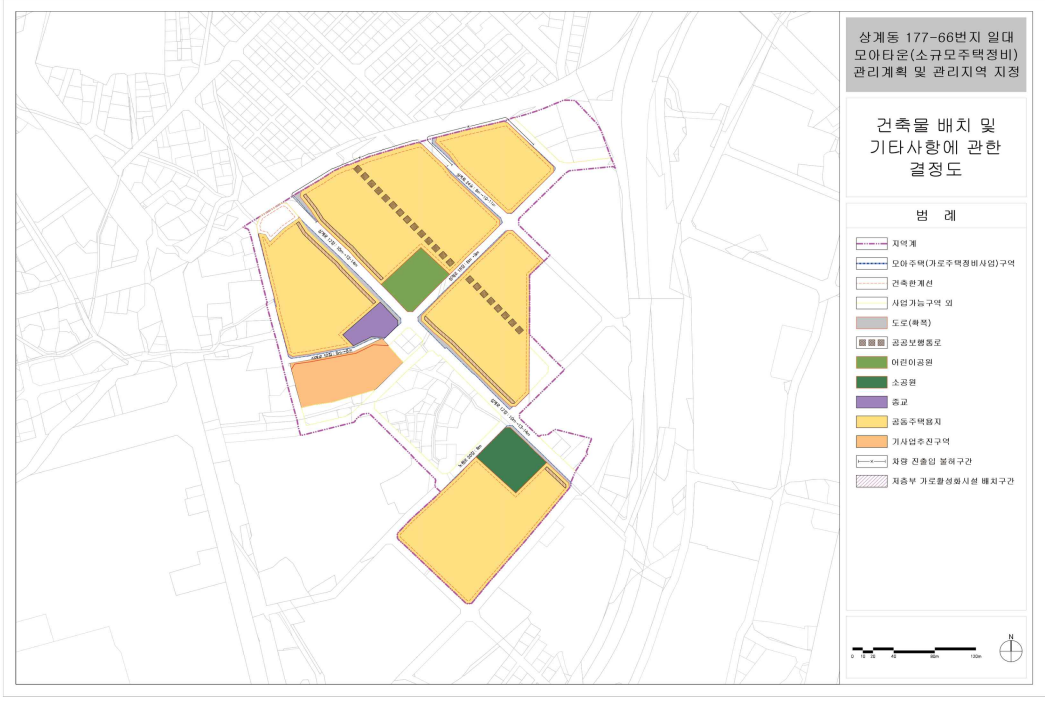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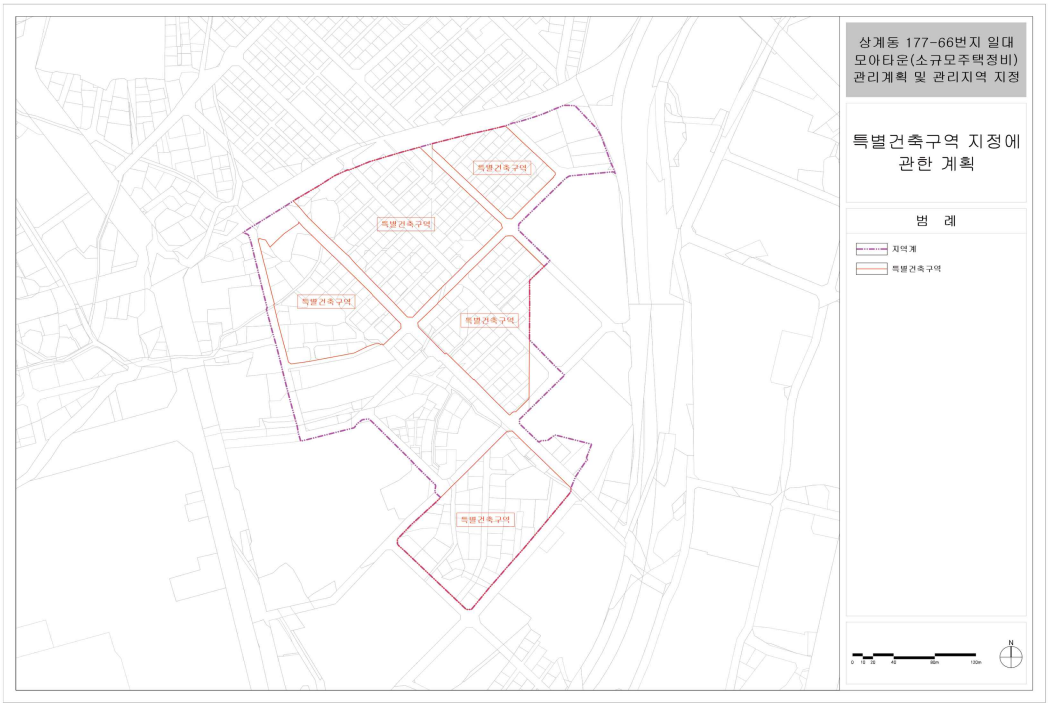
▪ 건축물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안)



▪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안)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12호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915호(2023. 10. 19.)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3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3.12.27.)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45호(2024.02.01.)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체계적인 복합개발을 통해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거점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역삼동 602-4번지 일대	-	증)11,839.7㎡	11,839.7㎡	-	-

■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위치 : 강남구 역삼동 602-4번지 일대 - 면적 : 11,839.7㎡	• 체계적인 복합개발을 통해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거점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839.7	-	11,839.7	100.0	-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1,170.9	-	1,170.9	9.9	-
	제3종일반주거지역	8,691.7	감) 8,385.4	306.3	2.6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977.1	증) 8,385.4	10,362.5	87.5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	결정 사유
		기 정	변 경		
-	역삼동 602-4 일대	제3종 일반주거 지역	일반상업 지역	8,385.4	상위계획에서 대상지에 부여한 역할인 다기능 복합용도를 실현하는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해당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신설	계	11,533.4	-	-	11,533.4	-
	A	10,362.5	A-1	역삼동 602 일원	10,362.5	복합용지
	B	1,170.9	B-1	역삼동 615 일원	1,170.9	공공용지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가구 및 획지 신설 - A-1(복합용지) 10,362.5㎡ - B-1(공공용지) 1,170.9㎡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에 따른 가구 및 획지계획 수립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복합용지(특별계획구역)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구 분		내용
A	A-1	용도	지정용도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과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기준 (주차장 제외) 합계 35%이상 계획
			허용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연면적 기준(주차장 제외) 50% 이하 계획
			불허용도	• 지정/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창의·혁신디자인을 통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적용 배제(최대 70%까지 완화) ※구체적인 인센티브량은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용적률	기준	• 355% 이하
			허용	• 513% 이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에 따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구 분		내용
			상한(계획)	• 750% 이하 (공공기여계획 준수시) ※창의 · 혁신디자인 적용 인센티브는 2023년 제4차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55%를 부여(인센티브 최대 용적률(110%)의 50%)하고, 사업자가 제시한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 이행여부에 따라 향후 통합심의(건축위원회)에서 최대 106.2%까지 상향 가능
		최고높이		• 200m 이하

(2) 공공용지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구 분		내용
B	B-1	용도	허용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노유자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최고높이		• 11m 이하 (2층 이하)

(3) 용도완화

가구 번호	획지 번호	내용	비고
B	B-1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 도시계획조례 제25조의 연접한 도로의 너비 제한을 받지 않음	공공용지 내 필요시설인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기준 적용(완화)

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

(1)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기준(복합용지)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중점 인센티브 항목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이내	• 계획유도 항목 이행 시 (70% 이내)	• 중점 계획항목 이행 시 (30% 이상)	• 사전협상에 의한 공공기여계획 이행시 일괄적으로 인센티브 부여

1) 허용용적률은 기준용적률과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2)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중점 인센티브는 100분의 30 이상,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7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3) 중점 인센티브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계획하며,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센티브량은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으로 대체 불가능
4) 성격이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2)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기준(복합용지)

(가) 계획유도 인센티브(공통)

구 분	세 분		완화기준	비 고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기준용적률 X (지정용도 면적 ÷ 연면적) X 0.5	•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하며, 35% 이상 설치 시
친환경	물환경	중수도 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X 0.04 이내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대기 환경	미세먼지 저감장치	기준용적률 X 0.1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하는 경우

(3) 중점 인센티브(공통)

구 분	세 분	완화기준	비 고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등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X a	• 실내형구조 : a=2.0 • 개방형구조 : a=3.0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X 2	-

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건축선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획지 A-1 : 봉은사로변 폭6m, 봉은사로6길변 폭 6m, 봉은사로10길변 폭6m, 논현로105길변 폭3m 지정 • 획지 B-1 : 봉은사로6길, 논현로105길변및 대상지 남측·동측변폭1m 지정	-

■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건축선 계획필지	• 주요가로를 대상으로 보행공간 확충 및 가로공간의 개방성 강화, 가로활성화 유도를 위해 건축한계선 계획	-

4.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 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계획

(1) 대지안의 공지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	• 대상지 북측 봉은사로변 • 대상지 서측 봉은사로6길 • 대상지 동측 봉은사로10길 • 대상지 남측 논현로105길	• 보도형 및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공개공지	• 도면참조	• 대상지 주요결절부 공개공지 배치 • 대상지 여건을 고려해 남북간 공공보행통로 기능의 실내형 공개공지로 조성
	쌈지형 공지	• 도면참조	• 실내형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쌈지형 공지 배치

■ 결정 사유서

구 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대지안의 공지	대지안의 공지 계획 필지	• 보행결절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전면공지, 공개공지, 쌈지형공지를 통한 시민공간 확충 도모	-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 봉은사로6길변 • 봉은사로10길변	• 주차출입구를 차량진출입 허용 구간으로 지정	• 주차 출입구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기타 차량 출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음
	불허구간	• 허용구간 외 전구간		

다.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1) 공공시설 등 계획

구 분	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 공공용지 부담률 : 39.68% (기준대지면적 : 8,385.4㎡) • 공공기여비용 : 2,858억	-

(2) 공공기여 내용

구 분	조성비용	인정금액	공공기여항목(조성비)	비고 (귀속주체)
지역필요시설 (100% 인정)	517억	517억	• 공공용지 부지 및 건축물(517억) - 부지가액 : 329억원 - 건축물(주차장, 키즈카페, 평생교육센터, 가족지원센터) : 188억원주)	강남구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2,341억	2,341억	•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투입	서울시/ 강남구
합 계	2,858억	2,858억	-	-

주) 「2022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주민공동이용시설 표준건축비 적용(부가가치세 면세된 단가)
※ 지역필요시설은 귀속주체와 협의 등을 통해 세부내용 조정·변경 가능
※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따라 상한용적률 변경 시 공공기여 재산정
※ 공공기여 재산정에 따른 변화분은 균형발전 재원의 조정을 원칙으로 함
※ 균형발전 재원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시·구간 배분비율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추후 서울시 공공자산담당관에서 검토 반영할 예정임
※ 사전협상 감정평가 결과 반영(2023. 12월 기준)

■ 결정 사유서

결정내용	결정사유
공공기여 내용 등	•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 이득의 합리적 공유방안 마련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특별계획구역1	강남구 역삼동 602 일원	10,362.5㎡	복합용지

■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역명	면적	결정사유
특별계획구역 1	10,362.5㎡	• 대규모 부지의 전략적 개발을 통한 지역거점 조성, 랜드마크 개발 유도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위치			• 강남구 역삼동 602 일원	-
면적			• 10,362.5㎡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가구 및 획지계획			• 획지 A-1	특별계획구역1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용도	지정용도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과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기준 (주차장 제외) 합계 35%이상 계획	-
		허용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	-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 운동시설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연면적 기준(주차장 제외) 50% 이하 계획	
		불허용도		• 지정/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규모	건폐율		• 60% 이하 ※창의 · 혁신디자인을 통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적용 배제(최대 70%까지 완화) ※구체적인 인센티브량은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
		용적률	기준	• 355% 이하	-
			허용	• 513% 이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에 따름)	-
			상한	• 750% 이하 (공공기여계획 준수시) ※창의 · 혁신디자인 적용 인센티브는 2023년 제4차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55%를 부여(인센티브 최대 용적률 (110%)의 50%)하고, 사업자가 제시한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 이행여부에 따라 향후 통합심의(건축위원회)에서 최대 106.2%까지 상향 가능	계획용적률
		최고높이		• 200m 이하	-
	배치	건축한계선		• 봉은사로변 폭6m, 봉은사로6길변 폭 6m, 봉은사로10길변 폭6m, 논현로105길변 폭3m 지정	-
	형태	개방공간 조성		• 저층부는 주민들에게 개방된 실내공간 계획 • 동 · 서방향 보행공간 계획	-
		고층부		• 상층부 시민개방시설 조성 및 운영 (전망대, 전시실 등 2개소 조성 및 1개소 이상 개방)	-
기타 사항	대지 안의 공지	전면공지		• 대상지 북측 봉은사로 6m • 대상지 서측 봉은사로6길 6m • 대상지 동측 봉은사로10길 6m • 대상지 남측 논현로105길 3m	-
		공개공지		• 대상지 내 공개공지 3개소 위치 지정	-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쌈지형공지	• 실내형 공개공지와 연계한 1개소 위치 지정	-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및 주차출입구	• 봉은사로6길, 봉은사로10길변 주차출입구를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 • 허용구간 외 전 구간 불허	-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공공기여 총량	• 공공용지 부담률 : 39.68% 이상 (기준대지면적 : 8,385.4㎡) • 총량가액 : 2,858억원	-
		공공시설/기반시설 및 설치비용	•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공공시설 및 주차장 설치 제공 • 지역필요시설 및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투입	-

Ⅲ.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①	특별계획구역1	강남구 역삼동 602번지 일원	-	증)10,362.5㎡	10,362.5㎡	-

■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특별계획구역1	• 특별계획구역 결정 - 위치 : 강남구 역삼동 602번지 일원 - 면적 : 10,362.5㎡	•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거점 조성 및 창의혁신 디자인을 통한 새로운 랜드마크 계획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0,362.5	-	10,362.5	1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8,385.4	감) 8,385.4	-	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977.1	증) 8,385.4	10,362.5	100.0	-

■ 용도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사유
		기정	변경		
-	역삼동 602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 지역	8,385.4	• 상위계획에서 대상지에 부여한 역할인 다기능 복합용도를 실현할 수 있는 용도도입 및 밀도계획을 위해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해당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신설	계	10,362.5	-	-	10,362.5	-
	A	10,362.5	A-1	역삼동 602 일원	10,362.5	복합용지

■ 결정 사유서

결정내용	결정사유
• 가구 및 획지 신설 - A-1(복합용지) 10,362.5㎡	• 다기능 복합용도 계획을 위한 가구 및 획지 신설

(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지정/허용/불허용도)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지정용도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과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기준 (주차장 제외) 합계 35%이상 계획	• 좌동	-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허용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연면적 기준(주차장 제외) 50% 이하 계획	• 좌동	
불허용도	• 지정/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좌동	-

(3) 건축물의 개발밀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일반상업지역	• 60% 이하	• 좌동	-

※ 창의 · 혁신디자인을 통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적용 배제 (최대 70%까지 완화)
※ 구체적인 인센티브량은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나) 용적률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준용적률	• 355% 이하	• 좌동	-
허용용적률	• 513% 이하	• 좌동	-
상한(계획)용적률	• 750% 이하	• 좌동	-

※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용적률체계 적용
※ 기준용적률은 용도지역 혼재(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에 따른 가중평균값 적용
※ 창의 · 혁신디자인 적용 인센티브는 2023년 제4차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55%를 부여(인센티브 최대 용적률(110%)의 50%) 하고, 사업자가 제시한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 이행여부에 따라 향후 통합심의(건축위원회)에서 최대 106.2%까지 상향 가능

(4)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가) 계획유도 인센티브

구 분	세 분		완화기준	결과	비 고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355% X (35,615㎡÷98,244㎡) X 0.5	64.3%	• 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하며, 35% 이상 설치 시
친환경	물환경	중수도 시설 설치	355% X 0.04	14.2%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대기 환경	미세먼지 저감장치	355% X 0.1	35.5%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하는 경우
합 계				114.0%	110% 적용

※ 지구단위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이행유도가 필요한 항목으로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70 이내로 계획

(나) 중점 인센티브

구 분	세 분	완화기준	결과	비 고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등	355% X (1,594.4㎡-1,036.2㎡) ÷ 10,362.5㎡ X 2	38.2%	• 실내형구조 : a=2.0 • 개방형구조 : a=3.0
	건축한계선	355% X (1,912㎡-1,180㎡) ÷ 10,362.5㎡ X 2	50.2%	
합 계			88.4%	48% 적용

※ 지구통합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 계획항목으로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계획

(5) 높이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일반상업지역	• 200m 이하	• 좌동	• 주변여건을 고려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6)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한계선	• 봉은사로변 폭6m, 봉은사로6길변 폭6m, 봉은사로10길변 폭6m, 논현로105길변 폭3m	• 좌동	-
개방공간 조성	• 저층부는 주민들에게 개방된 실내공간 계획 • 동·서방향 보행공간 계획	• 좌동	대상지는 주민들에게 개방된 휴식공간 조성/ 지상 및 지하층에 계획된 공공공간으로 다양한 레벨에서 진입가능한 공간으로 계획
고층부	• 상층부 시민개방시설 조성 및 운영 (전망대, 전시실 등 2개소 조성 및 1개소 이상 개방)	• 좌동 • 시민들의 원활한 이용이 되도록 별도의 수직동선을 계획하고 건축물 내·외부에 해당 동선과 시설 이용방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계획 수립	

※ 건축계획의 세부사항은 계획설명서 참고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 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전면공지	• 대상지 북측 봉은사로변 6m • 대상지 서측 봉은사로6길 6m • 대상지 동측 봉은사로10길 6m • 대상지 남측 논현로105길 3m	• 보도형 및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 북측 봉은사로변 보도형전면공지 6m - 서측 봉은사로6길변 차도형전면공지 3m, 보도형전면공지 3m - 동측 봉은사로10길변 차도형전면공지 3m, 보도형전면공지 3m - 남측 논현로105길변 보도형전면공지 3m	-
공개공지	• 대상지 내 공개공지 3개소 위치 지정	• 대상지 내 주요결절부 공개공지 2개소 배치 • 장방형의 대상지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지 내 남북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기능의 실내형 공개공지 1개소 지정 • 건축물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은 가능하나, 당초 계획된 면적 이상으로 조성 (실내형 공개공지는 공공의 이용권 보장을 위해 건축인허가 기관이 지역권을 설정하고, 오전7시~오후10시까지 완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방시간은 추후 건축인허가 기관과 협의, 조정 가능함)	-
쌈지형 공지	• 실내형 공개공지와 연계한 1개소 위치 지정	• 실내형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쌈지형 공지 배치	-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 봉은사로6길변 • 봉은사로10길변	• 주차출입구를 차량진출입 허용 구간으로 지정 • 주차 출입구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기타 차량 출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 할 수 없음	• 좌동	
	불허구간	• 허용구간 외 전 구간			

다.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공기여총량	• 공공용지 부담률 : 39.68% 이상 (기준대지면적 : 8,385.4㎡)	• 좌동	2,858억원
공공시설/ 기반시설 및 설치비용	• 지역필요시설 및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투입	• 공공용지 부지 및 건축물(517억) - 부지가액 : 329억원 - 건축물(주차장, 키즈카페, 평생교육센터, 가족지원센터) : 188억원주) •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투입 - 2,341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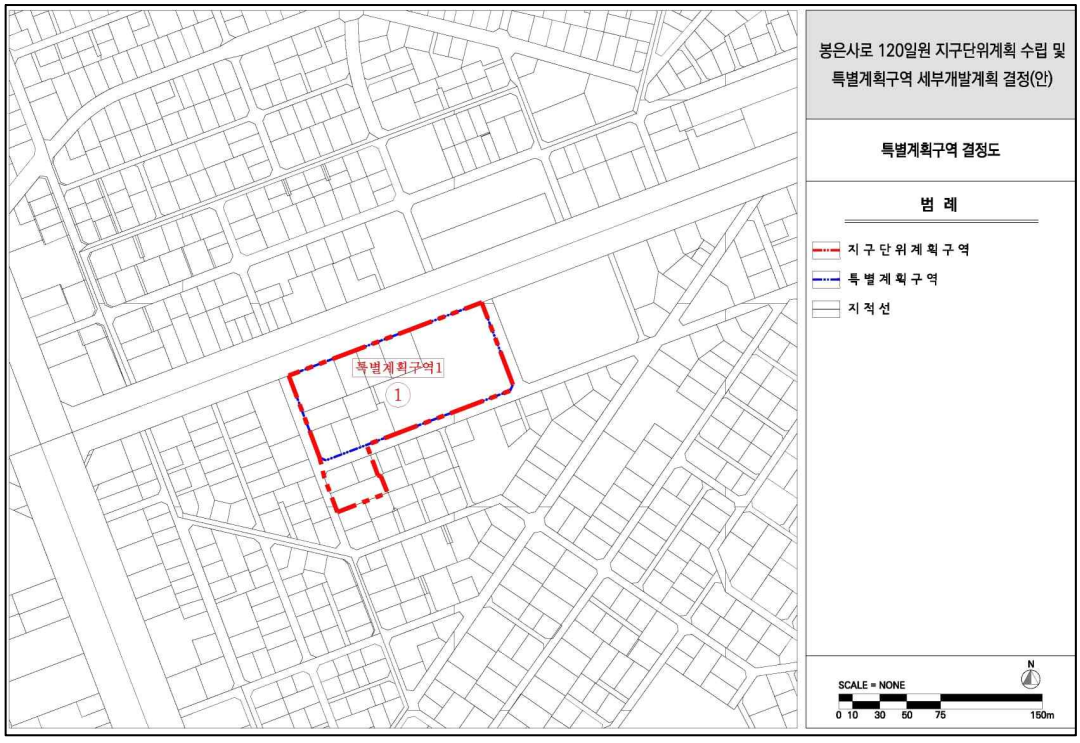
주) 「2022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주민공동이용시설 표준건축비 적용(부가가치세 면세된 단가)
※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따라 상한용적률 변경시 공공기여 재산정
※ 공공기여 재산정에 따른 변화분은 균형발전 재원의 조정을 원칙으로 함
※ 균형발전 재원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시·구간 배분비율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추후 서울시 공공자산담당관에서 검토 반영할 예정임
※ 사전협상 감정평가 결과 반영(2023. 12월 기준)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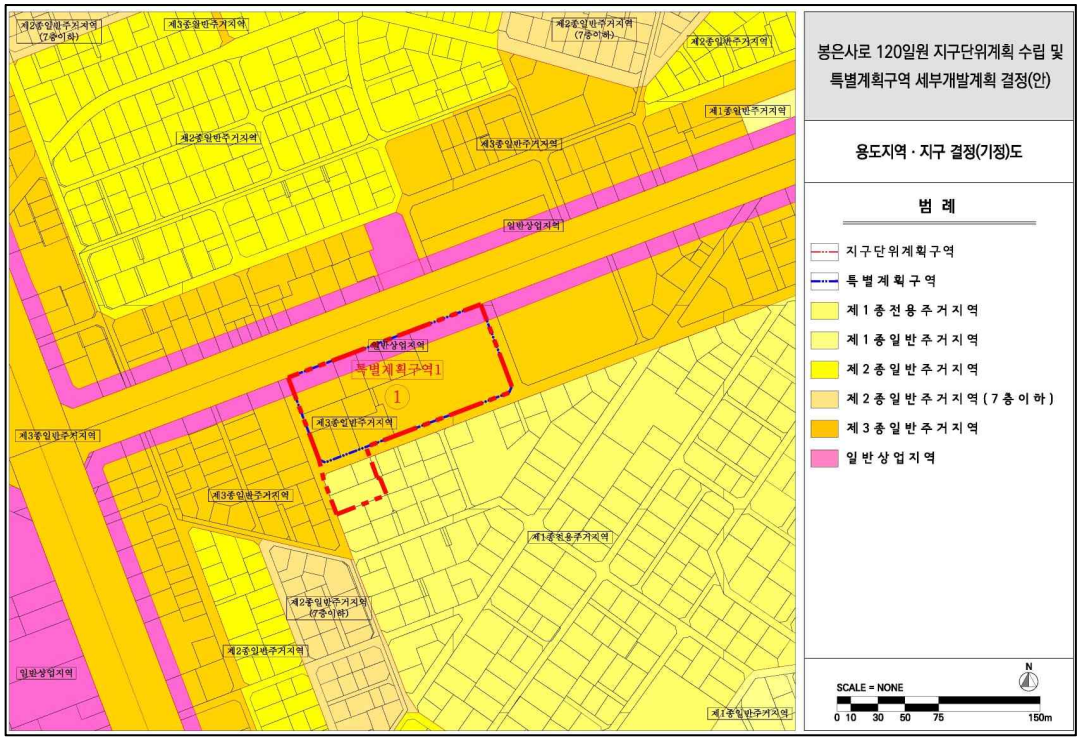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용도	지정용도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과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기준 (주차장 제외) 합계 35%이상 계획	• 좌동
		허용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연면적 기준 (주차장 제외) 50% 이하 계획	• 좌동
		불허용도	• 지정/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좌동
	밀도	건폐율	• 60% 이하 ※ 창의·혁신디자인을 통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적용 배제 (최대 70%까지 완화) ※ 구체적인 인센티브량은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 좌동
		용적률	• 일반상업지역 - 기준용적률 355% 이하 - 허용용적률 513% 이하 - 계획용적률 750% 이하 ※ 창의·혁신디자인 적용 인센티브는 2023년 제4차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55%를 부여(인센티브 최대 용적률 (110%)의 50%)하고, 사업자가 제시한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 이행여부에 따라 향후 통합심의(건축위원회) 에서 최대 106.2%까지 상향 가능	• 좌동
		높이	• 200m 이하	• 좌동
	배치	건축한계선	• 봉은사로, 봉은사로6길 및 봉은사로10길 폭6m • 논현로105길 폭3m	• 좌동
		개방공간 조성	• 저층부는 주민들에게 개방된 실내공간 계획 • 동·서방향 보행공간 계획	• 좌동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형태	고층부	• 상층부 시민개방시설 조성 및 운영 (전망대, 전시실 등 2개소 조성 및 1개소 이상 개방)	• 시민들의 원활한 이용이 되도록 별도의 수직동선을 계획하고 건축물 내·외부에 해당 동선과 시설 이용방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계획 수립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전면공지	• 대상지 북측 봉은사로변 6m • 대상지 서측 봉은사로6길변 6m • 대상지 동측 봉은사로10길변 6m • 대상지 남측 논현로105길변 3m	• 보도형 및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로 조성 - 북측 봉은사로변 보도형전면공지 6m - 서측 봉은사로6길변 차도형전면공지 3m, 보도형전면공지 3m - 동측 봉은사로10길 차도형전면공지 3m, 보도형전면공지 3m - 남측 논현로105길변 보도형전면공지 3m
		공개공지	• 대상지 내 공개공지 3개소 위치 지정	• 대상지 내 주요결절부 공개공지 2개소 배치 • 장방형의 대상지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지 내 남북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기능의 실내형 공개공지 1개소 지정 • 건축물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은 가능하나, 당초 계획된 면적 이상으로 조성 (실내형 공개공지는 공공의 이용권 보장을 위해 건축인허가 기관이 지역권을 설정하고, 오전7시~오후10시까지 완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방시간은 추후 건축인허가 기관과 협의, 조정 가능함)
		쌈지형 공지	• 실내형 공개공지와 연계한 1개소 위치 지정	• 실내형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쌈지형 공지 위치
	교통처리 계획		• 차량출입허용구간 - 봉은사로6길변, 봉은사로10길변	• 좌동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공공기여 총량	• 공공용지 부담률 : 39.68% 이상 (기준대지면적 : 8,385.4㎡)	• 좌동 (2,858억원)
		공공시설/기반시설 및 설치비용	• 지역필요시설 및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투입	• 공공용지 부지 및 건축물(517억) - 부지가액 : 329억원 - 건축물(주차장, 키즈카페, 평생교육센터, 가족지원센터) : 188억원 •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투입 - 2,341억 ※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따라 상한용적률 변경시 공공기여 재산정 ※ 균형발전 재원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시·구간 배분비율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추후 서울시 공공자산담당관에서 검토 반영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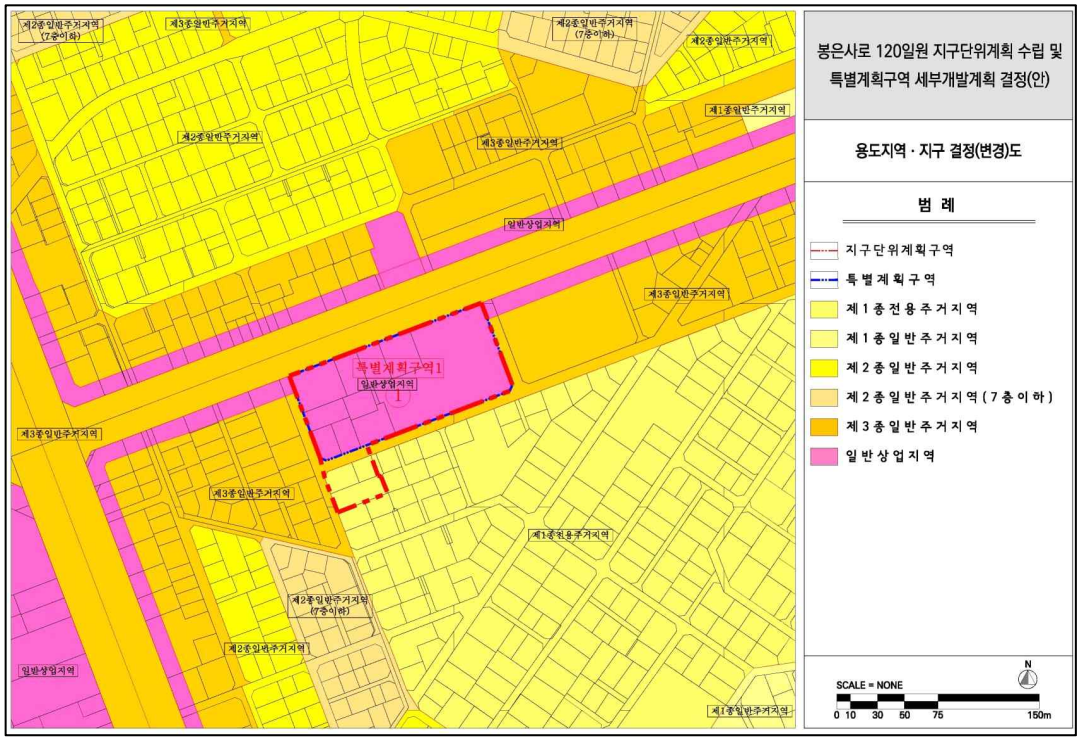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범 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지적선
특별계획구역1
1
SCALE = NONE
0 10 30 50 75 150m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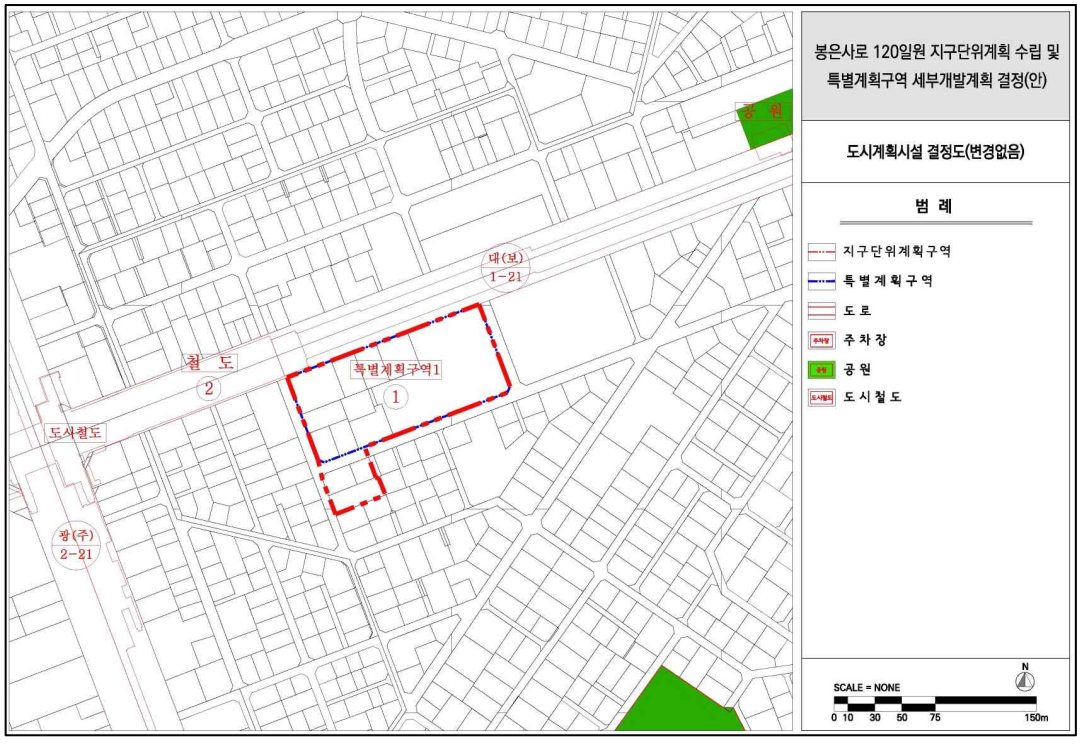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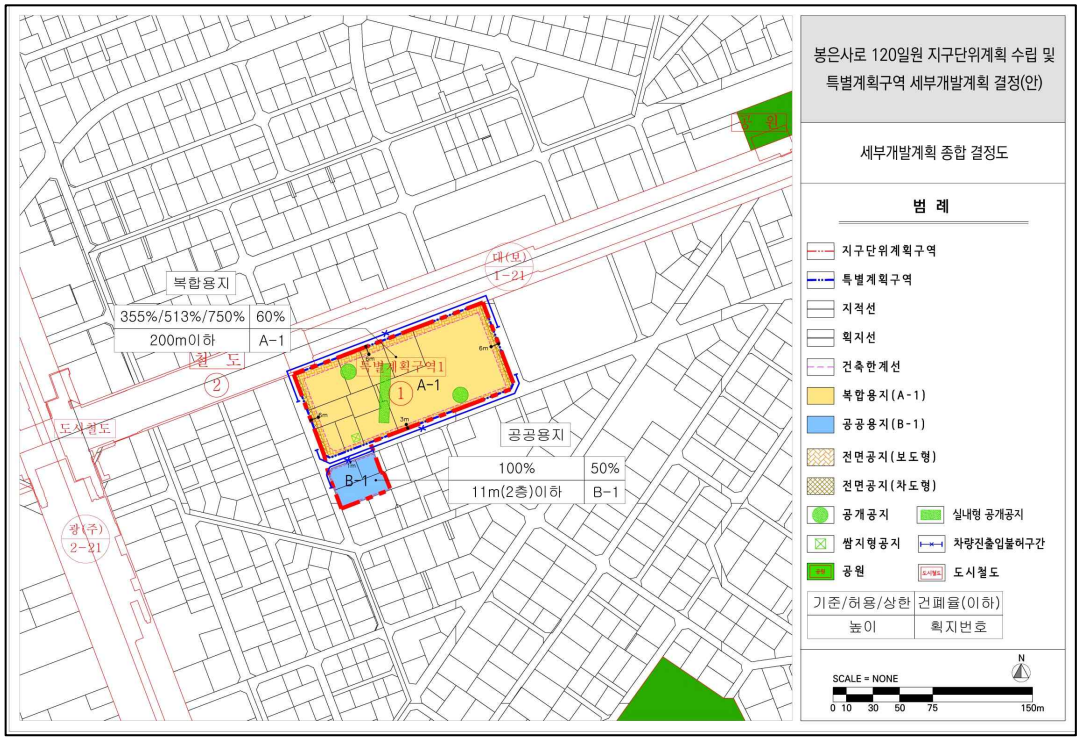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변경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13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권리산정기준일 설정 지역
   가. 대상지: 중랑구 중화2동 299-8 일원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 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	중랑구	중화2동 299-8 일원	75,254.28	'24. 2. 29.	

2. 권리산정기준일: 2024. 2. 29.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 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목적으로 행해지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분양사기 등 방지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2~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지역 내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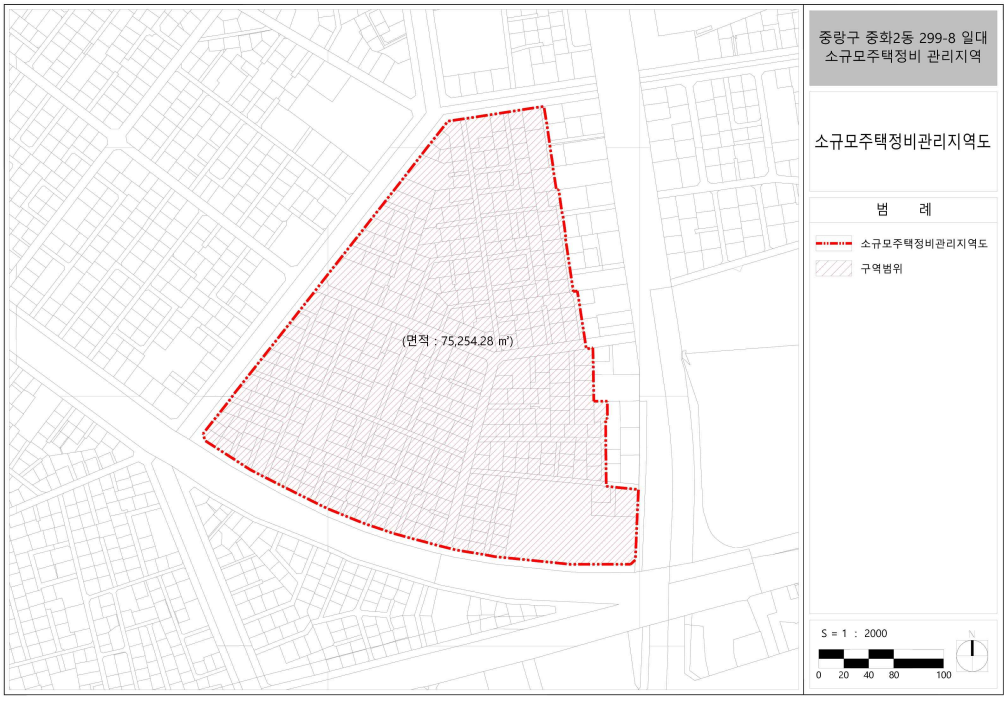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것이며 소유권 매매, 건축허가 행위 등을 제한하는 사항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도면

○ 중랑구 중화2동 299-8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14호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기관
   가. 기관명: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나. 대표자: 김승배
   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2. 위탁업무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나.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다.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라.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의 확인

3. 지정기간: 2024년 2월 29일 ~ 2027년 2월 28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15호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특별계획구역 변경 결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93호(2014.5.22.)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변경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93호(2023.9.7.)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된 바 있는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양재하림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에 대하여 2023년 제2차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2023.12.26.)를 거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규정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
   다. 면적 : 86,002.5㎡

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목적
   ○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16.06.30.)된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에 대하여 변화하는 물류 · 유통 추세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기존의 물류시설과는 차별화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서울 및 경부축 물류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심형 복합물류거점 조성 도모

3.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시행자 주소 및 명칭 :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 121, 2층(마동, 하림지주 사옥)
   ㈜하림산업
   나. 대표자 성명 : 김기만

4.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2022년 ~ 2029년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토지소유자 직접개발)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복합시설용지		83,183.2	96.7	
공공시설용지	도로	669.2	0.8	
	녹지	2,150.1	2.5	
	소계	2,819.3	3.3	
합계		86,002.5	100.0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1) 도로 계획

가) 단지 내 도로

구분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계	1	380	-	-	-	-	1	380	-
광로	1	380	-	-	-	-	1	380	광로 3-1
대로	-	-	-	-	-	-	-	-	-
중소	-	-	-	-	-	-	-	-	-
소로	-	-	-	-	-	-	-	-	-

나) 단지 외 도로

구분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계	2	19,950 (3,337)	2	19,950 (3,337)	-	-	-	-	-
광로	2	19,950 (3,337)	2	19,950 (3,337)	-	-	-	-	광로 1-28 광로 1-84
대로	-	-	-	-	-	-	-	-	-
중소	-	-	-	-	-	-	-	-	-
소로	-	-	-	-	-	-	-	-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사항임

2) 유통업무설비 계획

가) 단지 외 유통업무설비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계	-	231,100.25	
유통업무설비	서초구 양재동 214번지 일대	231,100.25	양재동 225 일대 유통업무설비 폐지

3) 자동차정류장 계획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계	-	74,411.6	
자동차정류장 (물류터미널)	양재동 225 일대	74,411.6	입체적 결정

4) 광장 계획

가) 단지 외 광장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계	-	158,138.2	
광장	교통광장(양재I.C)	158,138.2	완충녹지 위치 일부 조정에 따른 광장 가각부 일부 변경

5) 공원 · 녹지 계획

가) 단지 내 녹지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계	-	2,150.1	
완충녹지	양재동 225 일대	857.4	양재대로변
경관녹지	양재동 225 일대	1,292.7	양재대로12길변

5의2. 건축계획 및 복합용지이용계획

가. 건축계획

1) 복합용지

구분		내용	비고
구역면적		83,183.20㎡	
건폐율		59.92%	60% 이하
용적률		799.50%	800% 이하
건축면적		49,846.70㎡	
연면적	지상	919,215.25㎡	
	지하	555,434.78㎡	
	소계	1,474,650.03㎡	
	용적률 산정용	665,051.88㎡	
높이		220.10m	대공방어협조구역 (해발고도 253.2m)
층수		지상 49~58층 / 지하 8층	

※ 향후 건축 인 · 허가 과정 등에 따라 상기 건축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나. 복합용지이용계획

1) 복합용지

구분			내용	비고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설 (연면적 50% 이상)	물류시설 (연면적 30% 이상)		창고시설(창고, 집배송 시설, 화물차 차고 등) 등	-
	상류시설		판매시설(대규모 점포 등) 등	-
지원시설	R&D (연면적 20% 이상)	연구 전용공간 (연면적 15% 이상)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공장(도시형 공장) 등	-
		직접연구 지원공간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등	-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가. 주요 유치시설

1)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 물류시설 : 창고시설(창고, 집배송 시설, 화물차 차고 등) 등

○ 상류시설 : 판매시설(대규모 점포 등) 등

2) 지원시설

○ 지원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숙박시설, 공장(도시형 공장),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근린생활시설 등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 배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배치

7. 공공기여계획

가. 공공기여 총량

○ 4,068억원(토지가액의 25% 이내)

나. 공공기여 종류, 위치, 규모

종류		비율	규모	위치	비고
합 계		4,068억원			
공공기여금	소계	69%	• 2,804억원	-	-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사업비	25%	• 1,000억원	-	-
	서초구 청소종합시설 현대화	25%	• 1,000억원	-	-
	외부교통대책(사업자 분담금 제외)	18%	• 741억원	-	-
	물류지원시설	1%	• 63억원	-	-
R&D 관련 연구·업무시설		25%	• 연면적 : 23,600.00㎡ • 대지 지분 : 1,331.25㎡	• 양재대로변 (대상지 북서측)	1,000억원
공공임대주택(사회혼합 계획)		6%	• 세대수 : 84Type 45세대 • 대지 지분 : 473.07㎡	• 양재대로12길변 (대상지 남서측)	264억원

※ 공공기여는 비율로 우선 결정하고, 향후 사업시행자와 귀속 주체간 협의를 거쳐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공공기여 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음

다. 공공기여 제공방법, 설치주체, 귀속주체

종류		제공방법	설치주체	비용주체	귀속주체
공공기여금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 사업비	• 비용	• 서울시	• 사업시행자	• 서울시(도로계획과)
	서초구 청소종합시설 현대화	• 비용	• 서초구	• 사업시행자	• 서초구(청소행정과)
	외부교통대책(사업자 분담금 제외)	• 비용	• 서울시	• 사업시행자	• 서울시(도로계획과)
	물류지원시설	• 비용	• 서울시	• 사업시행자	• 서울시(물류정책과)
R&D 관련 연구·업무시설		• 건물+대지지분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 서울시(첨단산업과)
공공임대주택		• 건물+대지지분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 서울시(공공주택과)

8.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9.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1 도시관리계획(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양재동, 우면동, 염곡동 일대	3,067,090.0	-	3,067,090.0	2001.12.15 (서고 제2001-418호)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결정조서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1	28	50~60	주간선도로	13,000 (1,648)	천호동 광6	과천시계	일반도로	-	'87.06.09. (서고 제406호)	-
변경	광로	1	28	50~68	주간선도로	13,000 (1,648)	천호동 광6	과천시계	일반도로	-	'87.06.09. (서고 제406호)	양재대로 일부폭원변경
기정	광로	1	84	50	주간선도로	6,950 (1,689)	서초동 (신원I.C)	서초구 신원동	자동차전용도로	-	'91.03.21. (건고 제145호)	-
변경	광로	1	84	50	주간선도로	6,950 (1,689)	서초동 (신원I.C)	서초구 신원동	자동차전용도로	-	'91.03.21. (건고 제145호)	경부고속도로, 가각부 일부변경
기정	광로	3	1	41~45	집산도로	380	양재동 222 광 1-28	양재동 224 지구계	일반도로	화물터미널	'01.09.22. (서초구고시 제312호)	양재대로12길
변경	광로	3	1	44~48	집산도로	380	양재동 222 광 1-28	양재동 224 지구계	일반도로	-	'01.09.22. (서초구고시 제312호)	양재대로12길

※ ( )는 지구단위계획 내의 사항이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분만 기재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광로 1-28	광로 1-28	• 도로 폭원 변경 폭원 : 50~60m → 50~68m	•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진·출입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하여 녹지(완충녹지) 일부 변경 및 그에 따른 도로 폭원 확장
광로 1-84	광로 1-84	• 가각부 일부 변경	•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진·출입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하여 녹지(완충녹지) 일부 변경에 따라 도로 가각부 일부 변경
광로 3-1	광로 3-1	• 도로 폭원 변경 폭원 : 41~45m → 44~48m • 가각부 일부 변경	•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 폭원 확장

(2) 철도(변경없음)

(3) 주차장(변경없음)

(4) 자동차정류장(변경)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②	자동차 정류장	물류터미널	양재동 225 일대	-	증)74,411.6	74,411.6 (입체적 결정)	-	입체적 결정 조서 참조

※ 74,411.6㎡는 수평투영면적이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분만 기재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간적 범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②	자동차 정류장 (물류 터미널)	양재동 225 일대	층수(층)	-	지하8층~ 지상2층	지하8층~ 지상2층	-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는 입체적결정도 (공간적범위 결정도) 참조
				수평 투영 면적 (㎡)	-	74,411.6	74,411.6		
				연면적 (㎡)	-	444,690.02	444,690.02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②	자동차 정류장 (물류 터미널)	• 자동차정류장(물류터미널)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간적 범위결정) - 층수 : 지하8층~지상2층 - 수평투영면적 : 74,411.6㎡ - 연면적 : 444,690.02㎡ - 대지지분 : 25,084.4㎡	•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물류단지 개발지침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류시설 설치 부분은 입체적 결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결정

나) 공간시설 결정조서

(1) 광장(변경)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㊾	광장	교통광장 (양재I.C)	양재동 225-1	158,117.0	증)21.2	158,138.2	'91.03.21. (건고 제145호)	양재I.C

○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㊾	광장	• 교통광장(양재I.C) - 기정 : 158,117.0㎡ - 변경 : 158,138.2㎡ 증)21.2㎡	•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진·출입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하여 녹지(완충녹지) 위치 일부 조정에 따른 광장 가각부 일부 변경

(2)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③	녹지	완충녹지	양재대로변	20,017.0	감) 510.9	19,506.1	-	-
신설	①	녹지	경관녹지	양재동 225	-	증)1,292.7	1,292.7	-	-

※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분만 기재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 사유
③	녹지	완충녹지	• 완충녹지 변경 - 기정 : 20,017.0㎡ - 변경 : 19,506.1㎡ 감) 510.9㎡	•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원활한 진·출입 및 양재대로변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녹지(완충녹지) 일부 변경 • 해당 구간은 완화차로 및 보행공간 조성
①	녹지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신설 : 1,292.7㎡	•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기업 종사자 및 일반시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 제공, 소음 완화,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성 및 접근성이 높은 양재대로12길변으로 계획

(3) 공원(변경없음)

다) 유통공급시설 결정조서

(1) 유통업무설비(변경)

○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유통업무설비	서초구 양재동 214번지 일대	317,102.75	감)86,002.50	231,100.25	'82.02.18 (건고 제76호)	일반 상업

※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분만 기재

○ 유통업무설비 총괄조서(변경)

- 양재동 214번지 일대

구분	시설명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317,102.75	감)86,002.50	231,100.25	-	-
기정	유통업무설비	사무소	양재동 214	15,355.20	-	15,355.20	'91.02.11. (서고 제36호)	-
		대규모점포(도매센터, 대형점), 집배송시설	양재동 215	28,972.30	-	28,972.30	'03.09.20. (서고 제269호)	-
		간이주유소	양재동 216외 1	7,976.90	-	7,976.90	'85.08.19. (서고 제553호)	-
		화물터미널	양재동 217-7외 2	3,768.50	-	3,768.50	'01.12.15. (서고 제413호)	-
		자동차매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자동차 경매장	양재동 217외 3	12,858.90	-	12,858.90	'01.12.15. (서고 제413호)	-
		대규모 점포	양재동 217-6	9,598.50	-	9,598.50	'99.08.10. (서고 제249호)	-
		집배송시설	양재동 222외 1	16,789.60	-	16,789.60	'04.10.20. (서고 제318호)	-
		농수산물도매시장 공동집배송센터	양재동 223외 1	32,093.47	-	32,093.47	'11.09.15. (서고 제270호)	-

구분	시설명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유통업무설비	물류터미널, 대규모점포, 창고	양재동 225외 6	86,002.50	감)86,002.50	-	'14.5.22. (서고 제193호)	-
기정	유통업무설비	창고	양재동 229	7,883.60	-	7,883.60	'21.12.30. (서고 제2021-733호)	-
		농수산물도매시장	양재동 229-7	8,426.90	-	8,426.90	'21.12.30. (서고 제2021-733호)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양재동 230외 2	64,438.40	-	64,438.40	'07.03.08. (서초구고시 제16호)	-
		자동차매매업 및 도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양재동 231	22,937.98	-	22,937.98	'07.03.08. (서초구고시 제16호)	-

○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양재동 214번지 일대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세부시설명	건축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유통업무설비	양재동 214	15,355.20	사무소	-	-	지하 3층 지상 6층	'91.02.11. (서고 제36호)
		양재동 215	28,972.30	대규모점포 (도매센터,대형점), 집배송시설	40% 이하	270% 이하	19층 이하 (해발 125m 이하)	'03.09.20. (서고 제269호)
		양재동 216외 1	7,976.90	간이주유소	-	-	-	'85.08.19. (서고 제553호)
		양재동 217-7외 2	3,768.50	화물터미널	-	-	-	'01.12.15. (서고 제413호)
		양재동 217외 3	12,858.90	자동차매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자동차 경매장	50% 이하	200% 이하	6층 이하 (해발 75m 이하)	'01.12.15. (서고 제413호)
		양재동 217-6	9,598.50	대규모 점포	-	-	-	'99.08.10. (서고 제249호)
		양재동 222외 1	16,789.60	집배송시설	50% 이하	60% 이하	3층 이하 (해발 60m 이하)	'04.10.20. (서고 제318호)
		양재동 223외 1	32,093.47	농수산물도매시장 공동집배송센터	46% 이하	47% 이하	3층 이하 (해발 60m 이하)	'11.09.15. (서고 제270호)
기정	유통업무설비	양재동 225외 6	86,002.50	물류터미널, 대규모점포, 창고	60% 이하	400% 이하	해발 190m 이하 (단, 건축법에 의한 도로 사선제한 적용)	'14.05.22. (서고 제193호)
폐지	유통업무설비	양재동 225외 6	-	-	-	-	-	-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세부시설명	건축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유통업무설비	양재동 229외 4	7,883.60	창고	60% 이하	300% 이하	11층 이하 (해발 82m 이하)	-
		양재동 229-7	8,426.90	농수산물도매시장	60% 이하	100% 이하	5층 이하 (해발 50m 이하)	양곡도매시장 이전부지
기정	유통업무설비	양재동 230외 2	64,438.40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50% 이하	60% 이하	4층 이하 (해발 50m 이하)	'07.03.08. (서초구고시 제16호)
		양재동 231	22,937.98	자동차매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창고, 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	55% 이하	허용용적률 400% 이하 *단, 기부채납에 의한 상한용적률 적용	-	'07.03.08. (서초구고시 제16호)

○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유통업무설비	• 면적 변경 - 기정 : 317,102.75㎡ - 변경 : 231,100.25㎡ 감) 86,002.50㎡	•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개발 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시설 해제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폐지

(2)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3) 시장(변경없음)

라) 공공문화 · 체육시설 결정조서

(1) 학교(변경없음)

(2) 도서관(변경없음)

(3) 연구시설(변경없음)

마) 방재시설 결정조서

(1) 하천(변경없음)

(2) 유수지(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 기정

<table>
<tr><th colspan="2">용도지역</th><th>기준용적률</th><th>허용용적률</th><th>상한용적률</th><th>비 고</th></tr>
<tr><td colspan="2">자연녹지지역</td><td>40%이하</td><td>50%이하
(100%이하)주1)</td><td>법적용적률
2배이하</td><td>-</td></tr>
<tr><td rowspan="4">일반
주거
지역</td><td>제1종</td><td>130%이하</td><td>150%이하</td><td>법적용적률
2배이하</td><td>-</td></tr>
<tr><td rowspan="2">제2종</td><td>180%이하</td><td>200%이하</td><td>법적용적률
2배이하</td><td>-</td></tr>
<tr><td>-</td><td>200%이하</td><td>-</td><td>우면동 141번지
(품질시험소별관)</td></tr>
<tr><td rowspan="2">제3종</td><td>220%이하</td><td>250%이하</td><td>법적용적률
2배이하</td><td>-</td></tr>
<tr><td>220%이하</td><td>250%이하</td><td>250%이하</td><td>102번지, 212번지
(양재리본타워)</td></tr>
<tr><td colspan="2">준주거지역</td><td>250%이하</td><td>320%이하
(400%이하)주2)</td><td>-</td><td>특별계획구역</td></tr>
<tr><td colspan="2" rowspan="5">일반상업지역</td><td>250%이하</td><td>400%이하
(600%이하)주2)</td><td>-</td><td>특별계획구역</td></tr>
<tr><td>-</td><td>300%이하</td><td>-</td><td>양재동 229번지
(창고)</td></tr>
<tr><td>-</td><td>100%이하</td><td>-</td><td>양재동 229-7번지
(농수산물도매시장)</td></tr>
<tr><td>600%이하</td><td>800%이하</td><td>-</td><td>삼호물산 일대</td></tr>
<tr><td colspan="2">기본용적률</td><td>상한용적률</td><td rowspan="2">양재동 1-2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td></tr>
<tr><td colspan="2">680%이하</td><td>874.64%</td></tr>
</table>

주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여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완화 시 적용

주2) R&D공간 확충의 공공필요성 전제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200%(준주거80%) 추가 부여 가능하며, 추가 확충하는 건축규모 중 1/2(토지+건축)은 공공에 기부채납' 조건

※ 일반주거지역내 블록단위 공동건축시 관련 기준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기준 적용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 변경

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자연녹지지역		40%이하	50%이하 (100%이하)주1)	법적용적률 2배이하	-
일반 주거 지역	제1종	130%이하	15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
	제2종	18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
		-	200%이하	-	우면동 141번지 (품질시험소별관)
	제3종	220%이하	25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
		220%이하	250%이하	250%이하	102번지, 212번지 (양재리본타워)
준주거지역		250%이하	320%이하 (400%이하)주2)	-	특별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250%이하	400%이하 (600%이하)주2)	-	특별계획구역
		-	-	800%이하주3)	특별계획구역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	300%이하	-	양재동 229번지 (창고)
		-	100%이하	-	양재동 229-7번지 (농수산물도매시장)
		600%이하	800%이하	-	삼호물산 일대
		기본용적률		상한용적률	양재동 1-2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680%이하		874.64%	

주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여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완화 시 적용
주2) R&D공간 확충의 공공필요성 전제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200%(준주거80%) 추가 부여 가능하며, 추가 확충하는 건축규모 중 1/2(토지+건축)은 공공에 기부채납' 조건
주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밀도 및 용도, 공공기여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름
※ 일반주거지역내 블록단위 공동건축시 관련 기준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기준 적용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2) 완화기준 설정표(변경없음)

(3) 건폐율 결정조서(변경없음)

(4) 높이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 분		최고높이	계 획 기 준
특별계획구역	⑮, ⑯	40m 이하	• 중심지 체계를 고려한 최고높이 마련
	⑭	65m 이하	
	⑧	100m 이하	
	①, ②, ⑤, ⑥, ⑦, ⑨, ⑩. ⑫, ⑬	120m 이하	
	③, ④, ⑪	150m 이하	

※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분만 기재

○ 변경

구 분		최고높이	계 획 기 준
특별계획구역	⑮, ⑯	40m 이하	• 중심지 체계를 고려한 최고높이 마련
	⑭	65m 이하	
	⑧	100m 이하	
	①, ②, ⑤, ⑥, ⑦, ⑨, ⑩. ⑫, ⑬	120m 이하	
	③, ④	150m 이하	
	⑪	224m 이하	•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을 위하여 최고높이 계획

※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분만 기재

(5)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대지내 공지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2) 경관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3) 차량출입 및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차량출입 및 보행동선 계획기준(변경없음)

나) 차량출입불허구간에 관한 지침(변경)

구분	위 치	계 획 내 용	적 용 대 상
기정	간선 가로변	• 간선도로 및 광장에 접한 획지의 차량출입금지구간 규제	• 강남대로, 양재대로, 논현로, 남부순환로, 헌릉로, 매헌로, 양재천로, 마방로, 바우뫼길, 바우뫼로6길, 바우뫼로12길, 양재대로11길, 양재대로12길 변 - 다만, 양재동 203-14 차량출입 허용
변경	간선 가로변	• 간선도로 및 광장에 접한 획지의 차량출입금지구간 규제	• 강남대로, 양재대로, 논현로, 남부순환로, 헌릉로, 매헌로, 양재천로, 마방로, 바우뫼길, 바우뫼로6길, 바우뫼로12길, 양재대로11길, 양재대로12길 변 - 다만, 양재동 203-14 차량출입 허용 - 특별계획구역(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진출입구간 차량출입 허용

다) 주차출입구에 관한 지침(변경없음)

라) 보행자우선도로에 관한 지침(변경없음)

마) 보행자전용도로에 관한 지침(변경없음)

바)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지침(변경없음)

4) 특정지역에 대한 세부지침(변경없음)

5)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지구단위계획 내용(변경없음)

마.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바.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⑪	양재하림부지 특별계획구역	양재동 225외 6	86,002.50	-	86,002.50	-
변경	⑪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특별계획구역	양재동 225외 6	86,002.50	-	86,002.50	-

※ 지구단위계획 변경 해당 부분만 기재

나) 특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변경 전 구역명	변경 후 구역명	위 치	면 적(㎡)	변경 사유
변경	⑪	양재하림부지 특별계획구역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특별계획구역	양재동 225외 6	86,002.50	• 한국화물터미널부지(양재하림부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을 위하여 개발밀도 및 용도, 공공기여 등은 '도시첨단물류단지' 와 관련한 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2)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특별계획구역 지침(변경)

○ 기정

<table>
<tr><th colspan="5">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 colspan="2" rowspan="2">도시관리계획</td><td colspan="3">용도지역 · 지구</td><td>일반상업지역</td></tr>
<tr><td colspan="3">도시계획시설</td><td>유통업무설비주1)</td></tr>
<tr><td rowspan="5">건축물 용도</td><td rowspan="4">허용 용도</td><td rowspan="3">R&D 용도 (연면적 40% 이상)</td><td rowspan="2">연구전용 공간주2)</td><td>연구공간</td><td>·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3호 지식산업센터
·그 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R&D 용도 인정시설</td></tr>
<tr><td>저렴연구 공간주3)</td><td>·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3호 지식산업센터
·그 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R&D 용도 인정시설</td></tr>
<tr><td colspan="2">직접연구 지원공간주4)</td><td>·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회의장), 전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임대),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td></tr>
<tr><td colspan="3">간접연구 지원공간주5)</td><td>·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5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회의장), 전시장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7호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9호 의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기타 연구전용공간, 직접연구지원공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상업지역내 허용 가능 용도</td></tr>
<tr><td colspan="3">지정용도</td><td>·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물류기본계획상 물류터미널 면적 - 91,200㎡(2017기준) 이상)</td></tr>
<tr><td rowspan="4">건축물 밀도</td><td colspan="3">건폐율</td><td>·60% 이하</td></tr>
<tr><td colspan="3">기준 용적률</td><td>·250% 이하</td></tr>
<tr><td colspan="3">허용 용적률</td><td>·400% 이하주6)
※ 저렴연구공간 + 직접연구지원공간 용적률 의무확보량 :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 ÷ 2</td></tr>
<tr><td colspan="3">최고높이</td><td>·150m 이하</td></tr>
</table>

구분		계획내용
공공기여 주7)	시설해제에 따른 공공기여(의무)	· 순부담율(토지면적)주8) 20% 이상
	활용용도	· R&D관련용도 건축물 및 시설, 교통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등, 생활서비스시설 (생활권계획)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양재대로12길변 10m · 양재대로변 5m
	대지내 공지	· 주요 보행결절점에 공개공지 위치권장
	차량출입불허구간	· 양재대로, 양재대로12길변, 경부고속도로 측 지정
	기타	· 양재 R&D캠퍼스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시에서 조성 중인 R&D캠퍼스와 연계하여 인근 민간 유통업무시설의 개발 유도

주1) 민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해제 원칙 (단,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물류시설 확보 등 관련(장래물류 수요대비) 서울특별시 물류정책과와 사전협의 실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해제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름

주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유기업 대상 (연구소 및 업무시설에 한함)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원시설은 연구, 전용공간 인정 불가

주3) 공공과 협약에 의해 운영하되, 주변시세의 80%로 공급(8년 이상)

주4) 구체적인 용도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공과의 협의를 통해 직접연구지원공간 허용용도 중 변경 가능

주5) 판매시설 연면적 20%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15% 이하(공공지원민간임대 10%, 분양 5%)

주6) R&D공간 확충의 공공 필요성 전제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200%(80%) 추가 부여 가능하며, '추가 확충하는 용적률 중 1/2(토지+건축)은 공공에 기부채납' 조건

주7)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시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서울특별시)' 에 따른 토지가액 및 설치비용

주8) 개발 부영향 최소화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부여되는 기반시설(도로 등)은 원칙적으로 별도 확보 (공공기여 미인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밀도 및 용도, 공공기여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름

※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진출입 권장구간 및 완화차로 건의내용을 참조하고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라 변경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교차로 등 인근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처리계획을 반영할 것

○ 변경

<table>
<tr><th colspan="5">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 colspan="2" rowspan="2">도시관리 계획</td><td colspan="3">용도지역 · 지구</td><td>일반상업지역</td></tr>
<tr><td colspan="3">도시계획시설</td><td>자동차정류장(물류터미널), 도로, 녹지</td></tr>
<tr><td colspan="5">가구 및 획지</td><td>· 복합용지 신설 : 83,183.20㎡</td></tr>
<tr><td rowspan="5">건축물 용도</td><td colspan="4">불허용도</td><td>· 지원시설 중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16.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에 한함)</td></tr>
<tr><td rowspan="4">허용 용도</td><td rowspan="2">R&D 용도 (연면적 20% 이상)</td><td>연구전용 공간 (연면적 15% 이상)</td><td>·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3호 지식산업센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형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지식산업 관련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의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td></tr>
<tr><td>직접연구 지원공간</td><td>·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회의장),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임대),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td></tr>
<tr><td colspan="2">간접연구 지원공간</td><td>·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5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회의장), 전시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7호 판매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9호 의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기타 연구전용공간, 직접연구지원공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상업지역내 허용 가능 용도</td></tr>
<tr><td colspan="4">지정용도</td><td>· 물류시설법 제2조제7의2호의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 물류시설 :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연면적의 60% 이상</td></tr>
<tr><td rowspan="3">건축물 밀도</td><td colspan="4">건폐율</td><td>· 60% 이하</td></tr>
<tr><td colspan="4">용적률</td><td>·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 / - / 800% 이하</td></tr>
<tr><td colspan="4">최고높이</td><td>· 224m 이하</td></tr>
<tr><td>공공 기여</td><td colspan="4">공공기여율</td><td>· 토지가액의 25% 이내</td></tr>
<tr><td rowspan="4">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td><td colspan="4">건축한계선</td><td>· 양재대로12길변 10m
· 양재대로변 5m</td></tr>
<tr><td colspan="2">대지내 공지</td><td colspan="2">공개공지</td><td>· 주요 보행결절점에 공개공지 위치권장</td></tr>
<tr><td colspan="2">경관</td><td colspan="2">의장 및 색상</td><td>· 외부색은 원색사용을 금지하고, 서울색정립 및 체계화의 경관별 색채 가이드라인을 적용 권장</td></tr>
<tr><td colspan="4">차량출입불허구간</td><td>· 양재대로, 양재대로12길변 지정 진출입구간 외 차량출입 불허</td></tr>
</table>

※ 도시계획시설 중 자동차정류장(물류터미널) 입체적 결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밀도 및 용도, 공공기여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름
※ 공개공지 및 차량출입불허구간 위치는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참조

2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⑪	양재하림부지 특별계획구역	양재동 225외 6	86,002.50	-	86,002.50	-
변경	⑪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특별계획구역	양재동 225외 6	86,002.50	-	86,002.50	-

2) 특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변경 전 구역명	변경 후 구역명	위 치	면 적(㎡)	변경 사유
변경	⑪	양재하림부지 특별계획구역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특별계획구역	양재동 225외 6	86,002.50	• 한국화물터미널부지(양재하림부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을 위하여 개발밀도 및 용도, 공공기여 등은 '도시첨단물류단지' 와 관련한 법령(「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결정조서

(1)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1	41~45	집산도로	380	양재동 222 광 1-28	양재동 224 지구계	일반도로	화물터미널	'01.09.22. (서초구고시 제312호)	양재대로12길
변경	광로	3	1	44~48	집산도로	380	양재동 222 광 1-28	양재동 224 지구계	일반도로	-	'01.09.22. (서초구고시 제312호)	양재대로12길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광로 3-1	광로 3-1	• 도로 폭원 변경 폭원 : 41~45m → 44~48m • 가각부 일부 변경	•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 폭원 확장

(2) 자동차정류장(변경)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②	자동차 정류장	물류터미널	양재동 225 일대	-	증)74,411.6	74,411.6 (입체적 결정)	-	입체적 결정 조서 참조

※ 74,411.6㎡는 수평투영면적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간적 범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②	자동차 정류장 (물류 터미널)	양재동 225 일대	층수(층)	-	지하8층~ 지상2층	지하8층~ 지상2층	-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는 입체적결정도 (공간적범위 결정도) 참조
				수평 투영 면적 (㎡)	-	74,411.6	74,411.6		
				연면적 (㎡)	-	444,690.02	444,690.02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②	자동차 정류장 (물류 터미널)	• 자동차정류장(물류터미널)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간적 범위결정) - 층수 : 지하8층~지상2층 - 수평투영면적 : 74,411.6㎡ - 연면적 : 444,690.02㎡ - 대지지분 : 25,084.4㎡	•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물류단지개발지침 제12조제1항에 따라 물류시설 설치 부분은 입체적 결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결정

나) 공간시설 결정조서

(1)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③	녹지	완충녹지	양재대로변	20,017.0	감)510.9	19,506.1 (857.4)	-	-
신설	①	녹지	경관녹지	양재동 225	-	증)1,292.7	1,292.7	-	-

※ ( )내는 특별계획구역 내 면적임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 사유
③	녹지	완충녹지	• 완충녹지 변경 - 기정 : 20,017.0㎡ - 변경 : 19,506.1㎡ 감) 510.9㎡	•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원활한 진·출입 및 양재대로변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녹지(완충녹지) 일부 변경 • 해당 구간은 완화차로 및 보행공간 조성
①	녹지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신설 : 1,292.7㎡	•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기업 종사자 및 일반시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 제공, 소음 완화,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성 및 접근성이 높은 양재대로12길 변으로 계획

다) 유통공급시설 결정조서

(1) 유통업무설비(변경)

○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유통업무설비	서초구 양재동 214번지 일대	317,102.75	감)86,002.50	231,100.25	'82.02.18 (건고 제76호)	일반 상업

○ 유통업무설비 총괄조서(변경)

- 양재동 214번지 일대

구분	시설명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317,102.75	감)86,002.50	231,100.25	-	-
기정	유통업무설비	사무소	양재동 214	15,355.20	-	15,355.20	'91.02.11. (서고 제36호)	-
		대규모점포(도매센터, 대형점), 집배송시설	양재동 215	28,972.30	-	28,972.30	'03.09.20. (서고 제269호)	-
		간이주유소	양재동 216외 1	7,976.90	-	7,976.90	'85.08.19. (서고 제553호)	-
		화물터미널	양재동 217-7외 2	3,768.50	-	3,768.50	'01.12.15. (서고 제413호)	-
		자동차매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자동차	양재동 217외 3	12,858.90	-	12,858.90	'01.12.15. (서고 제413호)	-

구분	시설명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경매장						
		대규모 점포	양재동 217-6	9,598.50	-	9,598.50	'99.8.10. (서고 제249호)	-
		집배송시설	양재동 222외 1	16,789.60	-	16,789.60	'04.10.20. (서고 제318호)	-
		농수산물도매시장 공동집배송센터	양재동 223외 1	32,093.47	-	32,093.47	'11.9.15. (서고 제270호)	-
폐지	유통업무설비	물류터미널, 대규모점포, 창고	양재동 225외 6	86,002.50	감)86,002.50	-	'14.5.22. (서고 제193호)	-
기정	유통업무설비	창고	양재동 229	7,883.60	-	7,883.60	'21.12.30. (서고 제2021-733호)	-
		농수산물도매시장	양재동 229-7	8,426.90	-	8,426.90	'21.12.30. (서고 제2021-733호)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양재동 230외 2	64,438.40	-	64,438.40	'07.03.08. (서초구고 제16호)	-
		자동차매매업 및 도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양재동 231	22,937.98	-	22,937.98	'07.03.08. (서초구고 제16호)	-

○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양재동 214번지 일대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세부시설명	건축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유통업무설비	양재동 214	15,355.20	사무소	-	-	지하 3층 지상 6층	'91.02.11. (서고 제36호)
		양재동 215	28,972.30	대규모점포 (도매센터,대형점), 집배송시설	40% 이하	270% 이하	19층 이하 (해발 125m 이하)	'03.09.20. (서고 제269호)
		양재동 216외 1	7,976.90	간이주유소	-	-	-	'85.08.19. (서고 제553호)
		양재동 217-7외 2	3,768.50	화물터미널	-	-	-	'01.12.15. (서고 제413호)
		양재동 217외 3	12,858.90	자동차매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자동차 경매장	50% 이하	200% 이하	6층 이하 (해발 75m 이하)	'01.12.15. (서고 제413호)
		양재동 217-6	9,598.50	대규모 점포	-	-	-	'99.08.10. (서고 제249호)
		양재동 222외 1	16,789.60	집배송시설	50% 이하	60% 이하	3층 이하 (해발 60m 이하)	'04.10.20. (서고 제318호)
		양재동 223외 1	32,093.47	농수산물도매시장 공동집배송센터	46% 이하	47% 이하	3층 이하 (해발 60m 이하)	'11.09.15. (서고 제270호)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세부시설명	건축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유통업무설비	양재동 225외 6	86,002.50	물류터미널, 대규모점포, 창고	60% 이하	400% 이하	해발 190m 이하 (단, 건축법에 의한 도로 사선제한 적용)	'14.05.22. (서고 제193호)
폐지	유통업무설비	양재동 225외 6	-	-	-	-	-	-
기정	유통업무설비	양재동 229외 4	7,883.60	창고	60% 이하	300% 이하	11층 이하 (해발 82m 이하)	-
		양재동 229-7	8,426.90	농수산물도매시장	60% 이하	100% 이하	5층 이하 (해발 50m 이하)	양곡도매시장 이전부지
기정	유통업무설비	양재동 230외 2	64,438.40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50% 이하	60% 이하	4층 이하 (해발 50m 이하)	'07.03.08. (서초구고시 제16호)
		양재동 231	22,937.98	자동차매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창고, 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	55% 이하	허용용적률 400% 이하 *단, 기부채납에 의한 상한용적률 적용	-	'07.03.08. (서초구고시 제16호)

○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유통업무설비	• 면적 변경 - 기정 : 317,102.75㎡ - 변경 : 231,100.25㎡ 감) 86,002.50㎡	•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개발 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시설 해제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폐지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 결정조서(신설)

구분	위치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계획내용	비고
복합용지	특별계획구역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	A	83,183.2	• 하나의 용지에 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상업·주거 시설의 융·복합을 통하여 입주기업의 생산성과 업무효율을 높이고, 편의·휴식 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도록 계획	-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 용도 결정(변경)조서

○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용도지역	불허용도		비고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특별계획구역(양재 도시첨단 물류단지)	일반상업지역	• 지원시설 중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6.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에 한함)	• 좌동	-

○ 허용용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용도지역	허용용도						비고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특별계획구역(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일반상업지역	R&D용도(연면적 20% 이상)	연구전용공간(연면적 15% 이상)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도시형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3호 지식산업센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형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지식산업 관련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의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R&D용도(연면적 20% 이상)	연구전용공간(연면적 15% 이상)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도시형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3호 지식산업센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형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지식산업 관련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의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
			직접연구지원공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회의장),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임대),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직접연구지원공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회의장),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간접연구지원공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회의장), 전시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7호 판매시설	간접연구지원공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기타 연구전용공간, 직접연구지원공간에	

구분	용도지역	허용용도		비고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9호 의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기타 연구전용공간, 직접연구지원공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상업지역내 허용 가능 용도	해당하지 않는 일반상업지역내 허용 가능 용도	

○ 지정용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용도지역	지정용도		비고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특별계획구역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일반상업지역	·물류시설법 제2조제7의2호의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 물류시설 :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연면적의 60% 이상	·좌동	-

나) 건축물 개발밀도 결정(변경)조서

○ 건폐율·용적률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획내용	세부개발계획
건축물 밀도	건폐율	·60% 이하	·59.92%
	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 / - / 800% 이하	·799.50%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밀도 및 용도, 공공기여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름

다) 건축물 높이 결정(변경)조서

○ 높이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획내용	세부개발계획
건축물 높이	최고높이	·224m 이하	·220.1m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1) 대지내 공지계획 결정조서 : 변경

구분			계획내용	세부개발계획
기타	대지 내 공지	공개 공지	• 주요 보행 결절부에 공개공지 위치권장	• 좌동

2) 경관계획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계획내용	세부개발계획
건축물 경관	의장 및 색상	• 외부색은 원색사용을 금지하고, 서울색정립 및 체계화의 경관별 색채 가이드라인을 적용 권장	• 좌동

3) 차량출입 및 보행동선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계획내용	세부개발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 양재대로, 양재대로12길변 지정 진출입구간 외 차량출입 불허	• 좌동

※ 차량출입불허구간 위치는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참조

마.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조서(총괄표)

<table>
<tr><th colspan="4">구분</th><th>계획내용</th><th>세부개발계획</th></tr>
<tr><td colspan="2" rowspan="2">도시관리 계획</td><td colspan="2">용도지역 · 지구</td><td>• 일반상업지역</td><td>• 좌동</td></tr>
<tr><td colspan="2">도시계획시설</td><td>• 자동차정류장(물류터미널), 도로, 녹지</td><td>• 자동차정류장(물류터미널), 도로(669.2㎡), 녹지(2,150.1㎡)</td></tr>
<tr><td colspan="3">가구 및 획지</td><td>• 복합용지 신설 : 83,183.20㎡</td><td>• 좌동</td></tr>
<tr><td rowspan="4">건축물 용도</td><td colspan="2">불허용도</td><td>• 지원시설 중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16.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에 한함)</td><td>• 좌동</td></tr>
<tr><td rowspan="3">허용 용도</td><td rowspan="2">R&D 용도 (연면적 20% 이상)</td><td>연구 전용 공간 (연면적 15% 이상)</td><td>•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3호 지식산업센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형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지식산업 관련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의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td><td>• 좌동</td></tr>
<tr><td>직접 연구 지원 공간</td><td>•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회의장),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임대),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td><td>•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회의장),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td></tr>
<tr><td colspan="2">간접연구 지원공간</td><td>•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회의장), 전시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7호 판매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9호 의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기타 연구전용공간, 직접연구지원공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상업지역내 허용 가능 용도</td><td>•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기타 연구전용공간, 직접연구지원공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상업지역내 허용 가능 용도</td></tr>
<tr><td colspan="2">지정용도</td><td>• 물류시설법 제2조제7의2호의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 물류시설 :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연면적의 60% 이상</td><td>• 좌동</td></tr>
</table>

구분			계획내용	세부개발계획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 이하	· 59.92%
	용적률		·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 / - / 800% 이하	· 799.50%
	최고높이		· 224m 이하	· 220.1m
공공기여	공공기여율		· 토지가액의 25% 이내	· 토지가액의 24.99%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양재대로12길변 10m · 양재대로변 5m	· 좌동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 주요 보행결절점에 공개공지 위치권장	· 좌동
	경관	의장 및 색상	· 외부색은 원색사용을 금지하고, 서울색정립 및 체계화의 경관별 색채 가이드라인을 적용 권장	· 좌동
	차량출입 불허구간		· 양재대로, 양재대로12길변 지정 진출입구간 외 차량 출입 불허	· 좌동

※ 도시계획시설 중 자동차정류장(물류터미널) 입체적 결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밀도 및 용도, 공공기여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름
※ 공개공지 및 차량출입불허구간 위치는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참조

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 게재 생략

14.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청 물류정책과(☎ 02-2133-4083),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02-2155-679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별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및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 등

가. 편입토지조서

1) 단지 내

주소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구분	비고
서초구 양재동	222-3	대	3,866.30	3,595.65	서울특별시	착공전 취득예정
	225	대	24,449.90	24,178.91	KB부동산신탁(주)	실제 소유자 ㈜하림산업이 토지 확보 100%
	225-4	대	12,059.90	10,669.86	KB부동산신탁(주)	
	225-5	대	12,060.80	10,504.00	KB부동산신탁(주)	
	225-6	대	12,316.10	10,647.69	KB부동산신탁(주)	

주소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구분	비고
	225-7	대	4,159.20	2,561.60	KB부동산신탁(주)	
	226	대	26,036.90	23,844.79	KB부동산신탁(주)	
합계			94,949.10	86,002.50	-	-

나.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및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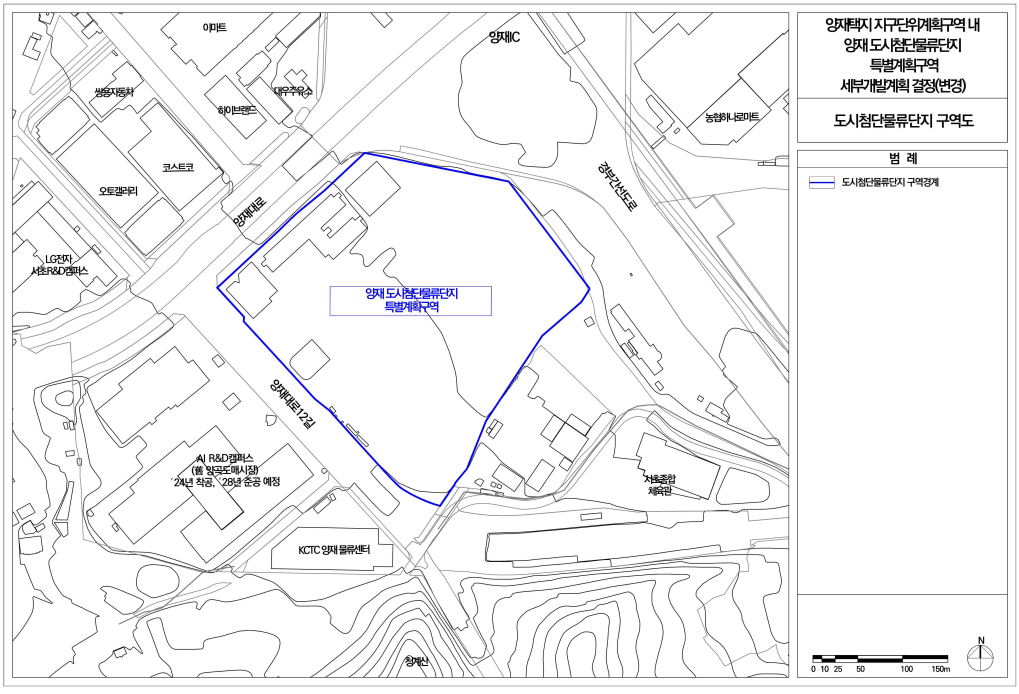
1) 토지

가) 단지 외 (양재대로변 완충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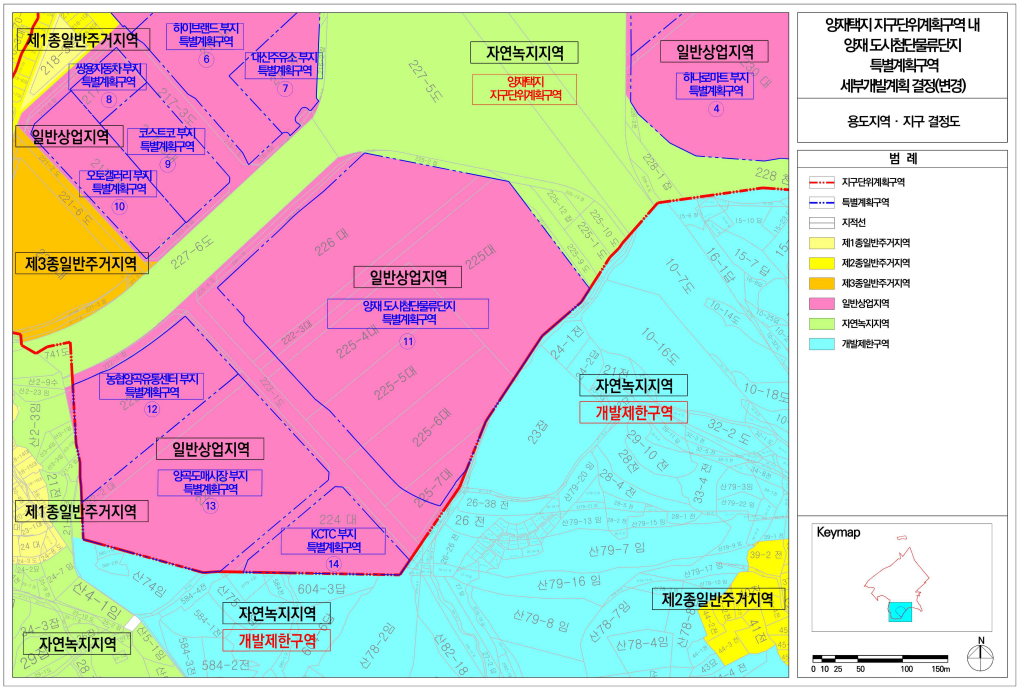
주소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구분	비고
서초구 양재동	226-1	잡종지	966.00	966.00	서울특별시	사용
	226-2	대	1,046.60	1,046.60	서울특별시	사용
	226-3	대	21.70	21.70	서울특별시	사용
	226-4	잡종지	1,265.70	40.89	서울특별시	사용
합계			3,300.00	2,075.19	-	-

※ 붙임1. 도시첨단물류단지 관련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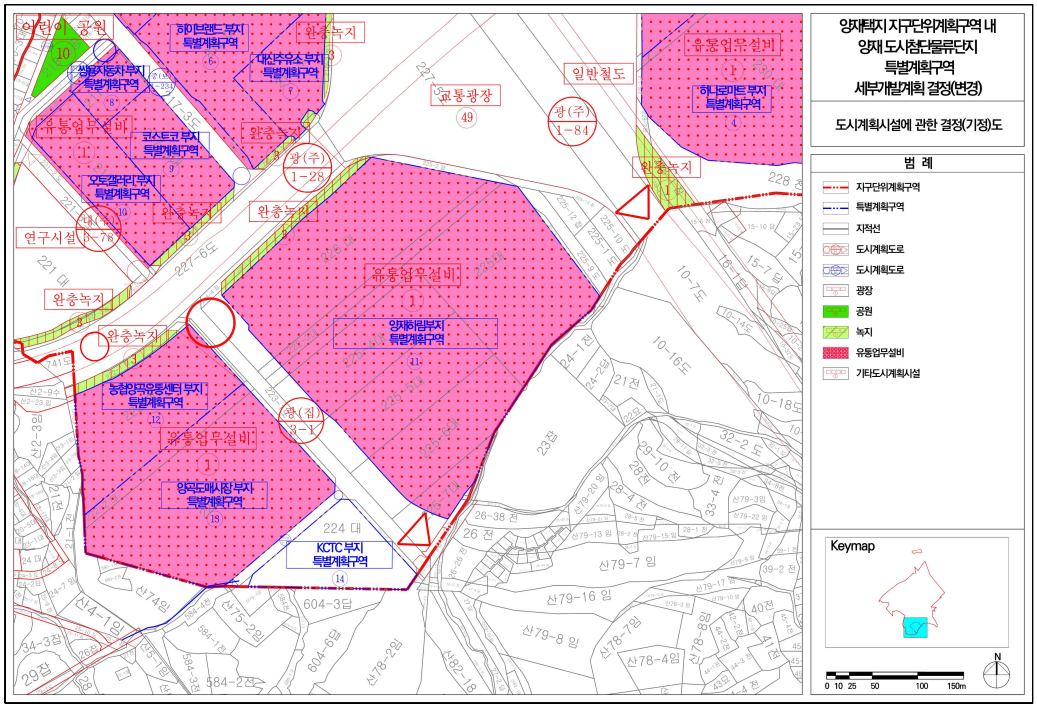
가. 도시첨단물류단지 구역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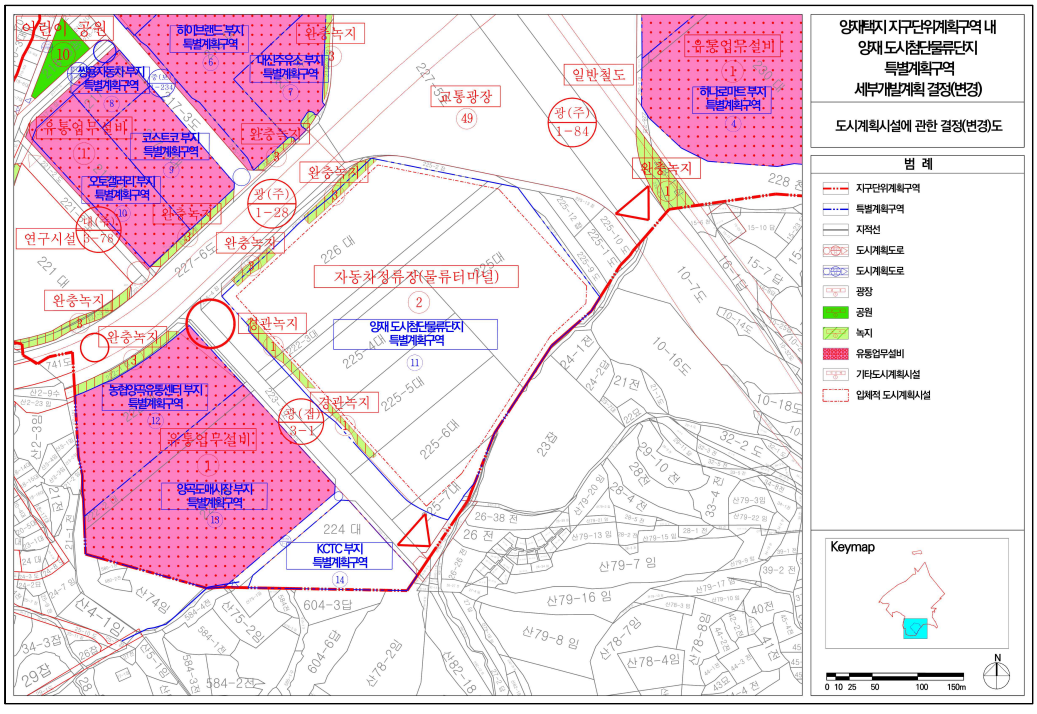
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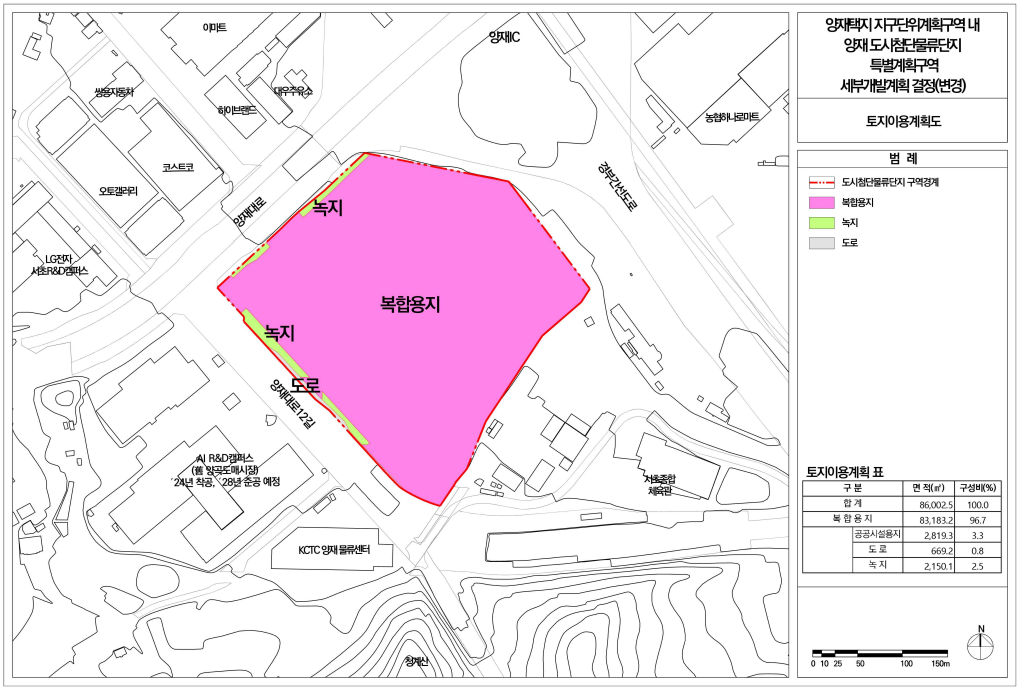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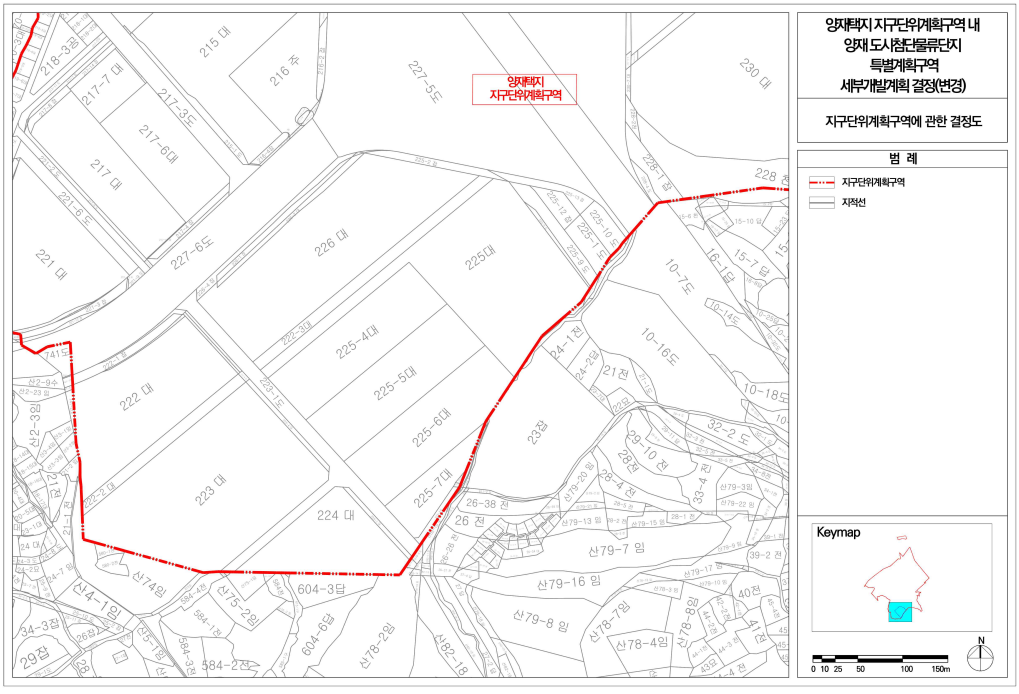


마. 토지이용계획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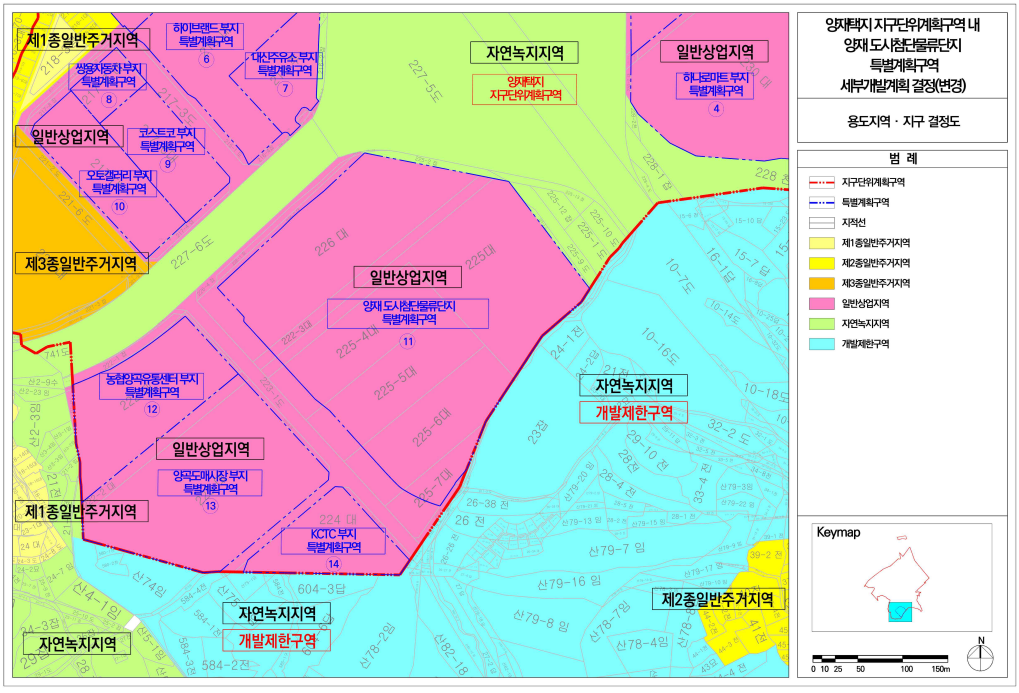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토지이용계획도
범 례
도시첨단물류단지 구역경계
복합용지
녹지
도로
토지이용계획 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합 계 | 86,002.5 | 100.0
복 합 용 지 | 83,183.2 | 96.7
공공시설용지 | 2,819.3 | 3.3
도 로 | 669.2 | 0.8
녹 지 | 2,150.1 | 2.5
0 10 25 50 100 150m
N
녹지
복합용지
녹지
도로
양재대로 12길
양재대로
경부간선도로
양재C
KCTC 양재 물류센터
서초종합
체육관
항동산

※ 붙임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관련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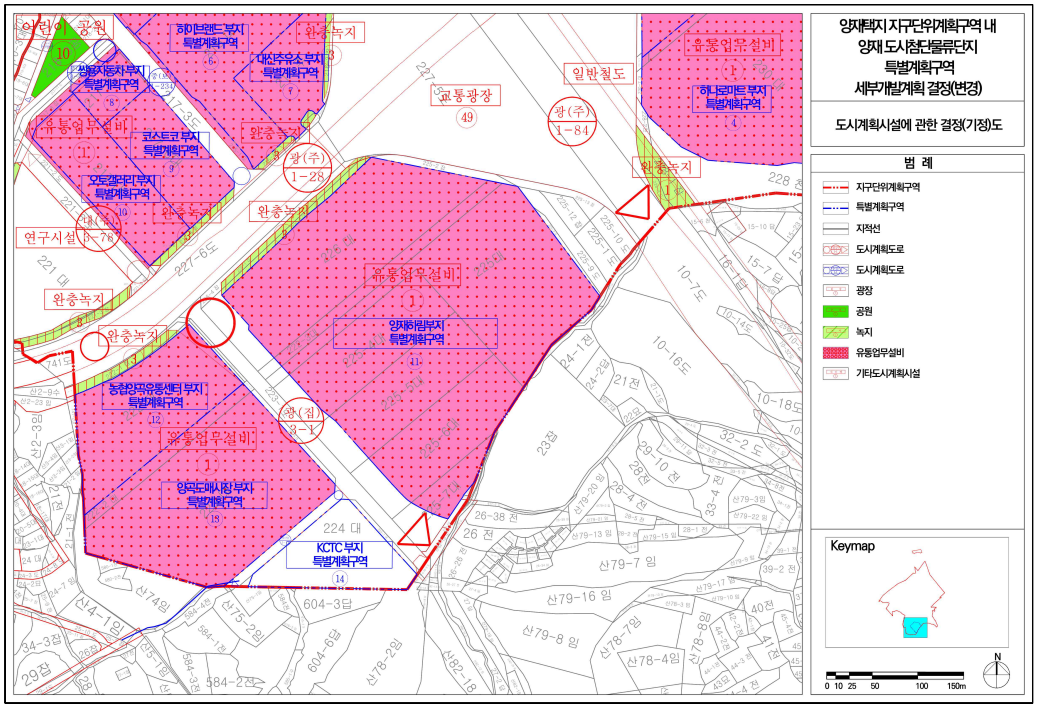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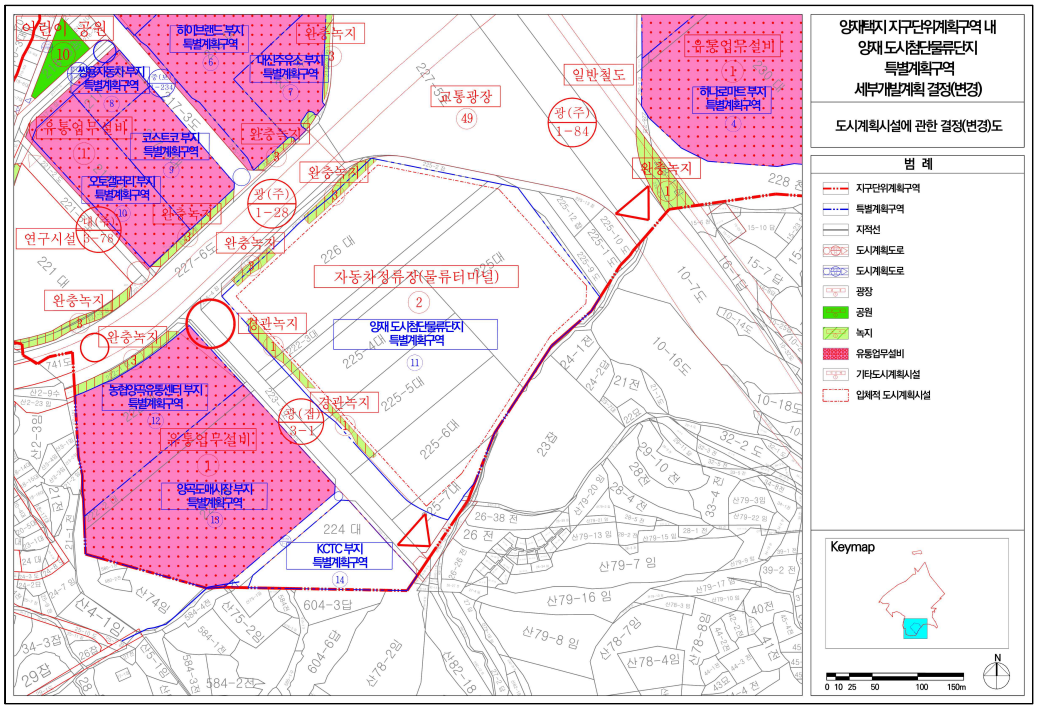
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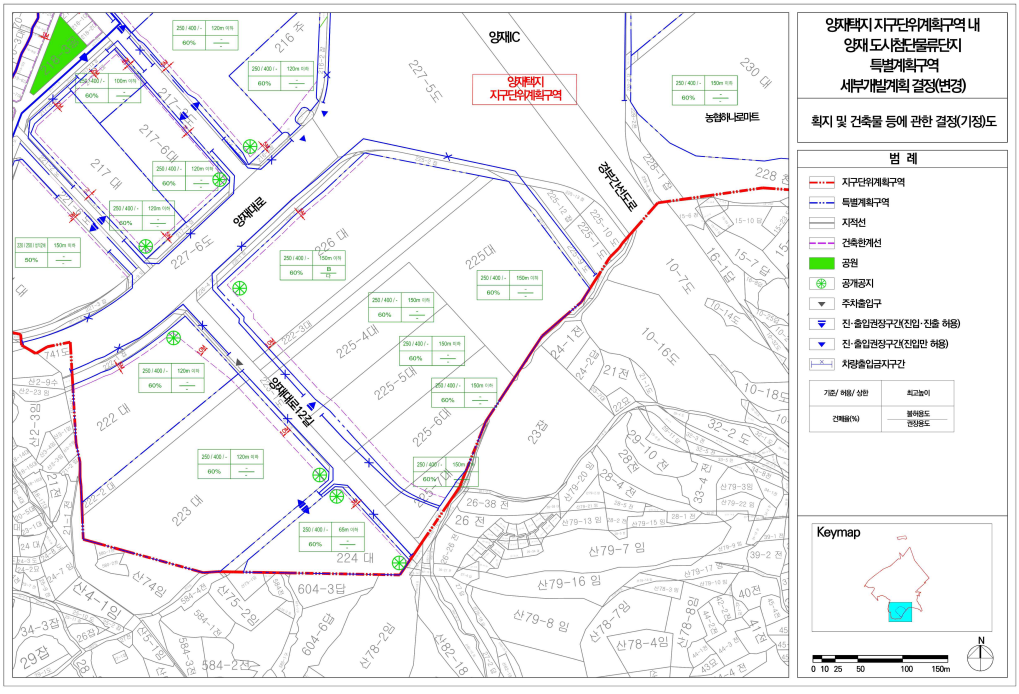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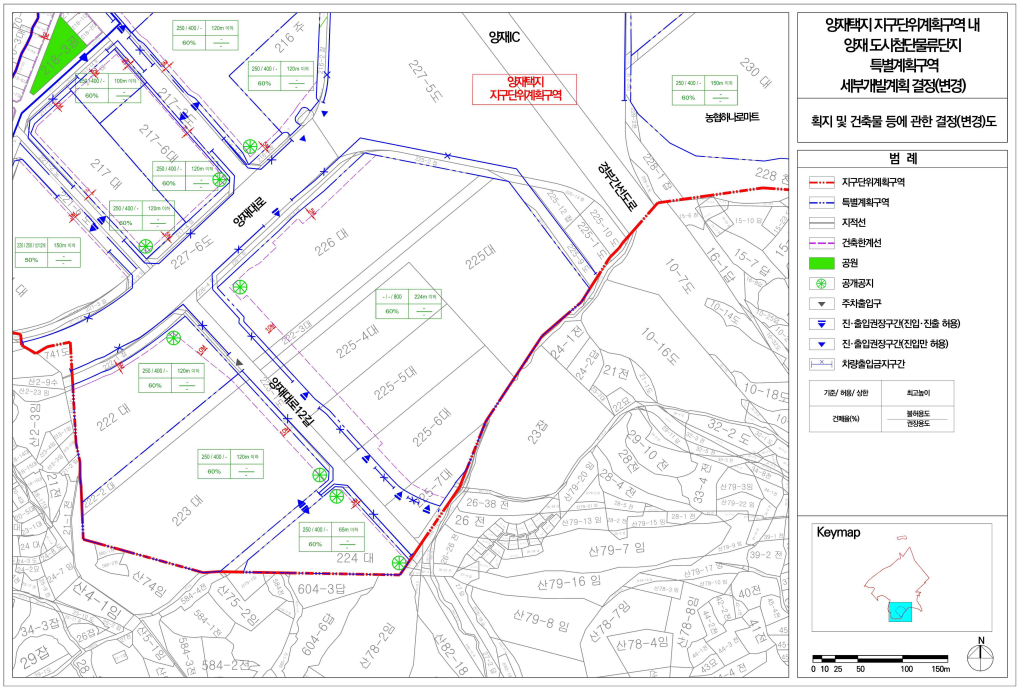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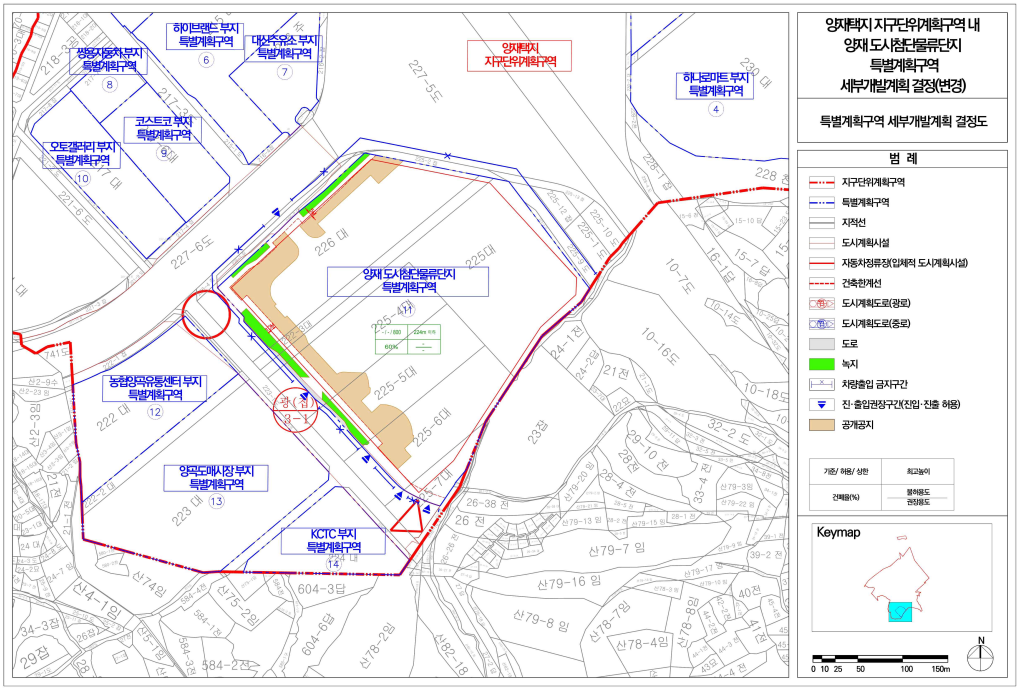
마.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바.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도(신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16호

도시관리계획(송파대로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석촌동 287 일원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송파구 석촌동 287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

서울특별시 송파구공고 제1996-167호(1996.8.1.)로 송파대로 도시설계지구 결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공고 제1998-228호(1998.6.26.)로 석촌 도시설계지구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50호(2012.6.7.), 제2020-58호(2020.2.13.)로 결정(변경)된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송파대로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석촌동 287일원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송파대로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석촌동 287번지 일원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하여, 송파대로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1	송파대로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석촌동 174, 송파동 19일대	189,566	-	189,566	2020.02.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8호)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89,566	-	189,566	10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5,462	-	5,462	2.9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97,528	-	97,528	51.5	-
	제2종일반주거지역	36,350	-	36,350	19.2	-
	준주거지역	50,226	-	50,226	26.4	-

※ 석촌역 주변 준주거지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을 통하여 용도지역 변경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해당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 도로총괄(변경)표

류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31	16,151 (5,281)	537,844 (70,374)	6	12,747 (1,877)	516,970 (49,500)	1	116 (116)	940 (940)	24	3,288 (3,288)	19,934 (19.934)
광로	1	7,300 (537)	365,000 (26,850)	1	7,300 (537)	365,000 (26,850)	-	-	-	-	-	-
대로	1	3,900 (370)	136,500 (12,950)	1	3,900 (370)	136,500 (12,950)	-	-	-	-	-	-
중로	-	-	-	-	-	-	-	-	-	-	-	-

류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소로	29	4,951 (4,374)	36,344 (30,574)	4	1,547 (970)	15,470 (9,700)	1	116 (116)	940 (940)	24	3,288 (3,288)	19,934 (19,934)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해당하는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1	29	50 (50)	주간선 도로	7,300 (537)	가락동잠실대교 남단(송파동7)	장지동596-1 (송파동97-39)	일반 도로	-	건고198호 (71.4.7)	송파 대로
기정	대로	1	33	35	보조 간선	3,900 (370)	잠실동대1-21 (석촌동286-9)	송파동 23 (송파동84)	일반 도로	-	건고64호 (78.3.29)	백제 고분로
기정	소로	1	6	10	국지 도로	413 (372)	석촌동174-3	석촌동183	일반 도로	-	서고 제2015-150호 (12.6.7)	-
기정	소로	1	7	10	국지 도로	381 (81)	석촌동286-9	석촌동295-11	일반 도로	-	서고 제2015-150호 (12.6.7)	-
기정	소로	1	9	10	국지 도로	299 (97)	송파동113-1	송파동108-9	일반 도로	-	서고 제2015-150호 (12.6.7)	-
기정	소로	1	10	10	국지 도로	454 (420)	송파동19-9	송파동32-1	일반 도로	-	서고 제2015-150호 (12.6.7)	-
기정	소로	3	3	6 (3)	국지 도로	91 (91)	석촌동183-3	석촌동183-8	일반 도로	-	서고 제2015-150호 (12.6.7)	-
기정	소로	3	4	6 (3)	국지 도로	182 (182)	석촌동181-4	석촌동183-3	일반 도로	-	서고 제2015-150호 (12.6.7)	-
기정	소로	3	5	6 (3)	국지 도로	136 (136)	석촌동184-7	석촌동179	일반 도로	-	서고 제2015-150호 (12.6.7)	-
기정	소로	3	6	6 (3)	국지 도로	103 (103)	석촌동179-4	석촌동184-7	일반 도로	-	서고 제2015-150호 (12.6.7)	-
기정	소로	3	7	6 (3)	국지 도로	104 (104)	석촌동177-2	석촌동 177	일반 도로	-	서고 제2015-150호 (12.6.7)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8	6 (3)	국지 도로	140 (140)	석촌동176	석촌동174-15	일반 도로	-	서고 제2015-150호 (12.6.7)	-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142 (142)	석촌동174-10	석촌동175	일반 도로	-	서고 제2015-150호 (12.6.7)	-
기정	소로	3	10	6	국지 도로	109 (109)	석촌동174	석촌동174-10	일반 도로	-	서고 제2015-150호 (12.6.7)	-
기정	소로	3	11	6	국지 도로	155 (155)	석촌동287-4	석촌동286	일반 도로	-	서고 제2015-150호 (12.6.7)	-
기정	소로	3	12	6	국지 도로	116 (116)	석촌동288-19	석촌동288-6	일반 도로	-	서고 제2015-150호 (12.6.7)	-
변경	소로	2	2	8	국지 도로	116 (116)	석촌동288-19	석촌동288-6	일반 도로	-	서고 제2015-150호 (12.6.7)	폭원 확장
기정	소로	3	33	6	국지 도로	165 (165)	송파동87-20	송파동87-18	일반 도로	-	서고 제2015-150호 (12.6.7)	-
기정	소로	3	34	6	국지 도로	162 (162)	송파동85-5	송파동85-11	일반 도로	-	서고 제2015-150호 (12.6.7)	-
기정	소로	3	35	6	국지 도로	186 (186)	송파동85	송파동85-5	일반 도로	-	서고 제2015-150호 (12.6.7)	-
기정	소로	3	36	6	국지 도로	166 (166)	송파동18-4	송파동18-17	일반 도로	-	서고 제2015-150호 (12.6.7)	-
기정	소로	3	37	6	국지 도로	146 (146)	송파동19-2	송파동17-10	일반 도로	-	서고 제2015-150호 (12.6.7)	-
기정	소로	3	38	6	국지 도로	143 (143)	송파동17-3	송파동19-1	일반 도로	-	서고 제2015-150호 (12.6.7)	-
기정	소로	3	39	6 (3)	국지 도로	174 (56)	송파동16-7	송파동16-1	일반 도로	-	서고 제2015-150호 (12.6.7)	-
기정	소로	3	40	6 (3)	국지 도로	136 (136)	송파동13-4	송파동15-6	일반 도로	-	서고 제2015-150호 (12.6.7)	-
기정	소로	3	41	6 (3)	국지 도로	167 (167)	송파동13-16	송파동13-18	일반 도로	-	서고 제2015-150호 (12.6.7)	-
기정	소로	3	42	6 (3)	국지 도로	203 (203)	송파동11-2	송파동10	일반 도로	-	서고 제2015-150호 (12.6.7)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43	6 (3)	국지 도로	121 (121)	송파동15	송파동10-1	일반 도로	-	서고 제2015-150호 (12.6.7)	-
기정	소로	3	44	6 (3)	국지 도로	118 (118)	송파동8-3	송파동7-8	일반 도로	-	서고 제2015-150호 (12.6.7)	-
기정	소로	3	45	6 (3)	국지 도로	148 (148)	송파동7-8	송파동7-12	일반 도로	-	서고 제2015-150호 (12.6.7)	-
기정	소로	3	46	6	국지 도로	91 (91)	석촌동182-3	석촌동182-5	일반 도로	-	서고 제2020-58호 (20.2.13)	-
기정	소로	3	47	6	국지 도로	119 (119)	송파동10-7	송파동10	일반 도로	-	서고 제2020-58호 (20.2.13)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해당하는 사항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12	소로 2-2	• 폭원 확장 - 6m → 8m	•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원활한 진출입 공간 확보

■ 철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폭(m)	연장(m)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고속철도	고속철도 (8호선본선)	송파구 방이동 35	-	6,500	-	건고399호 (91.7.15)	-
기정	②	고속철도	8호선 석촌 정차장	송파구 송파동 19	-	-	6,978	서고94-104호 (94.3.30)	-
기정	③	철도	도시철도 (9호선본선)	송파구 석촌동 318	11~42	13,753	190,471.88	서고2008-415호 (08.11.20)	-
기정	④	철도	도시철도 (933정거장)	송파구 석촌동 209	-	-	9,536.4	서고2008-415호 (08.11.20)	-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구분		기정	비고
간선부	준주거지역	3,00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0㎡ 이하	-
이면부		1,000㎡ 이하	-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제외

나.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

■ 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가구번호	면적(㎡)	비고
기정	3-8	4,259.8	-

※ 3-8 가구 등 모든 가구 변경사항 없음(기재생략)

■ 획지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획지면적(㎡)	필지		비고	구역
				위치	면적(㎡)		
-	3-8	1	4,259.8	석촌동 287	415.8		석촌동 287 일원 특별계획구역
				석촌동 287-1	193.4		
				석촌동 287-2	278.1		
				석촌동 287-3	228.9		
				석촌동 287-4	367.7		
				석촌동 287-5	350.9		
				석촌동 287-6	222.9		
				석촌동 287-7	182.6		
				석촌동 287-8	174.2		
				석촌동 287-9	465.1		
				석촌동 287-11	348.5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획지면적(㎡)	필지		비고	구역
				위치	면적(㎡)		
				석촌동 287-13	182.5		
				석촌동 287-14	182.5		
				석촌동 287-15	194.7		
				석촌동 287-16	193.8		
				석촌동 287-18	278.2		

※ 특별계획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획지 신설

■ 공동개발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3-8	석촌동 287-15, -16	388.5	공동개발 (권장)	-	폐지

※ 3-8가구 외 2-5, 2-21, 3-5 ~ 3-13, 3-23 가구 내 공동개발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은 변경 없음(기재생략)

■ 공동개발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비고
변경 (폐지)	• 공동개발(권장) 폐지 - 3-8가구 내 석촌동 287-15, -16	• 3-8가구(석촌동 287 일원) 특별계획구역 및 획지계획 신설에 따른 공동개발(권장) 계획 폐지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결정 : 변경 없음

가. 건축물의 용도 :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건축선 · 배치 · 형태 : 변경없음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제어기준		비고
		기정	변경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 주간선도로변 및 주요보행결절점 등 주요지점에 지정된 위치를 준수하여 조성 - 위치 미지정	• 주간선도로변 및 주요보행결절점 등 주요지점에 지정된 위치를 준수하여 조성 - 위치 미지정	결정도 참조 (변경없음)

구분		제어기준		비고
		기정	변경	
	전면공지	•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 보도부속형과 차도부속형으로 구분되며, 지침에 의해 설치 • 위치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지침에 의해 보도형으로 설치	•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 보도부속형과 차도부속형으로 구분되며, 지침에 의해 설치 • 위치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지침에 의해 보도형으로 설치	결정도 참조 (변경없음)
통로	공공보행통로	• 접하는 보도 및 연결되는 구간은 단차가 없도록 설치하며, 부득이하게 단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 - 간선부 : 7개소	• 접하는 보도 및 연결되는 구간은 단차가 없도록 설치하며, 부득이하게 단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 - 간선부 : 7개소 - 이면부 : 1개소 (특별계획구역 내)	결정도 참조
통로	공중연결통로	• 2개 이상 개별건축된 건축물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지상으로부터 6m 이상 이격하여 설치 - 송파대로변 : 1개소	• 2개 이상 개별건축된 건축물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지상으로부터 6m 이상 이격하여 설치 - 송파대로변 : 1개소	결정도 참조 (변경없음)
	보차혼용통로	• 접하는 도로 및 연결되는 구간은 단차가 없도록 설치 - 간선부 : 7개소	• 접하는 도로 및 연결되는 구간은 단차가 없도록 설치 - 간선부 : 7개소	결정도 참조 (변경없음)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다.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석촌동 287 일원 특별계획구역	석촌동 287번지 일원	-	증)4,259.8	4,259.8	특별계획구역
기정	-	특별계획가능구역	송파동 85-5번지 일대	5,840	-	5,840	특별계획가능구역

■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결정내용	변경사유서	비고
-	석촌동 287 일원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신설 (4,259.8㎡)	• 석촌역세권 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적용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특별계획구역 신규 결정	-

-이 하 여 백-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신설)

구분		계획내용	비고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구역면적		• 4,259.8㎡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기준	• 400% 이하	-
	상한	• 660% 이하 ※ 완화된 용적률의 1/2 이상을 장기전세주택 및 공공시설로 공급	-
최고높이		• 100m 이하	-
기반시설		• 완화(상한용적률-기준용적률)된 용적률의 1/2 이상을 장기전세주택 (전용 85㎡ 이하) 및 공공시설로 공급 •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제공 - 소로2-2호선 확폭(6m→8m), 송파 키움센터 등 지역필요시설 ※ 단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 확폭은 공공기여량에서 제외	-
건축물 배치	건축 한계선	• 전방향 3m	-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소로1-7, 2-2, 3-11호선변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3m 폭)	-
	공개공지	• 커뮤니티가로인 소로1-7호선변으로 공개공지 확보(1개소) • 공공보행통로 변 실내형 공개공지 확보(1개소)	-
	쌈지형공지	• 공개공지가 없는 주요 가각부 쌈지형공지 확보(1개소)	-
공공보행통로		• 지하철 출구와 연계된 백제고분로 공공보행통로(4m)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신설(폭 10m 이상, 높이 10m 이상) ※ 단, 지상 2층 내부 통행을 위한 통로구간에 한해 10m 미만 가능	-
건축물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상복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 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

구분		계획내용	비고
	비주거시설 설치비율	• 지상층 연면적의 5% 이상을 비주거시설(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로 지상층에 건축	-
교통처리계획		• 차량진출입구는 교차로와 충분히 이격되도록 하고 8m 이상 확보	-
기타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준용	-

5. 인센티브 운용 계획 : 변경없음

가.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 변경없음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권한 : 구청장) : 변경없음

계획내용	비고
•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
• 공개공지, 쌈지형 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 (신설, 폐지 포함)	-
•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
•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 변경	-
•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
• 구역 내 공동개발의 변경 (신설, 폐지 포함)	-
• 대지내·외 통로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공중연결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
• 지정된 차량 출입구 위치 변경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변경 (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 범위 이내)	-

Ⅲ. 석촌동 287 일원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석촌동 287 일원 특별계획구역	석촌동 287번지 일원	-	증)4,259.8	4,259.8	16개 필지

■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결정내용	변경사유서	비고
-	석촌동 287 일원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신설 (4,259.8㎡)	• 석촌역세권 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적용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신규 결정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준주거지역	4,259.8	-	4,259.8	100.0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 해당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변경)

가.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2	6	국지 도로	116 (116)	석촌동288-19	석촌동288-6	일반 도로	-	서고 제2015-150호 (12.6.7)	-
변경	소로	2	2	8	국지 도로	116 (116)	석촌동288-19	석촌동288-6	일반 도로	-	서고 제2015-150호 (12.6.7)	폭원 확장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해당하는 사항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12	소로 2-2	• 폭원 확장 - 6m → 8m	•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원활한 진출입 공간 확보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획지면적(㎡)	필지		비고	구역
				위치	면적(㎡)		
-	3-8	1	4,259.8	석촌동 287	415.8		석촌동 287 일원 특별계획구역
				석촌동 287-1	193.4		
				석촌동 287-2	278.1		
				석촌동 287-3	228.9		
				석촌동 287-4	367.7		
				석촌동 287-5	350.9		
				석촌동 287-6	222.9		
				석촌동 287-7	182.6		
				석촌동 287-8	174.2		
				석촌동 287-9	465.1		
				석촌동 287-11	348.5		
				석촌동 287-13	182.5		
				석촌동 287-14	182.5		
				석촌동 287-15	194.7		
				석촌동 287-16	193.8		
				석촌동 287-18	278.2		

※ 특별계획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획지 신설

나. 공동개발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3-8	석촌동 287-15, -16	388.5	공동개발 (권장)	-	폐지

■ 공동개발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비고
변경 (폐지)	• 공동개발(권장) 폐지 - 3-8가구 내 석촌동 287-15, -16	• 3-8가구(석촌동 287 일원) 특별계획구역 및 획지계획 신설에 따른 공동개발(권장) 계획 폐지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계획 결정조서

■ 허용용도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A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상복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좌동	-

■ 불허용도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a	• 허용용도 외 용도	• 좌동	-

나.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결정조서

■ 건폐율·용적률·높이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폐율		60% 이하	• 좌동	건축계획 : 58.39%
용적률	기준	400% 이하	• 좌동	건축계획 : 659.93%
	상한	660% 이하	• 좌동	
높이		100m 이하	• 좌동	건축계획 : 100m(33층)

※ 용적률 체계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2023.06.30.)」 적용

■ 상한용적률 산정

<table>
<tr><td colspan="3">구분</td><td colspan="6">이행조건</td></tr>
<tr><td colspan="3" rowspan="2">토지이용계획</td><td>구역면적(㎡)</td><td>획지면적(㎡)</td><td>기반시설(도로)
면적(㎡)</td><td colspan="2">공공시설(지역필요시설)</td></tr>
<tr><td>환산부지면적(㎡)</td><td>대지지분(㎡)</td></tr>
<tr><td colspan="3"></td><td>4,259.8</td><td>4,041.1</td><td>218.7</td><td>23.01</td><td>30.35</td></tr>
<tr><td colspan="3">용도지역</td><td colspan="5">• 준주거지역(변경없음)</td></tr>
<tr><td colspan="3">기준용적률</td><td colspan="5">• 400%</td></tr>
<tr><td colspan="3">상한용적률</td><td colspan="5">• 659.93% (660% 이하)</td></tr>
<tr><td colspan="3">공공기여율</td><td colspan="5">• 129.965% (완화용적률의 ½)</td></tr>
<tr><td colspan="3" rowspan="3">공공기여
용적률산정</td><td colspan="3">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8.714% 이하)</td><td colspan="2" rowspan="2">장기전세주택 공급
(121.251% 이상)</td></tr>
<tr><td colspan="2">토지</td><td>건축물</td></tr>
<tr><td colspan="2">• 도로 : 218.7㎡
※ 기반시설로 기부채납하되,
공공기여 비율에 포함하지 않음</td><td>• 다함께돌봄센터 : 53.36㎡
(연면적 200.26㎡)
- 환산부지면적 : 23.01㎡
- 대지지분 : 30.35㎡</td><td colspan="2">• 장기전세주택 : 4,927.68㎡
(4,899.88㎡ 이상)</td></tr>
<tr><td colspan="3">구분</td><td colspan="5">기준</td></tr>
<tr><td rowspan="7">서울형
주거환경정책</td><td rowspan="6">필수항목</td><td>지속가능형
공동주택</td><td colspan="5">• 리모델링이 쉬운구조(혼합구조) : 일부기둥 및 벽식구조에 내부 건식벽체</td></tr>
<tr><td rowspan="4">친환경건축물</td><td colspan="2">환경성능</td><td colspan="3" rowspan="4">• 녹색건축인증 우량(그린3등급)이상,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이상 인증 예정</td></tr>
<tr><td colspan="2">에너지성능</td></tr>
<tr><td colspan="2">에너지관리</td></tr>
<tr><td colspan="2">신재생에너지</td></tr>
<tr><td>역사문화</td><td colspan="5">• 해당없음.
단, 지하부에 대한 매장문화재 전문기관의 「표본조사」 이행 후 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절차를 이행</td></tr>
<tr><td>권장항목</td><td>커뮤니티
지원시설</td><td colspan="5">• 커뮤니티시설 없이 일부 도로 기부채납 및 공공시설 외 전체 완화용적률을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td></tr>
</table>

다. 건축물의 건축선 · 배치 · 형태 결정조서

■ 건축선 · 배치 · 형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한계선	전방향 3m	좌동	-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가. 대지 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소로1-7, 2-2, 3-11호선변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3m 폭)	• 좌동	-
통로	공공보행 통로	• 지하철 출구와 연계된 백제고분로 공공보행통로(4m)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신설 (폭 10m 이상, 높이 10m 이상) ※ 단, 지상 2층 내부 통행을 위한 통로구간에 한해 10m 미만 가능	• 좌동	건축계획 (폭 : 10.3m, 높이 : 10.3m, 2층 통로구간 : 6m) 공공보행통로는 상시 개방하고, 지역권을 설정

나. 비주거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비주거시설 설치비율	• 지상층 연면적의 5% 이상을 비주거시설 (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로 지상층에 건축	• 좌동 (지상 연면적 26,668.48㎡의 5% 이상인 2,535.71㎡, 9.51%를 비주거시설로 설치)	-

※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 및 위치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2023.06.30.)」 적용

다.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공공기여량	• 완화(상한용적률-기준용적률)된 용적률의 1/2 이상을 장기전세주택 (전용 85㎡ 이하) 및 공공시설로 공급 •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제공 - 소로2-2호선 확폭(6m→8m), 송파 키움센터 등 지역필요시설	• 완화된 용적률 259.93%의 1/2인 129.965%를 기반시설(공공시설 : 연면적 200.26㎡) 및 장기전세주택 (연면적 4,927.68㎡)으로 확보	-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장기전세주택 공급 규모	• 전용 85㎡ 이하로 공급	• 전용 85㎡ 이하로 공급 (43~45㎡ : 54세대, 52~61㎡ : 14세대)	-

※ 도로 확폭은 기반시설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되, 공공기여량에 포함되지 않음

라.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계획

구분	운영기준	계 획
장기전세주택 건립비율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구분	세대수(세대)	공급면적(㎡)	비율(%)
43~45㎡형	54세대	69.29	79.4
		68.03	
		68.63	
		71.92	
52~61㎡형	14세대	83.00	20.6
		86.89	
		87.09	
		91.95	
		97.23	
합 계	68세대	4,927.68	100.0

※ 장기전세주택 용적률

• 공급면적 ÷ 대지면적 = 4,927.68㎡ ÷ 4,041.10㎡ = 121.94%

※ 상기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세부계획(세대수 및 공급면적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 하 여 백-

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종합)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좌동
구역면적		• 4,259.8㎡	• 좌동
건폐율		• 60% 이하	• 좌동 (건축계획 : 58.39% 이하)
용적률	기준	• 400% 이하	• 좌동
	상한	• 660% 이하	• 좌동 (건축계획 : 659.93%)
높이제한		• 100m 이하	• 좌동 (건축계획 : 100m, 33층)
공공시설 제공비율		• 완화(상한용적률-기준용적률)된 용적률의 1/2 이상을 장기전세주택(전용 85㎡ 이하) 및 공공시설로 공급 •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제공 - 소로2-2호선 확폭(6m→8m), 송파 키움센터 등 지역필요시설 ※ 단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 확폭은 공공기여량에서 제외	• 좌동 (완화된 용적률 259.93%의 1/2인 129.965% 이상을 기반시설(공공시설 : 연면적 200.26㎡) 및 장기전세주택 (연면적 4,927.68㎡)으로 확보
건축물 배치	건축 한계선	• 전방향 3m	• 좌동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소로1-7, 2-2, 3-11호선변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3m폭)	• 좌동
	공개공지	• 커뮤니티가로인 소로1-7변으로 공개공지 확보(1개소) • 공공보행통로 변 실내형 공개공지 확보(1개소)	• 좌동
	쌈지형공지	• 주요 가각부 쌈지형공지 확보(1개소)	• 좌동
공공보행통로		• 지하철 출구와 연계된 백제고분로 공공보행 통로(4m)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신설(폭 10m 이상, 높이 10m 이상) ※ 단, 지상 2층 내부 통행을 위한 통로구간에 한해 10m 이하 가능	• 좌동 (건축계획 : 폭 10.3m, 높이 10.3m, 2층 통로구간 6m) (공공보행통로는 상시 개방하고, 지역권을 설정)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 공동주택(주상복합) •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 판매시설(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 좌동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용도	• 좌동
	비주거시설 설치비율	• 지상층 연면적의 5% 이상을 비주거시설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로 지상층에 건축	• 좌동 (지상 연면적 26,668.48㎡의 5% 이상인 2,535.71㎡, 9.51%를 비주거시설로 설치)
교통처리계획		• 차량진출입구는 교차로와 충분히 이격되도록 하고 8m 이상 확보	• 좌동
기타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준용	• 좌동

Ⅳ.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Ⅴ. 관계서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59) 및 송파구 도시계획과 (02-2147 - 3002)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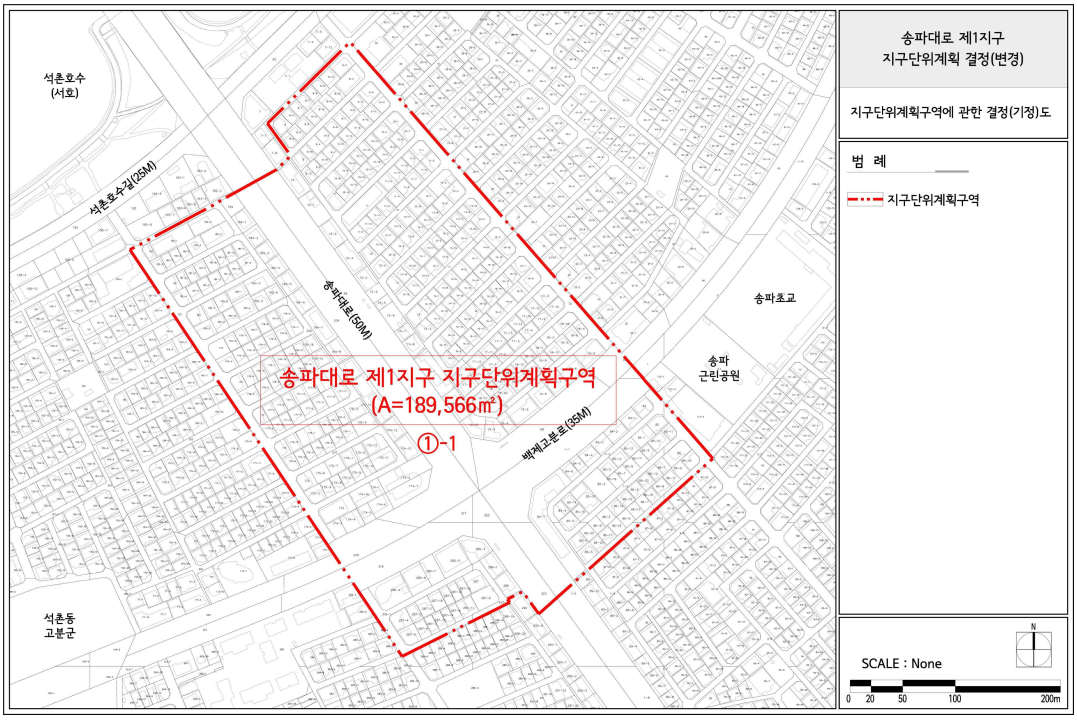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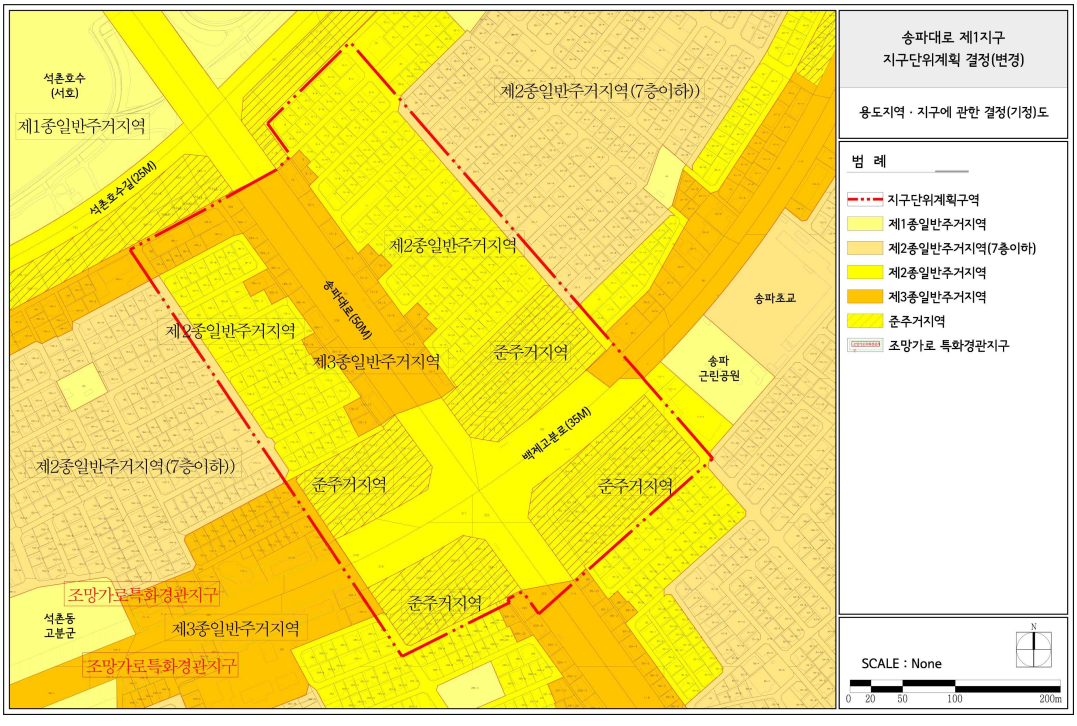
Ⅵ.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등에 관한 사항(석촌동 287 일원 특별계획구역에 한함)

- 금회 결정(변경)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 인가 ·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특별계획구역 지정 이전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됨을 고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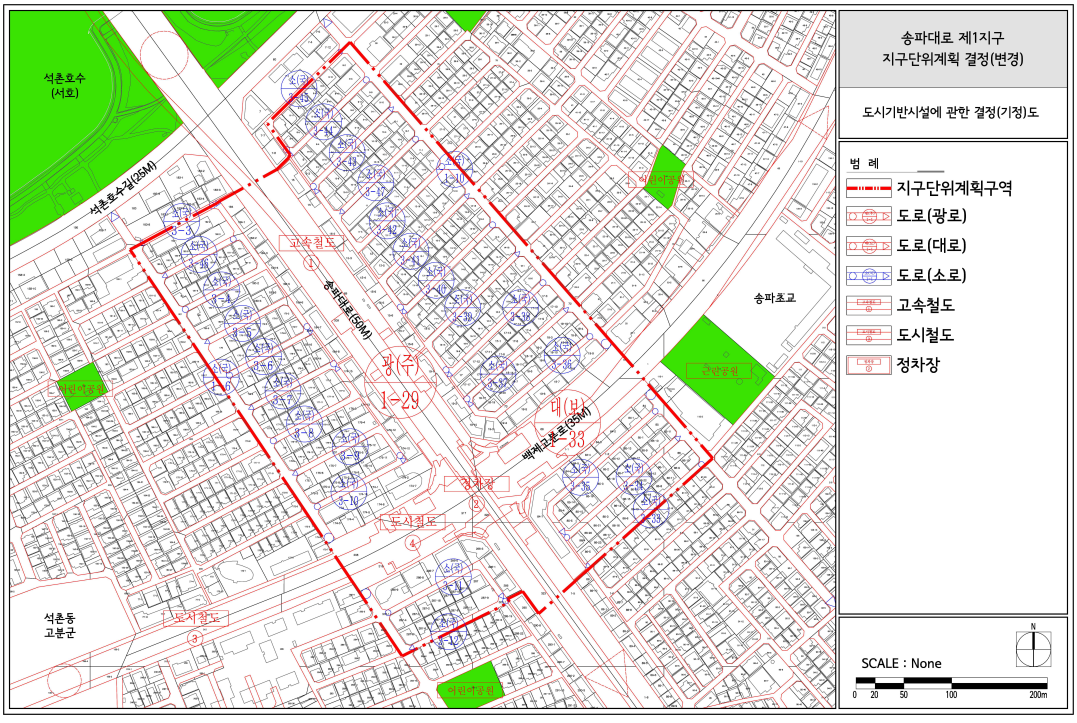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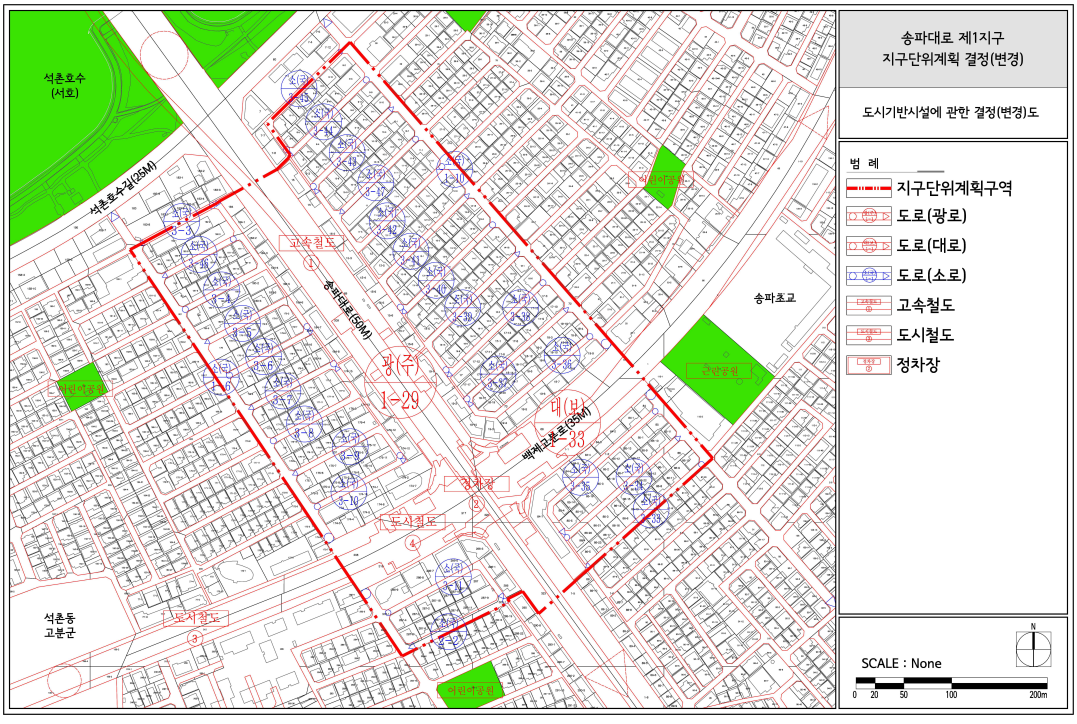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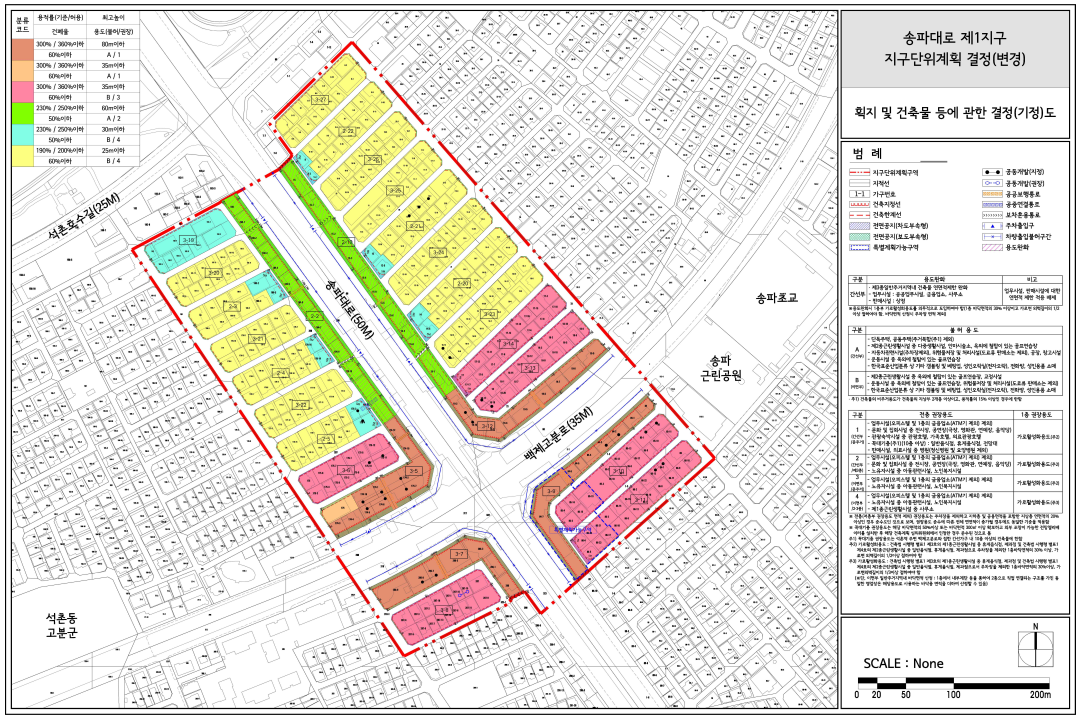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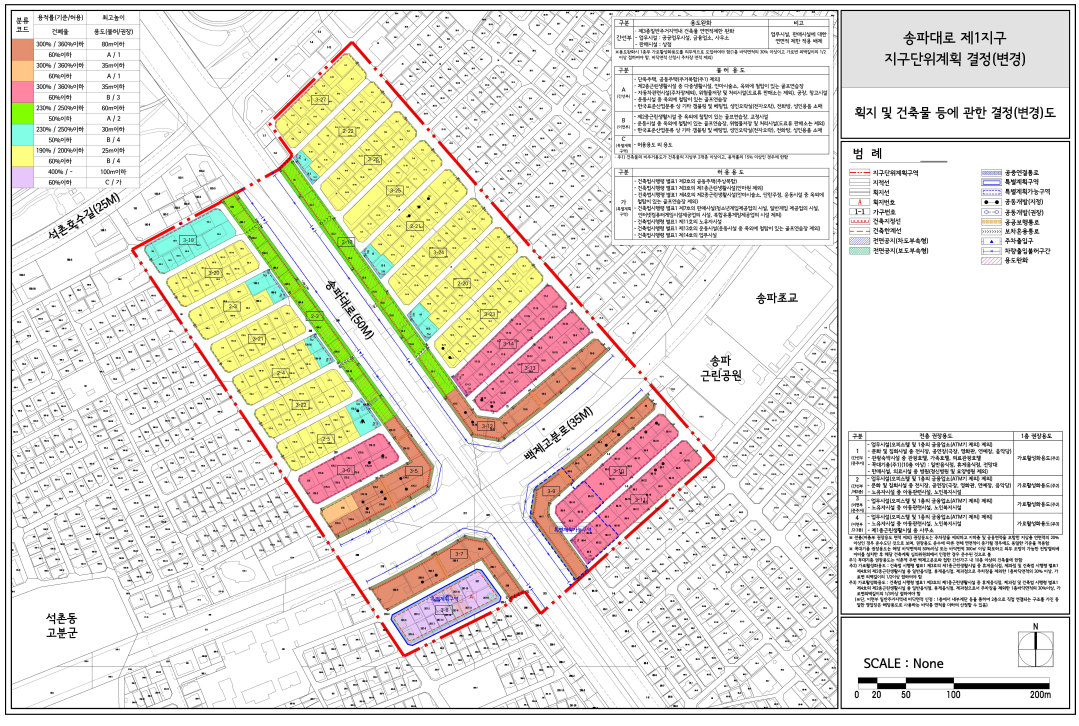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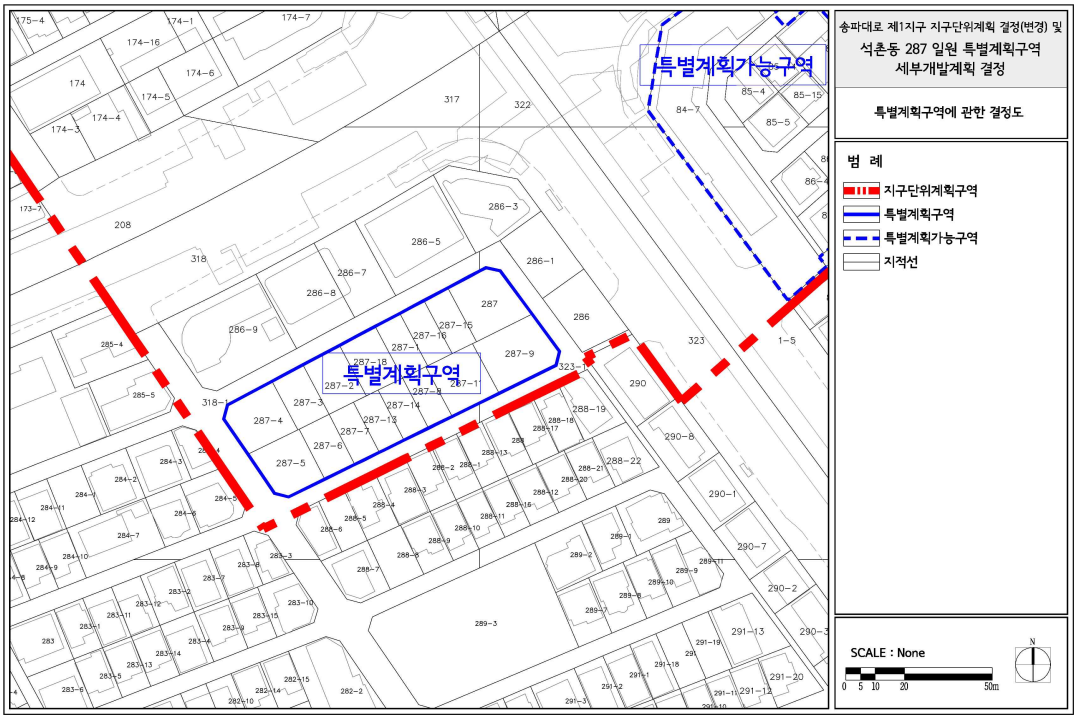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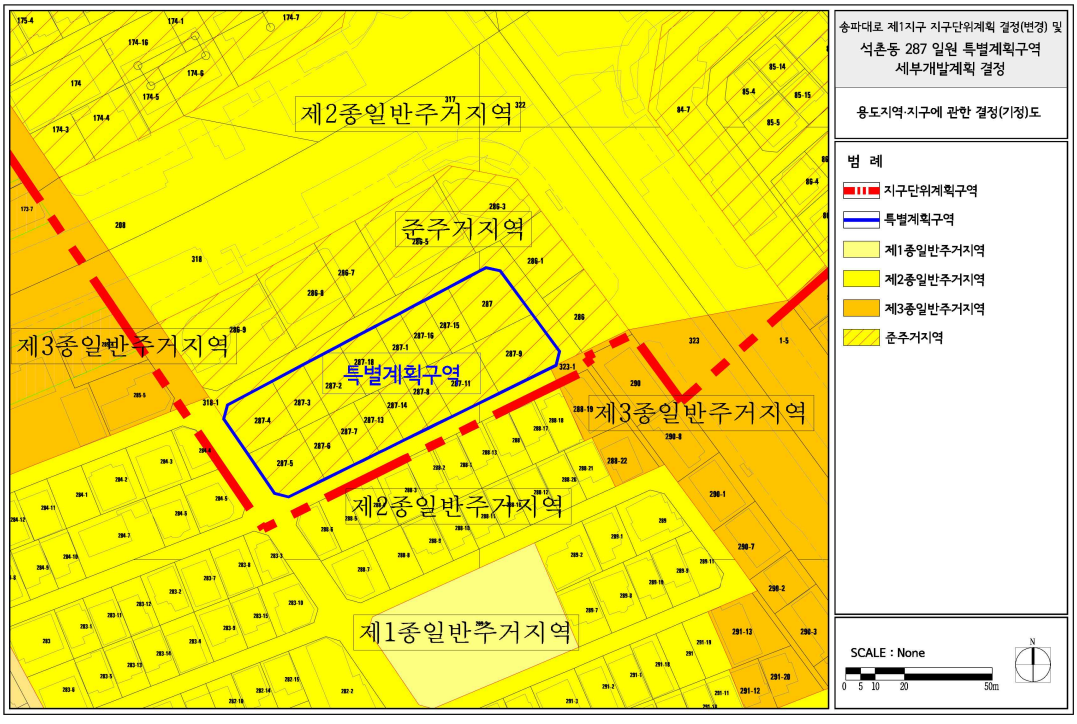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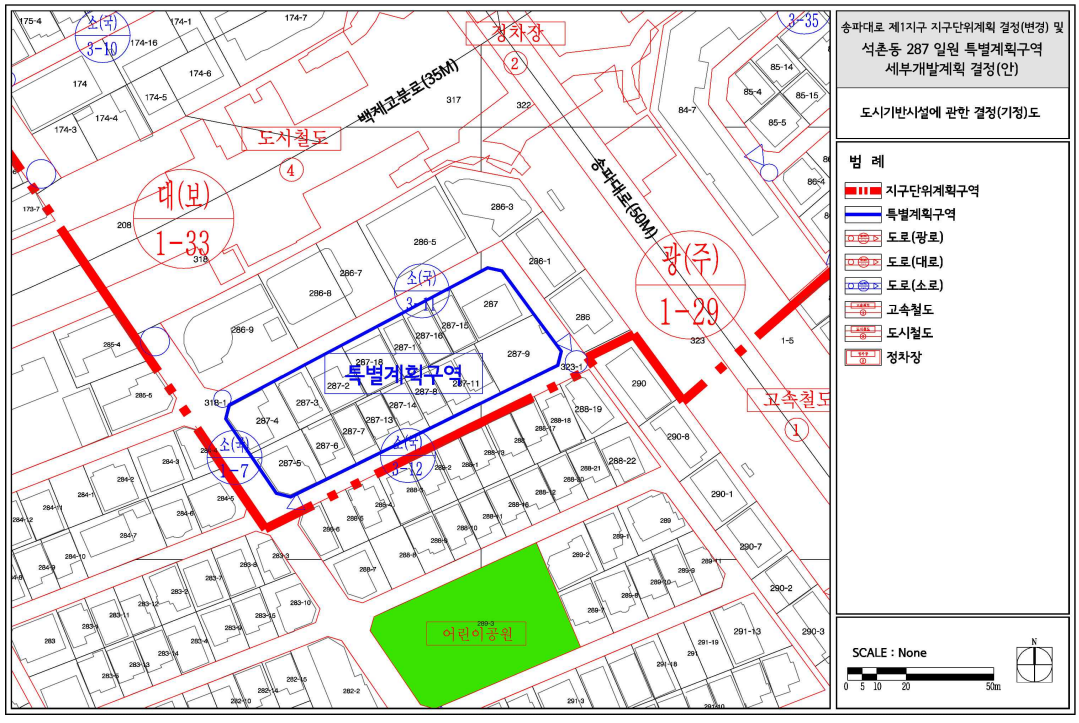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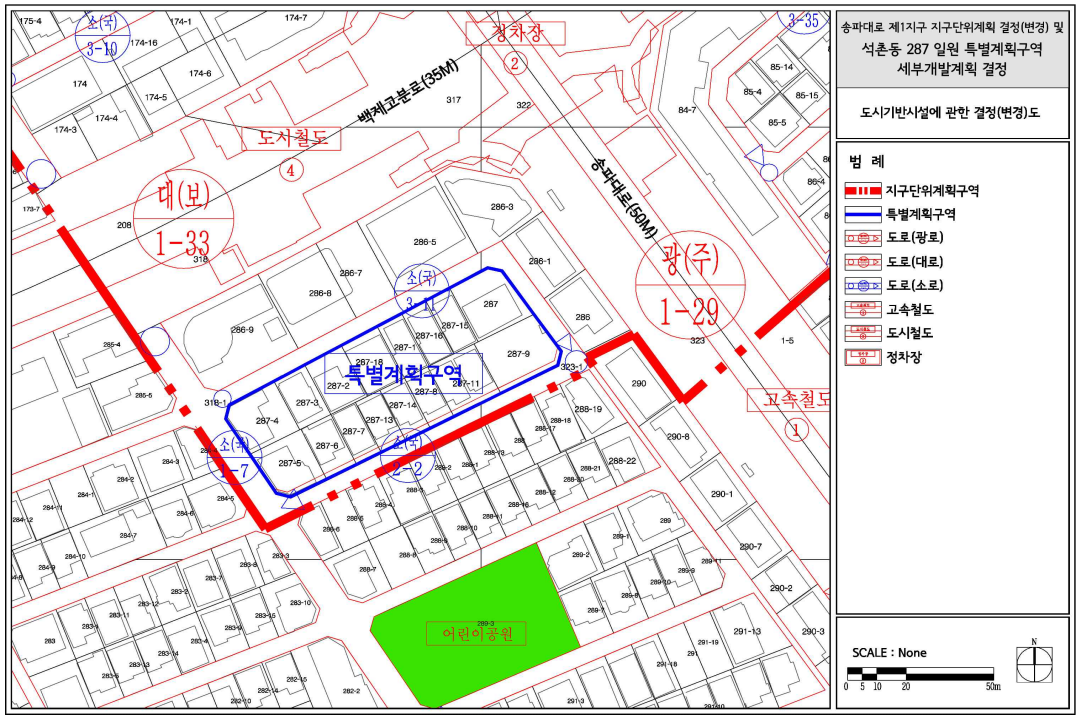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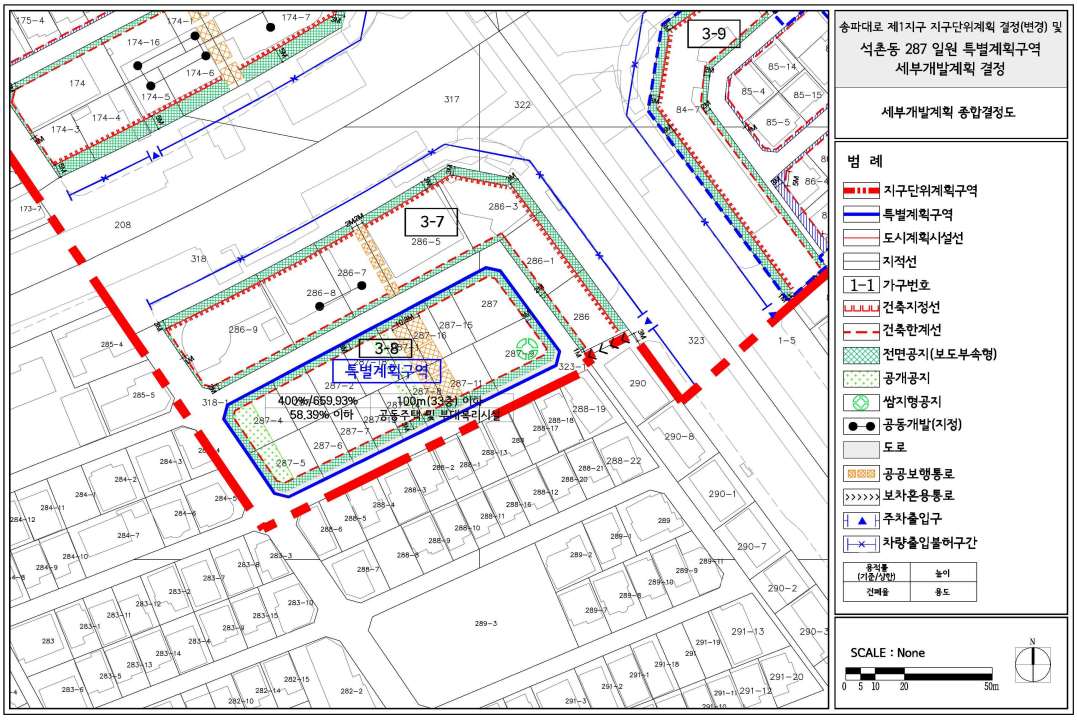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특별계획구역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1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62호(2021.10.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075(2023. 3. 9.)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금천구 독산동 292-6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 처리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금천구 독산동 292-6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변경)

구 분	명 칭	대표자	주 소
기 정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이창재, 김영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변 경		이종근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5년 12월 31일

5. 사업개요(변경)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92-6번지 외 11필지
나. 대지면적 : 2,942.2㎡
다. 건 폐 율 : 58.67%
라. 용 적 율 : 999.34%
마. 높 이 : (기정) 106.00m, (변경) 105.74m
바. 용 도 : 공동주택(공공임대 151세대/민간임대 438세대), 근린생활시설
사. 규 모 : 1개동, 지하6층/지상32층, 연면적 42,373.3791㎡
아.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6. 기타사항

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 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 · 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 결정 전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522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자택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2. 29.~2024. 3. 14.(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옳소종합건설 (대표 이현지)	건축공사업 01-4726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36길 40 , 지층(구의동)	하도급대금 미지급	법 제34조제1항	시정명령 {2024년 3월 31일까지 미래굴절스카이(대표 유달종) 하도급대금 1,980,000원 을 지급할 것}	법 제81조 제4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5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544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2. 29. ~ 2024. 3. 13.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과 목	납 기	횟수	금 액(원)
023324447	영등포구 도림로87길 12	상하수도요금	22.12~23.12	7	1,496,610

나. 압류 내역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원)	압류일
		성 명	주 소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55-203	임성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50길 9, 201호 (신길동,빌라드제이앤에스 01)	1,496,610	'24.2.2.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부 수도사업소 요금과 강연주(☎02-3146-45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564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 선발 공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모범납세자

가. 선발기준 : 최근 10년간 서울시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로 연간 2건 이상의 서울시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

- 대상기간 : 2016.1.1.부터 2023.12.31.까지(8년)
- 적용세목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사업소분)

나. 선발결과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자 중 사망자, 국가 및 공공기관, 세외수입 체납자를 제외하고 308,122명 선발

< 모범납세자 선발 현황 >

구분	계	개인납세자	법인납세자
납세자 수	308,122	294,430	13,692

※ 법인납세자 : 단체납세자 등 포함

2. 유공납세자

가. 선발기준 :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나. 선발결과 :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47명 선발 (시장표창 기준 제한대상자 제외)

< 유공납세자 선발 현황 >

구분	계	개인납세자	법인납세자
납세자수	147	98	49

※ 법인 : 단체납세자 등 포함

3. 지원혜택

대 상	구 분	기간	비고
유공·모범 납세자	대출금리 인하(신한은행 최대 0.5%)	1년	세부내용 신한·우리은행 개별문의
	각종 수수료 면제(신한26종, 우리은행 21종)	1년	
	환율적용 우대(30~90%)	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시 신용평가등급 1등급 상향	1년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의료비 할인(10~20%)	1년	
유공 납세자	세무조사 면제	3년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1회)	2년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1년	

4. 유지기간 : 2024. 2. 29. 부터 2025. 2. 28. 까지

5. 선발결과 확인 :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STAX : 서울시 세금납부)

6. 기타사항

가. 시금고(신한은행)에 대출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대출 신청 시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구청(세무부서), 주민센터에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출력해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세무과(☏02-2133-33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565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 예고서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미송달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2. 29. ~ 2024. 3. 14.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예정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37661027	마포구 망원동 435-27 402호	수도 요금	2024. 1 등 10납기	11회	349,680원	

압류구분	압류예정물건	물건소유자			압류 예정금액	압류 예정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35-27 402호	함명재	650130-1****** (등기번호 1. 1105002439264 폐문부재 2. 1105002439372 폐문부재)	서울시 마포구 방울내로 71, 402호	349,680원	2024. 3.15. 부터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이다영(☎02-3146-35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574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2. 29. ~ 2024. 3. 13.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과 목	납 기	횟수	금 액(원)
023262829	영등포구 신길로60다길 12 (지하) B01 (신길동, 신광빌라)	상·하수도요금	21.11~23.11	12	446,110

나. 압류 내역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원)	압류일
		성 명	주 소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86-126 제지하층 제101호	정민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60다길 12 (지하) B01 (신길동, 신광빌라)	446,110	'24.2.2.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부 수도사업소 요금과 이승렬(☎02-3146-44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576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2. 29. ~ 2024. 3. 13.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과 목	납 기	횟수	금 액(원)
023423471	영등포구 도림로31길 8-3(대림동, 3층)	상하수도요금	21.08~23.08	8	2,118,650

나. 압류 내역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원)	압류일
		성 명	주 소		
부동산 (건물)	영등포구 도림로31길 8-3	이민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 32(은행동)	2,118,650	'24.1.15.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부 수도사업소 요금과 전지호(☎02-3146-451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577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신영기	충청북도 제천시 칠성로 19 103동 14**호(청전동)	위반일시: 2023-12-13 07:38 위반장소: 서대문구 남가좌동 286-1 모래내시장 위반내용: 차량의 축하중 초과(실측값:11.2t, 초과값:1.2t 006다973*)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1-29 납기일: 2024-03-31
신정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38 115동 4**호(간석동)	위반일시: 2024-01-04 09:29 위반장소: 마포구 상암동 481-6 위반내용: 차량의 축하중 초과(실측값:11.7t, 초과값:1.7t 인천06바313*)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4-01-29 납기일: 2024-03-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전승환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3로 49 1303동 6**호	위반일시: 2023-10-07 06:39 위반장소: 서대문구 홍은동 217-5 홍제교 위반내용: 차량의 총 중량 초과(실측값:36.5t, 초과값:4.5t 서울06하618*)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3-11-27 납기일: 2023-01-31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이홍주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122번길 10 4**호	위반일시: 2023-11-02 05:42 위반장소: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3 충정교 위반내용: 차량의 총 중량 초과(실측값:38.25t, 초과값:6.25t 서울06너573*)	과태료: 80만원 부과 처분일: 2023-11-27 납기일: 2023-01-31
강형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평하원로 163-*	위반일시: 2023-10-14 11:39 위반장소: 마포구 상암동 1762 위반내용: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2.75m, 초과값:0.25m 서울07나696*)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23-11-27 납기일: 2023-01-31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578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사전통지서 송달 불능분을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 2024. 2. 29. ~ 2024. 3. 14.(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되었기에 「철도안전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안내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5. 의견제출 안내
 -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yka1303@seoul.go.kr
 팩스: 02-2133-1076
 우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방문: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 의견제출기한 : 2024. 3. 14. ~ 2024. 3. 28. (15일간)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철도안전법위반 과태료 2023년 8,9,10월 위반자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건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1	1078832899607	기타	2024-02-15 10:21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열차	2023-10-17 11:23
2	1078832899608	기타	2024-02-15 10:21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열차	2023-10-19 13:47
3	1078832899515	기타	2024-02-14 18:00	4811**-*******	김*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662	열차	2023-09-02 10:57
4	1078832899516	기타	2024-02-14 18:00	4811**-*******	김*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662	열차	2023-09-12 10:26
5	1078832899517	기타	2024-02-14 18:00	4811**-*******	김*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662	열차	2023-09-15 13:08
6	1078832899606	기타	2024-02-14 18:00	4811**-*******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열차	2023-10-08 12:30
7	1078832899496	기타	2024-02-15 14:00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 16길	열차	2023-09-30 09:02
8	1078832899497	기타	2024-02-15 14:00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 16길	열차	2023-09-30 16:00
9	1078832899592	기타	2024-02-15 14:00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 16길	열차	2023-10-30 15:13
10	1078832899506	기타	2024-02-15 09: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열차	2023-09-04 11:21
11	1078832899507	기타	2024-02-15 09: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열차	2023-09-04 13:34
12	1078832899502	기타	2024-02-15 09: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열차	2023-09-05 12:17
13	1078832899498	기타	2024-02-15 09: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열차	2023-09-07 10:38
14	1078832899503	기타	2024-02-15 09: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열차	2023-09-08 12:11
15	1078832899499	기타	2024-02-15 09: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열차	2023-09-08 13:37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16	1078832899508	기타	2024-02-15 09: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열차	2023-09-09 11:15
17	1078832899509	기타	2024-02-15 09: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열차	2023-09-14 13:07
18	1078832899510	기타	2024-02-15 09: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열차	2023-09-19 10:56
19	1078832899511	기타	2024-02-15 09: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열차	2023-09-21 10:25
20	1078832899512	기타	2024-02-15 09: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열차	2023-09-21 10:52
21	1078832899513	기타	2024-02-15 09: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열차	2023-09-23 12:22
22	1078832899500	기타	2024-02-15 09: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열차	2023-09-25 10:53
23	1078832899514	기타	2024-02-15 09: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열차	2023-09-25 14:03
24	1078832899504	기타	2024-02-15 09: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열차	2023-09-26 12:06
25	1078832899505	기타	2024-02-15 09: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열차	2023-09-26 13:05
26	1078832899501	기타	2024-02-15 09: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열차	2023-09-27 14:04
27	1078832899600	기타	2024-02-15 09: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열차	2023-10-03 12:10
28	1078832899593	기타	2024-02-15 09: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열차	2023-10-03 13:59
29	1078832899594	기타	2024-02-15 09: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열차	2023-10-06 10:48
30	1078832899597	기타	2024-02-15 09: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열차	2023-10-06 11:50
31	1078832899601	기타	2024-02-15 09: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열차	2023-10-08 11:25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32	1078832899602	기타	2024-02-15 09: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열차	2023-10-09 11:34
33	1078832899603	기타	2024-02-15 09: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열차	2023-10-11 13:38
34	1078832899604	기타	2024-02-15 09: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열차	2023-10-18 10:52
35	1078832899605	기타	2024-02-15 09: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열차	2023-10-25 13:47
36	1078832899595	기타	2024-02-15 09: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열차	2023-10-26 11:25
37	1078832899596	기타	2024-02-15 09: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열차	2023-10-30 11:10
38	1078832899598	기타	2024-02-15 09: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열차	2023-10-30 12:21
39	1078832899599	기타	2024-02-15 09:1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열차	2023-10-31 11:05
40	1078832899369	이사불명	2024-02-08 12:12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열차	2023-09-05 10:37
41	1078832899370	이사불명	2024-02-08 12:12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열차	2023-09-08 11:24
42	1078832899371	이사불명	2024-02-08 12:12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열차	2023-09-12 13:51
43	1078832899492	이사불명	2024-02-08 12:12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열차	2023-09-21 09:57
44	1078832899493	이사불명	2024-02-08 12:12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열차	2023-09-22 10:58
45	1078832899482	이사불명	2024-02-08 12:12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열차	2023-10-23 15:36
46	1078832899519	기타	2024-02-14 17:55	5206**-*******	김*호	서울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12가길	열차	2023-09-05 13:30
47	1078832899518	기타	2024-02-14 17:55	5206**-*******	김*호	서울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12가길	열차	2023-09-23 10:04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48	1078832899609	기타	2024-02-14 17:55	5206**-*******	김*호	서울시 외대역동로 12가 길	열차	2023-10-05 12:32
49	1078832899537	기타	2024-02-14 18:00	5011**-*******	노*수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127	열차	2023-09-27 11:08
50	1078832899535	수취인불명	2024-02-07 09:27	6409**-*******	노*수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 13번길	열차	2023-09-30 08:33
51	1078832899536	수취인불명	2024-02-07 09:27	6409**-*******	노*수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 13번길	열차	2023-09-30 08:51
52	1078832899626	기타	2024-02-14 18:00	5011**-*******	노*수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127	열차	2023-10-03 10:08
53	1078832899627	기타	2024-02-14 18:00	5011**-*******	노*수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127	열차	2023-10-03 12:59
54	1078832899628	기타	2024-02-14 18:00	5011**-*******	노*수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127	열차	2023-10-03 13:15
55	1078832899629	기타	2024-02-14 18:00	5011**-*******	노*수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127	열차	2023-10-06 10:03
56	1078832899630	기타	2024-02-14 18:00	5011**-*******	노*수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127	열차	2023-10-07 13:34
57	1078832899631	기타	2024-02-14 18:00	5011**-*******	노*수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127	열차	2023-10-31 13:51
58	1078832899632	폐문부재	2024-02-08 10:03	7707**-*******	박*석	경기도 광명시 연서로 16번길	열차	2023-10-23 13:50
59	1078832899538	기타	2024-02-15 09:44	6102**-*******	박*선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51길	열차	2023-09-23 10:27
60	1078832899539	기타	2024-02-15 09:44	6102**-*******	박*선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51길	열차	2023-09-23 13:06
61	1078832899633	기타	2024-02-15 09:44	6102**-*******	박*선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51길	열차	2023-10-07 11:33
62	1078832899634	기타	2024-02-15 06:28	4706**-*******	배*대	인천시 부평구 부흥북로 35번길15	열차	2023-10-18 12:23
63	1078832899635	폐문부재	2024-02-15 10:31	5108**-*******	배*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 30-5	열차	2023-10-06 10:39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64	1078832899636	기타	2024-02-15 09:22	6105**-*******	배*오	서울시 종로구 종로377-3	열차	2023-10-13 10:42
65	1078832899546	기타	2024-02-15 08:48	5207**-*******	서*범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10 나길 71	열차	2023-09-05 10:43
66	1078832899545	기타	2024-02-15 08:48	5207**-*******	서*범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10 나길 71	열차	2023-09-08 10:45
67	1078832899543	이사불명	2024-02-07 11:04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열차	2023-09-21 13:25
68	1078832899544	이사불명	2024-02-07 11:04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열차	2023-09-22 11:20
69	1078832899541	이사불명	2024-02-07 11:04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열차	2023-09-23 10:58
70	1078832899542	이사불명	2024-02-07 11:04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열차	2023-09-23 12:01
71	1078832899540	이사불명	2024-02-07 11:04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열차	2023-09-25 10:33
72	1078832899637	이사불명	2024-02-07 11:04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열차	2023-10-04 10:31
73	1078832899645	이사불명	2024-02-07 11:04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열차	2023-10-04 13:15
74	1078832899646	이사불명	2024-02-07 11:04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열차	2023-10-04 14:12
75	1078832899647	이사불명	2024-02-07 11:04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열차	2023-10-07 10:55
76	1078832899648	이사불명	2024-02-07 11:04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열차	2023-10-12 13:41
77	1078832899649	이사불명	2024-02-07 11:04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열차	2023-10-13 10:38
78	1078832899650	이사불명	2024-02-07 11:04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열차	2023-10-13 13:30
79	1078832899651	이사불명	2024-02-07 11:04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열차	2023-10-15 10:44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80	1078832899652	이사불명	2024-02-07 11:04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열차	2023-10-18 10:44
81	1078832899639	이사불명	2024-02-07 11:04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열차	2023-10-19 10:30
82	1078832899640	이사불명	2024-02-07 11:04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열차	2023-10-19 13:35
83	1078832899642	이사불명	2024-02-07 11:04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열차	2023-10-20 10:49
84	1078832899653	이사불명	2024-02-07 11:04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열차	2023-10-21 10:56
85	1078832899641	이사불명	2024-02-07 11:04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열차	2023-10-24 10:27
86	1078832899643	이사불명	2024-02-07 11:04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열차	2023-10-24 11:17
87	1078832899644	이사불명	2024-02-07 11:04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열차	2023-10-24 12:33
88	1078832899638	이사불명	2024-02-07 11:04	4711**-*******	서*석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열차	2323-10-17 10:33
89	1078832899547	기타	2024-02-14 17:55	6104**-*******	신*몬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 37길	열차	2023-09-23 14:38
90	1078832899549	폐문부재	2024-02-14 09:25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열차	2023-09-06 12:02
91	1078832899548	폐문부재	2024-02-14 09:25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열차	2023-09-22 11:27
92	1078832899654	폐문부재	2024-02-14 09:25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열차	2023-10-10 11:15
93	1078832899655	폐문부재	2024-02-14 09:25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열차	2023-10-11 13:08
94	1078832899656	폐문부재	2024-02-15 09:50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열차	2023-10-14 10:18
95	1078832899657	폐문부재	2024-02-14 09:25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열차	2023-10-14 12:31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96	1078832899658	폐문부재	2024-02-14 09:25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열차	2023-10-20 10:26
97	1078832899659	폐문부재	2024-02-14 09:25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열차	2023-10-21 11:04
98	1078832899660	폐문부재	2024-02-14 09:25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열차	2023-10-25 12:30
99	1078832899550	기타	2024-02-15 14:00	7511**-*******	연*성	서울 성동구 한림말3길 22	고속터미널③	2023-09-06 10:22
100	1078832899661	기타	2024-02-15 14:00	7511**-*******	연*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말 3길 22	교대3역	2023-10-14 16:53
101	1078832899551	기타	2024-02-15 08:00	6209**-*******	유*화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31-4	열차	2023-09-15 09:08
102	1078832899552	기타	2024-02-15 09:44	6202**-*******	이*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열차	2023-09-16 09:05
103	1078832899662	기타	2024-02-15 09:44	6202**-*******	이*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열차	2023-10-12 08:40
104	1078832899566	폐문부재	2024-02-15 12:25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09-01 12:13
105	1078832899567	폐문부재	2024-02-15 12:25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09-02 10:25
106	1078832899568	폐문부재	2024-02-15 12:25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09-02 13:52
107	1078832899569	폐문부재	2024-02-15 12:25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09-05 14:10
108	1078832899570	폐문부재	2024-02-15 12:25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09-05 14:50
109	1078832899571	폐문부재	2024-02-15 12:25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09-08 13:12
110	1078832899562	폐문부재	2024-02-15 12:25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09-11 11:16
111	1078832899563	폐문부재	2024-02-15 12:25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09-14 11:14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112	1078832899564	폐문부재	2024-02-15 12:25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09-14 12:10
113	1078832899565	폐문부재	2024-02-15 12:25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09-16 10:35
114	1078832899572	폐문부재	2024-02-15 12:25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09-27 11:21
115	1078832899686	폐문부재	2024-02-15 12:25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10-02 11:45
116	1078832899687	폐문부재	2024-02-15 12:25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10-04 10:48
117	1078832899677	폐문부재	2024-02-15 12:25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10-10 11:27
118	1078832899678	폐문부재	2024-02-15 12:25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10-10 11:50
119	1078832899679	폐문부재	2024-02-15 12:25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10-12 14:31
120	1078832899680	폐문부재	2024-02-15 12:25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10-14 11:08
121	1078832899681	폐문부재	2024-02-15 12:25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10-14 13:32
122	1078832899682	폐문부재	2024-02-15 12:25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10-17 11:16
123	1078832899683	폐문부재	2024-02-15 12:25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10-17 11:40
124	1078832899684	폐문부재	2024-02-15 12:25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10-18 11:17
125	1078832899685	폐문부재	2024-02-15 12:25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10-18 14:13
126	1078832899688	폐문부재	2024-02-15 12:25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10-30 10:41
127	1078832899689	폐문부재	2024-02-15 12:25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10-30 11:51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128	1078832899690	폐문부재	2024-02-15 12:25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10-30 13:50
129	1078832899691	폐문부재	2024-02-15 12:25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3-10-31 13:36
130	1078832899553	기타	2024-02-15 06:12	8107**-*******	이*현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열차	2023-09-21 18:30
131	1078832899663	기타	2024-02-15 06:12	8107**-*******	이*현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열차	2023-10-02 16:01
132	1078832899664	기타	2024-02-15 06:12	8107**-*******	이*현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열차	2023-10-03 11:57
133	1078832899665	기타	2024-02-15 06:12	8107**-*******	이*현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열차	2023-10-09 14:38
134	1078832899666	기타	2024-02-15 06:12	8107**-*******	이*현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열차	2023-10-12 18:23
135	1078832899558	수취거절	2024-02-07 11:27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35	열차	2023-09-06 10:16
136	1078832899559	수취거절	2024-02-07 11:27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35	열차	2023-09-10 11:50
137	1078832899560	수취거절	2024-02-07 11:27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35	열차	2023-09-22 10:23
138	1078832899561	수취거절	2024-02-07 11:27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35	열차	2023-09-22 10:37
139	1078832899673	수취거절	2024-02-07 11:27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 35	열차	2023-10-04 10:27
140	1078832899674	수취거절	2024-02-07 11:27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 35	열차	2023-10-06 10:16
141	1078832899675	수취거절	2024-02-07 11:27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 35	열차	2023-10-16 10:21
142	1078832899676	수취거절	2024-02-07 11:27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 35	열차	2023-10-18 10:18
143	1078832899577	폐문부재	2024-02-15 09:30	4304**-*******	장*진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56	열차	2023-09-02 11:21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144	1078832899574	폐문부재	2024-02-15 09:30	4304**-*******	장*진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56	열차	2023-09-07 10:24
145	1078832899575	폐문부재	2024-02-15 09:30	4304**-*******	장*진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56	열차	2023-09-07 10:45
146	1078832899576	폐문부재	2024-02-15 09:30	4304**-*******	장*진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56	열차	2023-09-09 10:08
147	1078832899578	폐문부재	2024-02-15 09:30	4304**-*******	장*진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56	열차	2023-09-13 11:45
148	1078832899579	폐문부재	2024-02-15 09:30	4304**-*******	장*진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56	열차	2023-09-13 12:02
149	1078832899580	폐문부재	2024-02-15 09:30	4304**-*******	장*진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56	열차	2023-09-24 11:40
150	1078832899696	폐문부재	2024-02-15 09:30	5105**-*******	장*진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156	열차	2023-10-02 10:46
151	1078832899697	폐문부재	2024-02-15 09:30	5105**-*******	장*진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156	열차	2023-10-03 10:11
152	1078832899700	폐문부재	2024-02-15 09:30	5105**-*******	장*진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156	열차	2023-10-17 14:29
153	1078832899698	폐문부재	2024-02-15 09:30	5105**-*******	장*진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156	열차	2023-10-24 10:34
154	1078832899694	폐문부재	2024-02-15 09:30	5105**-*******	장*진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156	열차	2023-10-25 11:25
155	1078832899695	폐문부재	2024-02-15 09:30	5105**-*******	장*진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156	열차	2023-10-26 10:45
156	1078832899699	폐문부재	2024-02-15 09:30	5105**-*******	장*진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156	열차	2023-10-30 11:03
157	1078832899693	폐문부재	2024-02-15 09:30	5105**-*******	장*진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156	열차	2023-10-31 14:45
158	1078832899581	기타	2024-02-15 14:00	4810**-*******	정*복	인천 남동구 석산로 169번길 52	열차	2023-09-08 14:15
159	1078832899701	기타	2024-02-15 08:48	4408**-*******	정*수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9길 21-15	열차	2023-10-05 13:26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160	1078832899582	주소불명	2024-02-07 08:30	6602**-*******	조*도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42	열차	2023-09-21 20:46
161	1078832633204	기타	2023-11-15 10:53	4509**-*******	최*희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324번길 38	열차	2023-08-21 14:13
162	1078832899703	기타	2024-02-15 06:12	5903**-*******	한*수	서울시 동작구 매봉로 134 8동	열차	2023-10-11 07:01
163	1078832899583	주소불명	2024-02-06 12:07	6804**-*******	홍*식	경기도 군포시 곡란로 26-1408동	열차	2023-09-05 11:30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581호

도시관리계획(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일원 이촌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4.1.24., 수정가결)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823호로 주민 의견청취(2023.10.13.~ 2023.10.26.)한 계획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이촌동 일원	-	증)33,892.7	33,892.7	-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라.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바.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사.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특별계획구역①	1	이촌동 400번지 일대	-	증) 12,455.9	12,455.9	현대한강아파트
		2	이촌동 411번지 일대	-	증) 12,184.5	12,184.5	동아그린아파트
신설	특별계획구역②		이촌동 193번지 일대	-	증) 3,775.3	3,775.3	강변 · 강서아파트

2.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3.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2024.3.1. ~ 2024.3.14.)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02-2133-7146)
- 용산구 도시계획과 (☎02-2199-7412), 주택과 (☎02-2199-7362)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 seoul.go.kr)→서울소식 → 공고 →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582호

도시관리계획(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일원 화곡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4.1.24., 수정가결)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823호로 주민 의견청취(2023.10.13.~ 2023.10.26.)한 계획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합니다.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화곡동, 내발산동 일원	-	증)371,276.4	371,276.4	-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라.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바.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사.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2.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3.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2024.3.1. ~ 2024.3.14.)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02-2133-7146)
  - 강서구 도시계획과 (☎02-2600-6846), 원도심활성화추진단 (☎02-2600-6836)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 seoul.go.kr)→서울소식 → 공고 →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583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 주민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986호(2023.07.06.)로 주민열람공고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4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수정가결) 등에 따라 주민에게 재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안)

■ 고도지구 총괄표

지구명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232,299	감) 2,167,894	7,064,405	-
남산 주변	2,977,229	감) 167,401	2,809,828	-
북한산 주변	3,557,000	감) 1,204,502	2,352,498	-
구기평창	480,290	감) 48,731	431,559	-
국회의사당 주변	770,000	감) 345,751	424,249	-
경복궁 주변	1,189,800	감) 193,679	996,121	-
배봉산 주변	50,150	-	50,150	-
오류	94,130	감) 94,130	-	폐지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113,700	감) 113,700	-	폐지

■ 고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 남산 주변 고도지구								
기정	1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소월로 일대	도로면 -1.5m이하	135,000	'72.5.8. (건설부고시 제174호)	-
변경	1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소월로 일대	도로면 이하	135,00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기정	2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구 남창동, 회현동1가 일대	도로면 이하	14,400	〃	-
변경	2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구 남창동, 회현동1가 일대	도로면 이하	14,40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기정	3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구 신당동 일대	도로면 +4m이하	22,500	〃	-
변경	3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구 신당동 일대	도로면 +4m이하	22,50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기정	4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구 회현동 1·2가, 예장동, 남산동2·3가, 필동2·3가, 장충동2가, 신당동 일대 용산구 후암동, 이태원동, 용산2가동, 한남동 일대	12m이하 (완화시 16m이하)	1,020,972	〃	①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별도참조)
변경	4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용산동2가31, 5-1488 일대	12m이하 (완화시 20m이하)	188,886	〃	①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완화 (별도참조)
	20			중구 회현동1가 146-1,신당동 432-24, 용산구 이태원동 193-6, 한남동 741-20 일대	16m이하 (완화시 20m이하)	340,666	〃	〃
	15			중구 남산동2가 49-49, 예장동 1-1, 용산구 후암동 402-3 일대	20m이하	343,461	〃	〃
기정	5	남산 주변	고도지구	중구 남창동, 회현동1·2·3가, 남산동1·2가, 주자동, 남학동, 묵정동, 필동2·3가, 장충동2가, 신당동일대 용산구 후암동, 이태원동, 용산2가동, 한남동 일대	20m이하 (완화시 28m이하)	1,434,427	〃	①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완화 (별도참조)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변경	5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후암동 443-1일대	20m이하 (완화시 28m이하)	53,311	〃	①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완화 (별도참조)
	21			중구 회현동1가 164, 신당동 432-1979, 432-1632 일대, 용산구 이태원동 204-3, 한남동 일대	24m이하 (완화시 28m이하)	282,589	〃	①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완화 (별도참조)
	16			중구 회현동1가 143-4, 남산동2가 32-3, 필동2가 85-1, 신당동 432-106 일대, 용산구 후암동 244-79, 이태원동 729, 한남동 일대	28m이하	1,021,831	〃	〃
	17			중구 신당동 355-7 일대	32m이하	19,109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18			중구 신당동 369-7 일대	40m이하	14,673	〃	〃
	19			중구 회현동1가 86-3 일대	36m이하	23,724	〃	①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완화 (별도참조)
기정	6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한남동 810, 4-13 일대	18m이하	49,882	〃	①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지반고를 6m범위 내에서 건축심의를 받아 낮출 수 있음
변경	6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한남동 810, 4-13 일대	18m이하	49,630	〃	〃
기정	7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한남동 810 일대	30m이하	29,224	〃	〃
기정	8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한남동 810 일대	36m이하	15,074	〃	〃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9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한남동 829 일대	18m이하	36,02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기정	10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한남동 829 일대	30m이하	27,080	〃	〃
기정	11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57-35, 56-13, 124-7, 136-6, 한남동 736-42, 685-2일대	20m이하	120,800	〃	〃
기정	12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123-15, 127-7, 141-11 일대	28m이하	19,496	〃	〃
기정	13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57-1, 72-16, 132-8, 한남동 737-57 일대	15m이하	51,113	〃	〃
기정	14	남산 주변	고도지구	용산구 이태원동 137-23 일대	23m이하	1,241	〃	〃
■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기정	-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강북구 미아1·2동, 수유1·4·5·6동 일대 도봉구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20m이하 (완화시 28m)	3,557,000	'90.12.10. (서울특별시 고시 제404호)	〈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별도참조)
변경	1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강북구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삼양동 일대 도봉구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20m이하 (완화시 28m)	248,450	〃	①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완화 (별도참조)
	2			강북구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삼양동 일대 도봉구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28m 이하	2,104,048	〃	①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완화 (별도참조)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 구기·평창 고도지구								
기정	-	구기 · 평창	고도지구	종로구 평창동, 구기동, 신영동, 부암동, 홍지동 일대	20m 이하	480,290	'93.4.26. (서울특별시 고시 제122호)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변경	-	구기 · 평창	고도지구	종로구 평창동, 구기동, 신영동, 부암동, 홍지동 일대	24m 이하 (완화시 28m이하)	431,559	〃	①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완화시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완화 (별도참조)
■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기정	-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10~12일대	해발 65m이하	396,500	'76.7.19. (건설부 고시 제109호)	-
기정	-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8일대	해발 55m이하	373,500	〃	-
변경	1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13일대	90m이하	74,005	〃	①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②도시계획시설의 높이기준은 市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별도로 정함
	2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0일대	120m이하	280,081	〃	〃
	3			영등포구 여의도동 17일대	170m이하	70,163	〃	〃
■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기정	1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종로구 효자, 창성, 통의, 적선동 일대	15m이하 (단, 국 · 공유지는 12m이하로 함)	10,080	'77.5.9. (서울특별시 고시 제139호)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기정	2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종로구 적선, 통의, 창성, 효자, 궁정, 청운, 중학, 사간, 송현, 안국, 재, 소격, 화, 가회, 팔판, 삼청동 일대 재동 83 일대, 소격동 165 일대	16m이하	743,04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변경	2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종로구 중학, 사간, 송현, 안국, 재, 소격, 화, 가회, 팔판, 삼청동 일대	16m이하	430,655	〃	〃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3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종로구 적선, 통의, 창성, 효자, 궁정동 일대	18m이하	20,88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변경	3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종로구 적선, 통의, 창성, 효자, 궁정동 일대	18m이하	141,667	〃	〃
기정	4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종로구 청운, 통의, 누상, 누하, 필운, 효자, 체부, 옥인, 창성, 궁정, 통인동 일대	20m이하	415,800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변경	4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종로구 청운, 누상, 누하, 필운, 옥인, 궁정, 통인, 신교, 사직동 일대	20m이하	332,972	〃	〃
변경	5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종로구 통의, 누하, 필운, 체부, 옥인, 창성, 통인동 일대	24m이하	80,747	〃	〃
▪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								
기정	-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	조망선 높이 이하 (해발 44.0~62.6m)	50,150	’06.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호)	①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②조망선:조망점과 봉우리의 7부능선(산정상 해발 높이의 70%) 지점을 연결하는 선 (높이계획 결정도 참조)
변경	-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	조망선 높이 이하 (해발 44.0~62.6m)	50,150	’06.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호)	①건축물 높이산정기준 별도참조 ②조망선:조망점과 봉우리의 7부능선(산정상 해발 높이의 70%) 지점을 연결하는 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53호 참조))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 오류 고도지구								
폐지	-	오류	고도지구	구로구 온수동 100-64 일대	20m이하 (단, 아파트형공장에 한하여 30m이하)	94,130	' 90.12.1. (서울특별시 고시 제390호)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								
폐지	-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	서초구 서초동 1702일대	28m이하	113,700	'80.12.31. (서울특별시 고시 제437호)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별도참조

[참조]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변경) : 전체 고도지구 일괄 변경 적용

〈기정〉

• 지표면(건축법령적용)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필로티부분은 높이에 포함하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면적 범위내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 및 엘리베이터탑은 제외)

〈변경〉

• 지표면으로부터 건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단, 지표면 산정방법은 건축법령을 따르되, 건물 옥상 돌출부, 옥상돌출물 및 필로티는 높이에 포함하며, 옥상에 설치되는 높이 3m 이내의 승강기탑·계단탑 및 난간벽(투시형 또는 그 벽면적의 2분의1 이상이 공간으로 되고 높이 1.5m 미만인 것에 한정)은 제외]

■ 고도지구 완화기준(변경)

〈기정〉

• 지형차에 의한 높이완화기준
  - 적용대상 : 북한산 주변, 남산 주변 고도지구
  - 완화범위 : 12m지역 → 16m이하까지 완화, 20m지역 → 28m이하까지 완화
    (인접건축물의 높이연장선 : 가상높이 12m 또는 20m)

〈변경〉

• 지형차에 의한 높이완화기준(변경)
- 적용대상 : 북한산 주변, 남산 주변, 구기 · 평창 고도지구
- 완화범위: 대상지가 인접대지보다 낮은 지역에 대해 완화
  (12m, 16m지역 → 최대20m이하까지 완화 / 20m, 24m지역→최대28m이하까지)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의 경관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화

• 정비사업 등 추진 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한 높이완화기준(신설)
- 적용대상 : 북한산 주변, 남산 주변, 구기 · 평창 고도지구
- 완화범위 : 정비사업 등 추진 시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시 최대 45m 범위 등 내에서 완화 가능
  ※ 완화적용 방법, 세부운영기준 등 북한산 주변, 남산 주변, 구기 · 평창 고도지구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은 서울특별시장이 별도로 정함

• 높이 초과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추진 시 높이기준 완화 가능(신설)
- 적용대상 : 북한산 주변, 남산 주변, 구기 · 평창 고도지구

■ 고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남산 주변	• 면적 변경 - 2,977,229㎡ → 2,809,828㎡ 감)167,401㎡ • 높이기준 변경 - 소월로일대 : 도로면-1.5m이하 → 도로면이하 - 12m(완화시16m)이하 → 12m(완화시20m)/16m(완화시20m)/20m이하 - 20m(완화시28m)이하 → 20m(완화시28m)/24m(완화시28m)/28m/ 32m/36m/40m이하 •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추진시 높이기준 완화 가능 • 높이 완화기준 변경 - 아래 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 등 추진 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최대 45m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 1. 소월로 인근 지역 : 도로면 이하 부감 범위 내 완화가능 2. 사업대상지가 역세권(지구중심 이상, 승강장 경계 250m)인 지역에 위치한 경우 완화 가능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은 서울시장이 별도로 정함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변경	• 자연경관지구 등 지정 목적 및 유사기능의 도시관리수단이 중첩된 일부지역에 대해 고도지구 폐지 • 경관보전 범위 내 지형, 지역여건 변화 및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을 고려 높이기준 조정 및 지형차에 의한 높이 완화기준 변경 • 높이초과 아파트 리모델링을 고려, 주택법상 허용범위 내에서 완화 기준 신설 • 정비사업 등 추진시 높이완화 기준 신설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구체화 및 옥상 이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옥상 설치 난간(투시형)을 높이산정에서 제외
북한산 주변	• 면적 변경 - 3,557,000㎡ → 2,352,498㎡ 감)1,204,502㎡ • 높이기준 변경 - 20m이하(완화시 28m)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m 이하(완화시 28m)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상: 28m 이하 •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추진시 높이기준 완화 가능 • 높이 완화기준 변경 - 정비사업 등 추진 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완화 가능 1. 최대 45m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 2. 사업대상지가 역세권(지구중심 이상, 승강장 경계 250m)인 지역에 위치한 경우 평균 45m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은 서울시장이 별도로 정함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변경	• 자연경관지구 등 지정 목적 및 유사기능의 도시관리수단이 중첩된 일부지역에 대해 고도지구 폐지 • 경관보전 범위 내 지형, 지역여건 변화 및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을 고려 높이기준 조정 및 지형차에 의한 높이 완화기준 변경 • 높이초과 아파트 리모델링을 고려, 주택법상 허용범위 내에서 완화 기준 신설 • 정비사업 등 추진시 높이완화 기준 신설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구체화 및 옥상 이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옥상 설치 난간(투시형)을 높이산정에서 제외
구기 · 평창	• 면적 변경 - 480,290㎡ → 431,559㎡ 감) 48,731㎡ • 높이기준 변경 - 20m이하 → 24m이하(완화시 28m이하)	• 자연경관지구 등 지정 목적 및 유사기능의 도시관리수단이 중첩된 일부지역에 대해 고도지구 폐지 • 경관보전 범위 내 지형, 지역여건 변화 및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을 고려 높이기준 조정 및 지형차에 의한 높이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추진시 높이기준 완화 가능 • 높이 완화기준 변경 - 정비사업 등 추진 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최대 45m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 *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은 서울시장이 별도로 정함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변경	완화기준 신설 • 높이초과 아파트 리모델링을 고려, 주택법상 허용범위 내에서 완화 기준 신설 • 정비사업 등 추진시 높이완화 기준 신설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구체화 및 옥상 이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옥상 설치 난간(투시형)을 높이산정에서 제외
국회의사당 주변	• 면적 변경 - 770,000㎡ → 424,249㎡ 감) 345,751㎡ • 높이기준 변경 - 표고 65m이하, 표고 55m이하 → 90m이하, 120m이하, 170m이하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변경 • 도시계획시설 높이기준 관련 조항 신설	•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고도지구 폐지 • 중요시설 경관 및 도심기능 활성화 등 고려 높이기준 변경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구체화 및 옥상 이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옥상 설치 난간(투시형)을 높이산정에서 제외 • 방송통신시설 등 전파장애 등을 고려한 높이기준 관련 조항 신설
경복궁 주변	• 면적 변경 -1,189,800㎡ → 996,121㎡ 감)193,679㎡ • 높이기준 변경 - 15m, 16m, 18m, 20m이하 → 15m, 16m, 18m, 20m, 24m이하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변경	• 자연경관지구 등 경관 보호 목적으로 도시관리수단이 중첩된 일부지역에 대해 고도지구 폐지 • 경관보전 범위 내 지형, 지역여건 변화 및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을 고려 높이기준 세분화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구체화 및 옥상 이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옥상 설치 난간(투시형)을 높이산정에서 제외
배봉산 주변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변경	•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구체화 및 옥상 이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옥상 설치 난간(투시형)을 높이산정에서 제외
오류	• 폐지	•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고도지구 지정목적(도시 연담화 방지) 및 실효성 상실로 고도지구 폐지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 폐지	• 유사시설에 대한 도시관리 일관성 및 토지이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고도지구 폐지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광진구 자양동 21 ~ 자양동109 (강변도로)	22,500	도로 양측 15	'19.04.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	강변북로
폐지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마포구 상암동 1527~ 상암동 1566	82,800	도로 양측 12	〃	
폐지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강변북로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559,200	도로 양측 12	〃	올림픽대로
폐지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강남도로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강서구, 강동구)	782,400	도로 양측 12	〃	
기정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종로구 사간,소격,안국, 가회, 원서, 삼청, 계동, 제동 일대	780,735	집단	〃	삼청동길, 율곡로, 사직로 (집단)
기정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중구 회현동~ 장충동 일대	700,000		〃	남산공원길 (집단)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용도지구	지구의 세분	면적(㎡)	변경내용	변경사유
경관 지구	역사문화특화 경관지구	2,927,635㎡ → 1,480,735㎡ 감)1,446,900㎡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한강변) 폐지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한강변)의 지정목적, 범위 등 고려 실효성 상실로 폐지

다.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라.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2024.3.1.~2024.3.14.)

마.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2133-8331, 8333) 및 종로구 도시개발과(☎2148-2666), 중구 도심정비과(☎3396-5734), 용산구 도시계획과(☎2199-7394), 동대문구 도시계획과(☎2127-4582), 강북구 도시계획과(☎901-6843), 도봉구 도시계획과(☎2091-3593), 구로구 도시계획과(☎860-3326), 영등포구 도시계획과(☎2670-3523), 서초구 도시계획과(☎2155-6785), 성동구 도시계획과(☎2286-5875), 광진구 도시계획과(☎450-7673), 마포구 도시계획과(☎3153-9357),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692), 동작구 도시계획과(☎820-9526), 강남구 도시계획과(☎3423-6103), 송파구 도시계획과(☎2147-2994), 강동구 도시계획과(☎3425-6022)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바.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2133-83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588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에게 2차례 송달하였으나 부재로 인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2. 29. ~ 2024. 3. 14.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35757455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40길 23, 501호 (쌍문동, 은행빌라)	수도요금	2023년12월 등 14납기	14회	779,07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40길 23, 501호 (쌍문동, 은행빌라)	김은혜	721114-2****** (2회송달 부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40길 23, 501호 (쌍문동, 은행빌라)	779,070원	2024.3.14.이후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정병수(☎02-3146-333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592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3935	24. 2. 23.	주식회사 아울시스템즈 강병승 110111-418197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809호, 810호(문래동3가)
2	203936	24. 2. 23.	주식회사 푸름엘엔티 유성운 120111-0371378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비동 706호,707호(염창동, 우림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3	203937	24. 2. 23.	주식회사 큐빅테크 김부섭 110111-0672926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301~303호(구로동, 한신아이티타워)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289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593호

지방보조사업자 정산 결과 및 이의신청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및 제36조의2(이의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정산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명: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정산 결과 및 이의신청 공시송달

2. 근거: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36조의2(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내용	반납 대상액	등기 발송일	반송 사유
오그린 (임*원)	불명	지방보조사업 정산 결과 및 이의신청 안내 (집행잔액 등 반납 및 환수)	19,977천원	2024.2.13.	소재지 불명
서초행복마을학교 (박*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 19길 34 서림빌딩 B1	지방보조사업 정산 결과 및 이의신청 안내 (집행잔액 등 반납 및 환수)	5,972천원	2024.2.5.	폐문부재

4. 공고기간: 2024. 2. 29. ~ 2024. 3. 14.(14일간)
   - 이의신청 가능 기간 : 2024. 4. 3.까지

5. 유의사항
   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 금액 대로 부과 고지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의신청서 제출처
   - 주 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시민협력과 공익활동지원팀
   - 제출방법: 전자우편 gnuj0813@seoul.go.kr / 팩스 02-768-8891
   나.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청 시민협력과(☎02-2133-63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의신청서 1부. 끝.

[별지 제1호서식]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생년월일
	주소(법인·단체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이의신청 대상 처분		
이의신청 대상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이유	※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관 행정청 서울특별시 행정국 시민협력과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신청 안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결과 통보
신청인		소관 행정청		소관 행정청		소관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598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 통지서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주소)로 우편 송달하여야하나 소유자 사망말소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2. 29. ~ 2024. 3. 14.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21432265	동작구 만양로14다길 17	수도요금	2021. 8 등 28납기	29회	3,576,02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동작구 만양로14다길 17 (노량진동 211-35)	김덕진	390401-******* (사망말소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26, 106동 1201호	3,576,020원	2024. 2.16.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김세영(☎02-3146-11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604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고미숙 등 520명

4. 공고기간 : 2024. 2. 29 ~ 2024. 3. 15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4. 2. 29 ~ 2024. 3. 15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경(50%)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교통지도과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9 팩스번호 : 02-2133-4904
   ※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회(http://cartax.seoul.go.kr)에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1부.

공시송달(사전통지서) 명단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1	269모55**	고*숙	대구광역시	2023-10-11 08:14	잠원ic~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2	51보72**	이*	경기도 화성시	2023-11-15 14:09	경부고속도로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	서울강남다18**	Y*N*E*G*I*N	서울특별시	2023-11-29 17:10	아크로리버뷰아파트앞	전용차로위반	40,000
4	73호83**	W*N*A*F*N*	서울특별시	2023-12-11 14:3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60,000
5	194하16**	한*훈	경기도 포천시	2023-12-20 00:5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6	159호42**	정*원	서울특별시	2023-12-20 10:2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	197호98**	이*천	경기도 화성시	2023-12-20 17:48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	126호98**	주*회*사*엔*테*먼*	서울특별시	2023-12-20 18:4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	34호98**	(*)*스*원*터*인*트	경기도 안양시	2023-12-20 19:4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	126호27**	(*)*스*파*너*	서울특별시	2023-12-21 07:59	강남소방서	전용차로위반	50,000
11	172보28**	에*씨*산*식*사	경기도 수원시	2023-12-21 16:1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2	122호76**	이*현	서울특별시	2023-12-21 16:24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3	101호29**	안*민	인천광역시	2023-12-21 18:5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4	220호10**	정*미	서울특별시	2023-12-22 11:0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5	220호77**	주*회*슬*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3-12-22 14:27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6	220호77**	주*회*슬*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3-12-22 14:2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7	167호63**	주*회*리*컴*니	경기도 김포시	2023-12-22 17:0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8	167호63**	주*회*리*컴*니	경기도 김포시	2023-12-22 17:05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9	167호63**	주*회*리*컴*니	경기도 김포시	2023-12-22 17:0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0	134나30**	뉴*어*바*저*주*	서울특별시	2023-12-22 17:2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21	07두23**	이*재	경기도 의정부시	2023-12-22 22:4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22	03라99**	김*주	경기도 안산시	2023-12-24 09:58	구산역~응암역	전용차로위반	50,000
23	160허67**	엄*욱	경기도 의정부시	2023-12-24 15:24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4	175호70**	박*혜	경상남도 통영시	2023-12-24 15:5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5	175호70**	박*혜	경상남도 통영시	2023-12-24 20:3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6	195하23**	김*수	인천광역시	2023-12-25 12:3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7	101호86**	이*순	서울특별시	2023-12-26 09:22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8	366노83**	이*수	경기도 파주시	2023-12-26 10:1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29	278부18**	(*)*비*	경기도 용인시	2023-12-26 18:26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30	386러60**	장*영	서울특별시	2023-12-27 11:42	종로5가교차로~이화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31	115호52**	김*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3-12-27 18:39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2	115호52**	김*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3-12-27 18:4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3	194호75**	Z*U*I*R*N*	서울특별시	2023-12-27 19:1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4	174루19**	김*숙	서울특별시	2023-12-27 19:49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5	230루50**	이*형	인천광역시	2023-12-28 11:0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6	167하31**	(*)*아*메*칼	서울특별시	2023-12-28 18:5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37	175호12**	김*연	서울특별시	2023-12-28 19: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지하 221	전용차로위반	50,000
38	143하10**	박*진	인천광역시	2023-12-29 15:0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9	143하10**	김*수	경기도 남양주시	2023-12-29 15:5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0	143하10**	김*수	경기도 남양주시	2023-12-29 15:5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1	396어71**	(*)*킹*리*이*브	서울특별시	2023-12-29 17:1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42	01모83**	(*)*리*	서울특별시	2023-12-29 18:1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43	167호27**	주*회*네*쎄*	경기도 양주시	2023-12-29 19:09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44	194호59**	이*진	서울특별시	2023-12-29 19:5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5	65하73**	송*늘	경기도 구리시	2023-12-29 23:2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46	197호19**	배*경	경기도 안산시	2024-01-02 12:25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7	124호49**	(*)*마*더*트*즈	서울특별시	2024-01-02 18:26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48	326구78**	(*)*로*닷*자*하*	서울특별시	2024-01-02 19:4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9	149허64**	김*상	경기도 고양시	2024-01-02 20:0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0	10러14**	(*)*트*스*퍼*	서울특별시	2024-01-02 21:4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51	174우46**	천*나	경기도 의정부시	2024-01-03 19:17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52	156하51**	서*살*	서울특별시	2024-01-03 20:1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3	167허38**	마*석	서울특별시	2024-01-03 20:5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54	167허33**	최*희	경기도 파주시	2024-01-03 23:4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55	172고32**	(*)*이*리*스	서울특별시	2024-01-04 17:22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6	197호69**	(*)*스*우*프*비	경기도 광명시	2024-01-04 19:0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7	149호65**	(*)*우*이*	경기도 용인시	2024-01-06 07:1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58	152하21**	조*애	서울특별시	2024-01-07 19:4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59	34하86**	서*상	경기도 의정부시	2024-01-08 20:1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60	159하78**	노*정	인천광역시	2024-01-09 08:26	개화교	전용차로위반	50,000
61	125호62**	송*경	부산광역시	2024-01-09 11:35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62	125호86**	(*)*고*시*	인천광역시	2024-01-09 13:3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3	166허94**	김*경	서울특별시	2024-01-11 08:42	성산2교교차로~마포구청역	전용차로위반	50,000
64	126호16**	(*)*리*트*트*이*	서울특별시	2024-01-11 08:43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65	197호19**	배*경	경기도 안산시	2024-01-11 12:34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6	169호34**	고*성	서울특별시	2024-01-11 17:3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7	101하63**	박*	서울특별시	2024-01-11 17:5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68	166허86**	예*농*	충청남도 서산시	2024-01-11 19:1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9	171하37**	박*원	경기도 화성시	2024-01-12 18:4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0	171하41**	장*윤	서울특별시	2024-01-12 21:5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71	34호98**	(*)*스*원*터*인*트	경기도 안양시	2024-01-13 17:0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2	34호98**	(*)*스*원*터*인*트	경기도 안양시	2024-01-13 17:1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3	28머17**	안*성	경기도 성남시	2024-01-14 09:58	양재IC~힌남IC	전용차로위반	50,000
74	171하34**	L*A*E*S*N*R*U*E*I*H	경기도 안산시	2024-01-15 06:0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75	006나86**	이*환	인천광역시	2024-01-15 12: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전용차로위반	60,000
76	279다97**	강*희	경기도 가평군	2024-01-15 18:23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77	346로99**	김*희	서울특별시	2024-01-16 08:03	중계근린공원교차로~중계역	전용차로위반	50,000
78	175하28**	(*)*우*설	서울특별시	2024-01-16 17:4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9	152호14**	김*훈	서울특별시	2024-01-16 17:5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0	175하58**	김*연	충청남도 아산시	2024-01-16 18:40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1	24호64**	화*아*찜*남*	경기도 하남시	2024-01-17 08:03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위반	50,000
82	274우20**	(*)*로*아*엠*	경기도 성남시	2024-01-17 12:5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83	96너88**	박*미	서울특별시	2024-01-17 15:34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4	373루66**	이*윤	경기도 김포시	2024-01-17 16:08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5	131어16**	이*대	경기도 안양시	2024-01-17 16:20	삼성역~휘문고교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86	29어81**	김*숙	서울특별시	2024-01-17 18:58	여의서로 국회어린이집주변	전용차로위반	50,000
87	358무70**	김*식	서울특별시	2024-01-18 08:30	온수골사거리~노원역	전용차로위반	50,000
88	006나91**	주*회*시*산*개*	서울특별시	2024-01-18 12:09	한남IC~신동초교교차로	전용차로위반	60,000
89	006라96**	주*회*시*산*개*	서울특별시	2024-01-18 12:12	신반포18차앞	전용차로위반	60,000
90	07두14**	S*N*H*N*C*I	경기도 과천시	2024-01-18 13:11	사당역~이수역	전용차로위반	50,000
91	160하66**	최*호	경기도 수원시	2024-01-18 14:5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2	134루35**	최*미	경기도 고양시	2024-01-18 15:14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3	25어51**	김*준	서울특별시	2024-01-19 05:45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94	88보36**	하*자	인천광역시	2024-01-19 07:1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5	17로06**	조*래	충청남도 아산시	2024-01-19 07:2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6	237도16**	김*국	서울특별시	2024-01-19 07:26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7	80조05**	C*I*E*G*U	경기도 파주시	2024-01-19 07:4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98	345구46**	김*	경기도 고양시	2024-01-19 08:0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9	128하20**	(*)*티*터*	인천광역시	2024-01-19 08:04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00	50저70**	공*훈	경기도 성남시	2024-01-19 08:1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1	경기98바38**	조*석	경기도 성남시	2024-01-19 08: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60,000
102	49노48**	심*연	경기도 광주시	2024-01-19 08:26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03	280저84**	김*원	서울특별시	2024-01-19 08:3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4	64우15**	유*선	경기도 성남시	2024-01-19 08:5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105	52러49**	유*철	부산광역시	2024-01-19 09:0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6	서울32바75**	이*범	경기도 양주시	2024-01-19 09:1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7	60가78**	박*수	서울특별시	2024-01-19 09:16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8	34오51**	장*훈	서울특별시	2024-01-19 09:3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9	68가74**	김*회	경기도 부천시	2024-01-19 09:4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10	379부18**	정*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4-01-19 09:43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11	12노66**	P*U*A*M*D*S*Y*D*E*A	경기도 고양시	2024-01-19 09:44	서초IC~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112	24더29**	국*갑	인천광역시	2024-01-19 09:57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13	45우44**	N*N*I*J*N	서울특별시	2024-01-19 10:00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14	840서90**	정*구	충청남도 부여군	2024-01-19 10:0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5	50수36**	이*자	경기도 양평군	2024-01-19 11:1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16	76버53**	김*식	경기도 평택시	2024-01-19 11:5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60,000
117	119저86**	이*우	경기도 광주시	2024-01-19 12:0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18	08보45**	이*한	서울특별시	2024-01-19 12:2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19	83보65**	장*택	경기도 안성시	2024-01-19 12:35	잠원현대아파트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0	43고85**	박*수	충청남도 아산시	2024-01-19 12:3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121	34서93**	B*Y*R*A*M*R*A*A*G*L*N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4-01-19 12:5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22	28다40**	이*목	경기도 포천시	2024-01-19 13:2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23	006가86**	이*자	경기도 남양주시	2024-01-19 14:14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60,000
124	87누35**	(*)*광*산*업*사*인	부산광역시	2024-01-19 14:51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215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125	서울31사94**	최*명	경기도 안양시	2024-01-19 15:17	영등포구 신송빌딩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26	서울31자73**	박*석	서울특별시	2024-01-19 15: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전용차로위반	50,000
127	42나42**	문*욱	서울특별시	2024-01-19 15:4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128	58머40**	윤*혁	경기도 포천시	2024-01-19 15:5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29	159누84**	주*회*더*카	서울특별시	2024-01-19 16:0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130	370노42**	장*근	경기도 부천시	2024-01-19 16:1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131	128허60**	염*현	서울특별시	2024-01-19 16:16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32	서울86자54**	서*옥	서울특별시	2024-01-19 16:2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133	40루73**	송*기	서울특별시	2024-01-19 16:2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34	15더04**	Y*N*H*N*L*N*	서울특별시	2024-01-19 17:1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35	27가76**	정*순	경기도 안산시	2024-01-19 17:1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36	153조51**	주*회*만*경	서울특별시	2024-01-19 17:22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37	13누36**	이*희	서울특별시	2024-01-19 17:2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138	235루41**	오*석	경기도 수원시	2024-01-19 17:2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39	47고90**	권*민	경기도 고양시	2024-01-19 17:28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40	116하21**	제*에*치*트*주*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2024-01-19 17:3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41	261소81**	임*화	경기도 광명시	2024-01-19 17:3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42	299가81**	홍*석	서울특별시	2024-01-19 17:4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143	267무13**	김*훈	서울특별시	2024-01-19 17:4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44	35라18**	안*진	경상남도 함안군	2024-01-19 17:50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45	35부56**	문*식	경기도 하남시	2024-01-19 18:0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146	109소82**	강*권	서울특별시	2024-01-19 18:0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47	66수62**	박*애	서울특별시	2024-01-19 18:2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48	11오71**	조*환	경기도 화성시	2024-01-19 18:23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49	285나12**	유*희	서울특별시	2024-01-19 18:33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50	52러49**	유*철	부산광역시	2024-01-19 18:3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151	222저76**	박*희	서울특별시	2024-01-19 18:35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52	01저74**	구*희	서울특별시	2024-01-19 18:3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53	43거70**	강*순	서울특별시	2024-01-19 18:3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54	26저37**	정*모	경기도 파주시	2024-01-19 18:4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55	31라06**	(*)*성*이*	경기도 포천시	2024-01-19 18:5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56	08마02**	최*숙	서울특별시	2024-01-19 19:05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57	07마20**	홍*길	서울특별시	2024-01-19 19:0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158	27더09**	이*숙	서울특별시	2024-01-19 19:1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59	45다72**	박*표	경기도 의정부시	2024-01-19 19:1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60	서울31아19**	박*청	서울특별시	2024-01-19 19:15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61	160허55**	김*철	경기도 용인시	2024-01-19 19:1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162	169허26**	김*호	경기도 시흥시	2024-01-19 19:2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63	22라82**	홍*민	서울특별시	2024-01-19 19:3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64	35서39**	(*)*디*이*	서울특별시	2024-01-19 19:3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65	68노39**	임*례	경기도 과천시	2024-01-19 19:35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66	109머73**	김*빈	서울특별시	2024-01-19 19:46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167	89우55**	이*순	서울특별시	2024-01-19 19:4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68	서울32사82**	서*원	서울특별시	2024-01-19 19:5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69	24서86**	송*희	서울특별시	2024-01-19 19:55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70	17다07**	한*송	서울특별시	2024-01-19 19:5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71	335가57**	한*현	서울특별시	2024-01-19 19:5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72	130도80**	주*회*신*기*	경기도 성남시	2024-01-19 19:5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73	서울32사82**	서*원	서울특별시	2024-01-19 20:1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74	97무65**	원*호	인천광역시	2024-01-19 20:1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75	36무92**	이*희	서울특별시	2024-01-19 20:2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76	40구51**	장*주	서울특별시	2024-01-19 20:3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77	266무94**	김*호	경기도 남양주시	2024-01-19 20:33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78	90수32**	(*)*블*버*	울산광역시	2024-01-19 20:3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79	경기90바82**	홍*표	경기도 의왕시	2024-01-19 20:3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80	서울31자20**	오*근	서울특별시	2024-01-19 20:4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81	71부45**	이*형	서울특별시	2024-01-19 22:0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60,000
182	96구39**	손*영	경기도 의정부시	2024-01-20 01:1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83	서울31사84**	김*신	서울특별시	2024-01-20 02:0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84	서울31아17**	강*재	서울특별시	2024-01-20 02:3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85	서울87자11**	안*만	서울특별시	2024-01-20 08:5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186	21누20**	김*자	경기도 안양시	2024-01-20 11:5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187	서울31자33**	정*민	서울특별시	2024-01-20 12:0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88	53어39**	최*화	경기도 안성시	2024-01-20 12:2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89	373수39**	조*화	경기도 양주시	2024-01-20 12:57	은평성모병원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90	23마44**	이*형	경상남도 김해시	2024-01-20 13:31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91	23마44**	이*형	경상남도 김해시	2024-01-20 13:3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92	서울마포타69**	박*철	서울특별시	2024-01-20 13:39	수정아파트앞~여의도선착장교차로	전용차로위반	40,000
193	66노89**	권*철	충청남도 서산시	2024-01-20 14:1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94	209너20**	J*B*R*V*A*I*J*N	경기도 화성시	2024-01-20 14:18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95	209너20**	J*B*R*V*A*I*J*N	경기도 화성시	2024-01-20 14:1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96	152어24**	박*용	서울특별시	2024-01-20 14:2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97	72루34**	(*)*럭*코*레*션	서울특별시	2024-01-20 14: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8	전용차로위반	60,000
198	140어16**	J*N*H*N*E*	경기도 시흥시	2024-01-20 14:53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199	154두96**	W*N*L*Q*A*	인천광역시	2024-01-20 14:5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00	154두96**	W*N*L*Q*A*	인천광역시	2024-01-20 14:5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01	18고74**	한*영	서울특별시	2024-01-20 15:3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202	33두85**	정*두	경기도 안양시	2024-01-20 15:52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03	36라21**	주*회*토*디*인	인천광역시	2024-01-20 16:0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204	서울31사90**	차*구	경기도 남양주시	2024-01-20 16: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용차로위반	50,000
205	841다56**	김*윤	경기도 고양시	2024-01-20 16:2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206	841다56**	김*윤	경기도 고양시	2024-01-20 16:2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07	65서42**	김*석	서울특별시	2024-01-20 16:2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08	293나12**	김*태	충청남도 천안시	2024-01-20 16:2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09	214부20**	O*J*S*P*K*E*O*	서울특별시	2024-01-20 16:3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10	147너37**	(*)*니*이*티	서울특별시	2024-01-20 17:0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211	27서61**	동*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4-01-20 17:1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12	301누82**	염*근	경기도 구리시	2024-01-20 17:1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13	276러27**	최*민	경기도 의왕시	2024-01-20 17:19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14	317다40**	문*훈	서울특별시	2024-01-20 17:3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215	서울35아17**	이*균	서울특별시	2024-01-20 19:2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16	333구86**	최*윤	서울특별시	2024-01-20 21:5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217	109루66**	권*성	서울특별시	2024-01-20 22:1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218	52도91**	박*훈	서울특별시	2024-01-20 23:1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219	117모40**	백*신	경기도 광명시	2024-01-20 23:1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220	152나54**	N*K*Z*T*M*E	경기도 수원시	2024-01-20 23:5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221	193허78**	(*)*고*유*단	서울특별시	2024-01-21 12:57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222	217러94**	홍*룡	경기도 안산시	2024-01-21 13:41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223	390우69**	조*형	세종특별자치시	2024-01-21 14:0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24	41러57**	김*동	인천광역시	2024-01-21 14:28	거리공원입구교차로~구로역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25	48소85**	유*돔*식*사	경기도 성남시	2024-01-21 14:36	양재ic~서초ic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226	214부20**	O*J*S*P*K*E*O*	서울특별시	2024-01-21 15:1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27	214부20**	O*J*S*P*K*E*O*	서울특별시	2024-01-21 15:1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28	05마11**	박*용	인천광역시	2024-01-21 15:22	한남ic부산방향 입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29	812라76**	조*언	서울특별시	2024-01-21 15:2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230	서울31아12**	조*상	경기도 안양시	2024-01-21 15:3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231	234소32**	임*훈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2024-01-21 16:0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32	58모16**	이*호	경기도 오산시	2024-01-21 17:1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33	서울55나69**	최*율	서울특별시	2024-01-21 18:0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234	14너19**	(*)*람*번*	서울특별시	2024-01-21 18:16	청량리역~성바오로병원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35	43도82**	한*욱	인천광역시	2024-01-21 21:27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36	134노77**	박*호	경기도 광주시	2024-01-22 03:4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237	서울80배53**	유*영	서울특별시	2024-01-22 04:26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위반	50,000
238	15더33**	길*수	경기도 군포시	2024-01-22 05:4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239	83러93**	(*)*밧*아*디	서울특별시	2024-01-22 07:2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40	215러69**	이*순	인천광역시	2024-01-22 07:3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41	821저49**	김*겸	경기도 의정부시	2024-01-22 07:3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42	경기86배42**	안*호	경기도 안산시	2024-01-22 07:36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43	62수93**	N*R*N*E*E*M*N*H*H*Y*G	경기도 김포시	2024-01-22 07:58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44	29가56**	이*결	서울특별시	2024-01-22 08:2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45	32더67**	허*권	서울특별시	2024-01-22 08:41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46	86로03**	김*배	경기도 하남시	2024-01-22 08:4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247	359조99**	X*H*O	서울특별시	2024-01-22 08:47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48	315머48**	(*)*브***상***	서울특별시	2024-01-22 08:5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49	19가82**	서*오	서울특별시	2024-01-22 08:5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50	803머11**	권*훈	경기도 남양주시	2024-01-22 08:5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51	42오86**	우*민	충청북도 청주시	2024-01-22 09:1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52	255수88**	고*영	경기도 남양주시	2024-01-22 09:17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53	43마23**	박*경	서울특별시	2024-01-22 09:4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54	서울31자77**	김*호	경기도 남양주시	2024-01-22 10:01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55	서울31바84**	이*홍	서울특별시	2024-01-22 10:35	영등포구 롯데캐슬엠파이어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56	82라21**	황*운	충청남도 청양군	2024-01-22 10:56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257	23노70**	W*N*S*B*O*C*A*	경기도 안성시	2024-01-22 11:22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58	65조69**	최*화	경기도 안양시	2024-01-22 11:22	신동초교교차로~한남IC	전용차로위반	50,000
259	서울32사51**	김*정	서울특별시	2024-01-22 11:52	반포3동주민센터교차로~신동초교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60	80더35**	E*R*J*A*D*L*A*I*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4-01-22 12:50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61	12무33**	신*연	부산광역시	2024-01-22 12:56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62	16라37**	김*석	경기도 광주시	2024-01-22 13:1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263	232러21**	이*숙	인천광역시	2024-01-22 13:1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전용차로위반	50,000
264	162조28**	Z*U*I*Y*N*	서울특별시	2024-01-22 13:1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전용차로위반	50,000
265	서울32자35**	윤*원	서울특별시	2024-01-22 13:1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266	231고22**	박*선	서울특별시	2024-01-22 13:1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267	24조21**	김*영	서울특별시	2024-01-22 13:19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68	서울31사55**	김*재	서울특별시	2024-01-22 13:2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269	382모63**	윤*후	광주광역시	2024-01-22 13:2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70	40버84**	지*택	충청북도 충주시	2024-01-22 13:3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271	90도10**	백*현	서울특별시	2024-01-22 13:4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272	49고61**	노*민	경기도 화성시	2024-01-22 14:3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273	69마45**	전*준	서울특별시	2024-01-22 14:3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274	서울31자82**	송*우	서울특별시	2024-01-22 14:38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275	30도05**	서*희	경기도 화성시	2024-01-22 15:2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276	54도80**	B*Z*R*V*H*D*Y*R	인천광역시	2024-01-22 16:03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77	17마50**	전*근	경기도 구리시	2024-01-22 16:1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278	55나20**	L*E*A*A*G	서울특별시	2024-01-22 17:0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전용차로위반	50,000
279	서울31바33**	양*석	서울특별시	2024-01-22 17:1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80	228모47**	(*)*아*조*술*사*소	서울특별시	2024-01-22 17:1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81	82로47**	신*순	경기도 양주시	2024-01-22 17:22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82	47저72**	박*민	서울특별시	2024-01-22 17:2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83	25서34**	김*호	서울특별시	2024-01-22 17:3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84	23저74**	전*나	서울특별시	2024-01-22 17:5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285	94러04**	황*임	서울특별시	2024-01-22 17:59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86	55다64**	이*우	서울특별시	2024-01-22 18:0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287	175하17**	파*투*이*리*주*회*	서울특별시	2024-01-22 18:0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88	57루97**	이*영	서울특별시	2024-01-22 18:1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89	146더32**	홍*훈	서울특별시	2024-01-22 18:40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90	24라97**	김*한	서울특별시	2024-01-22 18:4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291	123우47**	이*춘	서울특별시	2024-01-22 18:41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292	258소89**	모*상*(*)*상*용*	서울특별시	2024-01-22 18:4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93	06더93**	김*영	경기도 성남시	2024-01-22 18:4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94	23소75**	이*국	서울특별시	2024-01-22 18:5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95	09버83**	이*규	서울특별시	2024-01-22 18:56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96	843수83**	신*용	충청북도 음성군	2024-01-22 19:1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97	132가26**	박*국	서울특별시	2024-01-22 19:1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98	360더39**	최*정	서울특별시	2024-01-22 19:1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99	서울85자69**	정*임	서울특별시	2024-01-22 19:3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300	177수16**	허*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4-01-22 19:5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01	368루17**	세*법*셜*택*	서울특별시	2024-01-22 20:03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02	67가46**	한*훈	서울특별시	2024-01-22 20:0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03	305부67**	주*회*이*이*종*건*	경기도 과천시	2024-01-22 20:0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04	104허23**	황*덕	서울특별시	2024-01-22 20:1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05	33수20**	성*민	경상남도 창원시	2024-01-22 20:2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06	62루94**	김*복	서울특별시	2024-01-22 20:3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07	67수80**	허*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4-01-22 21:0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308	250루74**	성*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4-01-22 22:4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309	83러93**	(*)*밧*아*디	서울특별시	2024-01-23 07:1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10	27수60**	배*학	서울특별시	2024-01-23 07:2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311	804너97**	김*길	경기도 파주시	2024-01-23 07:3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12	23다02**	장*나	경기도 김포시	2024-01-23 08:2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13	33무55**	김*진	서울특별시	2024-01-23 08:4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14	192마51**	윤*화	서울특별시	2024-01-23 08:56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315	157누18**	김*근	서울특별시	2024-01-23 08:5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16	04오93**	김*영	경기도 안양시	2024-01-23 09:2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17	52부02**	(*)*이*스*퍼*이*	서울특별시	2024-01-23 09:29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18	189더98**	곽*훈	경기도 안산시	2024-01-23 09:42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319	365더88**	류*진	서울특별시	2024-01-23 09:4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20	서울31자79**	임*택	서울특별시	2024-01-23 10:35	잠실새내역교차로~종합운동장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321	125주35**	성*자	경기도 양주시	2024-01-23 11:0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322	841부20**	문*욱	경기도 의정부시	2024-01-23 11:5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23	105너28**	(*)*강*펌*축*사*소	서울특별시	2024-01-23 11:5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324	185어57**	최*배	경기도 광주시	2024-01-23 12:2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25	160허11**	정*욱	서울특별시	2024-01-23 12:45	서울 송파구 잠실동 261	전용차로위반	50,000
326	16거91**	신*화	경기도 고양시	2024-01-23 12: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327	175하60**	(*)*일*트*	인천광역시	2024-01-23 12:48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328	11로48**	최*림	서울특별시	2024-01-23 13:0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329	23보29**	한*희	경기도 수원시	2024-01-23 13:2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30	165허83**	(*)*린*듀	부산광역시	2024-01-23 13:3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31	209조84**	주*회*우*조*어*홀*스	경기도 부천시	2024-01-23 13:5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332	82두72**	(*)*국*피	경기도 광주시	2024-01-23 13:5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33	31버11**	J*N*U*W*N	경기도 부천시	2024-01-23 14:07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위반	50,000
334	94두01**	김*진	경기도 고양시	2024-01-23 15:03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335	서울06타62**	반*숙	인천광역시	2024-01-23 15:15	영등포구 신송빌딩 앞	전용차로위반	60,000
336	37우05**	김*태	경기도 화성시	2024-01-23 15:18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37	18조05**	김*영	서울특별시	2024-01-23 15:3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338	서울32사81**	이*로	서울특별시	2024-01-23 15:39	영등포구 신송빌딩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39	26모28**	이*현	서울특별시	2024-01-23 15:4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40	87가06**	주*회*마*틴*트	경기도 안산시	2024-01-23 15:51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341	서울31아75**	강*신	서울특별시	2024-01-23 15:55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42	09부78**	김*옥	경기도 수원시	2024-01-23 16:5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43	09부78**	김*옥	경기도 수원시	2024-01-23 16:57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44	53우03**	김*주	인천광역시	2024-01-23 17:21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345	경기34바49**	김*일	경기도 의정부시	2024-01-23 17:24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46	238버14**	A*B*O*H*N*	경기도 부천시	2024-01-23 17:3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347	840러65**	이*하	경기도 고양시	2024-01-23 17:4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48	86고87**	김*중	경기도 의정부시	2024-01-23 17:4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349	247나61**	박*훈	서울특별시	2024-01-23 17:44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50	서울31바58**	황*리	서울특별시	2024-01-23 17:4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351	286모79**	유*훈	서울특별시	2024-01-23 17:52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52	48수76**	김*전	서울특별시	2024-01-23 17:5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53	56무37**	박*화	경기도 광주시	2024-01-23 18:0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354	13가27**	김*환	서울특별시	2024-01-23 18:2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55	185러37**	박*주	서울특별시	2024-01-23 18:2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356	45오36**	박*운	서울특별시	2024-01-23 19:14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57	84주20**	설*종	경기도 화성시	2024-01-23 19:19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358	138주99**	임*하	경기도 수원시	2024-01-23 19:3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59	서울31사33**	이*준	서울특별시	2024-01-23 19:4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60	05머40**	J*N*H*N*I	서울특별시	2024-01-23 19:4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61	05서58**	이*호	경기도 양주시	2024-01-23 20:3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62	67수64**	최*락	서울특별시	2024-01-23 20:4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63	14조11**	최*열	경상북도 김천시	2024-01-23 21:1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364	15더73**	(*)*텍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4-01-23 21:2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365	249러84**	김*희	서울특별시	2024-01-23 23:2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366	136어23**	한*자	서울특별시	2024-01-24 03:0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367	193허67**	김*성	경기도 고양시	2024-01-24 05:1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368	경기90배16**	김*태	경기도 양주시	2024-01-24 07:1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369	88보36**	하*자	인천광역시	2024-01-24 07:2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70	359머39**	L*N*U*N	서울특별시	2024-01-24 07:2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71	225라28**	X*Z*O*G*H*	충청남도 아산시	2024-01-24 07:2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72	150보86**	윤*주	서울특별시	2024-01-24 07:3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73	경기84바67**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	2024-01-24 07:46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74	361노75**	정*국	경기도 양평군	2024-01-24 07:49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75	56러86**	최*근	경기도 고양시	2024-01-24 07:5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76	26너82**	박*복	서울특별시	2024-01-24 08:3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77	서울31바36**	이*희	서울특별시	2024-01-24 08:43	올림픽대교남단교차로~올림픽회 관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78	서울31자67**	김*웅	서울특별시	2024-01-24 08:43	성내교	전용차로위반	50,000
379	서울31사63**	조*연	서울특별시	2024-01-24 08:43	올림픽대교남단교차로~올림픽회 관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80	134나30**	권*인	서울특별시	2024-01-24 09:01	반포역~논현역	전용차로위반	50,000
381	67라32**	김*섭	경기도 광명시	2024-01-24 09:2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82	69수47**	이*희	서울특별시	2024-01-24 09:31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83	845모99**	신*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2024-01-24 09:3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384	12보50**	홍*영	경기도 광주시	2024-01-24 09:4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85	144보69**	배*윤	서울특별시	2024-01-24 09:5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386	47어30**	김*지	서울특별시	2024-01-24 09:5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87	177루10**	김*영	경기도 김포시	2024-01-24 11:2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88	61모74**	강*옥	대전광역시	2024-01-24 11:28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89	65무63**	유*렬	서울특별시	2024-01-24 12:3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390	202보37**	이*숙	경기도 시흥시	2024-01-24 12:5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91	202보37**	이*숙	경기도 시흥시	2024-01-24 12:5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92	서울36바21**	윤*상	경기도 의정부시	2024-01-24 14:01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393	289부59**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2024-01-24 14:3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94	367보43**	J*N*I*G*H*	경기도 시흥시	2024-01-24 15:4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95	인천32바17**	최*구	인천광역시	2024-01-24 15:5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96	19오33**	박*업	경기도 이천시	2024-01-24 15:5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97	서울31아65**	엄*영	서울특별시	2024-01-24 15:5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98	101오30**	주*희*세*푸*	경기도 시흥시	2024-01-24 16:4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99	276고55**	이*철	서울특별시	2024-01-24 16:43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400	26오36**	이*숙	서울특별시	2024-01-24 17:0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401	34도51**	김*민	서울특별시	2024-01-24 17:1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02	184오47**	유*심	서울특별시	2024-01-24 17:1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03	344루50**	유*자	서울특별시	2024-01-24 17:16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404	180다90**	장*숙	서울특별시	2024-01-24 17:20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05	55거49**	최*미	서울특별시	2024-01-24 17:2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406	224마83**	김*호	서울특별시	2024-01-24 17:3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407	321너68**	박*수	서울특별시	2024-01-24 17:31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08	160하99**	조*준	서울특별시	2024-01-24 17:3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09	83조39**	S*네*웍*(*)	인천광역시	2024-01-24 17:3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10	83조39**	S*네*웍*(*)	인천광역시	2024-01-24 17:4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11	56보31**	박*범	서울특별시	2024-01-24 17:4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12	36부80**	이*림	경기도 남양주시	2024-01-24 18:16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13	272너68**	최*성	경상북도 포항시	2024-01-24 18:3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14	110거88**	홍*탁	서울특별시	2024-01-24 18:35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15	21로75**	최*석	서울특별시	2024-01-24 18:4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416	서울91자66**	최*철	서울특별시	2024-01-24 18:4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417	61라01**	최*규	경기도 용인시	2024-01-24 18:4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418	60라05**	김*민	경기도 고양시	2024-01-24 18:5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19	30저12**	권*경	서울특별시	2024-01-24 18:5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20	42거82**	강*희	서울특별시	2024-01-24 19:08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21	113머97**	김*민	부산광역시	2024-01-24 19:1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422	128노11**	신*헌	서울특별시	2024-01-24 19:1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23	89마87**	심*섭	경기도 시흥시	2024-01-24 19:2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24	01머45**	이*옥	서울특별시	2024-01-24 19:22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425	17마50**	전*근	경기도 구리시	2024-01-24 19:3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426	312러27**	이*경	경기도 고양시	2024-01-24 19:5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27	42조81**	양*국	서울특별시	2024-01-24 19:5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428	61버70**	김*돌	경기도 용인시	2024-01-24 19:5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429	388보60**	임*화	충청북도 청주시	2024-01-24 20:02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430	139버78**	권*숙	경기도 남양주시	2024-01-24 20:05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31	93고20**	최*혁	서울특별시	2024-01-24 20:28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432	128호82**	애*메*솔*션*식*사	서울특별시	2024-01-24 20:46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433	389다16**	이*호	경기도 의왕시	2024-01-24 22:1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434	43수08**	김*건	서울특별시	2024-01-24 22:1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435	경기83사64**	강*석	경기도 김포시	2024-01-25 00:5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436	서울32바86**	조*국	서울특별시	2024-01-25 00:5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437	802루71**	주*회*와*비*지*어	경기도 평택시	2024-01-25 06:17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38	123조11**	이*용	경기도 고양시	2024-01-25 07:2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39	91우06**	박*규	경기도 화성시	2024-01-25 08:0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40	288거31**	강*주	경기도 고양시	2024-01-25 08:1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41	137나94**	최*정	대전광역시	2024-01-25 08:1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42	111마98**	이*석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4-01-25 08:2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443	서울31사45**	이*헌	경기도 의정부시	2024-01-25 08:3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44	32머57**	김*민	부산광역시	2024-01-25 08:3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45	10어15**	박*미	서울특별시	2024-01-25 08:3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46	32머57**	김*민	부산광역시	2024-01-25 08:3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47	16너87**	하*효	서울특별시	2024-01-25 08:38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448	54조52**	윤*남	경기도 남양주시	2024-01-25 08:4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49	32머57**	김*민	부산광역시	2024-01-25 08:5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450	경기34바43**	김*성	경기도 의정부시	2024-01-25 08:5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451	93라05**	황*철	서울특별시	2024-01-25 09:0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52	233구96**	김*진	경기도 의정부시	2024-01-25 09:2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53	268너43**	최*환	경기도 하남시	2024-01-25 09:2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54	36버57**	김*석	경기도 성남시	2024-01-25 09:3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455	35어41**	최*석	서울특별시	2024-01-25 09:3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56	30가71**	주*회*쓰*케*테*	경기도 시흥시	2024-01-25 10:1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457	19누10**	이*호	서울특별시	2024-01-25 10:2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458	16부74**	고*선	서울특별시	2024-01-25 10:39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59	64마69**	김*훈	경기도 수원시	2024-01-25 11:16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60	서울31아53**	안*범	서울특별시	2024-01-25 11:23	서울 노원구 상계동 744	전용차로위반	50,000
461	80거19**	Z*E*G*I*G*H*	서울특별시	2024-01-25 11:23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62	55누47**	박*영	서울특별시	2024-01-25 11:26	서울 노원구 상계동 744	전용차로위반	50,000
463	85도06**	윤*석	서울특별시	2024-01-25 11:32	서울 노원구 상계동 744	전용차로위반	50,000
464	22더35**	임*희	서울특별시	2024-01-25 12:11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465	35러13**	홍*환	경기도 의왕시	2024-01-25 12:48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66	223모95**	김*훈	경기도 의정부시	2024-01-25 12:5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467	서울31사86**	안*영	서울특별시	2024-01-25 13:1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68	67어87**	김*식	경기도 양평군	2024-01-25 13:5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69	51우10**	임*국	경기도 남양주시	2024-01-25 14:2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470	07루04**	김*윤	서울특별시	2024-01-25 14:3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471	04버71**	조*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4-01-25 15:16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72	04버71**	조*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4-01-25 15:1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73	04버71**	조*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4-01-25 15:18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74	37노02**	이*윤	서울특별시	2024-01-25 15: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75	240어14**	임*근	서울특별시	2024-01-25 16:0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76	240어14**	임*근	서울특별시	2024-01-25 16:0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77	서울32자26**	김*홍	서울특별시	2024-01-25 16:33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478	29버71**	장*수	경기도 수원시	2024-01-25 16:3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79	109마82**	구*우	인천광역시	2024-01-25 17:0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480	37머11**	진*수	경기도 양주시	2024-01-25 17:1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81	380고22**	박*규	서울특별시	2024-01-25 17:2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482	26너82**	박*복	서울특별시	2024-01-25 17:3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83	152다97**	이*춘	경기도 남양주시	2024-01-25 17:4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84	61오90**	서*정	경기도 부천시	2024-01-25 17:5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485	경기부천다07**	윤*섭	경기도 부천시	2024-01-25 17:56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전용차로위반	40,000
486	24수69**	씨*에*코*아*식*사	경상남도 창원시	2024-01-25 18:0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87	183러54**	이*호	경기도 시흥시	2024-01-25 18:0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88	38루52**	H*R*U*S*O*	서울특별시	2024-01-25 18:13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89	34호78**	제*에*치*트*주*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2024-01-25 18:1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490	60무07**	S*N*S*U*G*O*N	서울특별시	2024-01-25 18:1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491	14거36**	최*웅	경기도 고양시	2024-01-25 18:2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92	55소06**	전*영	경기도 광명시	2024-01-25 18:24	F45트레이닝여의도~수정아파트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93	18마96**	류*하	서울특별시	2024-01-25 18:24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94	서울35바66**	백*목	서울특별시	2024-01-25 18:26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95	서울35아17**	이*균	서울특별시	2024-01-25 18:30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96	서울35아17**	이*균	서울특별시	2024-01-25 18:3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97	강원81자30**	윤*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4-01-25 18:3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98	242도14**	정*식	서울특별시	2024-01-25 18:3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499	경기90아60**	박*호	경기도 양주시	2024-01-25 18:3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500	249러27**	허*선	서울특별시	2024-01-25 18:40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01	69하03**	나*주*회*	서울특별시	2024-01-25 18:5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02	144더16**	이*휘	서울특별시	2024-01-25 19:0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03	08모83**	박*두	서울특별시	2024-01-25 19:0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04	195러62**	박*화	경기도 용인시	2024-01-25 19:1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505	29서25**	C*A*B*R*E*I*M*U*I*E	경기도 평택시	2024-01-25 19:2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506	15다58**	김*연	경기도 의왕시	2024-01-25 19:2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07	390다89**	T*O*A*E*S*N*R	경기도 수원시	2024-01-25 19:3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508	222호13**	배*범	경기도 남양주시	2024-01-25 19:38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09	85우69**	주*회*에*에*치*설	인천광역시	2024-01-25 19:4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510	154가73**	조*희	서울특별시	2024-01-25 19:4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11	142어22**	박*화	경기도 시흥시	2024-01-25 19:5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12	11너03**	박*희	서울특별시	2024-01-25 19:5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13	06거87**	정*수	경기도 안양시	2024-01-25 19:58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514	172어24**	김*은	서울특별시	2024-01-25 20:0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515	197오88**	J*N*I*N*E*G	경기도 광주시	2024-01-25 20:0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516	10고90**	K*M*A*I*D*E*U*G	서울특별시	2024-01-25 20:0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517	경기35바41**	이*재	경기도 시흥시	2024-01-25 20:1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18	서울32자60**	조*환	서울특별시	2024-01-25 20:3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19	15모28**	한*정	경기도 안산시	2024-01-25 20:43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520	80무73**	이*규	서울특별시	2024-01-25 20:4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612호

시유특허권 처분 공고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의 직무발명을 통해 발굴된 시유특허권(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해외특허권)의 사업화로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6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유 시유특허권에 대한 실시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유특허권의 정의
○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의 직무발명으로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입니다.

2. 처분대상 시유특허권(처분종류: 통상실시권 허락)
가. 국내 시유특허권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1	미세플라스틱 입자 포집기	10-2623676	통상실시권 허락	2024-01-08
특허	2	소방용 라이트 라인 장치	10-2623673	통상실시권 허락	2021-01-08
특허	3	유출 트러프에 설치되는 이물질 필터링 장치	10-2623229	통상실시권 허락	2024-01-08
특허	4	안전덮개	10-2605569	통상실시권 허락	2023-11-20
특허	5	인공지능을 이용한 미세먼지 예측시스템	10-2594820	통상실시권 허락	2023-10-24
특허	6	높이 상승 기능을 갖는 투신자살 방지용 안전휀스	10-2554348	통상실시권 허락	2023-07-06
특허	7	휴대용 자동심폐소생장치	10-2554486	통상실시권 허락	2023-07-06
특허	8	소방차 자체분무 자동화시스템	10-2577798	통상실시권 허락	2023-09-07
특허	9	소방호스의 고층 이송을 위한 호스 지지 중계기	10-2572494	통상실시권 허락	2023-08-25
특허	10	미세먼지 농도 측정을 위한 광학 센서의 교정 방법 및 장치	10-2390910	통상실시권 허락	2022-04-21
특허	11	휴대 가능한 연기차단어셈블리	10-2478647	통상실시권 허락	2022-12-13
특허	12	개선된 수중교각 청소장치	10-2079903	통상실시권 허락	2020-02-14
특허	13	질식소화포를 상단에 구비한 튜브형 전기차 화재진압장치	10-2539154	통상실시권 허락	2023-05-26
특허	14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장치	10-2491008	통상실시권 허락	2023-01-17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15	하수슬러지 소각재의 성분을 제어하는 방법	10-2485386	통상실시권 허락	2023-01-02
특허	16	휴대 가능한 연기차단어셈블리	10-2478647	통상실시권 허락	2022-12-13
특허	17	영양염류의 회수 및 처리가 가능한 반류수 처리시스템	10-2477025	통상실시권 허락	2022-12-08
특허	18	부상식 수조형 전기차 화재진압장치	10-2475355	통상실시권 허락	2022-12-02
특허	19	활성탄 팽창률 측정장치	10-2475354	통상실시권 허락	2022-12-02
특허	20	온도센서를 구비한 소방장갑	10-2475353	통상실시권 허락	2022-12-02
특허	21	차량화재진압용 상방방사관창	10-2474445	통상실시권 허락	2022-12-01
특허	22	보행자용 바닥 신호등 장치	10-2460291	통상실시권 허락	2022-10-25
특허	23	원터치 폴딩형 질식소화포 전기차량 화재진압장치 (차량화재진압을위한폴딩형소방장비)	10-2452851	통상실시권 허락	2022-10-05
특허	24	잉여슬러지를 반류수 및 하수처리공정으로 공급하는 하수 처리 장치 (하수의생물학적처리공정에서발생한잉여슬러지를이용한하수처리시스템)	10-2431186	통상실시권 허락	2022-08-05
특허	25	드론 스테이션이 구비된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모듈 결합형 스마트 폴	10-2429271	통상실시권 허락	2022-08-01
특허	26	전기차 충전소가 구비된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모듈 결합형 스마트 폴	10-2429277	통상실시권 허락	2022-08-01
특허	27	관창사다리 (내부수관을포함하는소방용사다리)	10-2427899	통상실시권 허락	2022-07-27
특허	28	차고 초고속 수관건조장치 (소방용수관건조장치)	10-2426685	통상실시권 허락	2022-07-25
특허	29	배수지 유출 유량 산출시스템	10-2424110	통상실시권 허락	2022-07-19
특허	30	안전 방화 셔터	10-2420227	통상실시권 허락	2022-07-08
특허	31	상수도관 잔류염소 제어방법	10-2415636	통상실시권 허락	2022-06-28
특허	32	교량 추락사고 방지장치	10-2401106	통상실시권 허락	2022-05-18
특허	33	미세먼지 농도 측정을 위한 광학 센서의 교정 방법 및 장치	10-2390910	통상실시권 허락	2022-04-21
특허	34	전기안전 교육장비	10-2390914	통상실시권 허락	2022-04-21
특허	35	중앙분리대 자동개폐 시스템	10-2337001	통상실시권 허락	2021-12-03
특허	36	안전난간 구조체	10-2325549	통상실시권 허락	2021-11-08
특허	37	전자동 소화전 개폐장치	10-2318503	통상실시권 허락	2021-10-22
특허	38	지주결합용 블록형 함체	10-2314505	통상실시권 허락	2021-10-13
특허	39	구조용 리프트 장치	10-2313671	통상실시권 허락	2021-10-12
특허	40	수질사고 방지 시스템	10-2313085	통상실시권 허락	2021-10-08
특허	41	세척브러쉬를 이용한 상수도관 세척장치 및 세척방법	10-2300901	통상실시권 허락	2021-09-06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42	고전압을 이용한 동물 포획장치	10-2298039	통상실시권 허락	2021-08-30
특허	43	소방 훈련용 장치	10-2295387	통상실시권 허락	2021-08-24
특허	44	여과지 내의 활성탄층 역세척 시스템	10-2294957	통상실시권 허락	2021-08-23
특허	45	하수처리장치의 응집제 분산 투입방법	10-2289906	통상실시권 허락	2021-08-09
특허	46	하수관로 메탄가스 폭발 실험장비	10-2283462	통상실시권 허락	2021-07-23
특허	47	고압에어를 이용한 상수도권 세척장치	10-2259539	통상실시권 허락	2021-05-27
특허	48	지하철 영상효과 및 급정거 체험시스템	10-2256610	통상실시권 허락	2021-05-20
특허	49	도시형 침수 체험 시스템	10-2252131	통상실시권 허락	2021-05-10
특허	50	보수 핀을 이용하여 오염을 제어하는 여과막 모듈	10-2247721	통상실시권 허락	2021-04-27
특허	51	염화칼슘 등 제설제에 의한 피해방지 장치	10-2229151	통상실시권 허락	2021-03-11
특허	52	소화기호스 자동올림장치를 구비한 소화기	10-2209001	통상실시권 허락	2021-01-22
특허	53	소화기호스 자동 올림을 위한 안전핀을 구비한 소화기	10-2209004	통상실시권 허락	2021-01-22
특허	54	하수 처리 장치	10-2200986	통상실시권 허락	2021-01-05
특허	55	이동자 흡식 부유물 제거장치	10-1642443	통상실시권 허락	2020-12-09
특허	56	하수슬러지의 인 회수용 필터프레스 장치 및 이를 통해 초음파를 이용한 인 회수 방법	10-2191378	통상실시권 허락	2020-12-03
특허	57	하수 처리장치에 사용되는 발전 및 발열 시스템	10-2188934	통상실시권 허락	2020-12-01
특허	58	휴대형 스마트 소방장비	10-2188041	통상실시권 허락	2020-11-25
특허	59	매설관 모니터링 장치	10-2185326	통상실시권 허락	2020-11-23
특허	60	소방차량충돌 방지장치 및 소방차량 충돌방지 제어방법	10-2184190	통상실시권 허락	2020-11-23
특허	61	아우트리거 설치 위치의 표시가 가능한 특수차	10-2184187	통상실시권 허락	2020-11-23
특허	62	분사장치	20-0492709	통상실시권 허락	2020-11-17
특허	63	압축장치를 일체로 구비한 로프 발사총	10-2181838	통상실시권 허락	2020-11-17
특허	64	전동식 압축기를 구비한 로프 발사총	10-2181877	통상실시권 허락	2020-11-02
특허	65	올림식 사다리 지지 장치 및 이를 설치하는 설치 방법	10-2175339	통상실시권 허락	2020-10-20
특허	66	시인성이 향상된 안전핀을 구비한 소화기	10-2169987	통상실시권 허락	2020-10-20
특허	67	전자석 체결구조를 구비하여 공기통 교환이 용이한 공기호흡기	10-2169987	통상실시권 허락	2020-10-20
특허	68	링크 구조를 구비하여 공기통 교환이 용이한 공기호흡기	10-2169988	통상실시권 허락	2020-10-16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69	상수도관 내부 수중 촬영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상수도관 내부 촬영 방법	10-2169121	통상실시권 허락	2020-10-16
특허	70	부식평가 실험 장치	10-2169118	통상실시권 허락	2020-07-06
특허	71	다기능 소방호스	10-2133095	통상실시권 허락	2020-07-03
특허	72	해충 제거 장치	10-2132565	통상실시권 허락	2020-05-27
특허	73	자동 개폐구조를 갖는 그레이팅	10-2118165	통상실시권 허락	2020-05-14
특허	74	개선된 수중교각 청소장치	10-2079903	통상실시권 허락	2020-02-14
특허	75	영상통화 자동전환을 이용한 재난 신고 시스템 및 그방법	10-2113419	통상실시권 허락	2020-04-08
특허	76	질식소화포를 상단에 구비한 튜브형 전기차 화재진압장치	10-2539154	통상실시권 허락	2023-05-26
특허	77	부식 평가 시험 장치	10-2101126	통상실시권 허락	2020-04-02
특허	78	드론을 활용한 수중시설 안전점검 시스템	10-2099056	통상실시권 허락	2020-03-20
특허	79	오존 및 미세먼지가 제거되는 에어 클린 마스크	10-2094097	통상실시권 허락	2020-03-02
특허	80	혼화장치	10-2086256	통상실시권 허락	2020-02-20
특허	81	어깨 지지부 및 이를 포함하는 주들것 (1)	10-2074580	통상실시권 허락	2019-11-19
특허	82	교량의 배수 감시시스템	10-2044964	통상실시권 허락	2019-10-11
특허	83	일차 슬러지를 재순환하는 것을 이용한 하수 처리 장치	10-2020743	통상실시권 허락	2019-09-04
특허	84	환기용 필터장치	10-2018002	통상실시권 허락	2019-08-28
특허	85	발광 헬멧	10-2015243	통상실시권 허락	2019-08-21
특허	86	가림막 및 그 가림막을 이용한 들것	10-2006856	통상실시권 허락	2019-07-29
특허	87	포장체의 온도 측정장치 및 이를 이용한 포장체의 차열성능 평가방법 (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971609	통상실시권 허락	2019-04-17
특허	88	교량 무인 점검장치(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934490	통상실시권 허락	2018-12-26
특허	89	방수 겹이음 시공 공법 및 이를 위한 방수 겹이음 시공장치	10-1929499	통상실시권 허락	2018-12-10
특허	90	분할식 라이닝폼을 이용한 아치형 터널의 시공방법 (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906546	통상실시권 허락	2018-10-02
특허	91	변형 가능한 환자 이송 장비	10-1889068	통상실시권 허락	2018-08-09
특허	92	비상 탈출 장치	10-1881455	통상실시권 허락	2018-07-18
특허	93	맨홀 덮개 개폐 장치	10-1865366	통상실시권 허락	2018-05-31
특허	94	고내구성 급경화 상온식 균열 보수제 제조방법 시공 방법	10-1864547	통상실시권 허락	2018-05-29
특허	95	고내구성 급경화 상온식 균열 보수제 제조방법	10-1864548	통상실시권 허락	2018-05-29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96	드레인 밸브	10-1861844	통상실시권 허락	2018-05-21
특허	97	프리스트레스 도입형 강재 및 이의 제작방법 (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798416	통상실시권 허락	2017-11-10
특허	98	밸브 상태 확인장치	10-1847732	통상실시권 허락	2018-04-04
특허	99	비산측정용 고효율 시료포집 장치	10-1824130	통상실시권 허락	2018-01-25
특허	100	하수관로 물 돌리기 시스템	10-1814880	통상실시권 허락	2017-12-27
특허	101	칼슘제를 이용한 수돗물 처리 시스템 및 방법	10-1805350	통상실시권 허락	2017-11-29
특허	102	소방용 스탠드 파이프	10-1796386	통상실시권 허락	2017-11-03
특허	103	유지관리가 용이한 프리캐스트 신축이음장치 및 시공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785624	통상실시권 허락	2017-09-29
특허	104	하수슬러지 소각재로부터 인(P)의 회수 방법	10-1785242	통상실시권 허락	2017-09-28
특허	105	배출수지 순차제어 시스템 및 방법	10-1783095	통상실시권 허락	2017-09-22
특허	106	가로등 부하선로 측정장치 및 그 방법	10-1772823	통상실시권 허락	2017-08-23
특허	107	도로포장용 차열성 도료조성물	10-1754943	통상실시권 허락	2017-07-12
특허	108	역류 방지용 수도 미터기(서울시 지역 제한)	10-1739892	통상실시권 허락	2017-05-19
특허	109	환자 이송용 들것	10-1714316	통상실시권 허락	2017-03-02
특허	110	조류퇴치장치	10-1743707	통상실시권 허락	2017-05-30
특허	111	다기능 안전벨트	10-1723634	통상실시권 허락	2017-03-30
특허	112	심폐소생술 실습장치 (2)	10-1705745	통상실시권 허락	2017-02-06
특허	113	복합 프로파일 및 이를 구비한 지주구조물	10-1683630	통상실시권 허락	2016-12-01
특허	114	출동정보전달 시스템	10-1567241	통상실시권 허락	2015-11-02
특허	115	등기구	10-1696149	통상실시권 허락	2017-01-06
특허	116	중온화 펠렛형 아스팔트용 박리방지제 조성물 및 제조 방법, 이를 이용한 수분저항성이 우수한 중온화 아스팔트 혼합물	10-1687114	통상실시권 허락	2016-12-09
특허	117	분할식 라이닝폼을 이용한 아치형 터널의 시공방법	10-1687308	통상실시권 허락	2016-12-12
특허	118	다기능 안전면체	10-1692524	통상실시권 허락	2016-12-28
특허	119	다기능 구조낭	10-1674165	통상실시권 허락	2016-11-02
특허	120	물 흐름 감지형 제수밸브	10-1643173	통상실시권 허락	2016-07-21
특허	121	이동자 흡식 부유물 제거장치	10-1642443	통상실시권 허락	2016-07-19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122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출동 지령 전달 시스템	10-1614510	통상실시권 허락	2016-04-15
특허	123	심폐소생술 실습장치(1)	10-1610289	통상실시권 허락	2016-04-01
특허	124	인터페이스 호환성을 가진 모바일 웹 페이지 생성 장치 및 제공 시스템	10-1592496	통상실시권 허락	2016-02-01
특허	125	흙 콘크리트 조성물(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575791	통상실시권 허락	2015-12-02
특허	126	무장애 스마트 통신 장치 및 그 방법	10-1574201	통상실시권 허락	2015-11-27
특허	127	호흡면체 직결 공기정화용 어댑터	10-1551675	통상실시권 허락	2015-09-03
특허	128	물 유출 지연 장치	10-1551672	통상실시권 허락	2015-09-03
특허	129	배수지용 수돗물 재담수 시스템	10-1543736	통상실시권 허락	2015-08-05
특허	130	흉부 압박 시스템	10-1532418	통상실시권 허락	2015-06-23
특허	131	야간 관측이 용이한 하천 수위 측정장치	10-1519592	통상실시권 허락	2015-05-06
특허	132	플라스터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514809	통상실시권 허락	2015-04-17
특허	133	가교형 받침 구조물의 시공방법	10-1511265	통상실시권 허락	2015-04-06
특허	134	정수 슬러지를 재활용한 다공성 조습보드용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다공성 조습보드의 제조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478422	통상실시권 허락	2014-12-24
특허	135	중온 저소음 아스팔트용 첨가제 및 첨가제가 포함된 중온 저소음 아스팔트 혼합물	10-1424759	통상실시권 허락	2014-07-23
특허	136	정수처리 공정에서 염소투입량 결정방법	10-1400950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22
특허	137	용적확장형 캐리어	10-1400949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22
특허	138	장거리방수용 방수포	10-1395664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특허	139	구명장치	10-1395669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특허	140	토석류 저감 장치	10-1395667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특허	141	통합건설 정보관리 시스템	10-1395665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특허	142	고분자를 이용하여 알갱이 형태로 가공한 안료 및 이를 포함하는 장수명 칼라 아스팔트 조성물 (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392414	통상실시권 허락	2014-04-29
특허	143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및 이동단말기	10-1345266	통상실시권 허락	2013-12-19
특허	144	방화커튼장치	10-1343047	통상실시권 허락	2013-12-12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145	내식성이 향상되는 수도시설용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의 용접부 후처리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309980	통상실시권 허락	2013-09-11
특허	146	휴대용 검사장치	10-1279624	통상실시권 허락	2013-06-21
특허	147	굴착방지 가변형 제수밸브	10-1279625	통상실시권 허락	2013-06-21
특허	148	국지도로용 광방향성 반사블록을 구비한 BUG제어 LED조명등(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259539	통상실시권 허락	2013-04-24
특허	149	수용액 내 암모니아성질소의 측정방법	10-1244614	통상실시권 허락	2013-03-11
특허	150	요동방지 호스지지체	10-1234541	통상실시권 허락	2013-02-13
특허	151	투수포장 구조체	10-1225072	통상실시권 허락	2013-01-16
특허	152	오거장비용 가림막 자동화 장치 (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224693	통상실시권 허락	2013-01-15
특허	153	수도관용 동결 해빙못 시공구조	10-1205468	통상실시권 허락	2012-11-21
특허	154	유지보수 발판이 구비된 도로 전광표시	10-1197458	통상실시권 허락	2012-10-30
특허	155	DMP 개질아스팔트 및 그 제조방법	10-1195201	통상실시권 허락	2012-10-22
특허	156	급수관 구경확대를 위한 새들붙이 분수전 무단수 차단장치	10-1195199	통상실시권 허락	2012-10-22
특허	157	상수도용 자석 부착형 스트레이너	10-1195200	통상실시권 허락	2012-10-22
특허	158	DMP 개질 아스팔트를 사용한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10-1188092	통상실시권 허락	2012-09-26
특허	159	목조 건축물의 적심층 화재진압용 분사노즐을 구비한 분사건	10-1188064	통상실시권 허락	2012-09-26
특허	160	복합형 빗물받이 뚜껑 및 그 시공구조	10-1188005	통상실시권 허락	2012-09-26
특허	161	정수지 또는 배수지 내에서 유수지 정체부 형성을 방지하는 배플	10-1179008	통상실시권 허락	2012-08-27
특허	162	수도계량기 카운터 걸림 검사정치	10-1179023	통상실시권 허락	2012-08-27
특허	163	전력절감을 위한 맥동식침전지 운영 방법	10-1178601	통상실시권 허락	2012-08-24
특허	164	수증기 응결이 발생하지 않는 계량기의 카운터 제조방법	10-1164601	통상실시권 허락	2012-07-04
특허	165	표면장력 저감을 이용한 막의 완결성 시험방법	10-1164600	통상실시권 허락	2012-07-04
특허	166	투수포장재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장치 및 방법	10-1131767	통상실시권 허락	2012-03-23
특허	167	음식물 쓰레기통	10-1131124	통상실시권 허락	2012-03-15
특허	168	필지경계점 좌표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기 위한 방법	10-1090346	통상실시권 허락	2011-11-30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169	자가 공기호흡장치	10-1083726	통상실시권 허락	2011-11-09
특허	170	수영장 청소시스템	10-1081507	통상실시권 허락	2011-11-02
특허	171	제설제 재활용장치	10-1074857	통상실시권 허락	2011-10-12
특허	172	부유물 제거장치	10-1069375	통상실시권 허락	2011-09-26
특허	173	전염소 투입률 산출 시스템 및 방법	10-1043521	통상실시권 허락	2011-06-15
특허	174	무동력으로 초기 기동가능한 펌프 시스템	10-1042676	통상실시권 허락	2011-06-13
특허	175	침전슬러지 배출유동화 장치	10-1019206	통상실시권 허락	2011-02-24
특허	176	수도계량기 교체공구	10-1005335	통상실시권 허락	2010-12-24
특허	177	하수도 맨홀용 역지변	10-0994795	통상실시권 허락	2010-11-10
특허	178	바아형상의 파지부를 구비한 소화기	10-0982443	통상실시권 허락	2010-09-09
특허	179	방음벽 지주의 연결구조물	10-0976636	통상실시권 허락	2010-08-11
특허	180	펌프의 실링수 공급밸브	10-0970322	통상실시권 허락	2010-07-07
특허	181	후타재가 필요없는 교량용 핑거 조인트 결합 구조물	10-0957696	통상실시권 허락	2010-05-04
특허	182	이동식 소방호수 두루마리 장치	10-0955096	통상실시권 허락	2010-04-20
특허	183	다기능 세척장치	10-0952293	통상실시권 허락	2010-04-02
특허	184	정밀하게 부피를 잴 수 있는 일정용적을 갖는 용량코니칼 튜브	10-0947767	통상실시권 허락	2010-03-09
특허	185	수도관의 급속동결장치	10-0936841	통상실시권 허락	2010-01-06
특허	186	식생블록 녹화용 모듈	10-0925849	통상실시권 허락	2009-11-02
특허	187	누설방지장치	10-0922996	통상실시권 허락	2009-10-14
특허	188	잔류오존을 제거하는 상향류식 오존접촉조	10-0890246	통상실시권 허락	2009-03-17
특허	189	하수관거 차수로봇용 가물막이 수밀 패널(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886461	통상실시권 허락	2009-02-24
특허	190	약품 발생량 저감을 위한 슬러지 처리시스템	10-0834690	통상실시권 허락	2008-08-12
특허	191	수도의 절수장치	10-0848466	통상실시권 허락	2008-07-18
특허	192	2단 침지형 막여과조를 이용한 고도정수처리장치(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843656	통상실시권 허락	2008-06-27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193	약품 및 케익 발생량 저감을 위한 슬러지 처리 시스템	10-0852939	통상실시권 허락	2008-05-27
특허	194	미세먼지 청소차(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810152	통상실시권 허락	2008-02-27
특허	195	수도관의 부식억제 방법	10-0797847	통상실시권 허락	2008-01-18
특허	196	안정기 수납부가 형성된 보수용 커버를 갖는 가로등주	10-0796449	통상실시권 허락	2008-01-15
특허	197	자동제어를 이용한 선택적 전처리 막여과 고도처리장치 및 그 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791896	통상실시권 허락	2007-12-28
특허	198	미끄럼방지용 다짐롤러장치	10-0784031	통상실시권 허락	2007-12-03
특허	199	기초구조물과 분리결합이 용이한 가로등주	10-0775816	통상실시권 허락	2007-11-06
특허	200	빗물받이 받침대	10-0747772	통상실시권 허락	2007-08-02
특허	201	막분리 정수처리장치의 수질 등급코드를 이용한 운전모드 선택장치 및 그 운영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720140	통상실시권 허락	2007-05-14
특허	202	막분리를 이용한 고도정수처리장치의 막오염 지수 연속 모니터링에 의한 응집 전처리공정 제어장치 및 그 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720139	통상실시권 허락	2007-05-14
특허	203	신축이음장치의 고무씰 보호부재	10-0700947	통상실시권 허락	2007-03-22
특허	204	복공판(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665967	통상실시권 허락	2007-01-02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실용신안	1	제설재 살포장치용 비산방지장치	20-0486350	통상실시권 허락	2018-04-27
실용신안	2	대기전력 차단용 검전 플러그	20-0487241	통상실시권 허락	2018-08-20
실용신안	3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장치	20-0485115	통상실시권 허락	2017-11-22
실용신안	4	다짐도 평가장치	20-0485051	통상실시권 허락	2017-11-16
실용신안	5	소형 LED 식물재배기 자동관수장치	20-0484008	통상실시권 허락	2017-07-12
실용신안	6	친환경 교육용 원형 상자텃밭	20-0483156	통상실시권 허락	2017-04-04
실용신안	7	그레이팅 개폐기	20-0481637	통상실시권 허락	2016-10-19

실용신안	8	다기능 방화담요	20-0481506	통상실시권 허락	2016-10-19
실용신안	9	잔수제거용 호스말이	20-0480708	통상실시권 허락	2016-06-22
실용신안	10	소화기용 도구	20-0472691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디자인	1	휀스	30-1159841	통상실시권 허락	2022-04-12
디자인	2	휀스	30-1142145	통상실시권 허락	2021-12-10
디자인	3	저금통	30-1102997	통상실시권 허락	2021-03-30
디자인	4	창문 비상탈출용 브래킷(2)	30-0962210	통상실시권 허락	2018-06-21
디자인	5	창문 비상탈출용 브래킷(1)	30-0962209	통상실시권 허락	2018-06-21
디자인	6	상수도용 공기밸브 뚜껑	30-0908245	통상실시권 허락	2017-05-22
디자인	7	관이음매용 플랜지(거치대를 장착한 밸브)	30-0902760	통상실시권 허락	2017-04-07
디자인	8	맨홀받침 블록(1)(2)(매몰형 지하식 소화전 맨홀하부 기초블록)	30-0902711-0001/0002	통상실시권 허락	2017-04-07
디자인	9	수도계량기 보호함 보온재	30-0814722	통상실시권 허락	2015-09-18
디자인	10	수도용 가변 이형관(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30-0725734	통상실시권 허락	2014-01-13
디자인	11	가로등	30-0743445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디자인	12	가로등	30-0723292	통상실시권 허락	2013-12-26

○ 처분범위(공통)

· 실시기간 : 1년(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실시지역 : 대한민국 전역(또는 서울시)

· 실시내용 : 처분대상 시유특허권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

· 선정업체 : 서울시가 지정하는 업체로 선정

나. 해외 시유특허권

구분	연번	발명의명칭	국가	출원번호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비고
특허	1	흉부압박시스템	일본	JP/2015-036270	6391497	통상실시권 허락	2018-08-31	국내특허 10-1532418
특허	2	소화장치	중국	CN/201310158852 9	103372271	통상실시권 허락	2016-03-16	국내특허 10-1188064 10-1168210
특허	3	소화장치	일본	JP/2013-95853	5681748	통상실시권 허락	2015-01-16	국내특허 10-1188064 10-1168210
특허	4	잔류오존을 제거하는 상향류식 오존접촉조	미국	US/2011/0220558	8834711	통상실시권 허락	2014-09-16	국내특허 10-0890246
특허	5	잔류오존을 제거하는 상향류식 오존접촉조	중국	CN/200980122574	102066271	통상실시권 허락	2013-09-11	국내특허 10-0890246
특허	6	잔류오존을 제거하는 상향류식 오존접촉조	일본	JP/2011-512410	5356512	통상실시권 허락	2013-09-06	국내특허 10-0890246
특허	7	조류퇴치장치	미국	US/2014/631663	9655358	통상실시권 허락	2017-05-23	국내특허 10-1743707

○ 처분범위(공통)
- 실시기간 : 1년(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실시지역 : 각 시유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전역
- 실시내용 : 처분대상 시유특허권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
- 선정업체 : 서울시가 지정하는 업체로 선정

3. 신청방법
가. 기　간 : 수시접수 가능
나. 방　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창의행정담당관 주무관 정훈선 앞
- 이메일 : nusnuh@seoul.go.kr

다. 구비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첨부서류 포함)

4. 신청자격
○ 대상 시유특허권(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해외특허)의 실시 가능업체(사업자등록 업체)

5.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가. 계약대상자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업체로 선정한다.
나. 통상실시권에 대한 실시료는 계약기간 만료 후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 다만, 시유특허권 실시료 견적금액은 수의계약신청서에 기재한다.
※ 실시료 견적금액 =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제품의 판매단가×점유율×기본율

-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 기본율 : 기본 3%. 다만, 해당 시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 이상 4% 이하로 할 수 있음

라. 실시료 견적금액은 예상 금액을 기재할 뿐 계약기간 만료 후 실제납부금액과 다를 수 있다.

마. 공공성·사회성에 반하거나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한다.

사. 계약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법인등기부 등본(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 인감증명서(법인인경우 법인인감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시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이 된 이후에는 제품 홍보를 위해 계약자의 업체명, 대표자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일부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동의한다.

6. 계약 및 실시료 정산 방법

가. 계약대상자가 결정되면 계약대상자에 한해 실시를 위한 법인등기부 등본 등 제출서류를 확인한다.

나. 계약내용

1) 실시기간은 1년(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으로 한다.

※ 특허를 이용하여 설치되는 구조물 및 처리시스템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본 공고와 별도로 특허가 반영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 범위 내로 한다.

2)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및 제품의 판매단가 기준은 계약대상자가 제시한 수량 및 가격으로 한다.

3) 실시료 견적금액 산정식의 점유율은 계약 체결시 협의하여 확정한다.

4) 기본율은 기본 3%로 하여 년 단위로 실시료를 산정*한다.

*다만, 해당 시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 이상 4% 이하로 조정 할 수 있음

다. 지정된 처분범위와 견적금액을 내용으로 계약서 확인과 함께 서울시가 날인한 “시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2부)”에 계약대상자 날인하여 계약 체결을 완료한 후 시유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다.

라. 정산내용

1)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년 단위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제매출액을 확인하여 실시료 납부액을 산정한다.

※ 실시료 산정식 = 제품의 총판매수량×제품의 판매단가×점유율×기본율

- 총판매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수량을 합한 것
-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계약 체결시 확정함)
- 기본율 : 기본 3%(계약 체결시 확정함)

2) 실시료 정산시 실시실적 증빙서류로 총매출액 확인서류 1부, 제품별 판매실적 확인서류 1부를 제출한다.
3) 제품별 판매실적 확인서류는 해당제품의 재고자산수불부, 거래처별 납품내역서, 제품판매현황자료, 회계장부, 매출원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관할세무서장 확인을 받은 과세서류 등 공인된 제품별 판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
4) 실시료 매출액 미발생시 사유서 제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7. 문의처

○ 기타 시유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권 설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주무관 정훈선(☎ 02-2133-7828, nusnuh@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 의 계 약 신 청 서

(시유특허권 처분)

신청인	① 명칭(대표자)	(예시) (주) 기업체명 (홍길동)	②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④ 권 리 의 표 시		(예시) 특허등록 제10-0000000호		
⑤ 발명 (고안) 의 명칭				
⑥ 처 분 의 종 류		□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⑦ 실 시 범 위		기 간 : 202 . . - 202 . . (년간) 지 역 : 대한민국 전역 내 용 : 특허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실시행위		
⑧ 견 적 금 액		(예시) 금 960천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 6,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 년 월 일

신 청 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당해 시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사 업 계 획 서(예시)

1. 회 사 현 황

회 사 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홈페이지/e-mail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소유여부
본 사				
사 업 장				
업 종				
생산품목				

사업규모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순이익			
	종업원수(명)			

2. 회 사 연 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3. 대표자 이력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폰:	
경력	기간	기업체명	주생산 품목	최종직위

4. 인 원 현 황

부서명	경영직	사무직	영업직	…	합계
인사/총무					
생산					
영업					
⋮					
합계					

5. 시유특허 사업화 추진계획

① *당해 기술 분야에 대한 사업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

②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실 시 료 견 적 서

권리의 표시	특허 제 호
발명의 명칭	
실시료 견적금액	*금 960천원*

[예시]

◦ *실시료의 견적금액 산정근거*
-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100개*
- *제품의 판매단가/단위 : 400천원/개*
- *점유율 : 80%*
- *기본율 : 3%*
  ※ *해당제품의 경우 특허10-0000호의 기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바 점유율 80%로 신청함*

◦ *실시료 산출금액*
- *100개 × 400천원/개 × 80% × 3% =960천원*

※ 기재 요령

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2. 판 매 단 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
3. 점 유 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시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 본 율 : 3%

2024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이사 홍길동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613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4.2.29. ~ 2024.3.14.(14일간)

2. 처분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예강건설산업(주) (이영임)	건축공사업 건축-04-562	건설업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 실효(2023.3.28.)로 영업정지 후 영업정지 종료일(2024.1.3.)까지 보증가능금액 미보완	등록말소	2024.3.15.(금) 11:00 건설혁신과 청문실	주무관 현제영	법 제83조 제3호의2
(주)이투릭스종합건설 (박규리)	건축공사업 02-1576	건설업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 실효(2023.3.31.)로 영업정지 후 영업정지 종료일(2024.1.3.)까지 보증가능금액 미보완	등록말소	2024.3.15.(금) 15:00 건설혁신과 청문실	주무관 홍혜나	법 제83조 제3호의2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1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615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시행계획 공고

「교통안전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고 명 : 2024년도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시행계획

2. 공고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

3. 공고내용 : 2024년도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내용
   ○ 계획기간 : 2024년
   ○ 대상지역 : 서울시 전체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목표 및 방향
      - 2024년 교통안전 추진과제 및 부문별 추진계획
      - 사업별 투자계획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02-2133-247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629호

2024년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2024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5조 제3항,「도시정비법 시행령」제79조 제5항 제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53조 제2항부터 제6항 및「서울시 도시정비조례시행규칙」제22조부터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대상: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제외)

2. 지원금액: 24,800백만원

3. 대출이자: 신용대출 연 4.0%, 담보대출 연 2.5%
   가. 2024년 신규 융자 건은 위의 이자율 적용
   나. 2024년 이전 융자 건 중, 2024년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일부터 상환기간 연장되는 건은 위의 이자율 적용
   다. 2024년 이전 융자 건 중, 상환기간 내의 융자금은 기존 약정된 이자율 적용

4. 융자신청요건
   가.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나. 도시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 대상구역이 아닐 것
   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아래사항이 기재 되어 있을 것
   -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마.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조합업무지원) 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역일 것
   사. 2022.1.1. 이후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을 의결한 구역일 것
   아.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에 공동시행·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참여한 구역이 아닐 것

5. 융자금 한도: 단계별 필요경비의 80% 이내
  가. 담보대출: 한도 담보범위 내
  나. 신용대출
    -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 건축연면적: 차수별 공고일 직전 수립되어 고시된 정비계획의 지상 건축연면적

융자금 한도액					
건축연면적	20만㎡ 미만	20만㎡~30만㎡	30만㎡~40만㎡	40만㎡~50만㎡	50만㎡ 이상
추진위원회	10억원	12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조합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60억원

6. 융자금 용도: 설계비 등 용역비, 운영자금 등

7. 융자의 부적격 및 취소
  가. 융자지원을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경우
    1)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의 융자심사 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2) 수탁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하였거나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여신심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융자실행 전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4) 당해 공고에 기재된 융자금 대출이자율보다 낮은 고정이자율로 총회 의결을 받은 경우
  나. 융자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2) 정비구역 해제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4)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이 정비사업 시행방식을 지정개발자로 변경한 경우

8. 융자상환
  가. 상환방법: 원리금 일시상환
  나. 상환시기
    1) 융자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융자기간 만료 전 아래와 같은 때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 전
    3)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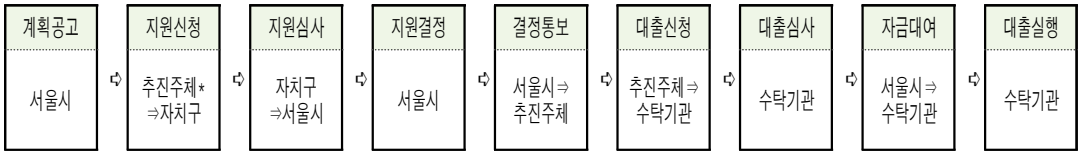
9. 융자기간

가. 융자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

나. 기간연장: 아래와 같은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
- 단, 융자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정비사업 시행방식이 공동시행,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 융자만기 시 연장 불가

10. 지원절차



*추진주체: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가. 신청서류 제출(추진위원회/조합→자치구)

1) 접 수 처 : 정비사업 구역 관할 자치구청 사업 담당부서

2) 접수기간 : 2024. 3. 19.(화) ~ 3. 27.(수)

11. 신청서류

가. 융자신청서 (공문_문서형식)

나. 융자금 집행계획서 (파일 형식)

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 사본 (파일 형식)

라. 융자금 집행내역 검증내역서 (파일 형식)

마. 조합 및 추진위원회 승인서(최초, 최종) 사본 (파일 형식)

바. 서울시 융자금 차입 안건이 포함된 총회 회의자료 및 의사록 사본 (파일 형식)

사. 상환 및 채무승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운영규정 (파일 형식)

아.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표준행정업무규정 (파일 형식)

12. 기타

가. 융자금 관련 모든 문서는 서울시 정보몽땅 시스템(조합업무지원)에 등재되어야 함

※ 자치구에 신청한 공문 및 신청서류(신청서, 집행계획, 집행내역)

나. 서울시 융자지원 결정 이후 90일 이내 수탁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2024.12.31. 이전 융자금 대출을 받아야 함

다. 수탁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금을 일괄 또는 분할지급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근거 법령에 따름

문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2133-720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규칙]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8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4년 2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금액

제7조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4항 중 “등)가 없는 사람으로”를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또는 퇴직공무원(퇴직 후 2년 이후)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표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표와 같이 한다.
별표 13을 별표와 같이 한다.
별지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삭 제>

[별표 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7조제2항 관련)

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교육행정	교육행정	-	변 호 사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 이 터		
공 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야 금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기 능 사 :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양사, 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 설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측 지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건축,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송통신	통 신 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전기, 철도전기신호,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조경	

※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제18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서비스계의 기술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가.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구분표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2년)	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년)

비 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6)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7)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나. 임용예정직렬(직류)별 자격증의 종류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데 이 터	
공 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공 업	금 속 야 금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시 설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지 적 측 지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방송통신	통 신 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조리	조리	**기 능 장 : 조리** **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 능 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	사역	기 능 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 능 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 계급 /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 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자(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자(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관리자(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제 작전문가
	데 이 터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근무·연구한 경력이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13]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1항 관련)

직렬 \ 계급 /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의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무	치과의사		
간호	간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시설	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신설 2006. 2. 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13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전자우편		복수국적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		휴대전화		

㊞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3531호, 2023. 6. 13.) 일부개정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행정안전부 규칙 2023. 8. 1.)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임용시험 응시자가 시험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환불 조항을 신설함(제7조제2항)

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추가 신설하고 이에 따른 별지 1(응시원서) 수입증지에 해당 문구를 포함하여 개정(제7조제3항, 별지 1호 개정)

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대상의 연령을 급수에 관계없이 18세로 통합함(제9조)

라.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위촉 제한 요건 추가(제13조제4항)

마.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규정 중 영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신, 정보처리,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던 가산점 부여 조항 및 [별표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를 삭제(제17조제1항 삭제, 별표 2 삭제)

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을 위하여 동 규칙에 임용점검위원회설치·운영 조항 신설(제18조의2 신설)

사.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자의 전산직렬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가산 자격증으로 전환(별표 3, 별표 13 개정)

아.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전산직렬 자격요건에 빅데이터분석 기사 자격증과 기능사 3종 추가 반영(별표5 표 개정)

자.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 중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근무경력에 대한 개정(‘3년의 범위’ 삭제)(별표5 비고 개정)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81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4년 2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등”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등”이라 한다)”을 “재산관리관등”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학교복합시설의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적 · 체계적인 학교복합시설 관리 ·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복합시설의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함(제2조제3항)

나.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재산관리관등’으로 수정(제4조제1항)

구 고 시

◈ 광진구고시 제2024-5호

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178호(1996.6.27.)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63호(2002.5.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89호 (2011.4.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33호(2019.7.18.)로 고시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및 보차혼용통로 신설에 따른 구역계 확장에 대하여 2023년 제3차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3.12.18.)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광 진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광진구 군자동 21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및 보차혼용통로 확대 신설을 통하여 공공에 상시 개방되어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화양동 18-1호	306,819.4	증)191	307,010.4	1996.6.27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178호)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구역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 : 306,819.4㎡→307,010.4㎡ 증) 191㎡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지내 통로 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확장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2	3	8	국지 도로	162	군자동373-8호	군자동98-21호	일반 도로	-	2002.5.8.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3	-	• 노선폐지 - 폭원: 8m, 연장: 162m	• 기 조성된 군자동 98-37번지와 연계하여 기부채납 도로가 아닌 공공에 상시 개방되어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후 보차혼용통로 신설

다.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결정내용		비고
	기 정	변 경	
공공보행통로	• 2개소	• 2개소	
보차혼용통로	• 12개소	• 13개소	1개소 신설
입체보행통로	• 3개소	-	3개소 폐지

※ 금회 신설된 보차혼용통로 1개소에 대해서 필지분할 후 도로로 지목변경 할 것

▨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보차혼용통로	• 1개소 신설	•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보차혼용통로 지정
입체보행통로	• 3개소 폐지	• 대지 단차 등에 따른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입체보행통로 폐지

3. 관계도면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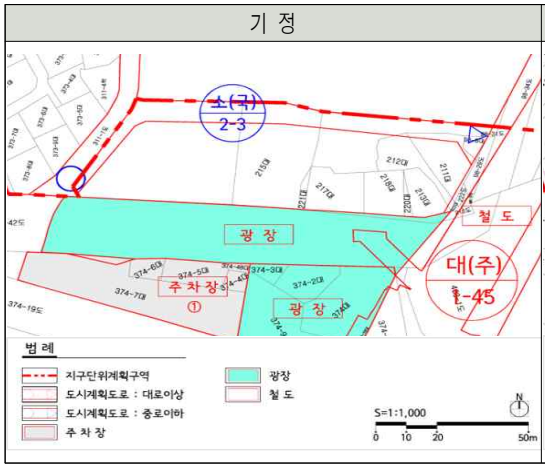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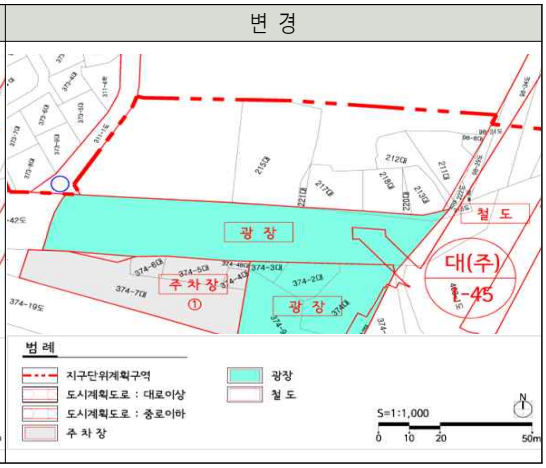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광진구청 도시계획과(☎450-7690)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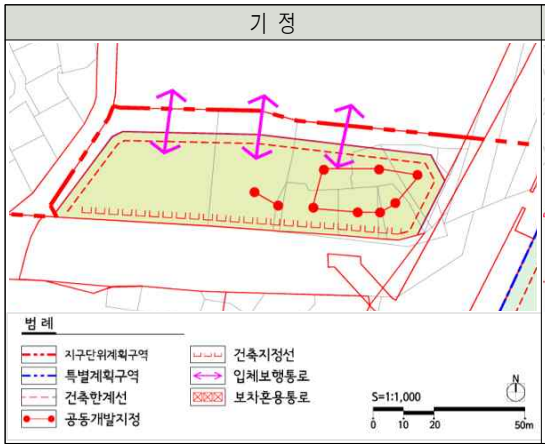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기 정	변 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도

기 정	변 경
	

■ 대지내 공지 및 통로계획 결정(변경)도

기 정	변 경
	

◈ 동작구고시 제2024-2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9-74호(2019.09.11.)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3-41호(2023.04.20.)로 공원조성계획(최초)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3-90호(2023.08.03.)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최초)인가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65-74번지 일대 민영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2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 상도동 산65-74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 내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나. 사업의 규모(변경)
1) 위 치 : (당초) 동작구 상도동 산65-113 일대
(변경) 동작구 상도동 906-2
2) 면 적 : (당초) 2,936㎡
(변경) 2,895.1㎡
3) 내 용 :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시설(어린이공원) 조성(변경없음)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시행자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대표 이종근)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라.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변경)
(당초)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24. 2. 29.까지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24. 3. 7.까지

마.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변경) : 붙임 참조

바. 공공시설 등의 귀속(변경)

1) 지방자치단체 무상귀속분: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2,895.1㎡

사.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74 3층, ☎02-820-9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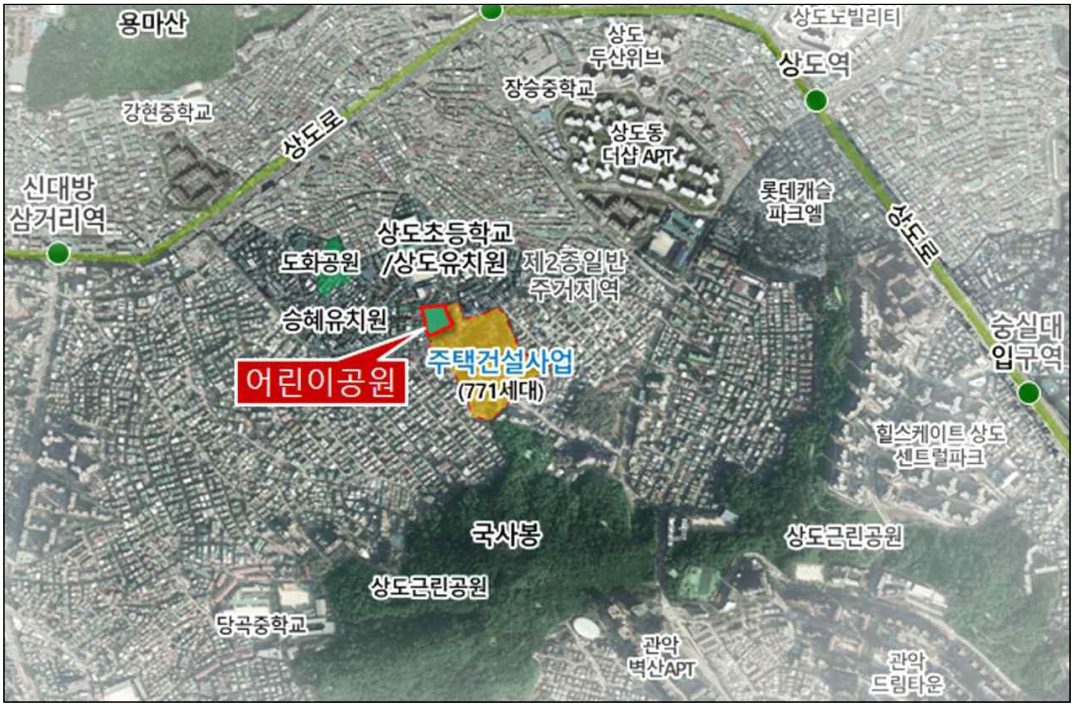
○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5필지		13,445	2,936						
1	상도동 238-20	대지	106	32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2	상도동 산65-49	임야	8,783	370	"	"				
3	상도동 산65-113	임야	3,523	2,245	"	"				
4	상도동 산65-114	임야	281	281	"	"				
5	상도동 산65-171	임야	752	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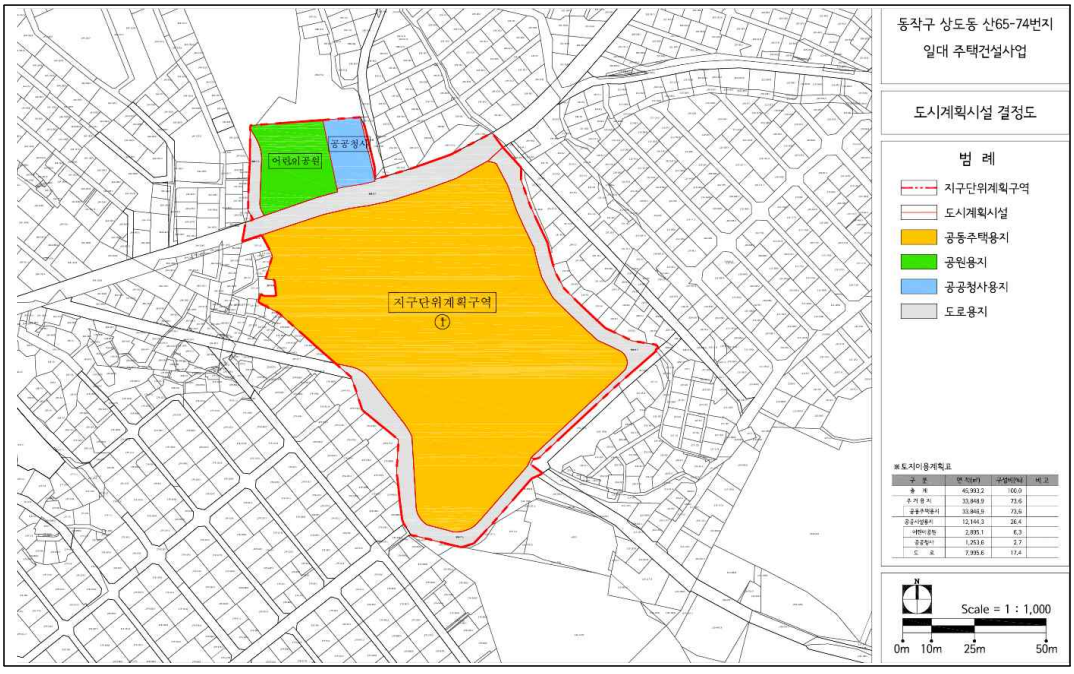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1필지		2,895.1	2,895.1						
1	상도동 906-2	공원	2,895.1	2,895.1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위 치 도(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 동작구고시 제2024-2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9-74호(2019.9.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0-32호(2020.4.2.)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1-24호(2021.2.1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3-24호(2023.3.2.)로 인가된 동작구 상도동 산65-74번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중로3-37, 소로1-1, 소로2-2, 소로3-4호선, 소로2-A호선 개설 및 공공청사 부지조성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 제88조 ·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 제97조 ·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시정비2과에 비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820-13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65-7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사업
- 사 업 명 칭 : 동작구 상도동 산65-74번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중로3-37, 소로1-1, 소로2-2, 소로3-4호선, 소로2-A호선 개설 및 공공청사 부지조성공사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3	37	12~16	국지도로	1,030 (188)	상도동 대3-18	상도동 중3-35	일반도로	총고722호 '36.12.26	
	소로	1	1	10	국지도로	288 (288)	상도동 산65-176	상도동 산65-190	일반도로	동작구고시 제2019-74호 '19.9.11	
	소로	2	2	8	국지도로	698 (233)	상도동 214	상도동 264-160	일반도로	서고75호 '90.3.20	
	소로	3	4	6~8	국지도로	151 (41)	상도동 235-40	상도동 236-7	일반도로	서고354호 '90.10.24	
	소로	2	A	8	국지도로	56 (56)	상도동 중3-37	상도동 238-2	보행자 우선도로	동작구고시 제2022-158호 '22.10.27	

라. 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법 인 명 칭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법인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 대표자성명 : 이 종 근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4. 2.29.
바.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 공공청사에 대해 관리청(동작구청)에 기부채납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붙임참조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정비2과(☎02-820-13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사업시행자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공공청사)사업
◯ 기정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고
				공 부 면 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합계	중로 3-37	소로 1-1	소로 2-2	소로 3-4	소로 2-A	공공청사						
1	동작구 상도동	210-333	구	116	16	-	16	-	-	-	-	동작구					
2	"	210-488	구	100	100	-	100	-	-	-	-	동작구					
3	"	210-489	도	87	87	-	87	-	-	-	-	동작구					
4	"	210-490	도	8	8	-	8	-	-	-	-	동작구					
5	"	210-491	도	205	205	-	205	-	-	-	-	동작구					
6	"	210-492	도	24	24	-	24	-	-	-	-	동작구					
7	"	210-493	도	23	23	-	23	-	-	-	-	동작구					
8	"	210-494	도	13	13	-	13	-	-	-	-	동작구					
9	"	210-425	대	70	70	-	70	-	-	-	-	기획재정부					
10	"	227-25	대	67	66	-	66	-	-	-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11	"	236-40	도	2	2	1	-	-	-	-	1	동작구					
12	"	236-41	도	52	52	52	-	-	-	-	-	동작구					
13	"	236-42	도	148	148	148	-	-	-	-	-	동작구					
14	"	237-2	대	18	18	18	-	-	-	-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15	"	237-3	대	66	66	66	-	-	-	-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16	"	237-4	대	3	3	3	-	-	-	-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17	"	237-45	대	20	20	20	-	-	-	-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18	"	237-44	대	11	11	11	-	-	-	-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합계	중로 3-37	소로 1-1	소로 2-2	소로 3-4	소로 2-A	공공청사						
19	"	238-20	대	106	74		-	-	-	74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20	"	산65-49	임	8,783	1,022	666	-	-	-	356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21	"	산65-52	임	2,479	503	-	503	-	-	-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22	"	산65-53	임	694	420	-	420	-	-	-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23	"	산65-74	임	18,971	1,830	274	1,556	-	-	-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24	"	산65-113	임	3,523	1,278	24	-	-	43	1	1,210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25	"	산65-272	도	10	10	-	-	10	-	-	-	동작구					
26	"	산65-171	임	752	744	744	-	-	-	-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27	"	산65-172	임	536	336	336	-	-	-	-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28	"	산65-173	임	305	305	305	-	-	-	-	-	서울특별시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29	"	산65-265	임	13	13	13	-	-	-	-	-	서울특별시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30	"	산65-266	임	13	13	13	-	-	-	-	-	서울특별시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31	동작구 상도동	산65-267	임	69	69	69	-	-	-	-	-	서울특별시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합계	중로 3-37	소로 1-1	소로 2-2	소로 3-4	소로 2-A	공공청사						
32	"	산65-262	임	27	27	27	-	-	-	-	-	서울특별시					
33	"	산65-263	임	382	382	382	-	-	-	-	-	서울특별시					
34	"	산65-264	임	139	139	137	2	-	-	-	-	서울특별시					
35	"	산65-177	임	116	116	108.9	-	-	-	-	7.1	서울특별시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36	"	산65-268	임	1	1	0.2	-	-	-	-	0.8	서울특별시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37	"	산65-269	임	2	2	1.9	-	-	-	-	0.1	서울특별시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38	"	산65-270	임	16	16	14	-	-	-	-	2	서울특별시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39	"	산65-178	임	437	437	-	-	437	-	-	-	동작구					
40	"	산65-258	임	102	102	-	-	102	-	-	-	동작구					
41	"	산65-259	임	3	3	-	-	3	-	-	-	동작구					
42	"	산65-181	임	92	92	-	-	92	-	-	-	동작구					
43	"	산65-182	임	184	184	-	-	184	-	-	-	서울특별시					
44	"	산65-271	임	78	78	-	-	78	-	-	-	서울특별시					
45	"	산65-189	임	6,810	1,403	-	-	1,403	-	-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46	"	산65-190	임	1,243	151	-	-	151	-	-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 변경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합계	중로 3-37	소로 1-1	소로 2-2	소로 3-4	소로 2-A	공공청사						
1	동작구 상도동	906-1	도	443.9	443.9	-	-	-	-	443.9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2	"	906-3	대	1,253.6	1,253.6	-	-	-	-	-	1,253.6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3	"	906-4	도	46.5	46.5	-	-	-	46.5	-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4	"	906-5	도	2,698.3	2,298.3	2,698.3	-	-	-	-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5	"	906-6	도	2,376.5	2,376.5	-	2,376.5	-	-	-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6	"	906-7	도	2,430.4	2,430.4	-	-	2,430.4	-	-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위 치 도

○ 행정상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 65-74번지 일대

○ 지리적 위치 : 사업지 북측 약 800m 지점에 장승배기역(7호선), 서측 1.0km 지점에 신대방역 삼거리역이 위치하고 있음.



◈ 관악구고시 제2024-2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관악구고시 제2024-10호(2024.1.18.)」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관악산 난곡지구 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면적오기 및 물건조서 반영 등의 사유로 변경되어, 관악구공고 제2024-322호(2024.2.8.)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합니다.
3. 저촉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할 예정이나, 이해관계인 및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관악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2월 29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108-1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 관악산 난곡지구 공원조성사업
  3) 사업내용 : 건물 등 물건 보상 및 공원 조성
  4) 면　　적 : 11,285㎡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25.12.31.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조
사.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관악산 난곡지구 공원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현황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30,215	11,285								
1	신림동 산108-10		임	3,699	3,699	임	서울특별시	단독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신림동 산108-9		임	3,151	3,151	임	서울특별시	단독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신림동 산108-7		공	32	32	임	서울특별시	단독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신림동 산108-6		공	226	226	임	서울특별시	단독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신림동 산108-1		임	23,107	4,177	임	국 (기획재정부)	단독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47				
6	난곡로15길 57		무허가주택	(55)	(55)	무허가주택	손○은	단독	서울시 중랑구 신내역로 ***, ***동 ***호				
7	당초	난곡로15길 57-2	무허가주택	(92)	(92)	무허가주택	김○권	단독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 ***동 ****호				면적오기 (측량결과반영)
	변경			(91)	(91)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현황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	당초	난곡로15길 57-3	무허가주택	(55)	(55)	무허가주택	(소유자미상)	-	-				면적오기 (측량결과반영)
	변경			(37)	(37)								
9	난곡로15길 58		무허가주택	(57)	(57)	무허가주택	(소유자미상)	-	-				
10	난곡로15길 59		무허가주택	(71)	(71)	무허가주택	서○열	단독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길 **, ***호				
11	난곡로15길 61		무허가주택	(57)	(57)	무허가주택	정○복	단독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번길 **, ***동 ***호				
12	난곡로15길 63		무허가주택	(48)	(48)	무허가주택	(소유자미상)	-	-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 사 업 명 : 관악산 난곡지구 공원조성사업

구 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신림동 산108-1	건물 (난곡로 15길 57)	시멘트벽돌조	55	손○은	서울시 중랑구 신내역로 ***, ***동 ***호				
		건물 (난곡로 15길 57-2)	시멘트벽돌조	91	김○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 ***동 ****호				
		건물 (난곡로 15길 57-3)	시멘트벽돌조	37	(소유자미상)					
			기타 집기류 일체	1식						
		건물 (난곡로 15길 58)	시멘트벽돌조	57	(소유자미상)					
		창고1		9						
		창고2		19						
		마당		30						
		건물 (난곡로 15길 59)	시멘트벽돌조	71	서○열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길 **, ***호				
		창고		4						
		화장실		2						
		건물 (난곡로 15길 61)	시멘트벽돌조	57	정○복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번길 **, ***동 ***호				

구 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창고		1						
		장독대		1						
			기타 집기류 일체	1식						
		건물 (난곡로 15길 63)	시멘트벽돌조	48	(소유자미상)					
		창고		9.5	(소유자미상)					
		장독대		11.4	(소유자미상)					

◈ 강남구고시 제2024-28호

도시관리계획(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4호(2009. 7. 2.)로 결정(변경) 고시된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강 남 구 청 장

1. 결정(변경)취지
   ○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임
      - 역삼동 678-11 외 4필지 공동개발(지정)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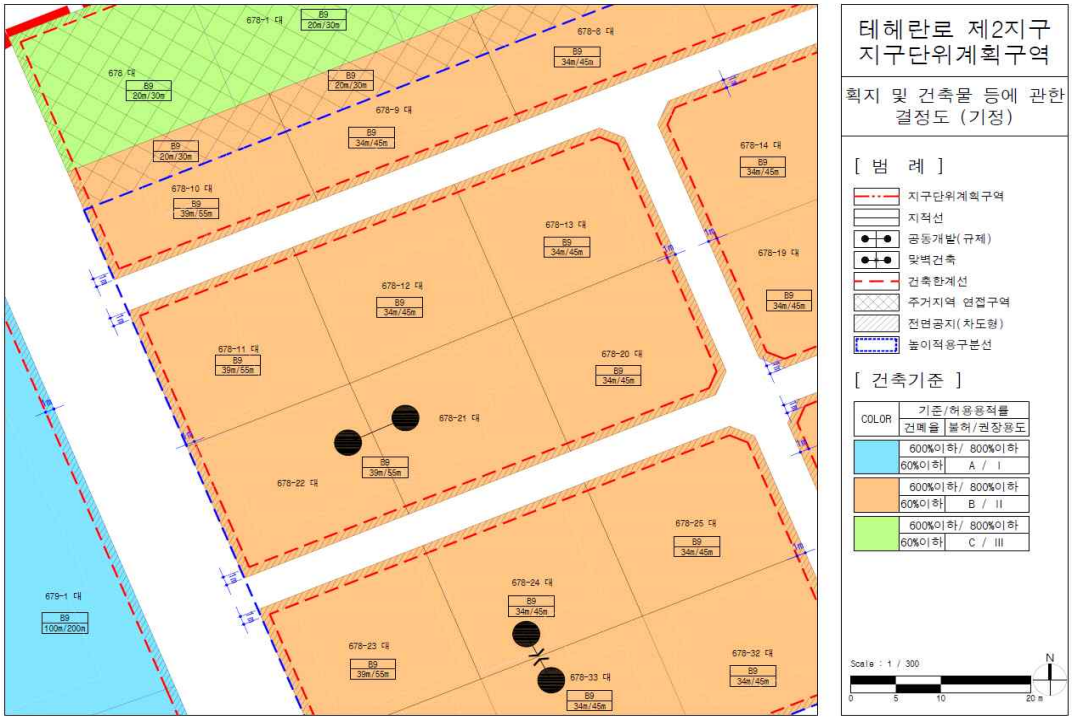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가 구		공 동 개 발			비 고
	번 호	면 적(㎡)	위 치	면 적(㎡)	계획면적(㎡)	
기 정	B9-3	1,996.7	역삼동 678-11	339.30	-	
			역삼동 678-12	334.90		
			역삼동 678-20	334.40		
			역삼동 678-21 역삼동 678-22	330.40 329.90	660.30	공동개발(지정)
변 경	B9-3	1,996.7	역삼동 678-11 역삼동 678-12 역삼동 678-20 역삼동 678-21 역삼동 678-22	339.30 334.90 334.40 330.40 329.90	1,668.9	공동개발(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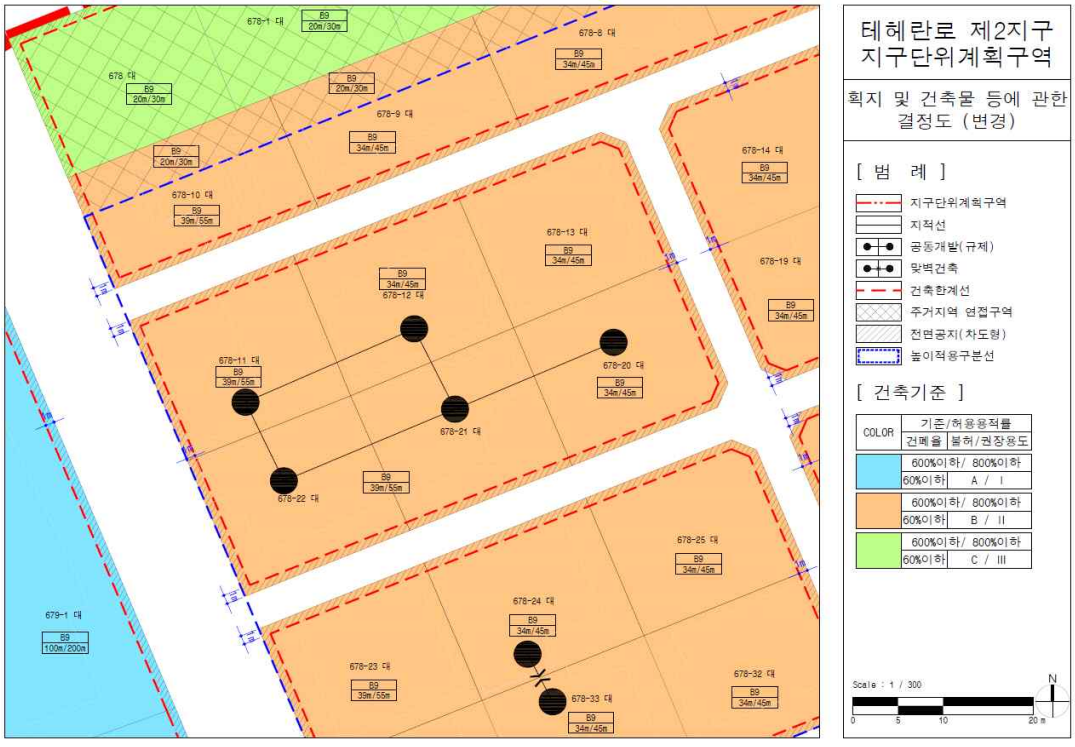
※ 상기사항 이외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음

3. 관계도면: 붙임 지형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등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강남구고시 제2024-29호

도시관리계획(청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72호(2006.8.10.)로 결정(변경)된 「청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강 남 구 청 장

1. 결정취지
◯ 「청담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하고자 하는 사항임
- 삼성동 52-6, 52-18번지 공동개발(권장)

2. 도시관리계획(청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다. 획지(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 정	E	⑥	강남구 삼성동 52-6번지	316.5	-
		⑩	강남구 삼성동 52-18번지	403.9	-
변 경		⑥	강남구 삼성동 52-6번지	720.4	공동개발(권장)
			강남구 삼성동 52-18번지		

◯ 변경 사유서

위 치	결정(변경) 내용	변경사유
강남구 삼성동 52-6번지	· 공동개발(권장) · 면적 : 720.4(㎡)	· 2개의 획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
강남구 삼성동 52-18번지		

3. 관계도면: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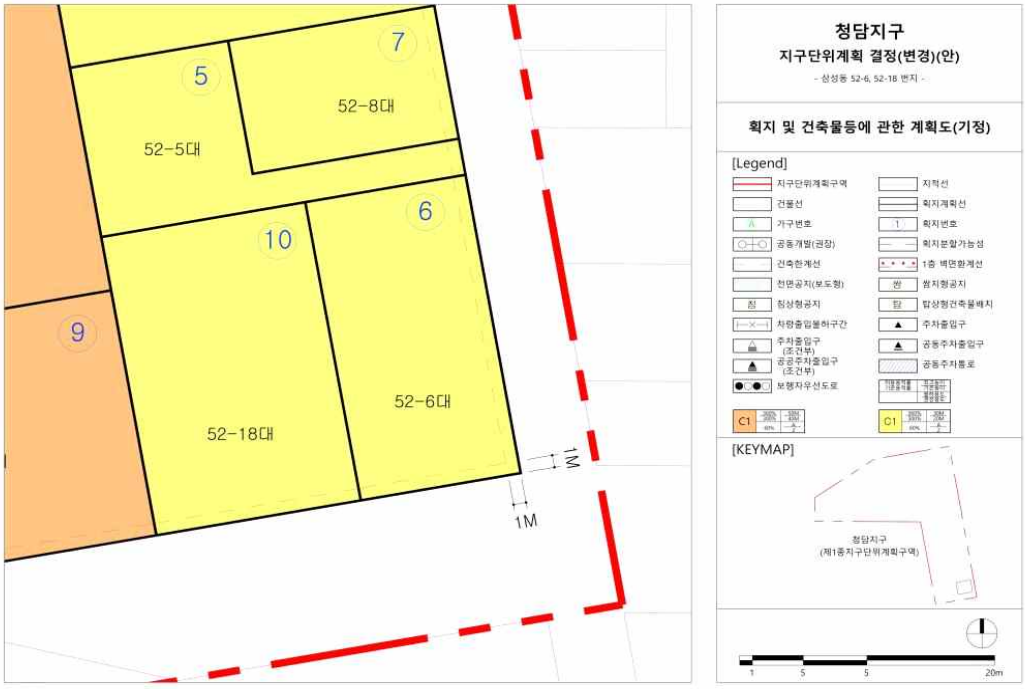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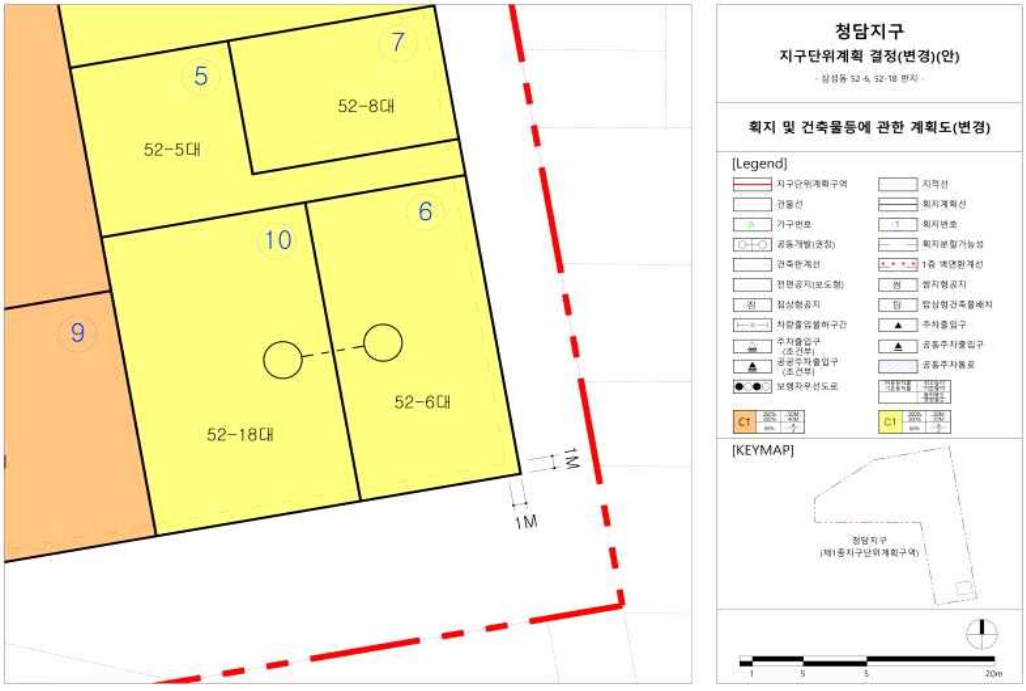
○ 강남구 도시계획과(☎3423-6112)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s://www.luris.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변경)



구 공 고

◈ 용산구공고 제2024-46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1. 건설부 고시 제146호(1975. 9. 3.)로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되고 용산구고시 제2020-104호로 실시계획인가되고 용산구고시 제2022-119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용산구 이촌동 302-198호 일대(이촌녹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열람공고 합니다.
2. 따라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의견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 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용산구 이촌동 302-198호 일대

나. 사업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2) 사업의 명칭 : 당초 - 이촌녹지 조성사업(2지역)
변경 - 이촌녹지 조성사업(2-1지역)

다. 사업내용(면적) : 토지보상 및 녹지조성(4,074㎡)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198 등 2필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217
면 적	4,074㎡	576㎡
내 용	토지보상 4,074㎡	토지보상 576㎡

라. 사업시행자 : 용산구청장(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바.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0년 6월 18일부터 2025년 6월 17일까지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

아.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붙임

자. 공고방법 : 서울시보 게재

차. 열람기간 : 공고(시보게재)일 다음날로 부터 14일간

카. 열람장소 : 용산구 공원녹지과(☎2199-7612)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7층 공원녹지과 ☎2199-7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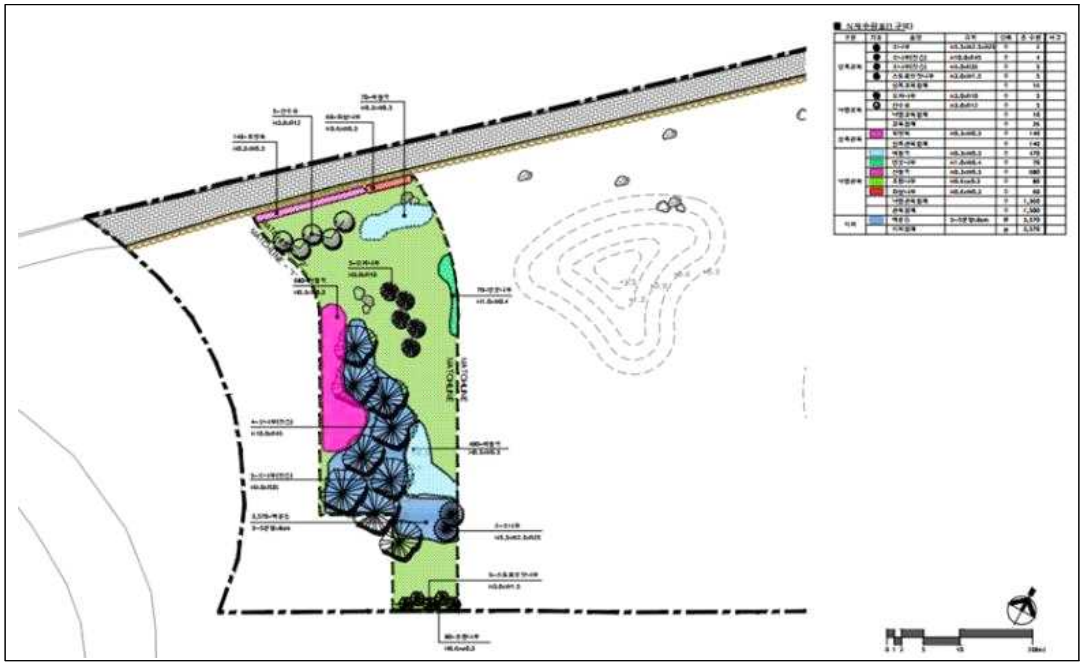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면적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576	576							
1	이촌동 302-217	대	576.0	576.0	대한예수교장로회00교회 대표자 이○호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000-00 00아파트 000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위치도



▢ 계획평면도



◈ 용산구공고 제2024-47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1. 건설부 고시 제146호(1975. 9. 3.)로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되고 용산구고시 제2020-104호로 실시계획인가되고 용산구고시 제2022-119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용산구 이촌동 302-198호 일대(이촌녹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열람공고 합니다.
2. 따라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의견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 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용산구 이촌동 302-198호 일대

나. 사업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2) 사업의 명칭 : 당초 - 이촌녹지 조성사업(2지역)
변경 - 이촌녹지 조성사업(2-2지역)

다. 사업내용(면적) : 토지보상 및 녹지조성(4,074㎡)

구분	당 초	변 경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198 등 2필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87호 등 2필지
면 적	4,074㎡	3,498㎡
내 용	토지보상 4,074㎡	토지보상 3,498㎡

라. 사업시행자 : 용산구청장(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바.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0년 6월 18일부터 2025년 6월 17일까지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

아.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붙임

자. 공고방법 : 서울시보 게재

차. 열람기간 : 공고(시보게재)일 다음날로 부터 14일간

카. 열람장소 : 용산구 공원녹지과(☎2199-7612)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7층 공원녹지과 ☎2199-7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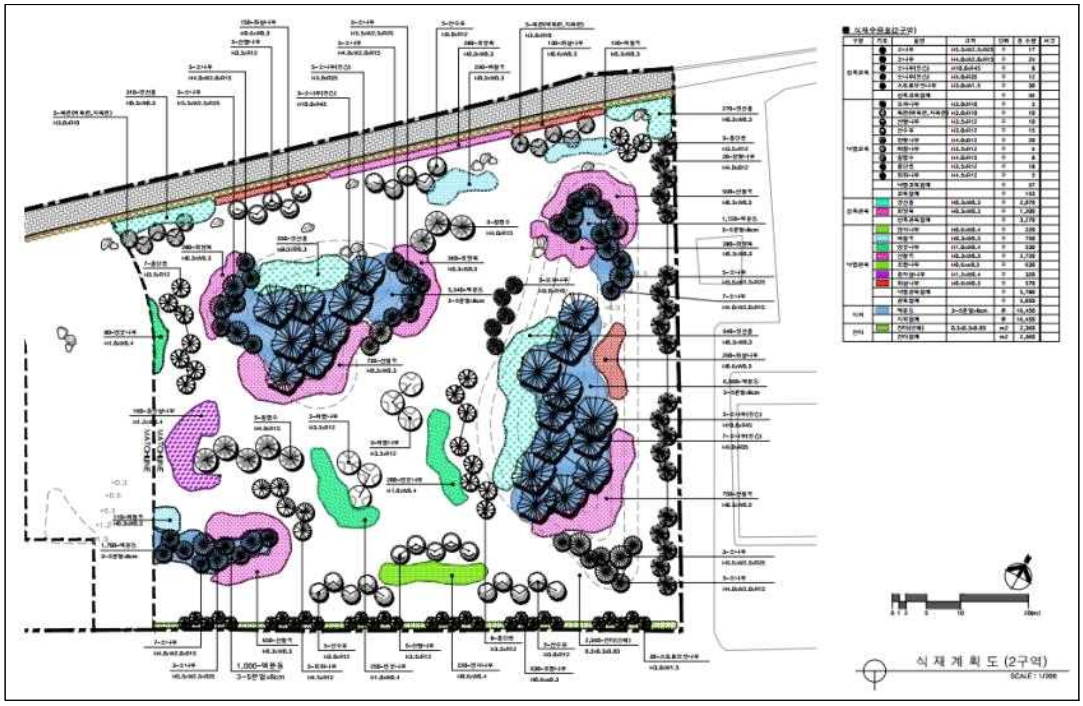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3,498	3,498							
1	이촌동 302-198	대	112.6	112.6	대한예수교장로회000교회 대표자 이○호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000-00 00아파트 000				
2	이촌동 302-87	대	3,385.4	3,385.4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위치도



▢ 계획평면도



◈ 성동구공고 제2024-378호

도시관리계획[(가칭)성수IT/디자인융합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1. 도시관리계획[(가칭)성수IT/디자인융합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9일
성 동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2024. 3. 14.까지)

나. 열람장소
- 성동구청 지역경제과(☎02-2286-5455), 성수1가1동 주민센터(☎02-2286-7422), 성수1가2동 주민센터(☎02-2286-7442), 성수2가1동 주민센터(☎02-2286-7462), 성수2가3동 주민센터(☎02-2286-7482)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성수IT산업 · 유통 개발진흥지구	산업 · 유통 개발진흥지구	성동구 성수2가3동 277-28번지 일대	539,406.4	서울시고시 제2010-21호 (2010.01.28.)	
변경	(가칭) 성수IT/디자인 융합산업 · 유통 개발진흥지구	산업 · 유통 개발진흥지구	성동구 성수동 일대	2,051,234 (증:1,511,827.6)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지구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가칭)성수IT/디자인 융합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	면적 증가 539,406.4㎡ → 2,051,234㎡ (증:1,511,827.6㎡)	• 기존 성수IT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의 권장업종이 성수 준공업지역 전반에 입지해 있어 기존 구역계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장하고 산업생태계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를 변경하고자 함 • 변화된 산업생태계를 반영하여 산업환경 및 기능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권장업종을 변경 결정함

라. 의견제출 장소: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02-2286-5455)

※ 방문 접수, e-mail: yoosoo@sd.go.kr, 우편(열람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마. 관련도서: 생략(열람장소 비치)

※ 본 결정(변경)(안)은 최종결정 사항이 아니며,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음

◈ 강서구공고 제2024-445호

도시관리계획(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결정(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3-1088호(2023.06.15.)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결정(안)' 에 대하여 2024년 제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 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재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9일
강 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과 (☏02-2600-6656)

다. 열람내용

1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 공동개발 결정(변경) 조서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주 소		기정	변경	
C-8	공항동 45-1대	73	-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공항동 45-16대	79	-		
	공항동 45-72대	46	-		
	공항동 45-74대	53	-		
	공항동 45-75대	66	-		
	공항동 45-76대	66	-		
	공항동 45-77대	79	-		
	공항동 45-78대	304	-		
	공항동 45-79대	79	-		
	공항동 45-80대	79	-		

<table>
<tr><th colspan="2" rowspan="2">위 치</th><th rowspan="3">면적(㎡)</th><th colspan="2">계획내용</th><th rowspan="3">비고</th></tr>
<tr><th colspan="2">기정</th><th colspan="2">변경</th></tr>
<tr><th>가구번호</th><th>주 소</th><th colspan="2"></th><th colspan="2"></th></tr>
<tr><td rowspan="49">C-8</td><td>공항동 45-81대</td><td>86</td><td colspan="2">-</td><td colspan="2" rowspan="30">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td><td rowspan="30"></td></tr>
<tr><td>공항동 45-82대</td><td>86</td><td colspan="2">-</td></tr>
<tr><td>공항동 45-83대</td><td>86</td><td colspan="2">-</td></tr>
<tr><td>공항동 45-90대</td><td>83</td><td colspan="2">-</td></tr>
<tr><td>공항동 45-91대</td><td>122</td><td colspan="2">-</td></tr>
<tr><td>공항동 45-95대</td><td>30</td><td colspan="2">-</td></tr>
<tr><td>공항동 45-100대</td><td>89</td><td colspan="2">-</td></tr>
<tr><td>공항동 45-107도</td><td>46</td><td colspan="2">-</td></tr>
<tr><td>공항동 45-120도</td><td>29</td><td colspan="2">-</td></tr>
<tr><td>공항동 48-15대</td><td>124</td><td colspan="2">-</td></tr>
<tr><td>공항동 48-27대</td><td>291</td><td colspan="2">-</td></tr>
<tr><td>공항동 45-102대</td><td>106</td><td colspan="2" rowspan="2">공동개발(권장)</td></tr>
<tr><td>공항동 45-105대</td><td>50</td></tr>
<tr><td>공항동 45-99대</td><td>1,741</td><td colspan="2" rowspan="2">공동개발(지정)</td></tr>
<tr><td>공항동 45-106대</td><td>30</td></tr>
<tr><td>공항동 45-73대</td><td>30</td><td colspan="2" rowspan="2">공동개발
(지정)</td><td rowspan="2">공동개발
(권장)</td></tr>
<tr><td>공항동 45-108대</td><td>56</td></tr>
<tr><td>공항동 45-109대</td><td>7</td><td colspan="2" rowspan="6">공동개발(권장)</td><td colspan="2" rowspan="5">공동개발(권장)</td><td rowspan="5"></td></tr>
<tr><td>공항동 47-24대</td><td>36</td></tr>
<tr><td>공항동 48-13대</td><td>44</td></tr>
<tr><td>공항동 47-25대</td><td>43</td></tr>
<tr><td>공항동 48-14대</td><td>101</td></tr>
<tr><td>공항동 47-23대</td><td>26</td><td colspan="2" rowspan="2">공동개발(권장)</td><td rowspan="2"></td></tr>
<tr><td>공항동 48-12대</td><td>39</td></tr>
<tr><td>공항동 45-53대</td><td>17</td><td rowspan="3">공동
개발
(지정)</td><td rowspan="3">공동
개발
(권장)</td><td rowspan="6">공동
개발
(권장)</td><td rowspan="3">공동
개발
(지정)</td><td rowspan="3">공동
개발
(권장)</td><td rowspan="6">공동
개발
(권장)</td><td rowspan="6"></td></tr>
<tr><td>공항동 46-6대</td><td>42</td></tr>
<tr><td>공항동 47-21대</td><td>28</td></tr>
<tr><td>공항동 45-54대</td><td>26</td><td rowspan="3">공동개발
(지정)</td><td rowspan="3">공동개발
(지정)</td></tr>
<tr><td>공항동 46-7대</td><td>5</td></tr>
<tr><td>공항동 47-22대</td><td>23</td></tr>
<tr><td>공항동 48-1대</td><td>3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공항동 45-22대</td><td>14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공항동 45-31대</td><td>119</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공항동 45-32대</td><td>53</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공항동 45-33대</td><td>73</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공항동 45-35대</td><td>86</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공항동 45-48도</td><td>38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공항동 45-49대</td><td>93</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able>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주 소		기정	변경	
	공항동 45-55대	99	-	-	
	공항동 45-84대	53	-	-	
	공항동 45-85대	56	-	-	
	공항동 45-86대	46	-	-	
	공항동 45-87대	50	-	-	
	공항동 45-88대	46	-	-	
	공항동 45-89대	46	-	-	
	공항동 45-104대	46	-	-	
	공항동 48-49대	241	-	-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변경(신설)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 변경(신설)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강서구 공항동 45-99번지 일원	-	4,240.0	4,240.0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신설

■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신설)

구 분		계 획 내 용
위 치		• 공항동 45-99 일원
면 적		• 4,240.0㎡
용도지역		• 근린상업지역
건축물 용도	권장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병원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구 분		계 획 내 용
	불허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 500% / 600% 이하 / 市 조례에 따름
최고높이		• 해발 57.86m 미만 (공항시설법에 의한 높이제한을 따름)
건축물 배치	건축한계선	• 방화동로변 : 2m • 방화동로 이면부 : 2m
	벽면한계선	• 방화동로변 : 3m(1층부) • 이면부(공항대로3나길변) : 3m(1층부)
기타 사항	보차혼용통로	• 남·북측 보차혼용통로 (폭 4m) •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 유도
	공공보행통로	• 사업대상지 북측 및 남동측 공공보행통로 지정(폭 4m) • 보행 흐름의 연속성 및 접근성 제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방화동로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계획

2 공항대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결정(신설): 기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라. 열람도서 : 기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02-2600-6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천구공고 제2024-393호

도시관리계획(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금천구 공고 제2020-1558호(2020.12.10.)로 열람 공고한 도시관리계획(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2023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금 천 구 청 장

1. 구 역 명 :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2.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일대
3. 도시관리계획(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일대	-	증) 316,027	316,027	-

   2)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사항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4) 획지 및 건축물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5) 특별계획구역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특별계획구역①	금천구 독산동 295-10	-	증) 13,245.6	13,245.6	단일필지 ㈜롯데쇼핑 소유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4.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 날부터 14일간
5.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금천구청 도시계획과(11층)
6. 의견제출 방법
   : 본 열람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02-2627-20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천구공고 제2024-397호

도시관리계획(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68호(2023.06.29.)로 결정되고 금천구 공고 제2023-1972호(2023.12.14.)로 열람 공고한 도시관리계획(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4년 제1차 금천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금 천 구 청 장

1. 구 역 명 : 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2.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40-1번지 일대

3.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 날부터 14일간

4.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금천구청 11층 도시계획과(☎02-2627-2063), 주차관리과(☎02-2627-2172)

5. 도시관리계획(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주차장(교통시설) 신설 및 공공공지(공간시설) 면적 증가, 중복결정 외 변경사항 없음
1) 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주차장	금천구 가산동 144-1번지 외 1필지	-	증)903.5	903.5	-	공공공지 중복결정 (A=903.5㎡)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주차장	· 주차장(지하) 신설(903.5㎡) · 공공공지(지상)와 중복결정	·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지역의 주차난 완화, 통행 안전 확보 및 인접 시설 방문자들의 편의 제공

2) 공공공지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공공공지	금천구 가산동 144-2번지	금천구 가산동 144-1번지 외 1필지	746.8	증)156.7	903.5	금천구 고시 제2021-135호 (2021. 10. 7.)	가산동 144-1 편입(156.7㎡) 및 주차장 중복결정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공지	· 공공공지(지상) 시설 결정 면적 확대 (746.8㎡ → 903.5㎡) · 주차장(지하)과 중복결정(903.5㎡)	· 기 결정된 공공공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접 대지(가산동 144-1) 편입으로 시설 결정 면적 변경 · 주민 접근성 및 편의 증대를 위해 주차장과 중복결정

3) 중복결정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 주차장) 중복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공공공지	금천구 가산동 144-1번지 외 1필지	746.8	증)156.7	903.5	금천구 고시 제2021-135호 (2021. 10. 7.)	공공공지 · 주차장 중복결정 (A=903.5㎡)
신설	주차장	금천구 가산동 144-1번지 외 1필지	-	증)903.5	903.5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 주차장) 중복결정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공지 주차장	· 공공공지(지상) · 주차장(지하) 중복결정 (903.5㎡)	· 주민 접근성 및 편의 증대를 위해 주차장과 공공공지 중복결정

나. 기타사항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교통처리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외 변경사항 없음

■ 교통처리 등에 관한 결정조서 (기정)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원활한 차량소통 및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보행공간 단절 최소화, 보행연속성 확보 • 20m 이상 간선변 내 지정하여 이면부로의 차량출입 유도	• 남부순환로변 • 디지털로변 • 가산로변
제한적 차량출입 허용구간	• 개별필지 개발 등의 사유로 차량출입이 필요한 일부 구간에 한하여 한시적 설정	• 디지털로변(2개소) • 남부순환로(1개소)
주차 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대체	• 전구역
보차혼용통로	• 보행, 차량의 원활한 흐름 유도 및 필지 기능상 차량 접근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설정	• 폭 6m 이상 도로 • 1개소

■ 교통처리 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원활한 차량소통 및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보행공간 단절 최소화, 보행연속성 확보 • 20m 이상 간선변 내 지정하여 이면부로의 차량출입 유도 • 차량출입 불허구간은 교차로와의 거리 및 보행 안전성등을 고려하여 계획 • 교차로와 이격된 이면부로 출입유도	• 남부순환로변 • 디지털로변 • 가산로변
제한적 차량출입 허용구간	• 변경없음	-
주차 출입구	• 변경없음	-
보차혼용통로	• 변경없음	-

■ 교통처리 등에 관한 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사유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주차장 출입구 신설로 인한 차량출입 불허구간의 변경 • 144-1번지 앞 도로변 교차로 인근으로 주차장 출입구 설치불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설정하고, 144-2번지에 접한 도로변을 차량진출입 허용 체계로 재정비	-

6.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강남구공고 제2024-513호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최초)을 위한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29호(2023.11.30.)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광장)에 대하여 실시계획(최초) 작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되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공원녹지과(☎02-3423-6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9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광장
  - 사업명칭: 수서역 6번 출구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다. 사업규모: 대지면적 2,963.5㎡, 건축면적 105.9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성　　명: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바. 열람장소: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02-3423-6993)
사.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이용 사항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및 내용
1	강남구 수서동 727	주차장	주차장	2,963.5	2,963.5	서울특별시	100/10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국토교통부	-	구분지상권(철도시설)
2	강남구 수서동 727-2번지	주차장	주차장	107.0	107.0	국토교통부	100/10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

◈ 강남구공고 제2024-533호

도시계획시설사업(대모산근린공원 조성-개포동) 실시계획(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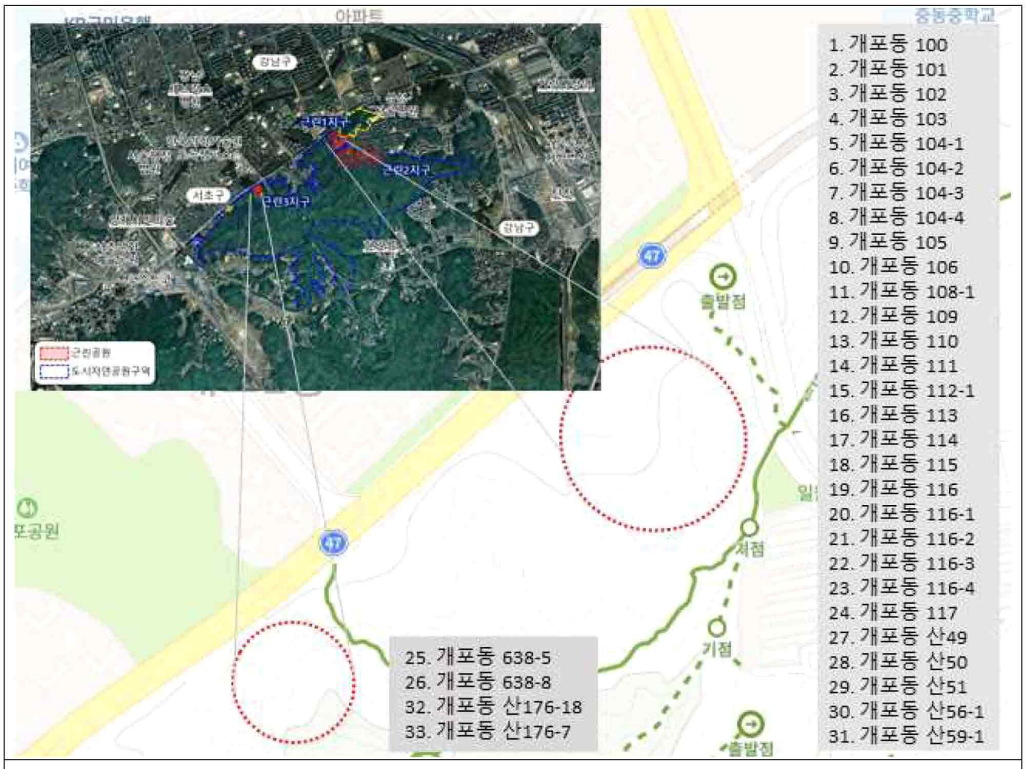
1. 건설부 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75호(2021.7.22.)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9-124호(2019.8.22.), 제2022-62호(2022.3.17.)로 실시계획(변경)된 대모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되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공원녹지과(☎02-3423-6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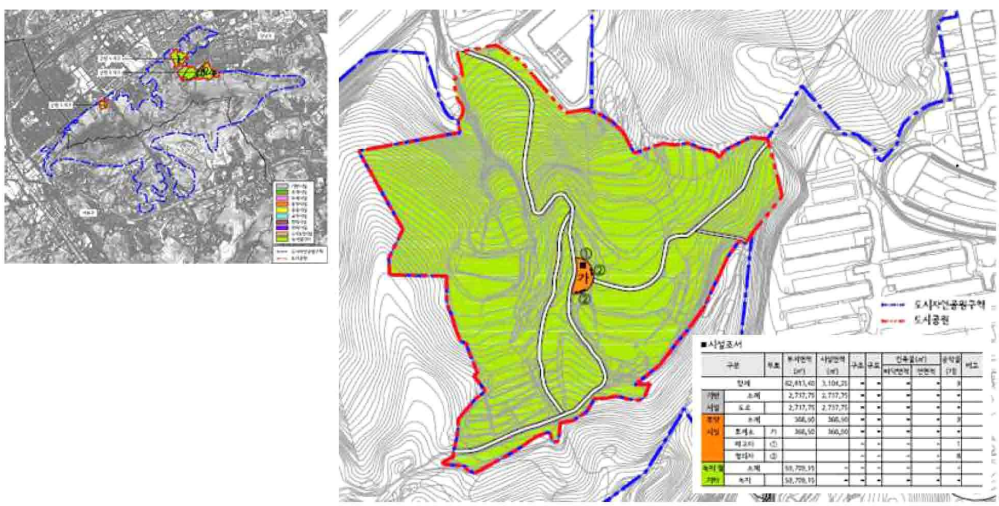
2024년 2월 29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00번지 등 33필지(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대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
  1) 면　　적: 55,740㎡
  2) 내　　용
    - (당초)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 (변경)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공원 조성
라. 사업기간
    - (당초)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4. 8. 21.까지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5. 11. 30.까지
마. 사업시행자: 강남구청장(변경없음)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변경없음)
사. 열람장소: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02-3423-6993)
아.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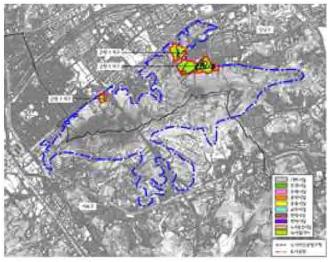
사업시행지 위치 및 계획평면도

▢ 대모산근린공원-개포동(강남구 개포동 100번지 등 33필지)





1~24, 27~31. 개포동 100번지 등 29필지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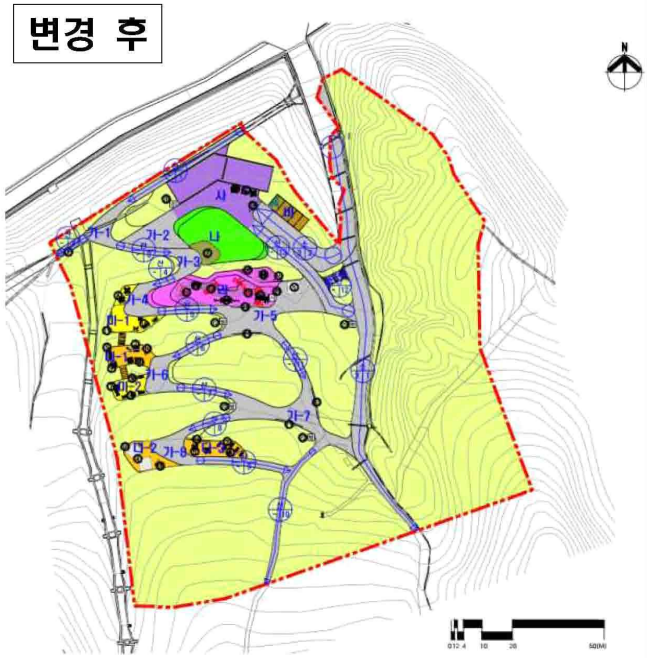
변경 전



■조성계획총괄표

구분	시설명	번호	수량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비고
총계		-	72	-	17,558.00㎡	4,694.86㎡	시설률 26.74%
자연시설	소계	-	1		2,786.14㎡	2,786.14㎡	15.89%
	도로	-			1,598.23㎡	1,598.23㎡	
	분경A	가-1		개포동 638-5 외 2필지	92.70㎡	92.70㎡	
	분경B	가-2		개포동 638-5	143.22㎡	143.22㎡	
	분경C	가-3		개포동 638-5	69.94㎡	69.94㎡	
	분경D	가-4		개포동 638-5	85.68㎡	85.68㎡	
	분경E	가-5		개포동 638-5 외 2필지	316.14㎡	316.14㎡	
	분경F	가-6		개포동 638-5 외 2필지	92.88㎡	92.88㎡	
	분경G	가-7		개포동 638-5 외 2필지	293.59㎡	293.59㎡	
	분경H	가-8		개포동 638-5 외 2필지	101.03㎡	101.03㎡	
	매개정원	㉮	1		-	-	
조경시설	소계	-	-		377.39㎡	377.39㎡	2.15%
	전시마당	나		개포동 638-5 외 2필지	377.39㎡	377.39㎡	
휴양시설	소계	-	44		313.40㎡	313.40㎡	1.78%
	휴게마당A	다-1		개포동 638-5 외 2필지	109.87㎡	109.87㎡	
	휴게마당B	다-2		개포동 638-5 외 2필지	101.56㎡	101.56㎡	
	휴게마당C	다-3		개포동 638-5 외 2필지	102.02㎡	102.02㎡	
	야외데크A	㉯	1		-	-	
	야외데크B	㉯	1		-	-	
	전망휴게쉼	㉰	2		-	-	
	휴게휴게쉼	㉰	1		-	-	
	어린이쉼터	㉰	6		-	-	
	퇴적	㉱	4		-	-	
	산책로	㉲	6		-	-	
	징검다리	㉲	4		-	-	
	산책벤치	㉳	13		-	-	
	경관벽	㉴	5		-	-	54.0 m
위락시설	소계	-	5	개포동 638-5 외 2필지	423.85㎡	423.85㎡	2.41%
	지형놀이마당	라	-	개포동 638-5 외 2필지	423.85㎡	423.85㎡	
	미끄럼틀A	㉵	1		-	-	
	미끄럼틀B	㉵	1		-	-	
	다리건너기	㉵	1		-	-	
	통나무건너기	㉵	2		-	-	
	리듬오르기	㉵	3		-	-	
	무한놀이	㉵	1		-	-	
공원시설	소계	-	8		184.19㎡	184.19㎡	1.11%
	정자마당A	마-1		개포동 638-5 외 2필지	122.31㎡	122.31㎡	
	정자마당B	마-2		개포동 638-5 외 2필지	71.88㎡	71.88㎡	
	화장실시설	㉶	8		-	-	
면적시설	소계	-	-		66.58㎡	66.58㎡	0.38%
	주차장	바		개포동 638-5 외 2필지	66.58㎡	66.58㎡	
관리시설	소계	-	18		529.69㎡	529.69㎡	3.02%
	관리사무소	사		개포동 638-5	529.69㎡	529.69㎡	건축면적 186.98㎡
	출입문	㉷	4		-	-	
	화장실내부	㉷	1		-	-	
	시설관내부	㉷	1		-	-	
	정원관내부	㉷	4		-	-	
녹지 및 기타	소계	-	-		12,863.06㎡	-	녹지율 73.26%
	녹지	-	-		12,863.0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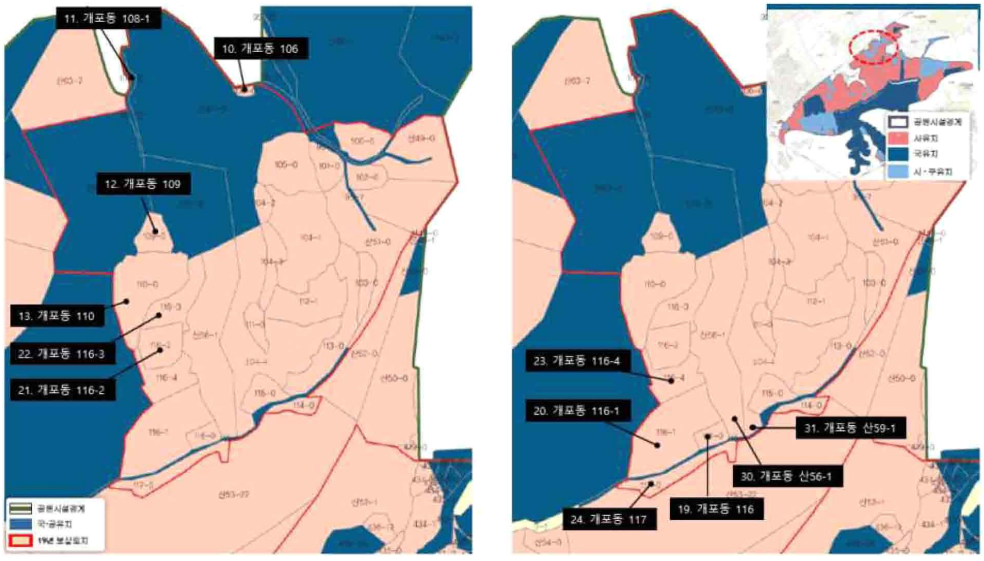
변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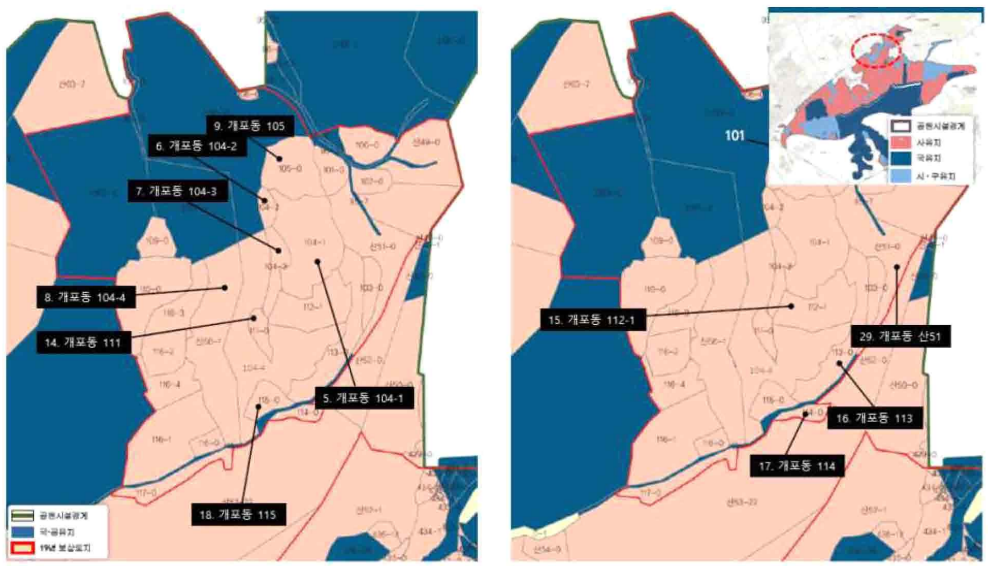
25,26,32,33. 개포동 638-5번지 등 4필지

보상용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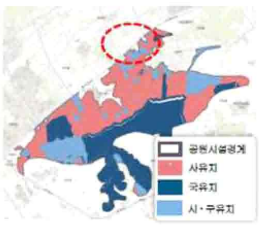
▢ 대모산근린공원-개포동(강남구 개포동 100번지 등 33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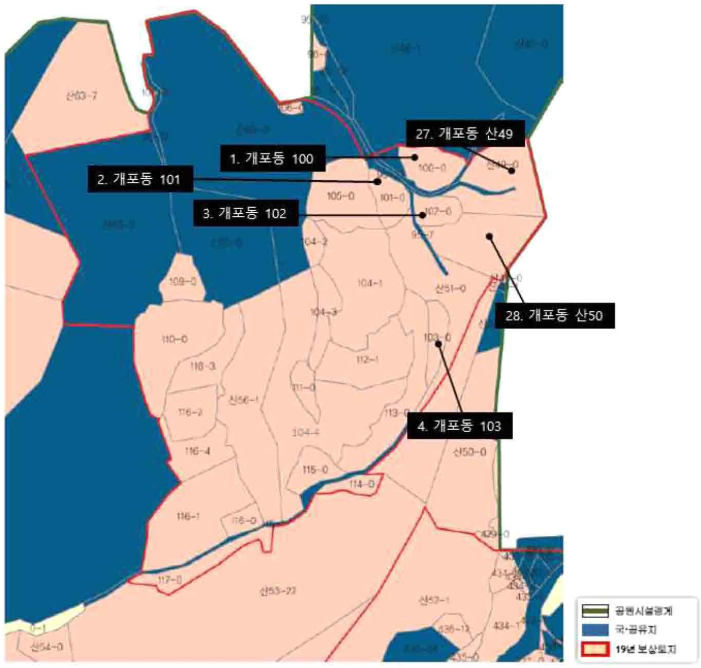


10~13,19~24,30,31. 개포동 106번지 등 12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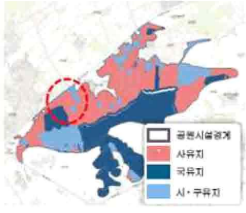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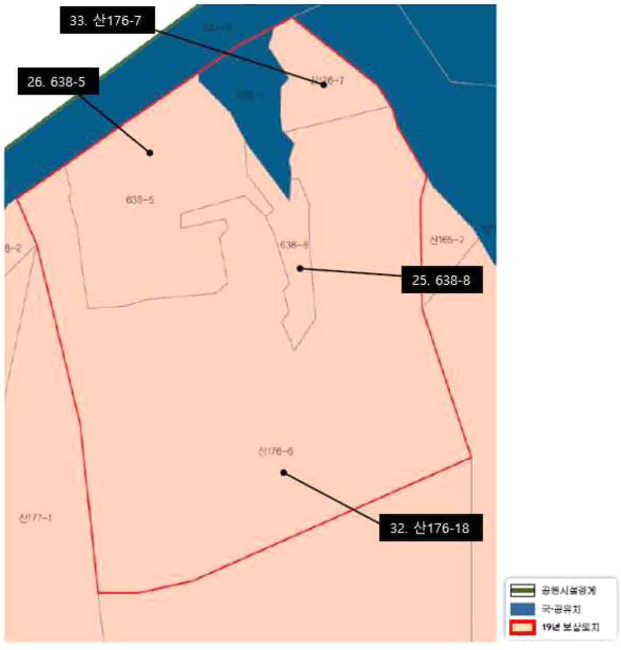
5~9,14~18,29. 개포동 104-1 등 11필지





1~4,27~28. 개포동 100번지 등 6필지





25,26,32,33. 개포동 638-5번지 등 4필지

◈ 강남구공고 제2024-56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70호(1980. 2. 22.)로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330호(1982. 8.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1997-12호(1997. 3. 13.)로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74번지 일대 대치유수지 내(대치동 1010-1번지 일대) 체육시설 건립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강 남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안) 조서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안)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체육시설	공공 체육시설	대치동 1010-1번지 일대	-	증) 10,079.4	10,079.4	-	▪ 중복결정 - 유수지 (10,079.4㎡)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	체육시설	▪ 중복결정 (10,079.4㎡) - 유수지 - 체육시설	▪ 강남구민의 문화, 체육, 복지 등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정 도시계획시설인 유수지 공간을 활용한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중복결정하는 사항임

- 건축물 범위 결정조서(체육시설)

구 분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층수)	비 고
체육시설	20% 이하	100% 이하	4층 이하	-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	유수지	유수시설	대치동 74번지 일대	84,216.3	-	84,216.3	서울특별시 고시 제70호 (1980. 2. 22.)	▪ 중복결정 - 철도 - 체육시설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면 적(㎡)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정	-	철도	고속철도 (삼성 ~동탄)	강남구 대치동995	강남구 세곡동13-4	-	7,144	125,68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35호 (2017. 3. 9.)	▪ 중복결정 - 유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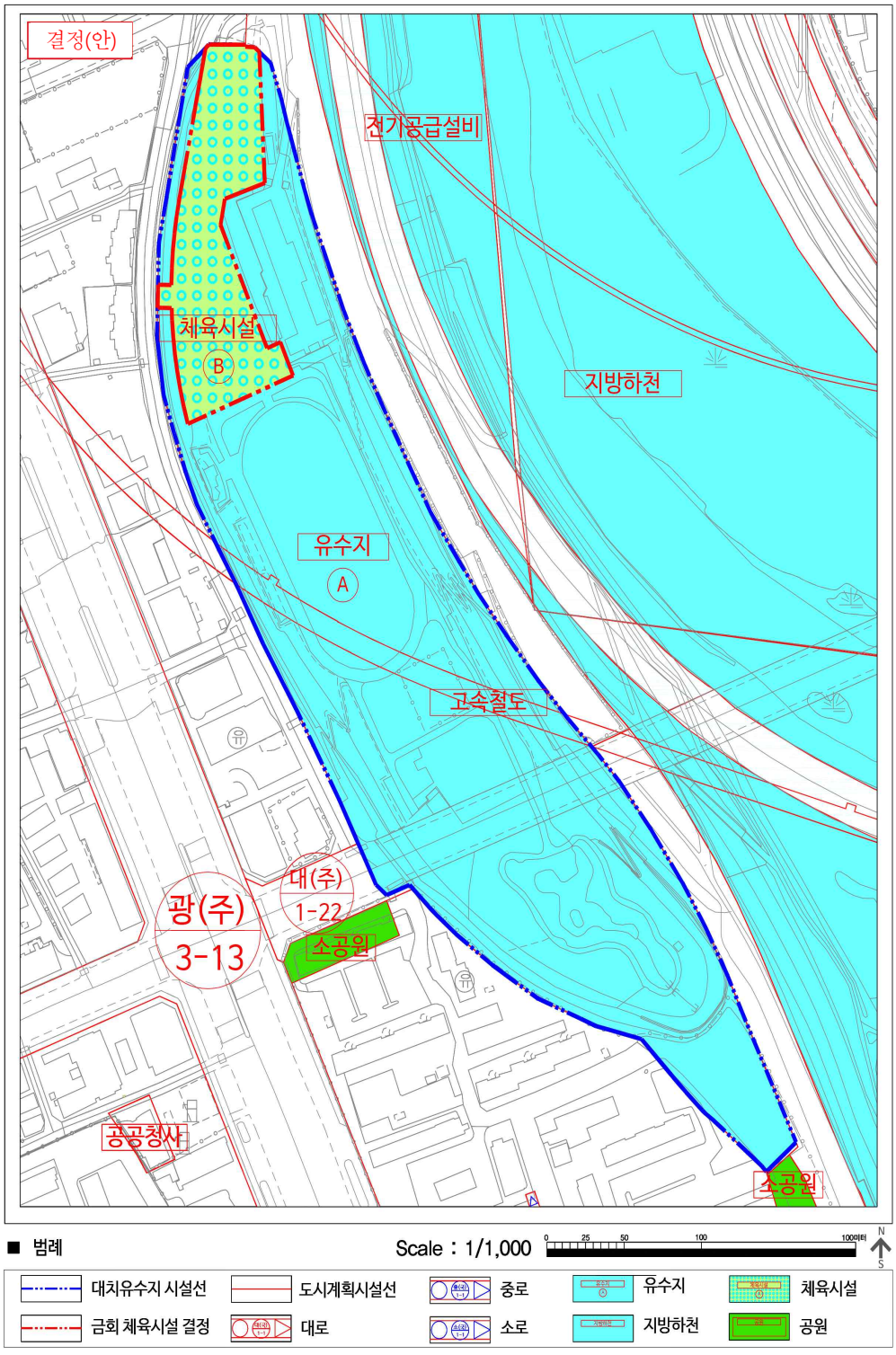
나. 열람기간 : 2024. 2. 29. ~ 2024. 3. 14.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다. 열람장소: 강남구청 치수과(☎ 02-3423-6602), 도시계획과(☎ 02-3423-6110)

라. 관계도서: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자료 및 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 참고

마. 본 결정(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치수과(☎ 02-3423-6602), 도시계획과(☎ 02-3423-61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시계획시설 결정(안)도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6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현대요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6가 451	잠실대교 ~ 행주대교	구조선 1 동력선 1 카약 11 딩기요트 3	수상레저사업	2024.4.1.~ 2024.12.31	2024. 2.23.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4-6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골든블루 마리나 (대표 김재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683(반포동)	행주대교 ~ 잠실대교	사업종료에 따른 단순 계류	동력선 5대 (리무진1,2 / 신데렐라 / 블루웨일 1,2	2024.3.01. ~ 2024.3.31.	2024. 2.26.
			수상레저사업	동력선 2척 (리무진3, 휄라)	2024.2.29. ~ 2024.11.30.	
			마리나사업	동력선 5척 (프린세스, 씨레이, 로셀라, 러셀라, 페어라인)	2024.2.29. ~ 2024.11.30.	
파라다이스 (대표 윤상덕)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6번지(한강)	밤섬 ~ 노들섬	무동력선 29척 (추가)	유선사업	2024.3.1. ~ 2024.11.30.	2024. 2.26.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58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전력공사 광진성동지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7길 13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73-2(행당지4L11), 행당동 67-1(행당지4L10)
 - 면 적 : 87.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성동구 일대 전력공급
 - 개 요 : 원형철주 2기(4.5m×4.5m×24m)

5. 점용기간 : (당초) 2019.04.01. ~ 2024.03.31.
 (변경) 2024.04.01. ~ 2029.03.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6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금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70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719-14 외 2필지
 - 면 적 : 768.0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수변휴게공간 조성
 - 내 역 : 수변전망쉼터(A=165.10㎡), 수변테라스(A=91.00㎡), 안전난간(H=1.2m), 경관옹벽, 데크트렐리스 등

5. 점용기간 : 2024.02.23. ~ 2029.02.22.

6.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4.12.31.
※자연재해기간 매년 5.15.~10.15. 공사금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73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일시)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5-5, 잠원동 122-1, 121 일원
 - 면 적 : 일시 1,02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장기사용 열수송관 교체공사
 - 개 요 : 열수송관 700A×2열 17.9m, 600A×2열 21.1m

5. 점용기간 : 2024.03.04. ~ 2024.06.30.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74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현대건설(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390-1 일대
 - 면 적 : 1,23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세종-포천고속도로 시공을 위한 공사용 가도 설치
 - 개 요 : 공사용 가도 L=114m

5. 점용기간 : (당초) 2022.06.14. ~ 2023.12.31.
 (변경) 2024.01.01. ~ 2024.12.31.

6. 공사기간 : (당초) 2017.06.14. ~ 2023.12.31.
 (변경) 2017.06.14. ~ 2024.12.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80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민자도로관리과)
 -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7-6번지 외 30필지 일원(17-5, -6, 19, -20, -28, -29, 18-2, -8, -10, 19-1, -2, -3, -4, -5, -6, 46-2, 57-1, -6, 59-1, 60, 60-2, 61-1, 63-5, -11, 71-9, -10, 72-1, -8, -11, 74, 748)
 - 면 적: 9,38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4공구(88JCT Ramp-A,B)
 - 내 역: 88JCT Ramp-A교 P4(4m2), P5(355m2), Ramp-B교 P1(485m2), P2(479m2), 공사용 우회도로(393m2, L=90m, B=4.5m), 강교제작장 및 임시공사부지(7,671m2 / 5개소)

5. 점용기간 : 영구

6. 공사기간 : (당초) 2021.12.17 ~ 2024.5.14.
(변경) 2021.12.17 ~ 2027.12.31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31 문의 : ☎120